2026.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III)

외 교 통 일 위 원 회
국 방 위 원 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2026.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III)

외 교 통 일 위 원 회
국 방 위 원 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외 교 통 일 위 원 회

❖ 외 교 부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8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9

Ⅱ. 사업별 검토 ····· 10

【총 괄】

1. 공모전 사업: 규정에 따른 공고 및 수상작 공개 필요 ····· 10
2. AI 구독료: 예산집행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 14
3. 관서운영경비 집행: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 준수 필요 ····· 17

【일반회계】

<세 입> ····· 21

4. 건물대여료: 외교타운 내 사무실 배정공간 조정을 통한 세입 증대 방안 모색 필요 ····· 21

<세 출> ····· 26

5.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 단일 과업의 임의 분할 집행 부적정 등 ····· 26

6.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사업: 다각적인 집행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등 ····· 33

7.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인건비 사업: 결원발생 최소화 및 소요예산 재산정 필요 ····· 38

8. 외교현안 연구 및 정례학술교류 활동 사업: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수의계약 부적정 등 ····· 45

9. 외국어전임강사 인건비 사업: 외국어전임강사 운영 방식 재검토 필요 ····· 50

10.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 규정 취지 고려 국산차량 적극 구입 필요 ····· 54

11. 청년인턴 채용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규모 재검토 필요 ····· 57

12.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 필요 ····· 63

13. 국별협력사업(ODA): 과다한 사업간 예산 전용·조정 축소 필요 등 ····· 65

14.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한 예산 집행 필요 ····· 78

15. 2025 APEC 의장국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등 ····· 82

【국제교류기금】

<수 입> ····· 87

16. 법정부담금: 국제교류기금 적립금 고갈 대비 방안 마련 필요 ····· 87

<지 출> ····· 94

17.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지원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 필요 ····· 94

18. 현지교원고용지원 사업: 계획액 과다편성 지양 필요 등 ····· 99

【기 타】

19.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103

❖ 통 일 부

Ⅰ. 개 관 ····· 105

1. 결산 개요 ····· 105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09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10

Ⅱ. 사업별 검토 ····· 111

【총 괄】

1. 공용차량 구매·임차: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필요 ····· 111
2. 장애인고용부담금: 비공무원 상시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115
3. AI 구독료: 예산집행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등 ····· 119

【일반회계】

<세 출> ····· 124

4.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사업 결과의 매몰비용화 방지 필요 ····· 124
5.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 자문기구 운영 시 면밀한 운영계획 수립 필요 ····· 130
6. 통일정책추진 사업: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 134

7.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 사업 추진 지양 필요 ····· 139
8.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준수 필요 ····· 143
9. 남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사업 규모 재검토 필요 ····· 147

【기 타】

10.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15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Ⅰ. 개 관 ····· 153

1. 결산 개요 ····· 153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56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56

Ⅱ. 사업별 검토 ····· 157

【일반회계】

<세 출> ····· 157

1. 자문회의 운영 사업: 여성 부의장 비율 확대 노력 필요 ····· 157
2. 국내·해외 출범회의 사업: 출범회의 참석률 제고 필요 ····· 160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164

❖ 재외동포청

Ⅰ. 개 관 ····· 165

1. 결산 개요 ····· 165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68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68

Ⅱ. 사업별 검토 ····· 169

【일반회계】

<세 출> ····· 169

1.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사업: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 필요 등 ····· 169
2.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사업: 법령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방안 마련 필요 등 ····· 177
3.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관리용역비 예산 과다편성 지양 필요 ····· 183
4.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 187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193

국 방 위 원 회

❖ 국 방 부

Ⅰ. 개 관 ····· 197

1. 결산 개요 ····· 197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202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03

Ⅱ. 사업별 검토 ····· 204

【일반회계】

<세 입> ····· 204

1. 징계부과금: 미수납 채권 관리 강화 필요 ····· 204
2. 변상금: 미수납 채권 회수율 제고를 통한 불납결손 최소화 ····· 208

<세 출> ····· 212

3. 부사관인건비 사업: 적정 소요 편성 및 집행잔액의 과다한 이·전용 방지 ····· 212
4. 정보체계개발유지(정보화) 사업: 집행계획 철저 등 ····· 217
5.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 획득 소요 기간을 감안한 적정 소요 편성 필요 등 ····· 221
6. 재해보상금 사업: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 224
7.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 계약 체결 확대 필요 등 ····· 228

8. 합성훈련환경 체계구축 사업: 사전절차 완료 후 신규예산 편성 필요 등 ····· 233
9. 문화활동지원 사업: 일부사업 군인복지기금으로 이관 검토 필요 ····· 237
10. 단기복무장려금 사업: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 준수 및 예산의 목적외 집행 지양 ····· 241
11. 동원훈련 사업: 훈련 인원 감소 추이를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 245
12. 군배상금 사업: 연례적 예산 과소 편성 및 연말 자금 미배정에 따른 국민 불편 유발 방지 필요 ····· 250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 출> ····· 256

13.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사업: 사업경과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미집행 예산 과다 전용 재발 방지 필요 ····· 256
14.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 조속한 부지 반환 노력 필요 ····· 261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

<수 입> ····· 265

15. 입장료수입: 요금 인상 등 수입증대 방안 적극 추진 필요 ····· 265

【기 타】

1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군배상금 사업 대규모 이용액 발생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 필요 ····· 270

❖ 병 무 청

Ⅰ. 개 관 ····· 273

1. 결산 개요 ····· 273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276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76

Ⅱ. 사업별 검토 ····· 277

【일반회계】

<세 출> ····· 277

1.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 ····· 277
2. 병역의무자 여비 사업: 예산 과다 편성 개선 필요 ····· 282
3.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적정 예산 편성 및 목적 범위 내 집행 필요 ····· 286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93

❖ 방위사업청

비공개(p.294 – p.36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 행정안전부

Ⅰ. 개 관 ····· 371

1. 결산 개요 ····· 371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375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76

Ⅱ. 사업별 검토 ····· 377

【총 괄】

1. 정보시스템 통폐합: 정보시스템 통폐합의 조속한 추진 필요 ····· 377
2.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관련: 재해복구시스템(DR)의 차질없는 구축 필요 등 ····· 383

【일반회계】

<세 출> ····· 392

3.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운영실태 평가지표 개선 필요 등 ····· 392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사업: 재정여건을 고려한 출연금 지원규모 조정 필요 등 ····· 402
5.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 이용 과다 ····· 410
6. 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업: 연례적 과다계상 부적정 ····· 413

7.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 집행가능한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 416
8.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사업: 연례적 세목조정 지양 필요 ····· 419
9. 기획조정실 사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 422
10.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 사업일정의 추가지연 방지 필요 ····· 4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429

1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국비 지원 기준 재검토 필요 등 ····· 429
12.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 광역지원계정 배분액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등 ····· 438
13.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 일관된 기준에 의한 성과 측정 필요 ····· 450
14. 생활인구 활성화 지원: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453
15.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활성화 지원 사업: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 456
16.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 ····· 4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17.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사업: 사업관리 철저 ····· 462

【기 타】

18.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465

❖ 경 찰 청

Ⅰ. 개 관 ····· 467

1. 결산 개요 ····· 467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471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72

Ⅱ. 사업별 검토 ····· 473

【일반회계】

<세 입> ····· 473

1. 과태료: 수납실적 제고방안 강구 필요 ····· 473

<세 출> ····· 477

2. 지역경찰운영 사업: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따른 계약 체결 필요 등 ····· 477

3.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사업 등: 영상녹화실 활용실적 제고 노력 필요 ····· 483

4. 피복관리 사업: 방탄복 예산의 체계적 편성·집행 필요 ····· 486

5. 도로교통공단출연금(출연금): 적정 규모의 자체수입 계상 필요 ····· 49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 입> ····· 494

6.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진료수입 확충 노력 필요 등 ····· 494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500

❖ 소 방 청

Ⅰ. 개 관 ····· 502

1. 결산 개요 ····· 502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506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06

Ⅱ. 사업별 검토 ····· 507

【일반회계】

<세 출> ····· 507

1. 국가항만 소방정대 운영 사업: 과다 이·전용 시정 필요 ····· 507
2.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사업: 공급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국비 부담 증가 부적정 ····· 510
3.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 연구사업 계약 체결 지연 ····· 515
4. 소방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사업: 연말 신규과제 추진 부적정 ····· 518
5.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 ‘스크리닝 상담’ 최소 상담인원 비율의 하향조정 검토 필요 ····· 521
6. 국립소방연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 연례적 과다계상 우려 ····· 525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28

❖ 인사혁신처

Ⅰ. 개 관 ····· 529

1. 결산 개요 ····· 529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534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35

Ⅱ. 사업별 검토 ····· 536

【일반회계】

<세 출> ····· 536

1.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 536
2.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 수탁출제 대상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적정 기준 수립 필요 ····· 539
3. 인건비(국가인재원) 사업: 정·현원 차 축소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543

【공무원연금기금】

<지 출> ····· 546

4. 대여학자금 융자(융자):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취지 왜곡 ····· 546
5. 복지시설 운영·지부시설 관리 사업: (주)상록골프앤리조트 잉여금 과다 누적 등 ····· 550
6.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등: 수탁금 잉여금의 적정규모 반환 필요 ····· 555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5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개 관 ····· 559

1. 결산 개요 ····· 559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562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62

Ⅱ. 사업별 검토 ····· 563

【총 괄】

1.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예비비: 배정 목적 외 집행에 대한 유의 필요 ····· 563

【일반회계】

<세 출> ····· 567

2. 대통령선거관리: 관서운영경비 집행관리 강화 필요 ····· 567
3.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 인건비성 경비 산출 정확성 제고 필요 ····· 571
4. 인건비: 적정 예산 편성 노력 및 집행절차 준수 필요 ····· 574
5. 청사 유지관리: 공공요금 예산 부족에 따른 이·전용 반복 및 예산추계 개선 필요 ····· 578

【기 타】

6.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81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Ⅰ. 개 관 ····· 582

1. 결산 개요 ····· 582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586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86

Ⅱ. 사업별 검토 ····· 587

【일반회계】

<세 출> ····· 587

1. 진실규명 조사 사업: 연내 집행가능한 여비 편성 필요 등 ····· 587

2. 진화위 기본경비: 이의신청 결과 통지의 법정 기한 준수 필요 등 ····· 592

【기 타】

3. 부대의견 조치결과: 결산 부대의견의 실질적인 이행 필요 ····· 596

❖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Ⅰ. 개 관 ····· 598

1. 결산 개요 ····· 598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601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601

Ⅱ. 사업별 검토 ····· 602

【총 괄】

1. 예비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602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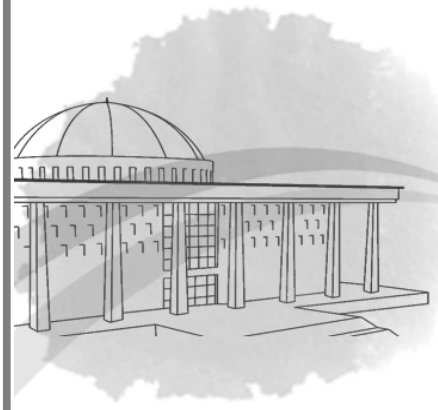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세 출> ····· 605

2.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신규): 증인·참고인 비용 및 기념품 집행관리 개선 필요 ····· 605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 608

외교통일위원회



외 교 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931억 3,900만원(24.5%)이 많은 4,727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24억 2,100만원(△33%)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77,323	277,323	368,412	91,089	273,679	273,679	357,381	83,702	△11,031
기 금	258,803	258,803	336,735	77,932	105,908	105,908	115,345	9,437	△221,390
총수입	536,126	536,126	705,147	169,021	379,587	379,587	472,726	93,139	△232,421

문의: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548억 4,300만원(△1.3%)이 적은 4조 2,232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7억 1,200만원(△0.6%)이 감소됨.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029,753	4,029,753	3,911,217	△118,536	4,221,776	4,172,175	4,107,895	△64,280	196,678
기 금	258,803	258,803	336,735	77,932	105,908	105,908	115,345	9,437	△221,390
총지출	4,288,556	4,288,556	4,247,952	△40,604	4,327,684	4,278,083	4,223,240	△54,843	△24,712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736억 7,900만원으로, 3,580억 1,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573억 8,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8%)되고, 6억 3,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73,679	273,679	-	273,679	358,014	357,381	633	-
합 계	273,679	273,679	-	273,679	358,014	357,381	633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1,962억 900만원으로, 4조 1,078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고 26억 7,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56억 3,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221,776	4,172,175	1,934	22,100	-	4,196,209	4,107,895	2,677	85,637
합 계	4,221,776	4,172,175	1,934	22,100	-	4,196,209	4,107,895	2,677	85,637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155억 1,400만원으로, 1,153억 4,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수납률 100%)되었음.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국제교류기금	105,908	115,514	115,345	115,345	-	-
합 계	105,908	115,514	115,345	115,345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155억 1,400만원으로, 1,153억 4,5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9%)되고 1억 6,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제교류기금	105,908	115,514	-	115,514	115,345	-	169
합 계	105,908	115,514	-	115,514	115,345	-	169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외교부 자산은 전년 대비 488억 5,900만원이 증가된 5조 5,048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179억 800만원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자산과 기타자산이 각각 529억 9,600만원, 137억 7,0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014억 1,600만원 감소된 674억 3,700만원으로 차입부채 1,099억 7,7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502억 7,500만원이 증가된 5조 4,373억 9,3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외교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조 8,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1억 9,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조 8,838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42억 1,0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외교부 재무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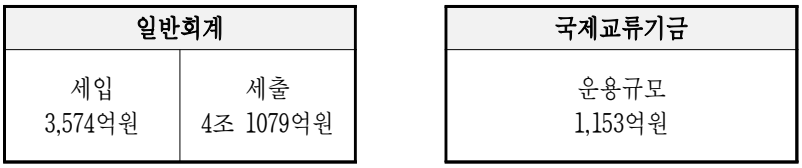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5,504,830	5,455,971	48,859	0.9
		금융자산	326,607	344,515	△17,908	△5.2
		유·무형자산	5,136,584	5,083,588	52,996	1.0
		기타자산	41,638	27,868	13,770	49.4
	부 채		67,437	168,853	△101,416	△60.1
		차입부채	2,295	112,272	△109,977	△98.0
		충당부채	60,735	56,573	4,162	7.4
		기타부채	4,407	8	4,399	54,987.5
	순자산		5,437,393	5,287,118	150,275	2.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885,900	3,785,709	100,191	2.6
	재정운영순원가		3,898,929	3,791,300	107,629	2.8
	재정운영결과		3,838,388	3,654,178	184,210	5.0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2025회계연도 외교부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외교부는 미국 신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및 공조,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외교, 국민 편익 증진 민생외교를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일반회계 43개 단위사업, 140개 세부사업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외교의 조기 정상화 실현’, ‘기존 문법을 깬 외교로 주변국 관계 안정화 및 한반도 긴장 완화’, ‘경제안보 도전을 국력 신장의 기회로 과감하게 돌파’,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 ‘최상위 국제안보·경제무대에서 글로벌 책임강국 리더십 발휘’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1년 이내의 단기 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전문관을 채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경제외교안보센터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운용 인건비’ 사업은 연례적인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외교부는 예산 편성 시 경제안보외교센터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제도 운용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외국어전임강사 인건비’ 사업은 공무직 외국어전임강사의 강의시간이 평균 주당 4.12~5.95시간으로 근무시간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외교부는 향후 외국어전임강사 운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청년인턴 채용’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이 저조하므로, 외교부는 향후 청년인턴 채용 사업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제교류기금은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금 수입이 감소하여 2031년 이후 기금 고갈이 전망되고 있으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현재 추진 중인 국제교류기여금 인상 추진과 함께 지출 구조 조정 방안 등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공모전 사업: 규정에 따른 공고 및 수상작 공개 필요

가. 개　요

외교부는 2025년에 6개 세부사업에서 총 9건의 공모전을 실시하였음.[2)]

[2025년 외교부 시행 공모전 현황]

세부사업명	공모전명	공모일정	응모자격	시상내역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영상 및 에세이 공모전	'25.6.18. ~8.1.	대한민국 국민	· 영상분야 1명 · 에세이 1명 ※ 각 상금 50만원 및 상장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2025 세계신안보포럼 슬로건 공모전	'25.8.18. ~8.29.	신흥 안보 위협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최우수상 1명 · 우수상 3명 · 장려상 5명 ※ 문화상품권 시상(총 40만원)
공공외교 역량강화	2025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	'25.10.31. ~11.14.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포함), 지자체, 재외공관	· 중앙행정기관 : 최우수 1건, 우수 2건 · 지방자치단체 : 최우수 2건, 우수 3건 · 재외공관 : 최우수 1건, 우수 1건 ※ 장관 명의 상장 및 부상
	2025년 제3회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25.8.11. ~9.19.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민간단체, 기업	· 대상 1팀 · 우수상 4팀 · 장려상 10팀 ※ 장관 명의 상장 및 부상

2) 일반회계-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1135-401)(아시아태평양국)
일반회계-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2331-403)(국제안보국)
일반회계-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공공문화외교국)
일반회계-디지털 공공외교(2631-405)(공공문화외교국)
일반회계-재외국민 보호(2731-401)(영사안전국)
일반회계-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3031-401)(국제경제국)

세부사업명	공모전명	공모일정	응모자격	시상내역
	유엔 창설 80주년 기념 공모전	'25.5.20. ~6.29.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 · 외국인	· 숏폼 분야 : 대상 1명 150만원,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만원 · 일러스트분야 : 대상 1명 100만원,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10명 각 10만원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청년 공모전	'25.8.18. ~9.22.	19~34세 전세계 청년 (개인 또는 2~3인 팀)	· 대상: 1점 · 최우수상 : 일러스트/인스타툰/표어분야 각 1점 · 우수상 : 일러스트/인스타툰분야 각 2점 · 가작: 표어분야 2점 ※ 총 상금 600만원
디지털 공공외교	제1회 KOREAZ 콘텐츠 공모전	'25.7.28. ~10.26.	전 세계인 누구나	· 대상 1명 · 최우수상 2명 · 우수상 3명 · 특별상 1명 ※ 장관 명의 상장 및 부상
재외국민 보호	제5회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25.3.14. ~5.18.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통합대상 1건 · 영상부문 5건 · 인스타부문 5건 · 수기부문 5건 ※ 총 상금 820만원 및 부상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APEC 2025 민관대화 청년 발표자 공모	'25.5.30 ~6.30.	대한민국 거주 19~34세 청년 (국내체류 APEC 회원국 국적 외국인 응모가능) (개인 또는 2~3인 팀)	· 최우수상 1명 · 우수상 1명 ※ 총 상금 150만원 및 APEC 2025 민관대화 세션 발표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외교부는 공모전 사업 시행 시 「행정기관의 공모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고 및 수상작 공개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2년 8월 10일 정부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3)]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0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공모전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소통24(sotong.go.kr)]에 공모전 공고를 게시하고,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

외교부가 2025년에 시행한 공모전을 살펴보면 4건의 공모전은 외교부 홈페이지 공고, 소통24 공고 및 수상작 공개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누락하여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음.[5)]

[2025년 외교부 시행 공모전 공고 및 수상작 공개 현황]

세부사업명	공모전명	공고		수상작공개
		홈페이지	소통24	소통24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영상 및 에세이 공모전**	O	X	X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2025 세계신안보포럼 슬로건 공모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적용 제외		
공공외교 역량강화	**2025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	X	X	X
	2025년 제3회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X	X	X
	유엔 창설 80주년 기념 공모전	O	O	O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청년 공모전	O	O	'25.9.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소통24 사용 불가 (추후 게재 완료)

3)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공모전의 공고)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작의 공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 · 상금 · 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2025 세계신안보포럼 슬로건 공모전'의 경우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50만원 이하의 상품만을 수여하는 공모전으로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시행령 적용 제외

세부사업명	공모전명	공고		수상작공개
		홈페이지	소통24	소통24
디지털 공공외교	제1회 KOREAZ 콘텐츠 공모전	O	O	O
재외국민 보호	제5회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O	O	O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APEC 2025 민관대화 청년 발표자 공모**	O	O	**X**

주 1) ‘2025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는 응모자격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정되어 각 기관 대상 공문 발송을 통해 공모전 안내
2) ‘2025년 제3회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은 외교부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 공모전 홈페이지(www.00diplomacy.co.kr) 및 SNS 등을 통해 공고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홈페이지 및 소통24를 통해 공모를 진행하고, 수상작을 공개하는 절차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외교부는 향후 공모전 운영 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모전 공고를 게시하고, 수상작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2. AI 구독료: 예산집행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가. 개 요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5년에 행정업무 지원 등을 목적으로 AI 서비스 구독을 위해 24개 세부사업에서 일반수용비(210-01목) 2,125만원을 집행하였음.[6)]

[2025년도 AI 구독료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목	집행액
외교부	개발협력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607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544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65
	국제기구원자력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348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319
	국제안보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991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744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일반수용비	3,206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725
	북미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884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일반수용비	65
	아세안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729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574

6) 일반회계-개발협력국 기본경비(7011-271)(개발협력국),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7011-264)(공공문화외교국), 국립외교원 기본경비(7018-251)(국립외교원 기획부), 국제기구원자력국 기본경비(7011-255)(국제기구원자력국), 국제법률국 기본경비(7011-263)(국제법률국), 국제안보국 기본경비(7011-274)(국제안보국),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1)(기획조정실),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3131-401)(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7011-270)(기후환경과학외교국), 북미국 기본경비(7011-258)(북미국),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1131-401)(한반도정책국), 아세안국 기본경비(7011-272)(아세안국),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7011-275)(아시아태평양국),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1135-401)(아시아태평양국),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7011-262)(아프리카중동국),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2531-401)(국제법률국),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3535-403)(외교정보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기본경비(7011-276)(외교정보기획국), 외교홍보역량강화(7034-401)(대변인실), 의전장실 기본경비(7011-253)(의전장실), 한반도정책국 기본경비(7011-259)(한반도정책국)
국제교류기금-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636-401)(한국국제교류재단 ICT기획부), 한국문화해외확산(2634-401)(한국국제교류재단 커뮤니케이션부), 한국학기반확대(2632-401)(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목	집행액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일반수용비	4,189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592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일반수용비	763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일반수용비	2,152
	외교정보기획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1,175
	외교홍보역량강화	일반수용비	463
	의전장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64
	한반도정책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664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일반수용비	128
	한국문화해외확산	일반수용비	754
	한국학기반확대	일반수용비	100
합계			**21,245**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연말에 2025년도 예산으로 AI 구독료를 집행하면서 구독기간의 대부분을 2026년으로 설정한 사례가 있는바,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외교정보기획국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커뮤니케이션부가 AI 구독료를 집행하면서 설정한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사용기간이 회계연도와 불일치한 일부 사례가 있었음.

특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커뮤니케이션부에서 집행한 구독료 6건의 경우, 2025년 12월에 구독료를 집행하면서 사용기간의 대부분이 2026년으로 설정되었으므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차년도 사용에 대한 대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25년도 AI 구독료 집행 중 회계연도를 도과한 사용기간 설정 사례]

(단위: 천원)

구분		집행일	건명	집행액	사용기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2025.12.26.	챗GPT 서비스 구독	992	'25.12.2.~'26.12.2.
		2025.13.12.	챗GPT 서비스 구독	941	'25.12.23.~'26.12.2.
		2025.13.12.	챗GPT 서비스 구독	2,256	'25.12.29.~'26.12.2.
	기후환경과학외교국	2025.9.23.	Otter.ai 구독료	342	'25.9.23.~'26.9.23.
	외교정보기획국	2025.7.25.	Perplexity 서비스 구독	283	'25.7.14.~'26.7.13.
		2025.8.11.	Julius AI 서비스 구독	639	'25.7.16.~'26.7.15.
한국국제교류재단	커뮤니케이션부	2025.12.5.	2025 재단 공식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독	482	'25.12.5.~'26.12.4.
		2025.12.9.	2025 재단 공식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독	90	'25.12.9.~'26.12.8.
		2025.12.15.	2025 재단 공식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독	182	'25.12.15.~'26.12.14.
합계				6,207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법」은 제3조에서 회계연도 독립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산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7)]

이와 관련하여 이외의 집행 사례에서는 월별로 구독료가 집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면 회계연도 중에 신규 AI 구독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연간 구독료 집행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관서운영경비 집행: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 준수 필요

가. 개 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은 대통령 및 총리의 다자정상회의, 국제회의 참석, 양자 방문과 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 등의 외빈영접 의전행사 수행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03억 2,000만원 중 251억 4,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2.9%)되고 51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8)]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유럽지역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외교활동 및 교류사업을 지원하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억 1,100만원 중 12억 2,8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0%)되고 1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9)]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사업은 글로벌 다자이슈 관련 회의 및 협의체 개최·참석과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7억 8,100만원 중 33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1%)되고 4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사업은 다자국제경제기구와 논의·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 및 해외 활동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억 5,700만원 중 12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4%)되고 3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은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6억 9,800만원 중 24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7%)되고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국가외교통신 운영’ 사업은 본부와 전 재외공관 간 국가외교통신망의 기밀성을 무중단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0억 6,600만원 중 38억원이 집행(집행률 93.5%)되고 2억 6,6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

8) 일반회계-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의전장실)

9) 일반회계-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1332-401)(유럽국)

10) 일반회계-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2231-403)(국제기구원자력국)

11) 일반회계-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3031-401)(국제경제국)

12) 일반회계-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3131-401)(기후환경과학외교국)

13) 일반회계-국가외교통신 운영(7011-252)(기획조정실)

[2025년도 정상 및 총리외교 등 6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상 및 총리외교	29,557	29,557	763	-	30,320	25,142	-	5,178	28,993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1,557	1,557	-	-	1,557	1,252	-	305	1,217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751	3,751	30	-	3,781	3,370	-	411	2,372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2,698	2,698	-	-	2,698	2,448	30	220	3,021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411	1,411	-	-	1,411	1,228	-	183	1,432
국가외교통신 운영	4,066	4,066	-	-	4,066	3,800	-	266	4,52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외교부는 위 6개 세부사업에서 총 76억 3,200만원의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였음.

나. 검토의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인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한도를 초과한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자금을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관서운영경비로 규정하고 있음.[14)]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운영비·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당 500만원임.[15)]

14)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외교부는 6건, 3,667만원의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면서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하였음.

[500만원을 초과한 관서운영경비 집행 사례]

(단위: 원)

세부사업명	지급일자	세목	건명	지급액	수령인	가맹점명
정상 및 총리외교	2025.7.21	일반 수용비	(의총-825) 유니온 경비 지불 건의(2)	5,632,860	선진로지스틱스㈜	-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025.3.6.	사업 추진비	(서유-1467) 업무추진비 지급(주한EU대사단 업무 오찬)	5,440,000	㈜호텔롯데	-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2025.10.27.	사업 추진비	(유엔-업추비-5278)유엔창설 80주년 학술회의 개최 관련 다과 및 오찬	5,500,000	비씨농협	런치 크라운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2025.8.29.	임차료	(지경-2264) 국내출장 여비 지급 및 정산 건의/2025년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7.31-8.15/인천 송도/임차료	8,080,000	마스글로벌	-

15)「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 · 학교운영비 ·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 특수활동비 · 안보비 · 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단위: 원)

세부사업명	지급일자	세목	건명	지급액	수령인	가맹점명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2025.7.17.	일반 수용비	(국제과학-1605)기후환경 과학외교국-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일수_이레기획)	6,000,000	조아 기프트㈜	-
국가외교통신 운영	2025.9.30.	일반 수용비	(기보안) 일반수용비 - 외교행낭 8월분 항공운임료 지불	6,018,150	선진로지스틱스㈜	-
합계				**36,671,01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은「국고금 관리법」제22조에서 규정된 지출 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한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위 사례는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법령 등에 정해진 규정을 적용하는 데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이므로, 외교부는 향후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한도를 초과한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일반회계】

〈세　입〉

4. 건물대여료: 외교타운 내 사무실 배정공간 조정을 통한 세입 증대 방안 모색 필요

가. 개　요

‘건물대여료’ 는 외교타운 내 사무실 유상사용허가에 따른 건물사용료가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1억 1,300만원 전액이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16][17]

[2025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건물대여료	396	396	113	113	-	-	100.0	39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외교부는 2020년부터 외교타운 내 사무실 일부에 대한 민간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건물임대료를 2023년부터 세입에 계상하였음.

2026년 6월 현재 외교타운 내 17개 사무실(호실 기준, 면적 2,728.25㎡)을 민간에 임대하고 있는데, 이 중 14개 사무실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재외동포협력센터 및 한아프리카재단 등에 무상임대 중이고, 3개 사무실은 아시아아너스소사이어티협회 등에 유상임대 중임.

[외교타운 내 민간임대 사무실 현황]

(단위: ㎡)

구분		면적	입주기관
1층	102호	135.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아이갓에브리띵 카페(무상사용허가)

16) 일반회계-건물대여료(51-512)(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

17)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서초동 1376-1) /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 / 연면적 27,121㎡(8,204.21평)

(단위: ㎡)

구분		면적	입주기관
2층	201호	36	아시아아너스소사이어티협회(연 임대료)
	202호	220	회계법인 세움(연 임대료)
3층	304호	146.4	(사)최경주복지회(연 임대료)
	305~306호	376.55	재외동포협력센터(무상사용허가)
4층	401~404호	669.35	한아프리카재단(무상사용허가)
	405~406호	376.55	재외동포협력센터(무상사용허가)
11층	1101~1102호	321.17	한국국제교류재단 KF데이터센터(무상사용허가)
	1104~1106호	446.67	한국조폐공사(차세대 전자여권발급, 무상사용허가)
합계		2,728.25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외교타운 내 일부 사무실은 인원 대비 배정공간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배정면적기준의 2~3배에 달하므로, 외교부는 향후 사무실 배정공간을 검토하여 민간임대 사무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세입 증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외교타운의 민간임대 공간 중 2023년 8월 이후 공실로 남아있던 201호와 304호가 온비드 공고를 통해 2025년 4분기에 유상임대됨으로서 현재는 모든 사무실이 운용되고 있음.

외교타운 내 민간에 임대된 17개 사무실 중 14개 사무실은「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되었고, 3개 사무실은 유상 임대되었으며 연간임대료는 총 8,355만원 규모임.[18)19)20)]

18)「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 · 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 · 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19)「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20)「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외교타운 내 유상임대 사무실 임대료 현황]

(단위: ㎡, 원)

구분		면적	연간임대료	입주기관
2층	201호	36	5,927,270	아시아아너스소사이어티협회
	202호	220	39,350,040	회계법인 세움
3층	304호	146.4	38,272,720	(사)최경주복지회
합계		**402.4**	**83,550,03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에는 4분기에 유상사용허가가 완료되어 1억 1,3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26년 6월 현재 전체 유상임대에 따른 연간 임대료는 8,355만원이므로, 향후 무상임대 사무실을 유상임대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수납액은 세입예산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외교타운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사무실은 인원 및 업무에 비해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배정된 측면이 있음.

2층 205호는 노동조합 소속 직원 3명에 40㎡(1명당 13.33㎡), 3층 301~302호는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 직원 19명에 253.87㎡(1명당 13.36㎡), 303호는 외국어교육과 직원 9명에 113.11㎡(1명당 12.57㎡), 7층 705호는 외국어전임강사 7명에 159.67㎡(1명당 22.81㎡), 10층 1001~1006호는 외교부 여권과 직원 47명에 579.86㎡(1명당 12.34㎡)이 배정되었음.[21]

[외교센터 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호실	사용부서(입주기관)	배정면적	인원
1층	102호	무상사용허가(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아이갓에브리띵 카페)	135.56	-
2층	201호	유상사용허가(아시아아너스소사이어티협회)	36	-
	202호	유상사용허가(회계법인 세움)	220	-
	203호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세미나실 등)	164.40	-
	204호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직무연수)	85	-
	205호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노조사무실)**	**40**	**3**
		학사관리시스템실	40	-
	소계		**585.40**	**3**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21) 705호 외국어전임강사 정원은 2025년 기준 8명이었으나, 2026년에 7명으로 감소하였으므로 7명으로 산정함.

(단위: ㎡, 명)

구분	호실	사용부서(입주기관)	배정면적	인원
3층	301~302호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사무실)**	**253.87**	**19**
		도면실, 문서실 등	122.68	-
	303호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사무실)**	**113.11**	**9**
	304호	유상사용허가[(사)최경주복지회]	146.40	-
	305~306호	무상사용허가(재외동포협력센터)	376.55	10
	-	휴게라운지(외부인 접견장소 겸)	33.29	-
	소계		**1,045.90**	**38**
4층	401~404호	무상사용허가(한아프리카재단) *회의실·창고 등 공용공간 포함	669.35	23
	405~406호	무상사용허가(재외동포협력센터) *회의실·창고 등 공용공간 포함	376.55	36
	소계		**1,045.90**	**59**
5층	501호	국민외교아카데미관(회의실 등)	207.00	-
	502~506호	국민외교아카데미관(교육시설)	838.9	-
	소계		**1,045.90**	**-**
6층	601~606호	외교부 여권과(교육센터 등)	1,045.90	17
7층	**701~706호**	**외국어교육관[사무실 705호(159.67㎡) 7명 근무]**	**1,026.14**	**7**
8층	801~806호	국립외교원 다목적교육관	1,026.14	-
9층	901호	외교부 영사콜센터	1,026.14	89
10층	**1001~1006호**	**외교부 여권과(행정실)**	**579.86**	**47**
		서버실, 회의실 등 유지관리실	446.28	-
11층	1101~1102호	한국국제교류재단(KF데이터센터)	321.17	16
	1103호	외교부 여권과(여권제작실)	146.40	2
	1104~1106호	한국조폐공사(차세대 전자여권발급)	466.67	7
	소계		**933.34**	**25**
12층	국제회의장		1,044.90	-
합계			**11,466.58**	**285**

자료: 외교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일반사무실의 배정면적 기준은 과장급 17㎡, 그 이하 직원 7㎡이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에 제시된 1인당 적정 업무공간은 8.5㎡인 것을 참고하면, 상기 예시된 사무실은 기준 및 적정 업무공간 대비 약 2~3배의 면적을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음.[22)23)]

22)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따라서 외교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사무실 배정면적기준에 따라 외교타운 사무실의 직원 1명당 면적이 과도하게 배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실을 재배정하여 추가적인 여유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민간임대 사무실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세입 예산 증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청사수급관리계획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청사수급관리계획중 청사의 취득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에 의한다.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제2조제2항관련)

계급별	구분	일반사무실(제곱미터)	비고
2·3급	위원	17	집무면적
	3급과장	17	집무면적
4급	국장·과장	17	집무면적
	서기관	7	집무면적
5급	과장	17	집무면적
	사무관	7	집무면적
6급 이하	과장	10	집무면적
	일반직원	7	집무면적

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시설 적정 공간면적 설계기준 개발 연구」, 2013.12.

(단위: ㎡/인)

공유공간		개인전용공간		합계
업무공간	개인활동	업무지원	공유통로	
2.79	1.02	0.32	4.39	**8.52**

〈세 출〉

5.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 단일 과업의 임의 분할 집행 부적정 등

가. 개 요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은 국제 과학기술지형 변화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대응 및 과학기술 주요 선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3억 500만원 중 11억 4,1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4%)되고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24)]

[2025년도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2,698	2,698	-	-	2,698	2,448	30	220	3,021
과학기술 외교강화	1,317	1,317	-	△12	1,305	1,141	30	135	1,60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2025년 6월 26일에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복합 다중 위기의 시대, 신정부 과학기술외교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사례비 등 일반수용비 3,000만원과 대관료 등 임차료 1,00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25)]

---

24) 일반회계-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3131-401)(기후환경과학외교국)

25)「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개요]

□ **행 사 명**: 2025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 **일시 및 장소**: 2025.6.26.(목), 소노캄 여수
□ **주　　제**: 복합 다중 위기의 시대, 신정부 과학기술외교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
□ **소요경비**: 4,000만원

○ **일반수용비**: 3,000만원
- 사회・발표・토론자 사례비 740만원
- 스텝인건비 210만원, 사진촬영비 200만원
- 기념품비 600만원, 현수막・배너 100만원
- 자료집 및 프로그램북 350만원
- 회의장 조성비 500만원
- 영상제작 및 디자인 300만원

○ **임차료**: 1,000만원
- 대관료 500만원
- 중계, 영상・음향장비 임차료 등 500만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외교부 기후환경외교국-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관련 세부집행내역]

(단위: 원)

세목	일자	집행내역	집행액	수령인명
일반수용비 (210-01)	2025.7.16.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사례비	7,400,000	김○○ 외 17명
	2025.7.17.	스텝 인건비	2,100,000	김○○ 외 14명
		사진촬영비	2,000,000	김○
		기념품 제작비	6,000,000	조아기프트㈜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1,000,000	이레기획
		자료집 및 프로그램북 인쇄비	3,500,000	경성문화사
		회의장 조성비	5,000,000	㈜소노인터내셔널 여수지점
		영상제작 및 디자인비	3,000,000	㈜블루몬미디어
	합계		**30,000,000**	
임차료 (210-07)	2025.7.18.	대관료	5,000,000	㈜소노인터내셔널 여수지점
	2025.7.17.	영상・음향장비 임차비	5,000,000	㈜블루몬미디어
	합계		**10,000,00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외교부는 단일한 과업내용을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액인 5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집행하였으나, 이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의 지출절차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계약방법을 임의로 우회한 것으로서 부적절함.[26][27]

외교부의 집행내역 중 수령인이 중복되는 건은 총 4건, 1,800만원으로 업체별 지급액은 소노인터내셔널 여수지점 1,000만원, 블루몬미디어 800만원이었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소노인터내셔널 여수지점은 회의장 조성비와 임차료로 각각 500만원을 지급받았고, 블루몬미디어는 영상제작 및 디자인비와 중계 패널 장비 임차비로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지급받았음.

[공동학술회의 관련 수령인이 중복되는 건의 집행내역, 집행액 및 거래내역]

(단위: 원)

수령인명	세목	집행내역	집행액	거래내역
㈜소노인터내셔널 여수지점	일반수용비	회의장 조성비	5,000,000	회의장 조성비
	임차료	대관료	5,000,000	회의장 임차비
	소계		10,000,000	

26)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 · 학교운영비 ·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 특수활동비 · 안보비 · 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단위: 원)

수령인명	세목	집행내역	집행액	거래내역
㈜블루몬미디어	일반수용비	영상제작 및 디자인비	3,000,000	영상 제작 및 디자인비(온·오프라인 중계 제작, 디자인, 편집 등 포함)
	임차료	영상·음향장비 임차비	5,000,000	화상회의 유튜브 중계 패널 장비 임차비(제작 시스템, 음향시스템, 화상회의 진행 기술 장비 등)
	소계		8,000,000	
합계			18,000,00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호텔에서 회의장을 임차하는 경우 통상 회의장에 배치되는 테이블 및 의자 대여와 이를 배치하는 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대관료가 산정·청구되는데, 외교부는 이 행사의 임차비와 회의장 조성비를 별도의 거래내역서로 분리하여 각각 임차료와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영상·음향장비 임차료의 경우에도 단순 장비 임차가 아니라 영상 제작업체가 외교부로부터 의뢰받은 회의 중계 및 영상제작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가져와서 운용한 비용이므로 영상제작 및 디자인비와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이지만, 외교부는 이를 장비 임차와 영상제작으로 분리하여 거래내역서를 첨부하고 각각의 비목으로 집행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용역을 조달하거나 장소 등을 임차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가의 지급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의 지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외교부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임차 건을 500만원 이하의 내역으로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으므로,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고금 관리법」의 규정을 임의로 우회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서 부적절함.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법령을 우회한 예산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영상자료 제작 등은 일반용역비로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외교부와 한국국제정치학회의 공동학술회의 영상 제작에 대한 대금은 일반수용비로 집행되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예산 비목이 지침에 부합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제44조와 제80조에 근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작성·배포하고 있음.[28]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은 비목별 지침에서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용·채용 및 영상자료 제작 등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을 일반용역비(210-14목)로 규정하고 있음.[29]

이와 함께 일반수용비(210-01목)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취득비·공사비 및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함.

외교부는 공동학술회의의 영상제작 및 디자인에 대한 대금 3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지급하였는데, 집행지침에 따르면 이는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에 해당하는 건이므로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예산 집행 시 비목이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공동학술회의 발표자에 대한 사례비 집행 중 발표자 계좌가 아닌 한국국제정치학회 계좌로 사례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5조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정한 것으로 보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은 제75조에서 지출관은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 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절차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음.[30]

---

28)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9)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p.148~149, p.160

30)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또한 동 시행규칙 제70조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자금이 채권자 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출관의 자금이체는 채권자 등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지출의 특례로 규정된 관서운영경비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외교부는 공동학술대회의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17명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면서 이 중 해외 대학교 소속 발표자 1명에 대한 사례비를 채권자인 발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한국국제정치학회에 지급하였으며,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이를 다시 발표자에게 지급하였음.

[공동학술회의 관련 한국국제정치학회에 지급된 발표자 사례금]

(단위: 원)

수령인명	세목	집행내역	집행액	거래내역
(사)한국국제정치학회	일반수용비	사례비 지급	500,000	공동학술대회 발표자 사례금 (L○○ ○○○○ / University of Hawaii)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발표자의 계좌 정보가 없어 이러한 방식으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아닌 한국국제정치학회를 통한 사례금 집행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5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는 관서운영경비 지급 시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가 불가한 경우 현금으로 인출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발표자의 해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도 있음.[31]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제75조의 규정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자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1)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

그러나 외교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를 통해 발표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산 집행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 시 사례비 등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31조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6.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사업: 다각적인 집행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등

가. 개 요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사업은 주재국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외교활동 지원 및 인프라 강화, 우리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에 전문관을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억 5,000만원 중 1억 4,600만원이 집행(집행률 58.4%)되고 1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음.[32)]

[2025년도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2,698	2,698	-	-	2,698	2,448	30	220	3,021
과학기술 외교강화	1,317	1,317	-	△12	1,305	1,141	30	135	1,607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250	250	-	-	250	146	-	104	25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외교부는 주재국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주재국 인사 접촉 등 인적 네트워크 관리, 과학기술 관련 조사·분석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8개 재외공관에 과학전문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였음.

2025년에는 일용임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재외공관 4개소(주호주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보스턴총영사관)의 과학전문관을 채용·운용하였고, 2026년 5월 현재 1명의 과학전문관이 채용되어 있음.

[2022년 이후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채용 내역]

□ **시 애 틀**: 2022.8.-2023.7, 2024.8.-2024.12.	□ **보 스 턴**: 2024.6.-2025.12.
□ **체 코**: 2022.8.-2023.7.	□ **캐 나 다**: 2024.9.-2025.3.
□ **네덜란드**: 2022.12.-2023.11.	□ **호 주**: 2025.12.-2026.2.
□ **이스라엘**: 2023.2.-2024.1.	□ **베 트 남**: 2025.12.-2026.11.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2) 일반회계-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3131-401)(기후환경과학외교국)

[2026년 5월 현재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현황]

공관	채용인원	근무기간	국적
주베트남대사관	1명	2025.12.1.~2026.11.30.	베트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사업은 채용절차 지연 등으로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다각적인 집행률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함.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23년을 제외하면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사업 예산은 매년 본예산 대비 40% 이상 불용되고 있음.

[2022~2025년도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일용임금)	250	250	101 (40.4)	250	250	240 (96.0)	250	250	111 (44.4)	250	250	146 (58.4)

주) 집행률: 본예산 대비 집행률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의 경우 예산에 편성된 인원과 채용인원을 비교하면, 실제 채용인원이 편성 대비 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채용기간으로 살펴보면 편성 시 계획된 채용기간은 29개월에 실제 채용기간은 19개월(보스턴 12개월, 캐나다 3개월, 호주 2개월, 베트남 2개월)로서 계획 대비 65.5% 수준이었음.

[2025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세부내역]

구분	편성	집행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 재외공관 과학전문관(일용임금) : (1,000만원×12월)+(500만원×8월) +(1,000만원×9월)=2억 5,000만원**(3명)**	□ 재외공관 전문연구관 인건비(일용임금) : 1억 4,600만원(**4명**)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2025년 초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채용인원이 있었던 주캐나다대사관, 주보스턴총영사관 외에 주호주대사관을 전문관 채용 공관으로 추가 선정하였음.

[2025년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수요조사 실시 결과]

구분	지원공관	선정공관
2025년	주튀니지(대), 주보스턴(총)(계약연장), 주캐나다(대)(계약연장), 주시애틀(총), 주호주(대), 주베트남(대) **(6개 재외공관)**	주보스턴(총)(계약연장), 주캐나다(대)(계약연장), 주호주(대), 주베트남(대)(추가선정) **(4개 재외공관)**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5년 중 주캐나다대사관은 기존 과학전문관의 조기 퇴사로 충원을 위해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전문관 채용을 포기하였고, 주호주대사관은 채용후보자가 타사 취업을 위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채용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외교부는 이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주베트남대사관에 전문관 채용을 추가로 허용하여 12월부터 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계획 대비 채용기간이 짧았다는 입장임.

[2025년도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채용 추진내역]

☐ **주캐나다대사관**
: 결원발생(3.15.) → 채용공고(1차: 3.14~3.24., 2차: 4.3~4.17., 3차: 5.9.~5.23.) → 채용 포기(7.25.)

☐ **주보스턴총영사관**
: 계속 채용(1.25.~12.24.)

☐ **주호주대사관**
: 채용공고 2회(4.1.) → 채용 후보자가 타 직장 취업을 위해 고용계약 해지 통보(7.9.)
→ 재공고 (7.23.) → 계약체결(12.1.)

☐ **주베트남대사관**
: 채용공고(9.25.) → 계약체결(12.1.)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선진국의 경우 예산 대비 현지 임금 수준이 높아 우수인재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주호주대사관의 경우와 같이 채용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현재 연초에 시행하고 있는 수요조사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전으로 변경하고 채용공고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채용절차 지연에 대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또한 「과학기술 전문관 운영 지침」 제7조제8호 단서는 주재국 물가, 임금 수준 등 현지 사정에 따라 인력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의 사전 협의 및

본부의 사전 승인을 통해 연봉 상한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단서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우수인재 영입과 함께 집행률 제고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33)]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과학전문관 운용 관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집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외공관이 과학전문관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1년 이내의 단기 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전문관을 채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전문관 제도의 목적은「과학기술 전문관 운영 지침」제4조에 따라 주재국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인사 접촉 등 네트워크 관리,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한 공관의 과학기술외교활동 강화, 우리기업 해외 진출 지원임.[34)]

이를 위해 외교부는 전문관의 채용 시 주재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력인사와 네트워킹이 가능하거나 또는 주재국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보 수집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할 것을 채용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35)]

---

33)「과학기술 전문관 운영 지침」
제7조(전문관 채용) 전문관 운영 공관으로 선정되어 전문관을 채용하는 공관은 아래 각호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채용 기준을 수립하여 전문관 채용 후보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 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채용 후보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8. 공관은 상여금(성과급), 시간 외 수당 등 제수당 및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각종 통상 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공관 전문관의 보수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총 연봉은 석사급 미화 84,000불(미화 월 7,000불), 박사급 미화 108,000불(미화 월 9,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재국 물가, 임금 수준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 채용 및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본부와 사전 협의하고 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연봉 상한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재국 노동법 등 관련 법령 상 연봉제 적용이 어려울 경우, 총액 연봉 내에서 현지 사정에 부합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34)「과학기술 전문관 운영 지침」
제4조(전문관 제도의 목적) 주재국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인사 접촉 등 네트워크 관리,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공관의 과학기술외교활동 지원 및 인프라 강화, 우리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35)「과학기술 전문관 운영 지침」
제3조(전문관) 전문관은 아래의 필수요건(1~3항)을 충족하고, 선택요건(4~5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 공관에서 선발하여 본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현지에서 채용된 자를 말한다.
1. 외국국적자로, 주재국 언어에 능통한 자
2.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변호사 등의 전문 자격 소지자
3. 주재국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에 능통한 자로서, 공관의 과학기술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번하고 밀접한 교류를 통해 가능할 것이므로, 재외공관이 과학전문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재국 인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학전문관의 채용·운영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과학전문관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채용된 9명의 채용기간을 살펴보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나타남.

「과학기술 전문관 운영 지침」은 제7조제7호에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근무 성과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에 따라 연장된 사례는 1명(주보스턴총영사관)이었음.[36]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채용기간 현황]

(단위: 명)

구분	채용기간						합계
	3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12개월	18개월	
시애틀(총)	-	1	-	-	1	-	2
보스턴(총)	-	-	-	-	-	1	1
체코(대)	-	-	-	-	1	-	1
캐나다(대)	-	-	-	1	-	-	1
네덜란드(대)	-	-	-	-	1	-	1
호주(대)	1	-	-	-	-	-	1
이스라엘(대)	-	-	-	-	1	-	1
베트남(대)	-	-	1	-	-	-	1
합계	**1**	**1**	**1**	**1**	**4**	**1**	**9**

주) 2022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채용된 과학전문관 기준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국 재외공관이 과학전문관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1년 이내의 단기 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전문관을 채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이 가능한 자
4. 주재국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력인사와 네트워킹이 가능한 자
5. 주재국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보 수집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자

36)「과학기술 전문관 운영 지침」
제7조(전문관 채용) 전문관 운영 공관으로 선정되어 전문관을 채용하는 공관은 아래 각호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채용 기준을 수립하여 전문관 채용 후보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 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채용 후보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7.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근무 성과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공관은 계약 연장 시 보수 등을 포함한 연장 계획을 본부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인건비 사업: 결원발생 최소화 및 소요예산 재산정 필요

가. 개 요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인건비’ 사업은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과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억 8,400만원 중 7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66.3%)되고 3억 6,500만원이 불용되었음.[37)]

[2025년도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6,549	6,549	-	-	6,549	5,754	-	795	6,982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	1,983	1,983	-	6	1,989	1,571	-	418	1,985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인건비	1,080	1,080	-	4	1,084	719	-	365	1,06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1년 10월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우리나라에 일시적인 요소 및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음. 외교부는 이를 계기로 2022년 5월에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본부에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설하였고, 현지 경제안보 동향 모니터링을 위해 재외공관에 경제안보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였음.[38)]

2026년 5월 현재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센터장(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1명과 연구원 10명(박사 3명, 석사 6명, 학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외공관 중 주미국대사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주네덜란드대사관이 각각 1명의 경제안보전문관을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37) 일반회계-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3032-401)(양자경제외교국)

38) 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경제안보외교센터」개소(5.30.)’, 2022.5.30.

[경제안보외교센터 및 경제안보전문관 인원현황 및 기능]

구분	경제안보외교센터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인원현황	11명 [센터장 1명(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연구원 10명(박사 3, 석사 6, 학사 1)]	5명 [주미국대사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주네덜란드대사관 각 1명]
주요기능	○ 연구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관련 연구·조사·분석을 통해 외교부의 경제안보 정책 방향 수립 지원	○ 재외공관에서 현지 경제안보 동향 모니터링 및 주재국 정책·입법 분석
주요업무	○「경제안보 Review(격주)」및「오늘의 경제안보 브리프(격일)」발간 ○ 경제안보 외교포럼, 민관합동 협의회 등	○ 주재국 경제정책 관련 모니터링 · 조사 ○ 경제안보 이슈 및 산업동향 보고 ○ 재외공관 주최 경제안보 세미나 개최 지원

주) 2026년 5월 현재 기준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5월 현재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현황]

공관	채용인원	근무기간	국적
미국(대)	1명	2026.3.24.-2027.3.23.	미국
애틀랜타(총)	1명	2026.1.1.-2026.12.31.	미국
네덜란드(대)	1명	2026.1.1.-2026.12.31.	네덜란드
베트남(대)	1명	2025.10.17.-2026.10.16.	베트남
라오스(대)	1명	2026.5.18.-2027.5.17.	라오스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인건비 사업 예산 집행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상용임금은 5억 6,700만원 중 3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69.5%)되었고, 복리후생비는 600만원 중 400만원이 집행(66.7%)되었으며, 고용부담금은 1억 1,100만원 중 7,700만원이 집행(집행률 69.4%)되고, 일용임금은 4억원 중 2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61.0%) 되었음.

[2025년도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인건비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목	2025년					2026년 예산액
		본예산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인건비	상용임금	564	567	394	69.9	69.5	548
	복리후생비	6	6	4	66.7	66.7	6
	고용부담금	110	111	77	70.0	69.4	111
	소계	680	684	475	69.9	69.4	665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목	2025년					2026년 예산액
		본예산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C/B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인건비	일용임금	400	400	244	61.0	61.0	400
합계		**1,080**	**1,084**	**719**	**66.6**	**66.3**	**1,065**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인건비 사업은 결원 발생으로 인하여 편성 대비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결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등 무역 관련 기존 질서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2026년에는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석유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등 경제안보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안보 이슈 대응을 위해 조직된 경제안보외교센터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의 채용현황을 보면 2025년 중 경제안보외교센터는 8개월(2025년 5~12월) 동안 박사급 연구원 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은 3명의 경제안보전문관 직위(미국, 애틀랜타, 인도→베트남)에 총 10개월 동안 결원이 발생하였음.

경제안보외교센터는 2025년 4월에 박사급 연구원 1명의 자진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2026년 1월에 공고가 이루어져 2026년 4월에 채용이 완료되었음.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채용 현황]

구분			근무기간	퇴직사유	비고
1	연구원(박사)	A	'22.4. ~ 현재		
2	연구원(박사)	B	'22.3. ~ '22.5.	일신상의 사유	
		C	'22.3.~ 현재		

구분			근무기간	퇴직사유	비고
3	연구원(박사)	D	'22.3. ~ '23.1.	일신상의 사유	
		E	'22.12. ~ '25.4.	일신상의 사유	**'25.5~'25.12. 결원**
		F	'26.4. - 현재		
4	연구원(석사)	G	'22.8. ~ 현재		
5	연구원(석사)	H	'22.7. ~ '23.11.	일신상의 사유	
		I	'22.7. ~ 현재		
6	연구원(석사)	J	'22.10. ~ 현재		
7	연구원(석사)	K	'22.10. ~ 현재		
8	연구원(석사)	L	'23.3. ~ 현재		
9	연구원(석사)	M	'24.2. ~ 현재		
10	연구원(학사)	N	'22.10. ~ 현재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제안보전문관의 경우 2025년 중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경제안보전문관 자진퇴사 후 채용까지 각각 3개월(2025년 1~3월, 2025년 6~8월) 동안 결원이 발생하였음.

또한 주인도대사관 경제안보전문관이 2025년 6월 자진 퇴사 이후 신규 채용 중단이 결정되어 2025년 10월에 주베트남대사관 경제안보전문관을 신규 채용할 때까지 4개월간 결원이 발생하였음.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현황]

구분			근무기간	국적	비고
1	**주미국대사관**	A	'23.4. ~ '23.10.	미국 (복수국적자)	
		B	'24.1. ~ '24.12.	미국 (복수국적자)	**'25.1.~'25.3. 결원**
		C	'25.4. ~ '25.12.	대한민국 (해외이주신고 완료 영주권자)	
		D	'26.4. ~ 현재	미국 (미국 시민권자)	
2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E	'22.11. ~ '23.11.	대한민국 (해외이주신고를 완료한 영주권자)	
		F	'24.3. ~ '25.5.	미국	**'25.6.~'25.8. 결원**
		G	'25.8. ~ 현재	미국	

구분			근무기간	국적	비고
3	**주베트남대사관**	H	'22.11. ~ '23.11.	베트남	
		I	'25.10. ~ 현재.	베트남	**'25.7.~'25.10. 결원**
4	**주네덜란드 대사관**	J	'24.1. ~ 현재.	네덜란드	
5	**주라오스대사관**	K	'24.5. ~ 현재.	라오스	
6	주타이베이 대표부	L	'22.11. ~ '23.11.	타이베이	
7	주인도대사관	M	'23.9. ~ '25.6.	인도	자진퇴사 후 채용 중단

주) 2026년 5월 현재, 볼드체는 현재 경제안보전문관을 운용하고 있는 재외공관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원 발생에 따라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인건비(상용임금, 일용임금)의 집행률도 70% 미만으로 나타남.

[2025년도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임금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목	2025년					2026년 예산액
		본예산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C/B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상용임금	564	567	394	**69.9**	**69.5**	548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일용임금	400	400	244	**61.0**	**61.0**	40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 결원의 경우 외교부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채용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2025년 중 결원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경제안보전문관의 경우 재외공관 대상 수요조사 및 채용절차 진행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입장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인원의 충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결원 발생 시 채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연례적인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경제안보외교센터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제도 운용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경제외교안보센터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운용 인건비의 집행 부진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초 도입된 2022년을 제외한 2023년 이후 집행률을 보면,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의 인건비는 매년 20% 이상 불용되었고, 특히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의 경우 매년 약 40%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되었음.

[2022~2025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534	204	186 (34.8)	537	427	400 (74.5)	550	550	415 (75.5)	564	567	394 (69.9)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500	100	28 (5.6)	500	340	224 (44.8)	500	500	259 (51.8)	400	400	244 (61.0)

주) 집행률: 본예산 대비 집행률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편성 시 채용인원과 실제 채용된 인원을 비교하면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의 경우 편성 및 집행이 모두 연구원 10명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1억 7,3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결원을 고려하더라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의 경우는 6명 채용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4명의 경제안보전문관이 근무하고 있어 매년 본예산 기준 1억 5,0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2025년 집행액을 고려하면 2026년에는 5월 이후 주라오스대사관에 경제안보전문관이 추가로 채용되더라도 약 1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39)40)]

39) (244백만원/4명)×4.5명(라오스 6개월 채용으로 반영)×1.035(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약 285백만원

40) (2026년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예산현액)-(2026년 집행 예상액)=400백만원-285백만원=115백만원

[2025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세부내역]

구분	편성	집행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 전문연구원 인건비(상용임금) : 470만원 × 12개월 × **10명** = 5억 6,400백만원	□ 전문연구원 인건비(상용임금) : 3억 9,400백만원(**10명**)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 재외공관 전문연구관 인건비(일용임금) : 555만원 × 12개월 × **6명** = 4억원	□ 재외공관 전문연구관 인건비(일용임금) : 2억 4,400원(**4명**)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경제안보외교센터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재산정하여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외교현안 연구 및 정례학술교류 활동 사업: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수의계약 부적정 등

가. 개 요

‘외교현안 연구 및 정례학술교류 활동’ 사업은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인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2억 5,700만원 중 11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7%)되고 1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음.[41]

[2025년도 외교현안 연구 및 정례학술교류 활동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304	3,304	-	-	3,304	2,849	-	455	3,271
외교현안 연구 및 정례학술교류 활동	1,257	1,257	-	-	1,257	1,115	-	142	1,230
임차료	40	40	-	-	40	38	-	2	4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외교부는 외교현안 연구 및 정례학술교류활동 사업 예산 중 임차료 예산으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복합기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2024~2025년 복합기 임대 계약내역]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약방법[주]
복합기 임대 계약 갱신 (총 9대)	2024.1.1. ~2024.12.31.	28,522	중앙시스템	수의계약
복합기 임대 계약 갱신 (총 9대)	2025.1.1. ~2027.12.31.	31,560	중앙시스템	수의계약

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6)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1) 일반회계-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3531-401)(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임차 계약에 대한 대금은 1월 31일과 7월 31일에 각각 1,578만원씩 집행되었음.

[2025년 복합기 계약 대금 지급 내역]

(단위: 원)

지출일자	건명	지출금액	수령인명
2025.1.31.	(연행)2025 상반기 연구소 복합기(총9대) 임차비용 지급	15,780,600	중앙시스템
2025.7.31.	(연행)2025 하반기 연구소 복합기(총9대) 임차비용 지급	15,780,600	중앙시스템
합계		**31,561,20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외교부는 복합기 임차를 위해 3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총 계약기간에 대한 금액이 아닌 1년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계약 체결 절차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장기계속계약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고, 그 예외로서 제23조의 계속비와 제24조의 명시이월비, 제48조의 사고이월 등을 규정하고 있음.[42)]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제1항에서 계속비 계약을, 제2항에서 임차계약 등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43)]

---

4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제24조(명시이월비)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 · 가스 · 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에 걸쳐 수행지는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낙찰된 총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계약 절차를 만족할 수 있음.[44)]

그러나 외교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회계연도를 넘어서는 계약기간을 설정하였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국가재정법」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외교부는 복합기 임차 계약의 계약금액이 3,156만원이므로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5호가목6)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45)]

그러나 외교부가 계약금액으로 판단한 3,156만원은 2025년에 업체에 지출해야 할 금액이고, 실제 외교부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2025.1.1.~2027.12.31., 3년) 동안 지출해야 할 계약금액은 9,972만원이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임.

[복합기 임대 계약 세부내역]

(단위: 원, 개월)

제품명	설치장소	월단가[주)]	개월수	임차료	비고
AP-V C3376W	외교사연구센터	286,000	36	10,296,000	선납 시 총 금액의 5% 할인
AP-VI C3371	중국연구센터	286,000	36	10,296,000	
AP-VI C3371	국제법센터	286,000	36	10,296,000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4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4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단위: 원, 개월)

제품명	설치장소	월단가[주]	개월수	임차료	비고
AP-VI C3371	교수행정실	313,500	36	11,286,000	
AP-VI C4471	아세안・인도연구센터	313,500	36	11,286,000	
AP-VI C4471	연구원실	313,500	36	11,286,000	
AP-VI C4471	연구원실	313,500	36	11,286,000	
AP-VI C4475	경제기술안보센터	165,000	36	5,940,000	
Apeos C6570	연구행정과	495,000	36	17,820,000	
합계				**99,792,000**	

주) 월단가: 장기임차로 5% 할인적용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계약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해당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46]

그러나 외교부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기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안내공고를 시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이와 같이 외교부는 복합기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과정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임차계약 등 성질상 수년간 존속이 필요한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둘째, 임차기간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것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위배되므로, 외교부는 향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여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7)]

외교부는 복합기 임차 대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출하면서 각각 1월과 7월에 집행하였는데, 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대금의 선납할인(5%)이 적용되어 세출예산이 절감되었으나, 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었음.

이를「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선금으로 보는 경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채권확보 및 정산을 실시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선금으로 집행한 경우로 보더라도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볼 수 있음.[48)49)]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4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49)「(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9. 외국어전임강사 인건비 사업: 외국어전임강사 운영 방식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외국어전임강사 인건비’ 사업은 부내 직원 대상 외국어교육을 수행하는 공무직 외국어전임강사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억 5,100만원 중 4억 300만원이 집행(집행률 61.9%)되고 2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50]

[2025년도 외국어전임강사 인건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내외 교육훈련	7,132	7,132	-	-	7,132	6,413	-	719	7,231
국내교육훈련지원	2,279	2,279	-	△336	1,943	1,468	-	475	2,084
외국어전임강사 인건비	651	651	-	-	651	403	-	248	63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외교부는 공무직 외국어전임강사를 통해 외교관후보자 외국어 과정과, 외무영사직 외국어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외국어전임강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각 세목별 집행률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외국어전임강사 및 연구원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목	2025년					2026년 예산액
		본예산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C/B	
외국어전임강사 및 연구원 인건비	상용임금	540	540	333	61.7	61.7	535
	복리후생비	5	5	3	60.0	60.0	5
	고용부담금	106	106	67	63.2	63.2	92
합계		651	651	403	61.9	61.9	632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0) 일반회계-국내외 교육훈련(3531-402)(국립외교원 교수부)

2025년 기준 공무직 외국어전임강사의 정원은 8명이고, 영어 강사 2명의 퇴직에 따라 현원은 6명이었음.[51]

[2025~2026년 공무직 외국어전임강사 정·현원]

(단위: 명)

구분	2025년		2026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영어	4	2	3	2
중국어	1	1	1	1
스페인어	1	1	1	1
일본어	1	1	1	1
프랑스어	1	1	1	1
합계	**8**	**6**	**7**	**6**

주)「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2026.5.7.)으로 2026년 정원 축소
자료: 외교부

나. 검토의견

공무직 외국어전임강사의 강의시간은 평균 주당 4.12~5.95시간으로 근무시간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외교부는 향후 외국어전임강사 운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중 외국어전임강사 1명의 강의시간은 최소 214시간에서 최대 309.2시간이었고, 이를 주당 평균 강의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4.12~5.95시간이므로, 외국어전임강사가 수행하는 강의는 하루 평균 1시간 이하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음.[52]

[2025년 공무직 외국어전임강사 현황]

(단위: 시간)

구분		강의명	강의시간		비고
			연간	주당 평균	
영어	A	○ 외교관후보자 영어과정 ○ 외무영사직 영어과정 등	309.2	5.95	
	B	○ 외교관후보자 영어과정 ○ 외무영사직 영어과정 등	302.2	5.81	육아휴직

51)「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정원)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공무직 근로자 정원
외교부 소속기관(국립외교원)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제5조 관련)
외국어강사 8

52) 2025년 강의시간÷52주

(단위: 시간)

구분		강의명	강의시간		비고
			연간	주당 평균	
중국어	C	○ 외교관후보자 중국어과정	72	1.38	육아휴직
스페인어	D	○ 외교관후보자 스페인어과정 ○ 외무영사직 스페인어과정	220	4.23	
일본어	E	○ 외교관후보자 일본어과정 ○ 외무영사직 일본어과정	214	4.12	
프랑스어	F	○ 외교관후보자 프랑스어과정	79	1.52	육아휴직
계			1,196.4	23.01	

주) 1년 = 52주 기준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외국어전임강사 운영을 위해 투입된 상용임금을 연간 강의시간(1,196.4시간)으로 나눠보면, 강의 1시간에 대한 비용(인건비)은 약 250,267원으로 환산됨.[53]

이는 같은 내역사업에서 민간 업체를 통해 진행된 특수어권 재외공관 발령자 교육 및 부내 직원대상 외국어교육 1교시 단가의 두 배 수준이므로, 투입되는 인건비 대비 강의시간이 과소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 국내교육훈련지원 사업 집행내역]

내역사업명	집행내역
국내교육훈련 지원	○ 1,468백만원 - 공무직(외국어강사 등) 인건비 등 : 403백만원(7명X57.6백만원) - **특수어권 재외공관 발령자 교육 : 72백만원(554교시X0.13백만원)** - **부내 직원대상 외국어교육 : 202백만원(1,839교시X0.11백만원)** - 사이버 외국어과정 운영 : 21백만원 - 전화 외국어과정 운영 : 48백만원(405명X0.12백만원) - 어학검정 : 146백만원(영어 315명X0.12백만원, 제2·특수외국어 215명X0.5백만원) - 직급별·단계별 교육체계 운영 : 150백만원 - 대내외교육과정 : 16백만원 - 수시전문교육과정 : 15백만원 - 영사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용역 등 : 50백만원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 : 139백만원 - 교육운영비 : 171백만원 - 주한외교사절단 및 주한외신기자를 위한 고위급정책강연회 : 35백만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3)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도 상용임금 중 연구원(1명)에 대한 급여를 제외하고 외국어강사(6명)에게 지급된 상용임금은 299,419,000원이고, 이를 강의사간(1,196.4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250,267원이며, 1일 근무시간(6시간)을 고려하면 평균 시급은 약 32,260원이라는 설명임.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국어전임강사는 2013년에 국립외교원 출범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도 도입에 따라 신규 외무공무원(외교관 후보자 포함)의 정규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을 전담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강의를 비롯해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강의시간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임.

또한 이들은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이 진행되는 국립외교원(서울 양재)에 근무하기 때문에 본부 직원 대상 교육에는 시간과 거리에 따른 제약이 있으나 12월에 부내 직원 대상 영어 실무과정을 진행하는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종료 후에도 외국어전임강사를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외교부가 설명한 12월 부내 직원 대상 영어 실무과정 등은 이미 2025년도 강의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써 활용 사례 발굴에도 불구하고 주당 강의 시간은 적은 것으로 보이며, 근무시간 중 개설되는 교육과정은 신규 외무공무원 외에는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외국어전임강사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여 추가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내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 규정 취지 고려 국산차량 적극 구입 필요

가. 개 요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은 재외공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통해 재외공관의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0억 5,700만원 중 40억 2,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54]

[2025년도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4,057	4,057	-	-	4,057	4,021	-	36	4,05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외교부는「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차량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재외공관 차량 구입을 추진하였음.[55]

외교부는 2025년 중 46개 재외공관의 62대 차량을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47개 재외공관의 59대 차량을 구입하였음.

[2025년도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계획 및 실제 구입내역]

(단위: 대)

구분	공관장차량			행정차량			의전차량		합계
	국산	외산	미정	국산	외산	미정	국산	외산	
계획	12	1	1	25	11	1	7	4	62
구입	13	2	-	31	5	-	7	1	59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4) 일반회계-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4012-252)(기획조정실)

55)「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2조(차량현황 보고) ① 공관장은 매회계연도 12월 20일 현재의 공관용 차량 현황과 익년도 공관용차량 교체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등 계획을 수립한다.

나. 검토의견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조제1항은 공관용 차량으로 국산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규정의 취지에 맞추어 국산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조제1항은 국산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관은 공관용 차량으로 국산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6)]

외교부가 2025년에 구입한 재외공관 차량을 살펴보면, 59대 중 국산차량은 51대이고, 나머지 8대(13.6%)는 외산차량이었음.

[2025년 재외공관 구입 차량 중 외산차량 구매 현황]

지역	공관명	용도	차량	차량금액	비고
아시아 (3)	**주스리랑카 대사관**	**공관장 차량**	**BMW 735i**	**USD 79,929.5**	
	주선양 총영사관	행정차량	포드 트랜짓	CNY 190,600	
	주홍콩 총영사관	**공관장 차량**	**메르세데스 벤츠 S450**	**USD 107,310.00**	
유럽 (3)	**주스웨덴 대사관**	**의전차량**	**메르세데스 벤츠 300e 세단**	**USD 46,000**	
	주슬로베니아 대사관	행정차량	폭스바겐 Nova Cravelle	EUR 41,278	신규 개설 공관
	주아일랜드 대사관	행정차량	폭스바겐 트랜스포터	EUR 45,118	
아메리카 (2)	주멕시코 대사관	행정차량	폭스바겐 트랜스포터	USD 43,074	
	주유엔 대표부	행정차량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15인승)	USD 92,399	차량 교통사고 망실로 교체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6)「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조(국산차량 구입) 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제작하는 차량(이하 "국산 차량"이라 한다)의 구입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관은 공관용 차량으로 국산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리상 애로 등으로 국산 차량 이외의 차량을 구입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공관은 동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국산 차량 이외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외산차량을 구입한 재외공관의 소재지를 보면 스리랑카, 홍콩, 스웨덴,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멕시코, 미국(뉴욕)으로서 우리나라 차량 제작사가 진출한 지역임.

재외공관 차량구입 시 국산차량을 우선 구매토록 한 것은 재외공관의 해외 업무 시 국산차량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음.

최근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수소전기차 등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차량 제작사들도 이에 맞추어 차량 개발 방향을 전기차 등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발빠르게 시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국산차량을 홍보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임.

특히 공관장차량 및 의전차량은 외교행사 시 주재국 인사에게 가장 먼저 노출되는 차량이므로, 주재국에서 공관장차량 및 의전차량으로 국산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재외공관 차량 구매·교체 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산차량의 구입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청년인턴 채용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규모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청년인턴 채용’ 사업은 청년들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외교부 본부에 청년 인턴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2억 9,400만원 중 9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70.4%)되고 3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57]

[2025년도 청년인턴 채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1,617	1,617	-	-	1,617	1.148	-	469	1,957
청년인턴 채용	1,294	1,294	-	-	1,294	911	-	383	1,21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도 청년인턴 채용 사업은 총 100명의 청년인턴 채용을 목표로 편성되었고, 세목별로는 인건비(일용임금)를 비롯하여 발대식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현장 견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4대 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부담금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청년인턴 채용 사업 예산 세부내역]

○ **청년인턴 채용**: (’24) 14억 5,400만원 → (’25) 12억 9,400만원 [△1억 6,000만원]

· **급여**: (’24) 12억 2,400만원 → (’25) 11억 3,200만원 [△9,200만원]

※ 계획인원 100명 중 6개월 채용 80명, 3개월 채용 20명

· **활동지원비**: (’24) 9,290만원 → (’25) 3,500만원 [△5,790만원]

- 발대식・수료식・멘토링 등(일반수용비) 2,500만원
- 업무현장 견학(국내여비) 1,000만원

· **4대보험료**: (’24) 1억 3,710만원 → (’25) 1억 2,700만원 [△1,010만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7) 일반회계-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7033-403)(기획조정실)

외교부는 예산 편성 시 100명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87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진행하였고, 최종 71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음.

[2025년 외교부 청년인턴 모집 및 채용 현황]

연도	차수	공고기간	모집인원	선발인원	채용률
2025년	1차	2025.2.28.~2025.3.9.	87명	71명	81.6%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외교부 청년인턴 채용 세부현황]

(단위: 명, 개월)

채용분야	근무부서	담당업무	인원	기간
국제·행사 준비(APEC)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에 필요한 준비 및 홍보, 행사 운영 지원 등	15	6
			1	3
국제·행사 준비(개발)	국제개발 의제과	○ 언론 동향 파악 및 자료 조사 ○ 개발협력 관련 회의 및 행사 지원 등	1	6
			1	3
국제·행사 준비 (경제외교)	경제안보 외교과	○ 국내외 동향 자료 조사 및 통계 분석, 경제 외교행사 지원	1	6
	동아시아 경제외교과	○ 경제통상 현안 해외동향 자료 조사 및 통계 분석 ○ 경제협의체 및 세미나 등 행사 운영 지원	1	5
	북미경제 외교과	○ 국내외 동향 자료 조사 및 통계 분석/문서 작성 지원 ○ 경제 외교행사 지원	1	6
	유럽경제 외교과	○ 중기부 협업사업 지원, 기업지원활동 지원 ○ 유럽 경제 동향 및 언론 모니터링, 행사 지원 등	1	6
국제·행사 준비 (공공외교)	디지털 공공외교과	○ 정책공공외교 관련 해외 자료 리서치, 영문 에디팅, 행사 및 회의 준비 지원	1	6
국제·행사 준비 (과학기술)	국제인공 지능외교과	○ 인공지능(AI) 분야의 국제규범 조사·분석·보고서 작성 ○ 국내 및 국제회의 참석, 외교문서 작성 지원	2	6
국제·행사 준비(교육)	교육운영과	○ 신규자 교육(외교관후보자, 외무영사직 등) 과정 운영 지원	1	6
국제·행사 준비 (국제안보)	국제안보 사이버협력과	○ 국제안보·사이버안보 이슈 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1	6
국제·행사 준비(군축)	군축비확산과	○ 군사분야 AI 등 신기술 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등 - REAIM 고위급회의 후속조치 및 '군사분야 AI' 관련 결의 이행 지원 등	1	6
			1	4

(단위: 명, 개월)

채용분야	근무부서	담당업무	인원	기간
국제·행사 준비(동북아)	동북아1과	○ 중국 주요 싱크탱크 보고서 정리 ○ 국내 중국학자 DB관리	1	6
국제·행사 준비(서유럽)	서유럽과	○ 유럽국가 관련 자료(통계 등) 작성 ○ 서유럽국가와의 고위급 교류 방한 접수 및 행사 지원	1	6
국제·행사 준비(아태)	아태지역 협력과	○ 한일중 협력사업(외교캠프, 공모전 등) 시행 ○ 한-태도국포럼 협력 관련 행사 개최	1	6
국제·행사 준비 (아프리카)	아프리카1과	○ 아프리카 관련 SNS 운영, 회의 및 발표 자료 작성	1	3
국제·행사 준비 (연구행정)	연구행정과	○ 연구소 행사 지원, 정책공공외교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1	6
국제·행사 준비 (인도지원)	다자협력 인도지원과	○ 우리 인도지원 정책 수립·집행관리 지원 ○ 선진국 인도지원 정책 분석 ○ 해외재난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 조사	1	6
국제·행사 준비 (인태전략)	인태전략과	○ 인태전략 대내외 아웃리치 활동 지원 ○ 각국 인태전략 동향 파악 및 언론 모니터링 ○ 인태전략 이행 관련 문서 번역	1	6
국제·행사 준비(중동)	중동1과	○ 중동지역 정세 관련 연구자료 조사 및 현지 언론 동향 파악 ○ 중동지역 관련 국내외 행사 업무 지원	1	3
	중동2과	○ 중동 정세, 자료 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	1	3
국제·행사 준비(중미)	중미과	○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등 국내외 행사 준비 ○ 중미 경제·정세 동향 자료 등 조사·정리	1	6
국제·행사 준비(중앙아)	중앙아시아과	○ 중앙아시아 지역 정세 조사 및 분석 지원 ○ 중앙아 관련 행사 지원	2	6
국제·행사 준비(카리브 중남미)	카리브중남미협력과	○ 중남미 관련 행사 지원 및 중남미 지역 기구 청년 인턴파견 업무 보조 ○ 중남미 정세, 자료 조사 및 언론 모니터링	1	6
국제·행사 준비(환경)	기후변화 외교과	○ 기후변화 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언론 모니터링 ○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회의 준비 지원	1	6
국제·행사 지원(국제기구)	유엔과	○ 국제기구진출 설명회 지원 ○ 안보리 이사국 및 믹타 의장국 활동 지원 ○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업무 지원	1	6
사서	연구행정과 (도서관)	○ 도서관 자료 대출 및 반납 업무 ○ 장서 점검 및 정기간행물 배열 작업 등 기타 도서관 업무 지원	1	5
	외교정책 자료실	○ 자료실 장서 점검, 도서 및 정기간행물 정리 ○ 자료 대출 및 반납 업무	1	6

(단위: 명, 개월)

채용분야	근무부서	담당업무	인원	기간
행정(여권)	여권과(대행기관지원팀)	○ 여권 홍보 기획(유튜브 영상물 및 안내 책자 제작)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여권민원실 업무 지원	1	6
	여권과(발급팀)	○ 여권 접수, 교부, 관리 등 여권 발급 관련 업무 - 민원창구 근무(대면 민원 및 전화 응대 등)	1	6
			2	4
행정(예산)	기획재정담당관실	○ 국회 예산결산 및 예산집행 업무지원 ○ 국회 대응 및 예산 관련 업무	1	6
행정(재외국민보호)	영사안전정책과	○ 해외안전여행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해외안전여행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지원	1	6
	재외국민보호과	○ 안전공지 게재 및 해외자료 조사 지원 ○ 기타 사건·사고 예방 및 행정업무 지원	1	6
행정·법무(개발)	개발협력과	○ 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정리 ○ ODA 통계 관련 OECD DAC 회의 지원	1	6
행정·법무(국제법)	국제법규과	○ 국제법 관련 자료 리서치 ○ 최신 국제법 논의 동향 분석 ○ 국제재판소 판례 내용 정리	1	6
	영토해양과	○ 영유권 관련 행사 업무 지원 ○ 영유권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련 동향 파악	1	6
행정·법무(여권)	여권과(법무팀)	○ 여권 법무 지원, 민원 응대, 각종 자료 조사	1	6
행정·법무(조약)	조약과	○ 조약 문안 검토 지원 ○ 국제법률기구 활동 조사 ○ 조약정보 홈페이지 모니터링	1	6
행정·홍보(문화외교)	문화교류협력과	○ 문화외교 사업(한국주간,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재외공관 미술품 지원) 및 행사(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등) 지원	1	6
홍보·기획(청년지방)	청년·지방민생외교팀	○ 외교부 청년정책 및 지방민생외교 지원 관련 데이터 조사 및 정리 ○ 청년및지방민생외교행사 · 회의개최지원 ○ 지자체 국제관계대사실 청년인턴 운영관리	1	6
홍보·행정	공보팀	○ 외교부 관련 언론 모니터링, DB관리 ○ 주요 간부 언론활동 취재 지원	1	1
	정책홍보담당관실	○ SNS 콘텐츠 출연 등 홍보 컨텐츠 제작 지원(숏폼 리포터, 인터뷰 진행 등) ○ 기타 홍보 및 행정 업무 지원	1	3
	해외언론팀	○ 외신기사 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 지원 ○ 해외언론인 초청사업 등 기자 관련 행사 지원	1	6

(단위: 명, 개월)

채용분야	근무부서	담당업무	인원	기간
홍보·행정(지자체교류)	서울특별시청	○ 국제관계대사실 업무 지원 ○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원	2	6
	부산광역시청	○ 국제관계대사실 업무 지원 ○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원	1	6
	광주광역시청	○ 국제관계대사실 업무 지원 ○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원	1	5
	울산광역시청	○ 국제관계대사실 업무 지원 ○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원	1	6
	충청북도청	○ 국제관계대사실 업무 지원 ○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원	1	6
	제주특별자치도청	○ 국제관계대사실 업무 지원 ○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원	1	6
	세종특별자치시청	○ 국제관계대사실 업무 지원 ○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원	1	6
합계			71	-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청년인턴 채용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이 저조하므로, 외교부는 향후 청년인턴 채용 사업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존 청년인턴 채용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계획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하였으나, 예산 집행률은 69.4%로 저조하였음.

이는 계획인원 110명 중 88명은 6개월, 22명은 3개월 채용을 계획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채용한 115명 중 59명(51.3%)은 6개월, 나머지 56명(48.7%)은 2~3개월 채용하여 계획 대비 실제 채용기간이 짧았던 것에 기인하고 있음.

2025년에도 계획인원 100명에 총 채용기간 540개월(6개월 80명, 3개월 20명)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71명, 총 채용기간은 394개월(계획 대비 약 73% 수준)로 계획에 못미쳤기에 예산 집행률은 70.4%로 나타났음.

2026년에는 6월 현재까지 5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예산 편성 시 계획인원인 100명의 절반에 그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예산의 상당부분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2023~2026년도 청년인턴 채용 사업 예·결산 및 채용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예·결산					채용			
	본예산(A)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B/A	계획(C)	모집	선발(D)	D/C
2023	-	285	260	25	-	20	23	20	100.0
2024	1,454	1,454	1,009	**445**	**69.4**	110	144	115	**104.5**
2025	1,294	1,294	911	**383**	**70.4**	100	87	71	**71.0**
2026	1,216	1,216	98	-	8.1	100	51	50	50.0

주) 2026년 6월 현재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2026년도 청년인턴 채용 사업 채용기간별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획	모집	선발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2024	110 (3개월 22명, 6개월 88명 / 594개월)	144	115 (489개월)	59 (51.3)	-	-	23 (20.0)	33 (28.7)	-
2025	**100** (3개월 20명, 6개월 80명 / **540개월**)	87	**71** (**394개월**)	58 (81.7)	3 (4.2)	3 (4.2)	6 (8.5)	-	1 (1.4)
2026	**100** (3개월 20명, 6개월 80명 / **540개월**)	51	**50** (**297개월**)	49 (98.0)	-	-	1 (2.0)		

주) 총 채용기간(월) = 채용인원×채용기간의 합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동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서 근로계약을 연도 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인턴을 활용할 수 있는 행사업무는 연말·연초에 집중되고, 기관 특성상 행정업무에 비밀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아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임.

이와 같이 2024년 이후 집행 사례를 보았을 때, 기관 업무 특성 등으로 인해 청년인턴 채용 사업은 편성 규모에 비해 실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 예산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되도록 사업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 필요

가. 개 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은 대통령 및 총리의 다자정상회의, 국제회의 참석, 양자 방문과 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 등의 외빈영접 의전행사 수행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03억 2,000만원 중 251억 4,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2.9%)되고 51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58]

[2025년도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상 및 총리외교	29,557	29,557	763	-	30,320	25,142	-	5,178	28,99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 등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나, 계약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사례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계약서 생략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 및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함.[59]

---

58) 일반회계-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의전장실)

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이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는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등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함.[60]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분쟁 조정의 기초가 되므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생략하는 경우는 최소한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외교부는 2025년 중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예산으로 계약 체결을 통해 물품을 제작하거나 차량을 임차하면서 계약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사례가 있었음.

[계약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나 계약서 작성이 생략된 사례]

(단위: 원)

일자	집행액	세목	건명	수령인명	계약서 작성 여부
2025.10.1.	39,917,900	일반수용비	(재)(의행-S1156)	동광기획	계약서 생략
2025.12.24.	51,955,750	일반수용비	(재)(의행-S2053)	동광기획	계약서 생략
2025.12.8.	46,529,600	임차료	(재)(의총-S2173)	제일렌트카	계약서 생략
합계	**138,403,25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법령에서 정한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을 위반한 사례인바, 외교부는 향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계약서 생략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 · 가스 · 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13. 국별협력사업(ODA): 과다한 사업간 예산 전용·조정 축소 필요 등

가. 개 요

‘국별협력사업’은 수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자간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함)에 출연하여 수행되고 있음.

협력단은 2025년도 출연금 예산현액 5,924억원(간접비 등 제외) 중 5,636억원을 집행(집행률 95.1%)하였고, 2026년도에는 전년 대비 439억원(△7.0%)이 감액된 5,800억원이 편성되었음.

협력단 집행단계에서 2025년도 국별협력사업의 집행액은 5,636억 300만원으로 예산액(6,238억 9,600만원) 대비 90.3%, 예산현액(5,924억 1,400만원) 대비 95.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18~2026년도 국별협력사업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사업수(건)	예산액 (A)	예산현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액 (C)	실집행률	
							예산액 대비 (C/A)	예산현액 대비 (C/B)
2018년	267	3,278	3,378	228	30	3,120	95.2	92.4
2019년	264	3,466	3,412	85	68	3,259	94.0	95.5
2020년	290	3,746	2,866	39	166	2,661	71.0	92.8
2021년	361	4,052	3,651	47	239	3,365	83.0	92.2
2022년	377	4,283	3,923	14	194	3,715	86.7	94.7
2023년	394	5,190	4,769	26	188	4,555	87.8	95.5
2024년	423	6,020	5,531	29	130	5,372	89.2	97.1
2025년	**445**	**6,239**	**5,924**	**46**	**242**	**5,636**	**90.3**	**95.1**
2026년	437	5,800						

주 1)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사업시행계획 기준에 명시된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 기준
2) 소규모·분쟁취약·사업효과성·사업행정비 제외,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 및 실집행액 기준
3) 2025년 사업 445건 중 취소사업 20건 포함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수로 보면 총 445건의 사업 중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은 127건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은 29건(6.5%)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별협력사업 본예산 및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60% 미만 사업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별협력사업 총사업수		377 (100.0%)	394 (100.0%)	423 (100.0%)	**445 (100.0%)**
본예산 대비	집행률 60% 이상	236 (62.6%)	250 (63.5%)	249 (58.9%)	295 (66.3%)
	집행률 60% 미만	126 (33.4%)	123 (31.2%)	147 (34.7%)	**127 (28.5%)**
	집행률 제외	15 (4.0%)	21 (5.3%)	27 (6.4%)	23 (5.2%)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60% 이상	322 (85.4%)	332 (84.3%)	348 (82.3%)	387 (87.0%)
	집행률 60% 미만	41 (10.9%)	35 (8.9%)	24 (5.7%)	**29 (6.5%)**
	집행률 제외	14 (3.7%)	27 (6.8%)	51 (12.0%)	29 (6.5%)

주 1) 총사업수: 각 연도 취소사업 포함
2) 본예산 대비 집행률 제외: 본예산이 없는 사업
3)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제외: 예산현액이 없는 사업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국별협력사업의 연도별 전용조정규모가 2022년 1,225억 3,700만원에서 2025년 2,549억 7,800만원으로 108.1% 증가하여 같은 기간 국별협력사업 전체 예산 증가율(45.7%)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향후 연도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의적 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국별협력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별협력사업 예산은 2022년 4,282억 8,400만원에서 2025년 6,238억 9,600만원으로 45.7%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전용조정규모는 2022년 1,225억 3,700만원에서 2025년 2,549억 7,8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전용조정액은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따라 국별협력사업간 또는 국별협력사업과 다른 사업간 조정한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국별협력사업 본예산 규모가 45.7% 증가(2022년 4,282억 8,400만원 → 2025년 6,238억 9,600만원)하는 동안 전용조정규모는 108.1% 증가(2022년 1,225억 3,700만원 → 2025년 2,549억 7,800만원)한 것임.

[연도별 국별협력사업 전용조정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수)	본예산 (A)	전년도 이월액	전용조정액 증액(B)	전용조정액 감액(C)	전용조정규모(B-A)	추경 및 미교부액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본예산 대비(D/A)	실집행률 예산현액 대비(D/C)
2022년 (377건)	428,284	4,668	+61,875	△60,662	1,213 122,537	△41,860	392,305	371,534	1,369	19,403	86.7	94.7
2023년 (394건)	518,988	1,369	+82,315	△92,856	△10,541 175,171	△32,922	476,896	455,485	2,586	18,820	87.8	95.5
2024년 (423건)	602,050	2,586	+98,955	△99,663	△708 198,618	△50,820	553,109	537,214	2,865	13,030	89.2	97.1
2025년 (445건)	623,896	2,865	+121,251	△133,727	△12,476 254,978	△21,870	592,414	563,603	4,632	24,180	90.3	95.1

주 1)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사업시행계획 기준에 명시된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 기준
2) 소규모·분쟁취약·사업효과성·사업행정비 제외,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 및 실집행액 기준
3) 2025년 사업 445건 중 취소사업 20건 포함
4) 전용조정규모: 전용조정증액과 감액의 절댓값의 합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협력단에 따르면 국별협력사업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전용조정규모 또한 증가하였고, 수원국의 정세 등에 따라 집행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간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예를 들어 중점협력국 중 가장 많은 국별협력사업 예산이 배정(본예산 기준 9.2%) 된 '베트남(ODA)' 사업은 수행된 33건의 내역사업 중 25건의 사업에서 예산 조정이 있었고, 이 중 본예산 대비 50% 이상의 조정이 있었던 사업은 13건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집행이 원활한 사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집행실적을 제고하였음.

'베트남 지뢰/불발탄 제거를 통한 중부지역 평화마을 조성 사업(UNDP)'의 경우 본예산의 179%인 71억 6,0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111억 4,300만원이 집행됨으로써 본예산 대비 278.6%, 예산현액 대비 99.8%의 집행률을 보였고, '베트남 북부지역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녹색순환경제 지원사업'의 경우 본예산 42억 5,300만원의 68.2%인 29억원이 감액 조정되어 13억 2,500만원이 집행됨으로써 본예산 대비 31.2%인 집행률이 예산현액 대비로는 98.0%로 증가하였음.

[2025년 베트남(ODA) 사업 중 전용조정액이 본예산 대비 50% 이상인 사업(한국국제협력단 단계)]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전용 조정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본예산 대비 집행률 (C/A)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C/B)
①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21-'28/1,398만불)	2,537	△1,700	837	308	12.2	36.8
② 베트남 호치민의약학대학 교육연구 역량강화 사업('21-'26/968만불)	1,750	1,100	2,850	2,844	162.5	99.8
③ 베트남 지뢰/불발탄 제거를 통한 중부지역 평화마을 조성 사업(UNDP) ('22-'26/2,500만불)	**4,000**	**7,160**	**11,160**	**11,143**	**278.6**	**99.8**
④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23-'26/930만불)	1,247	△1,200	47	-	-	-
⑤ 베트남 메콩유역 롱안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촉진 사업 ('24-'28/1,083만불)	3,601	△3,580	21	14	0.4	68.2
⑥ 베트남 북부지역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녹색순환경제 지원사업 ('24-'29/2,000만불)	**4,253**	**△2,900**	**1,353**	**1,325**	**31.2**	**98.0**
⑦ 베트남 탄소중립 준비성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 투자유치 사업(GGGI) ('24-'27/440만불)	500	1,770	2,270	2,267	453.3	99.8
⑧ 베트남 기후회복력 증진을 위한 지역 적응 계획 수립 및 역량 강화 사업 ('25-'29/750만불)	100	1,150	1,250	1	1.4	0.1
⑨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녹색순환경제 지원 프로그램 ('25-'29/2,000만불)	100	△97	3	3	2.9	96.4
⑩ 베트남 닥락성 부온호현 하수처리시설 건립사업('25-'29/920만불)	100	309	409	407	406.6	99.4
⑪ 베트남 중북부지역 해안사막화 방지사업 ('25-'30/2,000만불)	100	△97	3	3	2.8	93.1
⑫ 베트남 띠엔비엔성 소외지역 전력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촌 자립역량 강화사업 ('25-'29/2,000만불)	100	△100	-	-	-	-
⑬ 베트남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파트너십 사업 ('24-'33/3,000만불)	2,140	△2,135	5	4	0.2	86.3

주) KOICA 단계에서 전용조정액이 본예산의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작성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와 같이 집행가능성에 따라 사업간 예산을 전용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예산 편성 시 각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최근 전용조정규모 증가율이 국별협력사업의 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내용과 실제 집행내역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심의 및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외교부와 협력단은 향후 예산 편성 시 각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도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과다한 사업간 예산 전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둘째, 국별협력사업 중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또는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있으므로, 동 사업들의 지연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신규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 357건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은 20건(5.6%)이었으나, 본예산 대비로 보면 60% 미만 집행사업이 99건(27.7%)이고, 이 중 52건(14.6%)의 사업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으로 나타나 1년 이상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남.

[2025년 국별협력사업 중 본예산 및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60% 미만인 사업 수]

(단위: 건, %)

구 분	총사업수	본예산 대비 60% 미만 집행사업	예산현액 대비 60% 미만 집행사업
합 계	445	127 (28.5)	29 (6.5)
계속사업 (2025년 종료사업 포함)	357	99 (27.7)	20 (5.6)
2025년 신규사업	88	28 (31.8)	9 (10.2)

주) 취소사업 20건 포함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계속사업 중 2024·2025년 본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인 사업의 사유별 현황]

(단위: 건)

총 계속사업 수	2024・2025년 본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인 사업	집행부진 사유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협의의사록 지연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사업 취소	기타
357	52 (14.6%)	15 (28.8%)	8 (15.4%)	9 (17.3%)	12 (23.1%)	8 (15.4%)

주) 한국국제협력단 집행단계 기준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를 들어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수원국 자체 시스템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제기에 따른 협의의사록 체결 연기 요청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24년도 본예산액 15억원 중 14억 5,900만원(△97.3%)이 감액 조정되었으나, 예산현액 4,100만원도 연말까지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집행률은 0%로 나타났고, 2025년에도 수원국과 합의 및 사업승인 지연되어 2026년 2월 현재 사업취소 절차를 추진 중인 상황임.

‘베트남 법원 아카데미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역량강화사업’은 베트남 정부의 사업 검토 및 승인 지연에 따라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2024년도 본예산액 3억 4,700만원 중 3억 3,800만원(97.4%)이 감액 조정되었으나, 예산현액 900만원도 연말까지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집행률은 0%로 나타났고, 2025년에는 사업수행업체 선정 단계에서 유찰로 인해 연내 사업자 선정을 못하여 본예산 7억원 중 500만원(0.8%)을 집행하고 나머지 6억 9,50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2026년 2월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3월 계약 이후 사업추진이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됨.

‘DR콩고 북카탕가주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사업’은 수원국 정세불안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기획조사 추진 및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2024년도 본예산액 5억원이 전액 감액 조정되었고, 2025년에는 기획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현지 사업수행자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함으로써 집행률은 1.0%로 저조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중 현지 사업수행자 선정 후 국내 사업수행업체 입찰을 진행 예정임.

따라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본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인 지연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연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계속사업 중 2024·2025년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예산 현액	집행액 (B)	본예산 대비 집행률 (B/A)	집행부진	
					유형	사유 및 향후 계획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 ('21-'28/1,398만불)	2,537	837	308	12.2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수원기관 사업승인 지연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23-'26/930만불)	**1,247**	**47**	**-**	**-**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수원기관과 합의 및 사업승인 장기 지연**
베트남 북부지역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녹색순환경제 지원사업 ('24-'29/2,000만불)	4,253	1,353	1,325	31.2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베트남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업 승인 지연
필리핀 마카티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 ('22-'27/1,300만불)	2,800	235	220	7.9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수원국 측의 의사결정 및 회신 지연, 분담사항 이행 미진, 사업추진 부지 미제공 등 비협조로 사업 추진 불가한 바, 사업 취소 진행중
방글라데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 ('18-'27/750만불)	1,278	543	513	40.1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수원국 측의 자체 예산집행계획 승인 지연과 사업세부실행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로 인해 과업진행 순연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광역권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도시철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사업 ('22-'26/600만불)	1,664	608	607	36.5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수원국 분담사항인 차토그램 도시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과업 순연
라오스 남능강 유역의 효율적 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재해대응 역량강화사업 ('20-'26/1,100만불)	4,000	2,110	1,379	34.5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수원국 인허가 및 통관 절차 지연, 홍수피해 등에 따라 일부 과업 지연 발생
미얀마 직업기술교사교육원 설립사업 ('15-'27/1,305만불)	50	50	14	28.3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국가비상사태 선포 기간 연장(6개월 단위) 등 정세불안으로 사업추진 제한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예산 현액	집행액 (B)	본예산 대비 집행률 (B/A)	집행부진	
					유형	사유 및 향후 계획
미얀마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사업 ('16-'27/837만불)	677	677	147	21.8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국가비상사태 선포 기간 연장(6개월 단위) 등 정세불안으로 사업추진 제한
알제리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대기관리 역량강화사업 ('23-'27/550만불)	4,000	423	419	10.5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수원기관 협조 불응 및 사업참여 저조에 따른 사업 추진 장기 지연
볼리비아 라파스주 임상병리검사실체계 강화사업 ('22-'28/790만불)	2,700	420	419	15.5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수원국 분담사항인 시공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수원기관간 소통 문제로 인해 지연되어 시공입찰 지연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버스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1-'26/590만불)	211	7	7	3.3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수원국 분담사항인 MOPT(공공사업교통부) 신설교통센터 건축 지연(계획상 2023년 완공 → 2025년 6월 완공)되어 관련 공정 순연
요르단 카락주 파쿠오 지역 노후 상수도 관망 개선사업 ('20-'26/927만불)	1,097	588	587	53.5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수원국 조달시스템 활용사업으로 수원기관(수자원청)과 현지 시공사간 분쟁으로 인한 시공지연으로 인해 관련 시공기성금 집행 부진
이라크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2차 지원사업 ('14-'27/541만불)	2,487	1,533	1,417	57.0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수원기관(노동사회부)측 사업 MOU 검토 지연에 따른 시공 지연으로 시공 기성 집행 부진 발생, 아울러,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따른 항공편 전체 결항으로 연수일정 차년도 순연
이라크 변압기 정비소 현대화 및 기술인력 역량강화 사업 ('22-'26/500만불)	805	2	2	0.2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수원국의 MOU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 착수 불가 발생, 사업장기 지연에 따라 주이라크 대사관 사업취소 건의 전문 접수 ('25.12)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예산 현액	집행액 (B)	본예산 대비 집행률 (B/A)	집행부진	
					유형	사유 및 향후 계획
가나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농산업 가치사슬 강화사업 ('24-'28/950만불)	550	10	7	1.4	협의 의사록 지연	수원국 협의 지연으로 R/D 체결이 지연되었으나 2025년 11월 체결 완료, 2026년 2월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도 완료
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22-'26/823만불)	5,014	2,736	2,647	52.8	협의 의사록 지연	사업 착수단계에서 R/D 체결 지연됨에 따라, PMC, PC 계약 및 전반적 과업 지연 중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수행역량 강화사업 ('24-'29/550만불)	1,860	700	698	37.5	협의 의사록 지연	우간다 다수 부처의 MoU 검토 및 체결로 사업 일정이 약 6개월 지연됨에 따라 예산 집행 차질 발생
탄자니아 도도마주 유수율 제고 시범모델 구축 및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23-'26/382만불)	786	476	413	52.6	협의 의사록 지연	수원국 MoU 검토 및 체결 지연, 이에 따라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 사업일정 전반 지연 발생
이집트 직업훈련원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고도화 사업 ('24-'30/1000만불)	3,654	2,254	2,016	55.2	협의 의사록 지연	수원국 협의 지연으로 인한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및 이에 따른 과업 수행 지연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 ('24-'28/610만불)	566	179	179	31.6	협의 의사록 지연	R/D 체결 지연에 따른 후속 절차 일정 순연
볼리비아 감자생산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팜 적용 시범사업 ('24-'30/931만불)	500	65	65	13.0	협의 의사록 지연	볼리비아 대선 후 정부조직 개편 및 사업대상지 정세불안(25년 하반기 여행경보 3단계 발령 등)으로 인해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타지키스탄 정부기능 디지털 전환 이행 지원사업 ('24-'28/650만불)	790	8	7	0.9	협의 의사록 지연	수원기관 측이 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 구성요소 변경을 요청하여, '25년 5월 추가 기획조사를 실시함. 사업계획변경 절차에 수개월 소요, 수원기관 사정으로 협의의사록(R/D) 체결 지연 등 발생하여 연내 수행자 선정이 불가하였음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예산 현액	집행액 (B)	본예산 대비 집행률 (B/A)	집행부진	
					유형	사유 및 향후 계획
베트남 법원 아카데미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역량강화사업 ('24-'28/1,470만불)	**700**	**700**	**5**	**0.8**	**PMC 마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사업수행업체 선정 단계에서 유찰로 연내 계획한 사업자 선정 불가**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1-'28/850만불)	1,675	535	534	31.9	PMC 마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외부지적 반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 전 BPR/ISP 추진, SW과업심의 상정 등 진행함에 따라 업체 선정 발주 지연
필리핀 팔라완 지역 식량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자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24-'28/1,000만불)	1,020	520	514	50.4	PMC 마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R/D 체결 지연으로 사업시행사 선정 입찰 절차가 순연되어 일부 지연 발생
DR콩고 북카탕가주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사업 ('24-'27/600만불)	**250**	**250**	**2**	**1.0**	**PMC 마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수원국 정세불안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기획조사 추진 및 R/D 체결 지연, 2025년 기획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국내 PMC만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지 PC 선정 검토 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연 발생**
탄자니아 중학교 STEM 모델학교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중등교육 증진사업 ('23-'27/1,000만불)	4,725	2,125	2,117	44.8	PMC 마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수원국 MoU 검토 및 체결 지연, 현지 사업수행기관 변경 및 약정 체결 등에 따른 사업 착수 지연
탄자니아 잔지바르 해양수산분야 가치사슬 구축 및 소득증대를 통한 여성 권익 강화 사업 ('23-'27/550만불)	2,000	520	507	25.3	PMC 마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시범양식장 대상지 선정 및 양식시스템 설계 관련 수원국과의 협의 지연
페루 쿠스코시 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자원순환 선진화 사업 ('22-'27/450만불)	816	416	412	50.5	PMC 마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건축 설계/시공 입찰 일정이 지연되며 시공사 선정 순연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예산 현액	집행액 (B)	본예산 대비 집행률 (B/A)	집행부진	
					유형	사유 및 향후 계획
이라크 한-이라크 심장병 어린이 전문 병원 건립사업 ('20-'30/2,793만불)	4,277	1,724	1,724	40.3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시공사 선정 입찰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로 11월에야 시공사 선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시공 기성 집행 부진 발생
키르기스스탄 농산물 수확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가치사슬 강화사업 ('24-'27/600만불)	668	238	237	35.5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수원국의 거듭된 사업대상지 변경 요청 대응 및 확정 절차 이행으로 인해 사업수행자 선정 및 사업 착수 지연
베트남 부동산 가격관리 역량강화사업 ('22-'29/300만불)	225	225	-	-	사업취소	수원기관과의 합의 장기 지연 등 집행부진이 예상되어 사업 취소 완료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 ('24-'28/550만불)	3	-	-	-	사업취소	선행연계 사업인 EDCF 차관사업의 취소와 인니 정부의 공식 취소 요청에 따른 사업 취소 완료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맹그로브 숲 복원 모델 수립사업 ('24-'28/850만불)	1,275	-	-	-	사업취소	인니 정부의 공식 취소 요청에 따른 사업 취소 완료
방글라데시 선진시장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차토그램 한방직업훈련원 직업훈련체계 현대화 ('24-'27/1,000만불)	323	11	11	3.3	사업취소	사업추진 지연 및 집행 부진 사업으로 판단, 25년 사업 취소 검토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UNFPA) ('24-'28/431만불)	750	750	-	-	사업취소	수원국 협의의사록(R/D) 체결 장기 지연 등으로 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사업 취소 완료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사업 ('21-'26/1,000만불)	50	20	-	-	사업취소	미얀마 비상사태 선포('21.2월)로 인한 사업 중단 이후, 사업 추진이 제한되어 사업취소 검토, 25년 사업 취소 완료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예산 현액	집행액 (B)	본예산 대비 집행률 (B/A)	집행부진	
					유형	사유 및 향후 계획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단계 ('24-'28/1250만불)	250	-	-	-	사업취소	2024년 수원국 거버넌스 교체 이후 동 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정책 우선순위 낮음을 확인, 사업추진간 문제 발생 우려됨에 따라 사업 취소 완료
페루 전역 조세제도 개편 및 전자세정 구현 사업 ('24-'27/1,076만불)	350	-	-	-	사업취소	수원국 측 사업 취소 요청으로 인한 사업 취소 완료
볼리비아 쌀 생산성 증대 및 사회적 경제 체계 강화를 통한 중소농민 포용적 지원사업 ('24-'28/963만불)	200	58	58	28.8	사업취소	협의의사록 체결 장기 지연으로 인한 사업 취소 완료
엘살바도르 원격협진을 통한 소아보건 개선사업 ('24-'27/760만불)	450	-	-	-	사업취소	주재국 내 대규모 유사사업 추진으로 인한 한국 원조의 가시성 저하 우려로 취소 완료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전력망 통합자동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력공급 호율성 개선 사업 ('24-'28/1,450만불)	50	-	-	-	사업취소	무상개발전략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26년 시행계획에 미포함되었으며, 수원국 전황 장기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취소 완료
우크라이나 오데사-이즈마일-레니구간 철도용량 증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24-'26/600만불)	50	-	-	-	사업취소	무상개발전략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26년 시행계획에 미포함되었으며, 수원국 전황 장기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취소 완료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 체계 개선사업 ('24-'28/300만불)	200	2	1	0.7	기타	수원환경 정책변화로 수원국과 추가 협의 및 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
동티모르 영유아 교육사업(UNICEF) ('24-'27/600만불)	1,388	18	18	1.3	기타	UNICEF 본부 측 표준약정안에 대한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약정 체결 지연 및 이에 따른 약정금 집행 지연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예산 현액	집행액 (B)	본예산 대비 집행률 (B/A)	집행부진	
					유형	사유 및 향후 계획
코트디부아르 펠릭스 우푸에 부아니대학교 ICT 교육역량 강화 및 ICT 혁신센터 설립 사업 ('23-'27/995만불)	5,300	1,190	1,165	22.0	기타	설계용역 중 과업 추가, 수원기관측의 관련 의사결정 지연으로 공사 용역 계약 체결 지연
모로코 마라케시 친환경 전기버스 교통체계 구축사업 ('23-'26/1,300만불)	4,900	1,871	1,857	37.9	기타	전기버스 공급 PC사 입찰 차질에 따라 전기버스 조달 지연
우간다 뮬라고 국립전원병원의 자동화 및 의료인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4-'28/1000만불)	1,800	7	2	0.1	기타	우간다 보건 당국의 정책 변경에 따른 본 사업 추진계획 변경 필요해짐에 따라 추가 기획조사(3, 4차) 실시
콜롬비아 뿌뚜마요 지역 마약 대체작물 재배 및 상업화를 통한 지역 농가 경제 강화 사업(UNODC) ('20-'25/620만불)	100	15	14	13.8	기타	상반기 사업종료로 하반기 모니터링 사업관리비 일부 미지출
볼리비아 고원지역 농업기계화 및 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증대 지원사업 ('13-'26/500만불)	3,020	754	753	24.9	기타	볼리비아 대선으로 인한 정세 불안 및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사업지 건축 시공 지연
키르기스스탄 그린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전기차 전환사업 ('24-'27/1,100만불)	2,141	2,016	1,178	55.0	기타	연내 기자재 납품 및 대금 지급 예정이었으나, 2회 유찰 발생으로 인해 계약 체결 및 납품 일정이 지연되어 최종 납품일이 '26년으로 순연

주) 한국국제협력단 집행단계 기준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4.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한 예산 집행 필요

가. 개 요

‘국제기구협력(ODA)’ 사업은 UN 주도의 국제사회 개발과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기구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활동 간 일관성 및 협력 증진을 통한 취약성 완화 및 갈등·분쟁 등 위험 예방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92억 7,300만원 중 788억 5,800만원(집행률 99.5%)이 집행되고 4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61)]

[2025년도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기구협력 (ODA)	80,015	80,015	-	△742	79,273	78,858	-	415	35,030

나. 검토의견

일부 사업의 경우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국제기구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유보된 사례가 있으므로,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향후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유보금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국제기구협력(ODA)’ 세부사업에서 총 42건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본예산 및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각각 98.6%, 99.5%를 기록하여 예산집행이 원활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누적지급액 2,811억 5,700만원 중 집행액은 2,267억 6,8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80.7%이고, 총 42건의 사업 중 6건(14.3%)은 국제기구의 실집행률(누적지급액 대비 누적집행액)이 60% 미만으로 나타남.

61) 일반회계-국제기구협력(ODA)(2435-403)(개발협력국)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국제기구 누적지급액·누적집행액 및 실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총사업수	국제기구				
		누적지급액 (A)	누적집행액 (B)	실집행률(B/A)		
					60% 이상 사업	60% 미만 사업
국제기구협력(ODA)	42	281,157	226,768	80.7%	36 (85.7%)	6 (14.3%)

주 1) 2025년 기준환율 1,380원 적용
2) 누적지급액(A): 2025년까지 국제기구에 지급된 금액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6건의 사업 중 2건은 2024년까지 국제기구에 지급된 금액의 60%도 집행되지 않았으나 한국국제협력단이 2025년에 추가로 약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실제 ‘UNDP 모잠비크 중북부 지역 재해 복원 및 사회통합 증진 사업’의 경우 2026년 2월 국제기구 누적집행액이 15억 7,300만원으로, 2024년까지 지급된 26억 4,100만원의 59.5% 수준이었으나, 협력단은 2025년 4월과 6월에 총 23억 8,100만원을 국제기구(UNDP)에 지급하였음.

‘UNWOMEN 모잠비크 북부 재해 여성 및 소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회복력 제고 지원사업’의 경우도 2025년 12월 국제기구 누적집행액이 30억 7,400만원으로 2024년까지 지급된 52억 4,400만원의 58.6%였으나, 협력단은 2025년 6월에 20억 7,000만원을 추가로 국제기구(UNWOMEN)에 지급하였음.

두 사업 모두 2024년까지 국제기구에 지급된 예산으로도 각각 2026년 2월, 2025년 12월까지의 소요를 충당하고도 4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상황이었으나, 협력단은 국제기구에 추가 집행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예산이 해당 국제기구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UNDP 모잠비크 중북부 지역 재해 복원 및 사회통합 증진 사업’의 경우 2024년에도 동일한 형태의 예산집행으로 국제기구 실집행률이 저조(27.7%)하였음.[62]

62) ‘UNDP 모잠비크 중북부 지역 재해 복원 및 사회통합 증진 사업’의 경우 2024년 12월 누적집행액이 8억 1,100만원(53.2%)으로, 2023년까지 지급된 누적지급액 15억 2,400만원의 50% 수준이었으나, 2024년 12월 12일에 국제기구에 14억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2024년 국제기구 실집행률은 27.7%였음.

[국제기구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4 국제기구 누적지급액 (A)	2025			국제기구		국제기구 실집행률 (G=F/E)	2026 예산	비고
		본예산 (B)	KOICA 예산현액 (C)	국제기구 지급액(D)	누적지급액 (E=A+D)	누적집행액 (F)			
UNDP 모잠비크 중북부 지역 재해 복원 및 사회통합 증진 사업 ('22-'26/600만불)	**2,641**	2,485	2,756	2,381	5,022	**1,573 (59.5%)**	**31%**	1,242	ㅇ'25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5.4월, 6월** ㅇ누적집행액 작성시점: **'26.2월**
WHO 팔레스타인 재난피해 취약계층 정신건강 관리역량개선을 통한 회복력 강화사업 ('23-'26/600만불)	2,973	1,565	2,789	2,789	5,762	3,345	**58%**	1,281	ㅇ'25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5.3월, 6월 ㅇ누적 집행액 작성시점: '26.2월
UNWOMEN 모잠비크 북부 재해 여성 및 소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회복력 제고 지원사업 ('23-'27/600만불)	**5,244**	2,622	2,037	2,070	7,314	**3,074 (58.6%)**	**42%**	966	ㅇ'25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5.6월** ㅇ누적집행액 작성시점: **'25.12월**
UN Women 파키스탄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 사업 ('24-'28/800만불)	885	3,727	3,827	3,787	4,672	1,777	**38%**	1,394	ㅇ'25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5.4월, 9월 ㅇ누적 집행액 작성시점: '25.12월
WFP 가나 식량안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24-'28/930만불)	1,380	3,685	3,655	3,646	5,026	955	**19%**	2,140	ㅇ'25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5.2월 ㅇ누적 집행액 작성시점: '25.12월
WFP 타지키스탄 식량안보 및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 기반 청년소농 지원 사업('24-'27/1,000만불)	1,667	6,963	5,940	5,938	7,605	3,055	**40%**	2,213	ㅇ'25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5.6월 ㅇ누적 집행액 작성시점: '25.12월

주 1) 국제기구 누적집행액(F) 하단 집행률 = 국제기구 누적집행액(F) / 2024년까지 국제기구 누적지급액(A)
2) 누적집행액(F): 미화 기준, 2025년 기준환율 1,380원 적용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도 2021년 감사 보고서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기구와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연례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약정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지적한 사례가 있었음.[63]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기구에 약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국제기구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유보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협력단은 향후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국제기구에 유보되어 있는 예산 규모 및 실제 예산 집행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63)「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감사보고서(2021.3.)」(15) 국제기구와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체결 부적정(주의)
■ 조치할 사항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앞으로 국제기구와 약정을 체결할 때는 산출물의 품질 등과 상관없이 사업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국제기구와의 개발협력사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5. 2025 APEC 의장국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등

가. 개 요

‘2025 APEC 의장국’ 사업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정상회의 주간 회의, 공식 제반회의 개최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81억 500만원 중 1,106억 1,800만원(집행률 93.7%)이 집행되고 16억원이 이월되었으며, 58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64]

[2025년도 2025 APEC 의장국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등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5 APEC 의장국	100,830	118,105	-	-	118,105	110,618	1,600	5,887	322

나. 검토의견

첫째, 공동 번영의 숲 조성 사업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연내 집행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아 교부된 보조금 대부분이 반납되고 사업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면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공동 번영의 숲 조성 사업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경주엑스포 대공원 내에 APEC 21개 회원국의 국가 상징 나무로 조성된 번영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 중 국비가 30억원 편성된 사업임.

64) 일반회계-2025 APEC 의장국(3031-403)(국제경제국)

[공동번영의 숲 조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5년
■ **사업위치**: 경주엑스포대공원
■ **사업내용**
• APEC 회원국의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나무 선정
- 상징성이 높고 아름다운 꽃 또는 열매를 가지는 나무 선정
- 환경 적응력이 높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 선정
• 산책로 및 휴게 공간 조성
- 국가 상징숲 내에 산책로와 휴게 공간 국가를 상징 할 수 있는 조형물과 정보판을 설치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휴게 공간 조성
■ **총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국고보조율 50%))
■ **추진계획**
• 2025.1.~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5.4.~9. 공사발주 및 완료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동번영의 숲 조성 사업 예산의 교부·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2월 25일에 1차 보조금 10억원, 5월 9일에 2차 보조금 8억원, 8월 19일에 나머지 3차 보조금 12억원이 교부되어 편성된 보조금 30억원이 전액 교부되었고, 이 중 8,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2,400만원은 이월되어 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2.8%였음.

[2025년도 공동번영의 숲 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기관명)	외교부			사업시행주체(경상북도)					
	예산		집행액	교부액	교부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본예산	추경(A)							
경상북도	3,000	3,000	3,000	3,000	3,000	84	124	2,792	2.8

주) 교부일자 및 금액: (1차, 2025.2.25.) 10억원, (2차, 2025.5.9.) 8억원, (3차, 2025.8.19.) 12억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상북도가 외교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3개월)을 마치고 4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완공(6개월)한다는 계획이었음.

그러나 1차 보조금이 교부된 이후 기본·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는 2025년 4월 17일에서야 전자입찰공고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되었으므로 이미 설계 용역부터 3개월 이상 지연이 발생하였음.

입찰공고문에 따른 설계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써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4월 30일이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용역 완수일자는 8월 31일 이후가 될 것이므로, 이후 공사입찰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완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 예상되었음.[65]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제17조제1항에서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연내 집행가능성 등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66]

외교부는 2차 보조금 교부 시점인 5월 9일전에 입찰공고문을 통해 연내 집행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2차 보조금 신청분을 그대로 교부하였고 이후 8월 19일에 3차 보조금 12억원을 교부하였으므로,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및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집행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정상회의 전 완공되지 못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기에 예산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였음.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보조금 사업 추진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면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65)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최초 2025년 5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2025년 9월에 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음. 이후 2026년 6월 26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26년 6월 15일에 용역이 완수되었음.

6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준비기획단 업무 지원을 위한 통신장비 임차 계약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체결되었는데, 이는 과업내용이 같은 하나의 계약을 임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외교부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준비기획단 업무 지원을 위해 계약기간 6개월의 통신장비 임차 계약을 상・하반기에 각각 체결하였음.

두 계약을 통해 임차한 장비는 IP교환기 1식, IP전화기 65대, 네트워크스위치 8대로 상・하반기 계약이 동일하였고, 계약금액도 1,539만원으로 동일하였는데, 임차내역과 금액이 동일하므로 이는 동일한 과업으로 볼 수 있음.

[준비기획단 사무실 통신장비 임차 계약내역]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약방법주)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 통신 장비 임차	2025.1.1. ~2025.6.30.	15,391	㈜링크○○○○	수의계약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 통신 장비 임차	2025.6.30. ~2025.12.31.	15,391	㈜링크○○○○	수의계약

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상・하반기 계약금액을 더하면 3,078만원으로서 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안내공고를 통해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임.[67]

6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 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가목7), 같은 호 마목 · 사목 · 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계약금액을 분할함으로써 안내공고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절차를 우회하였음.

통신장비 임차 계약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체결한 것에 대하여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시기에 정확한 총 근무인원 산출이 어려워 6개월 단위 계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외교부는 같은 시기에 준비기획단 지원을 위한 사무용 가구 임차 시 L형 책상, 사무용 의자, 이동서랍 등을 각각 63개를 포함하여 1년(2025.1.1.~2025.12.31.)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미 최대 63명의 내외의 인원이 근무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볼 수 있음.

[준비기획단 사무용 가구 임차 계약내역]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비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용 가구 임차	2025.1.1. ~2025.12.31.	54,938	㈜중앙시스템	L형 책상, 사무용의자, 이동서랍 각 63개 포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총 근무인원 산출이 어려워 6개월 단위 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외교부의 설명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외교부가 통신장비 임차 계약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체결한 것은 과업내용이 같은 하나의 계약을 임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외교부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국제교류기금】

〈수　입〉

16. 법정부담금: 국제교류기금 적립금 고갈 대비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법정부담금’ 은「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16조에 따라 여권을 발급 받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수입에 계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징수결정액 495억 6,5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음.[68]

[2025년도 법정부담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법정부담금	54,470	54,470	49,565	49,565	-	-	100	63,785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25년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06억 5,900만원(△32.4%) 감액된 1,059억 800만원임.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예상 여권발급수량 감소(’24년 4,797,700건→’25년 4,674,340건, △123,360건) 및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따라 법정부담금(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151억 2,500만원 감액(21.7%) 반영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을 회수하는 기금예탁원금회수는 전년 대비 280억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인 예탁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5억 500만원 감액(△60.1%) 반영되었음.[69][70]

---

68) 국제교류기금-법정부담금(59-593)(대외협력부)

69)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는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024.3.27.)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음.

70)「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개정(2024.6.4. 개정, 2024.7.1. 시행) 전・후 국제교류기여금 비교표

2025년도 수입별 계획액 규모를 보면 법정부담금(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총수입의 51.4%를 차지하여 수입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정부예금회수(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수입이 43.3%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법정부담금 수입은 2024・2026년 총수입에서도 각각 44.5%, 46.9%의 비율을 차지하여 국제교류기금의 주요 재원임.

[2024~2026년 국제교류기금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		증 감		2026년 계획
		당초(B)	수정	B-A	%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730**	**2,730**	**2,730**	**-**	**-**	**2,730**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2,730	2,730	2,730	-	-	2,730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1,608**	**56,483**	**66,089**	**△15,125**	**△21.1**	**65,798**
법정부담금 (59-593)	69,595 (44.5%)	**54,470 (51.4%)**	54,470 (47.2%)	**△15,125**	△21.7	63,785 (46.9%)
민간출연금 (59-594)	2,013	2,013	11,619	-	-	2,013
69 잡수입	**500**	**500**	**500**	-	-	**500**
기타잡수입 (69-691)	500	500	500	-	-	500
85 정부예금회수	**52,889** (33.8%)	**45,860** (43.3%)	**45,860** (39.7%)	△7,029	△13.3	**45,860** (33.8%)
92 예탁원금회수	**28,000**	**-**	**-**	**△28,000**	**순감**	**19,699**
95 예탁이자수입	**840**	**335**	**335**	**△505**	**△60.1**	**1,219**
총 계	**156,567**	**105,908**	**115,514**	**△50,659**	**△32.4**	**135,806**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복수여권 10년	15,000원	12,000원
복수여권 5년	12,000원	9,000원
단수여권	5,000원	면제
여행증명서	2,000원	면제

나. 검토의견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금 수입이 감소하여 2031년 이후 기금 고갈이 전망되고 있으므로,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현재 추진 중인 국제교류기여금 인상 추진과 함께 지출구조조정 방안 등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국제교류기금을 운용하고 있음.[71]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63조제1항은 기금관리주체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교류기금의 수입·지출 현황과 전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여유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72]

국제교류기금의 적립금은 2019년에 1,863억원으로 2011년 대비 300억원(19.2%) 증가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시기 여권 발급 감소에 따라 법정기여금(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감소하였고, 기금적립금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5년 기준 적립금은 769억원으로 2019년 대비 1,094억원(△58.7%)이 감소하였음.

[국제교류기금 기금적립금 및 증감률]

(단위: 억원)

연도	기금적립금	증감률(전년도 대비)	연도	기금적립금	증감률(전년도 대비)
2011	**1,563**	△12.1%	**2019**	**1,863**	1.5%
2012	1,611	3.1%	**2020**	1,545	△17.7%
2013	1,488	△7.6%	**2021**	1,084	△29.8%

7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설치 · 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 · 관리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72)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단위: 억원)

연도	기금적립금	증감률(전년도 대비)	연도	기금적립금	증감률(전년도 대비)
2014	1,378	△7.4%	2022	725	△33.1%
2015	1,427	3.6%	2023	684	5.7%
2016	1,557	9.1%	2024	764	11.7%
2017	1,762	13.2%	2025	769	0.7%
2018	1,836	4.2%	-	-	-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이러한 기금적립금의 감소는 국제교류기금의 재정수입이 대부분 여권 발급에 의한 법정부담금(국제교류기여금)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권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임.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2022년의 여권발급건수는 평균 153만 5,000여 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2.5% 수준이었고, 같은 기간 국제교류기여금(법정부담금) 수입 또한 평균 187억원으로 2019년 기여금 수입액의 약 31.5% 수준에 그쳤음.

[2014년 이후 여권발급 건수 및 국제교류기여금 수입 추이]

(단위: 억원, %, 천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여권발급 건수	3,151	3,939	4,670	5,236	4,947	4,717	1,077	694	2,836	6,308	5,665	4,654
국내	3,052	3,833	4,531	5,109	4,801	4,543	953	563	2,693	6,179	5,554	4,543
	(96.9)	(97.3)	(97.0)	(97.0)	(97.0)	(96.3)	(88.5)	(81.1)	(95.0)	(98.0)	(98.0)	(97.6)
국외	98	106	139	127	145	174	124	131	142	129	111	111
	(3.1)	(2.7)	(3.0)	(3.0)	(3.0)	(3.7)	(11.5)	(18.9)	(5.0)	(2.0)	(2.0)	(2.4)
기여금 예상액 (당초계획, A)	413	394	448	550	578	613	656	360	688	696	696	545
기여금 수입액 (결산, B)	376	478	517	649	610	594	181	90	289	675	683	496
예상액 대비 수입액(B/A)	91.0	121.3	115.4	118.0	105.5	96.9	27.6	25.0	42.0	97.0	98.1	91.0

자료: e-나라지표, 감사원 감사보고서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3년 2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이 기금적립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사업 확장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8년[73] 또는 2029년[74]에 국제교류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

73) 2023년 3월 10일에 작성된 2차 검토안(향후 추정 연간 지출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순사업비 연평균 증가율 4.46%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에서는 2028년에 연말 여유자금이 △49억원으로 감소하여

으로 예측되었으며, 같은 해 8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사업 확장 추세를 지속하는 경우, 2030년부터 기금적립금이 고갈(△230억원)될 것으로 추정되었음.[75][76][77][78]

이후 2025년 3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2024.07.01. 시행)[79]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및 재단 자체 지출구조조정(당초계획 기준 2024년 대비 2025년 지출규모를 117억원 감액)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2025년 3월에 중장기 재정추계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여전히 2031년에 기금적립금이 고갈될 것(△28억원)으로 전망되었음.

또한 국제교류기여금을 인하 이전 수준(현재 기준 대비 3,000원 인상)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2036년에는 기금적립금이 고갈(△165억원)될 것으로 전망되었음.[80]

교류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

74) 2023년 2월 14일에 작성된 1차 검토안(향후 추정 연간 지출액은 최근 10개년 순사업비 연평균 증가율 3.87%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에서는 2029년에 연말 여유자금이 △253억원으로 감소하여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

75)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비를 2023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경우 적립금이 2032년 527억원까지 감소하였다가 2033년부터는 수지차가 다시 흑자로 전환되어 이후 적립금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사업비를 5%, 10% 감축하는 경우 2024년부터, 2.5% 감축하는 경우 2028년도에 수지차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

사업비 감축 비율	수지차 흑자 전환 시점	사업비 수준	수지차 흑자 전환시 예상 기금 적립금
△10%	2024년	489억원	896억원
△5%	2024년	516억원	868억원
△2.5%	2028년	478억원	817억원

76)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를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 중장기 재정 추계 연구용역’에서도 2030년부터 기금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또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사단법인 재정성과연구원을 통해 진행된 ‘국제교류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은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와 이에 대응한 국제교류기금 지출구조조정 방안(2024년 대비 107억원의 지출 감액)을 고려하여 중장기 재정수지 및 기금 적립액 전망치를 산출하였는데, 이 결과에서도 2031년부터 기금적립액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77) 감사원 감사결과 및 두 연구용역 결과는 기금적립액 고갈 전망과 관련한 해결책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국고보조사업화, 복권기금 활용 방안, 수탁사업의 예산지원 등을 제시하였음.

78)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월에 진행한 재정성과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지출규모 감액(△107억원)에도 2031년부터 기금적립액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79)「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 전·후 국제교류기여금 비교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복수여권 10년	15,000원	12,000원
복수여권 5년	12,000원	9,000원
단수여권	5,000원	면제
여행증명서	2,000원	면제

80) 지출구조조정 주요내역(2024년 687억원→2025년 570억원 / △117억원)
- (글로벌 한국학 진흥) △48억(△24.8%)
  ▲해외대학 대상 신규 공모사업 중단 ▲객원교수 파견사업 단계적 폐지
  ▲한국 전문가 육성(장학·연구지원) 규모 축소

[국제교류기여금 재정 추계 결과(현행 기여금 유지 시나리오)]

(단위: 억원)

구분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수입(A)	712	501	612	726	718	606	236	217	409	652	633	485	571	695
기여금	683	469	579	692	683	571	200	180	371	613	594	444	530	653
기타	29	32	33	34	35	35	36	37	38	39	40	41	41	42
지출(B)	652	552	576	601	627	655	683	713	745	778	812	848	886	925
사업비	506	406	426	447	470	493	518	544	571	599	629	661	694	728
운영비	146	147	150	154	158	162	166	170	174	178	183	187	192	197
수지차 (A-B)	60	△51	36	125	90	△48	△447	△496	△336	△125	△179	△363	△315	△230
적립금	764	713	748	873	964	915	468	△28	△363	△489	△667	△1,031	△1,345	△1,575

주) 국제교류기여금 복수여권 10년 12,000원, 복수여권 5년 9,000원 유지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제교류기여금 재정 추계 결과{기여금 인상 시나리오}]

(단위: 억원)

구분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수입(A)	712	501	612	894	883	744	285	261	499	801	777	592	699	853
기여금	683	469	579	860	849	709	248	224	461	762	737	551	658	811
기타	29	32	33	34	35	35	36	37	38	39	40	41	41	42
지출(B)	652	552	576	601	627	655	683	713	745	778	812	848	886	925
사업비	506	406	426	447	470	493	518	544	571	599	629	661	694	728
운영비	146	147	150	154	158	162	166	170	174	178	183	187	192	197
수지차 (A-B)	60	△51	36	293	256	90	△399	△452	△246	23	△35	△256	△186	△72
적립금	764	713	748	1,041	1,297	1,386	988	535	290	313	278	21	△165	△237

주) 2027년부터 국제교류기여금 복수여권 10년 15,000원, 복수여권 5년 12,000원으로 인상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제협력 네트워킹) △41억(△21.3%)
  - ▲해외 유력인사 초청사업 규모 축소
  - ▲미국 평화봉사단 재방한 사업 폐지
  - ▲청년 대상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사업 폐지
  - ▲정책공공외교사업 규모 축소
  -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교육·문화사업 축소 등
- (문화교류 협력강화) △26억(△25.8%)
  - ▲한국전문 기금큐레이터직 신규 공모 중단
  - ▲한국소개 잡지 〈KOREANA〉 다국어 언어판 발간 중단
  - ▲재외공관 공동주관 문화교류사업 폐지
  - ▲아세안문화원 사업규모 축소
  - ▲한국 소개자료 발간 및 한국지식문화보급 사업 규모 축소 등

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6년 3월 현재 사업구조 재설계를 위한 ‘KF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단기적으로는「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제교류기여금을 인하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는 여권 1권 발급 당 국제교류기여금 모금한도를 1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16조제2항의 개정을 추진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임.[81)]

그러나 국제교류기여금을 2024년 6월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기금적립금 고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법 개정을 통한 기여금 인상 방안은 국민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정부의 부담을 고려하면 적시에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여금 인상 여부와 별개로 기금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방안 및 재원 다변화 등을 모색하여 기금적립금 고갈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1)「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출〉

17.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지원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 필요

가. 개　요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지원’ 사업은 공공외교에 대한 대학(원)생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에 공공외교 관련 교과목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억 7,500만원 전액이 집행(100.0%)되었음.[82)]

[2025년도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공외교기반확대	1,342	1,114	-	1,114	1,075	-	39	1,275
공공외교아카데미	400	405	-	405	404	-	-	678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지원	390	375	-	375	375	-	-	375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공공외교에 대한 대학(원)생의 이해도 제고 및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공모를 통해 ‘KF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음.

사업 수행 대학교 공모는 「국민대상 공공외교사업 시행지침」 제4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대학교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심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82) 국제교류기금-공공외교기반확대(2633-403)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고등교육 수준의 공공외교 교육 기회 확대 · 공공외교에 대한 대학(원)생의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 · 공공외교 분야 진로 탐색 및 실무 역량 강화 · 공공외교 관련 연구 확대
사업내용	· 공공외교 관련 정규과정 개발 및 운영 · 공공외교 관련 프로그램(강의 외) 기획 및 운영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설립된 4년제 대학 · 대학 내 공공외교 관련 전공(정치외교학, 국제관계학 등)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 · 사업기간 내 공공외교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이 가능한 대학 ※ 과목 개설 또는 개편 시 제목 또는 소제목에 '공공외교' 명시 필수 ※ 신청 전 신규 교과목 개설 가능여부에 대해 대학측과 사전 협의 필요 ※ 공공외교 관련 신규 강좌 개설 또는 기존 강좌 확대 개편만 지원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에는 강원대학교 등 총 15개 대학교에 각각 2,500만원씩 총 3억 7,500만원의 일반용역비가 집행되었음.[83]

[2025년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지원 사업 수행 대학교]

구분	사업기간	대학교
1/2차년도 (5개대)	2025.03.01. ~2026.12.31.	강원대학교, 경희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1/1차년도 (1개대)	2025.03.01. ~2025.12.31.	제주대학교
2/2차년도 (9개대)	2024.03.01. ~2025.12.31.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림대학교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3) 「국민대상 공공외교사업 시행지침」
제4조(시행방식) ② 국민공공외교 사업은 국민이 직접 기획한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공모 또는 기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의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시행한다.
제10조(시행 대학 선정 및 심의 기준) ① 사업 시행 대학은 관련 사업 제안서 접수 후,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②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사업추진 역량(20점)
2. 사업 타당성 평가(70점)
3. 사업예산 평가(10점)

나. 검토의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교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외교 관련 강의 개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공외교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의 목적은 「공공외교법」 제1조에 따른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치(외교)학과를 설치하여 수행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외교 관련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사업예산 전액을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2022~2025년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지원 사업(일반용역비) 결산내역 및 2026년 계획]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2	570	531	-	531	530	99.8	99.8	-	-
2023	572	441		441	441	100.0	100.0	-	-
2024	528	380	-	380	380	100.0	100.0	-	-
2025	390	375	-	375	375	100.0	100.0	-	-
2026	375	-	-	-	-	-	-	-	-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210-14목)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임.[84]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85]

---

84)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일반용역비(210-14목)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민간위탁, 법정대행, 연구용역(정책개발 및 그 외의 연구용역), 관리용역이 아닌 모든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동 사업은 정치(외교)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교에 공공외교 관련 강의를 개설하여 대학(원)생들의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일반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5년에 수행된 사업의 대학교별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외교 관련 강좌 개설·진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되며, 이는 곧 대학교의 정치외교학 강의에 공공외교 과정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재단이 「공공외교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서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과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을 담당하고, 동 사업은 공공외교 관련 정규강좌 개발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서 민간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였다는 입장임.[86)87)]

그러나 설명과 달리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한국학기반확대(2632-401)'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교수직 설치' 사업은 해외대학에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고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나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인 '해외경상이전(340-01목)'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

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86) 「공공외교법」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3.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5.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7.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87)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2. 그 밖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조직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저널리즘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은 보조금 편성·집행을 통해 저널리즘 특성화 강의를 대학(원)에 개설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유사사례로 참고할 수 있음.[88]

[저널리즘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언론인 재교육을 통한 언론인 전문성 강화, 저널리즘 신뢰 회복
사업내용	· 언론인 대상 저널리즘 특성화 대학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 언론인 대상 저널리즘 특화 교육과정 개설·운영이 가능한 대학(원)
신청자격	· 저널리즘 특성화 과정(석사 과정 이상) 개설 및 운영 가능 대학(원) - 대학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운영 형태는 대학(원) 자율 - 저널리즘 특성화 과정에서 교과목 학기당 2과목 이상 필수 제공해야 함 - 사업비 집행·정산을 수행하는 행정인력 확보 필수 ·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현금) 출연 및 집행 필수 ※ 자부담 비율 = 자부담/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100(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025년도 편성예산 (본예산 기준)	· 저널리즘 특성화 대학 지원: 8억 1,000만원 - 저널리즘 특성화 대학 지원: 2개교×800만원×2학기×25명=8억원(민간경상보조) - 사업운영비: 1식×900만원=900만원 - 국내여비: 5회×20만원=100만원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리즘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공고문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이 사업을 일반용역비(210-14목)에서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변경하여 편성·집행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편성·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88)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279쪽
340-01 해외경상이전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18. 현지교원고용지원 사업: 계획액 과다편성 지양 필요 등

가. 개 요

‘현지교원고용지원’ 사업은 해외 대학에서 한국학(또는 한국어) 정규 강좌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학(한국어) 강사를 고용하고자 할 때 강사 고용에 필요한 경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하여 한국학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5억 2,500만원 중 4억 3,400만원이 집행(82.7%)되고, 9,100만원이 불용되었음.[89]

[2025년도 현지교원고용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한국학기반확대	14,773	15,208	-	15,208	15,174	-	34	13,505
한국학 강좌운영	12,489	12,714	-	12,714	12,701	-	13	11,314
현지교원고용지원	525	525	-	525	434	-	91	513

현지교원고용지원 사업은 전년도 5월부터 계획수립, 사업신청 접수, 외부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대학교를 선정하며, 이후 결과보고서 접수와 모니터링을 포함한 사후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음.

[현지교원고용지원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계획 수립 (전년도 5~6월)	재단	-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를 통해 개선사항 및 역점사업 추진방향 도출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신청 접수 (전년도 7~8월)	재단	- 신청공고 및 신청서 접수(재외공관 대상 사업 수요조사 및 일반 기관의 신청 공모)
외부평가 (전년도 9~10월)	재단	- 외부 전문가 평가 및 재외공관 의견 수렴, 사업 심의
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전년도 11월)	재단	- 내부 종합 보고 및 평가결과 통보

89) 국제교류기금-한국학기반확대(2632-401)(한국학사업부)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사업수행 (전년도 12월~당해연도)	재단 및 해외기관 또는 개인	- 사업 세부 협의 진행 및 협약 체결 - 사업 계획에 따라 수혜기관 사업 수행 - 필요시 재단(본부 및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모니터링
사업결과 평가 (사업시행 후)	재단	- 결과보고 접수 및 모니터링

자료: 외교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5년에 현지교원고용지원 사업을 통해 5개국 8개 해외 대학교의 한국학 및 한국어 교원 고용을 지원하였음.

[2025년 현지교원고용지원 사업 대상 대학교 및 집행액]

(단위: 원)

지역	국가	대학교	지원내용	집행액
북미	미국	브린모어대학교	한국어 교원고용지원	81,748,401
		카네기멜론대학교	한국어 교원고용지원	103,011,165
		조지아대학교	한국어 교원고용지원	81,509,102
서남아	인도	델리대학교	한국어 교원고용지원	18,276,206
		영어외국어대학교	한국어 교원고용지원	34,193,545
중유럽	헝가리	엘테대학교	한국학 교원고용지원	41,011,886
	아제르바이잔	바쿠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원고용지원	32,717,081
중동	요르단	요르단대학교	한국어 교원고용지원	41,360,741
계				**433,828,127**

자료: 2025년 국제교류기금 결산보고서

나. 검토의견

‘현지교원고용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지원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과거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실제 소요 대비 과다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원대학 선정 시 적격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예상치 못한 사업 취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022년 이후 현지교원고용지원 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2・2024・2025년 지원대학 수는 계획 대비 47.1%에서 60%의 실적을 보이고, 지원금액은 62.6%에서 82.7%의 집행률을 보임.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원대학 실적을 종합하면 총 112개교 지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70개교만 지원하여, 지원대학이 당초 계획 대비 62.5% 수준에 머무는 등 연례적으로 계획상 지원대학 수가 실제 지원대학 대비 과다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025년 현지교원고용지원 사업 대상 대학교 및 집행액]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지원대학	45	22 (48.9%)	25	25 (100.0%)	25	15 (60.0%)	17	8 (47.1%)	112	70 **(62.5%)**
지원금액 (집행률)	1,210	758 (62.6%)	715	874 (122.2%)	715	522 (73.0%)	525	434 (82.7%)	3,165	2,588 (81.8%)
지원단가	26.9	34.5	28.6	35.0	28.6	34.8	30.9	54.3	28.3	37.0
단가차이	7.6 (계획 단가의 28.3%)		6.4 (계획 단가의 22.4%)		6.2 (계획 단가의 21.7%)		23.4 (계획 단가의 75.7%)		8.7 (계획 단가의 30.7%)	
평균환율	1,264.5		1,288.0		1,472.5		1,439.0		-	

주 1) 계획: 당초 계획
2) 평균환율: 지표누리(index.go.kr) 원/달러 환율 통계표 기준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것이었으며, 계획이 확정된 이후 대학측에서 사업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전년도 6월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학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원대학 선정 시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1조 제1항의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추진자의 사업 수행 능력 등 신청단체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학측의 불가피한 사업취소의 발생은 사업 계획 및 심의가 면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1조의 심의기준]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고려사항)	배점(가중치)
사업내용의 우수성	□ 신청인이 제시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과의 부합성 - 사업의 시의성, 필요성 고려	20%
	□ 사업계획 구성 - 사업내용 건실성, 실현가능성, 참여자의 우수성	20%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고려사항)	배점(가중치)
신청단체의 적격성	□ 신청처 및 추진자의 한국학 분야 국내외 공신력 및 과거 활동실적 □ 사업추진자의 사업 수행 능력 □ 신청처의 한국학 발전 의지, 장기계획	20%
예산계획의 합리성	□ 사업예산 책정 및 예산배정의 합리성, 구체성 □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타당성 □ 자체재원 활용 노력 및 확보 비중	20%
사업 기대효과	□ 신청사업 추진 결과 기대되는 사업성과 및 실현 구체성 여부 □ 추진사업의 해외 한국학 발전 기여도	20%
합계		100%

자료: 공공기관 알리오 기관공시

따라서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과거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실제 소요 대비 과다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원대학 선정 시 적격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예상치 못한 사업 취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기　타】

19.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외교부에 대해 시정요구 63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건・주의 21건・제도개선 42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	21	42	1	63
예비비	-	-	-	-	-	-	-
합계	-	-	1	21	42	1	63

외교부는 시정요구사항 63건에 대해 58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2.1%)하고 5건을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63	58	92.1	5
예비비	-	-	-	-
합계	63	58	92.1	5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외교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외교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6년도 본예산	(27) 외교부는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 내역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기본 KOICA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통일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34억 6,500만원(△51.7%)이 적은 219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900만원(52.1%)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448	1,448	1,300	△148	1,507	1,507	1,278	△229	△22
기 금	43,638	43,638	13,105	△30,533	43,872	43,872	20,636	△23,236	7,531
총수입	45,086	45,086	14,405	△30,681	45,379	45,379	21,914	△23,465	7,509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836억 6,300만원(△68.2%)이 적은 2,257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6억 1,000만원(△3.4%)이 감소됨.

문의: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22,027	222,027	198,657	△23,370	228,907	228,647	206,627	△22,020	7,970
기 금	874,474	874,474	35,165	△839,309	800,777	480,777	19,134	△461,643	△16,031
총지출	1,096,501	1,096,501	233,822	△862,679	1,029,684	709,424	225,761	△483,663	△8,061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5억 700만원으로, 14억 7,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2억 7,800만원이 수납(수납률 86.5%)되고, 1억 9,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507	1,507	-	1,507	1,477	1,278	199	-
합 계	1,507	1,507	-	1,507	1,477	1,278	199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320억 9,500만원으로, 2,854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9%)되고 51억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15억 5,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28,907	328,647	3,448	±259	-	332,095	285,427	5,109	41,559
합 계	328,907	328,647	3,448	±259	-	332,095	285,427	5,109	41,559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조 4,438억 4,800만원으로, 7,775억 2,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449억 2,700만원이 수납(수납률 66.3%)되고, 242억 9,900만원은 미수납되어 82억 9,9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남북협력기금	1,443,848	1,123,848	777,525	744,927	24,299	8,299
합 계	1,443,848	1,123,848	777,525	744,927	24,299	8,299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조 1,238억 4,800만원으로, 7,449억 2,700만원이 지출(집행률 66.3%)되고, 4,899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남북협력기금	1,443,848	1,123,848	-	1,123,848	744,927	-	489,952
합 계	1,443,848	1,123,848	-	1,123,848	744,927	-	489,952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통일부 자산은 전년 대비 656억 8,900만원이 감소된 3조 7,110억 4,3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금융자산이 522억원 감소하고,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유무형자산이 135억원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8억 1,800만원 감소된 2조 3,131억 1,800만원으로 이는 주로 미지급금 및 미지급이자의 감소 등으로 차입부채가 58억 원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98억 7,200만원이 감소된 1조 3,979억 2,400만원임.

2025회계연도 통일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240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97억 6,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448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9억 1,5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통일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711,043	3,776,732	△65,689	△1.7
		금융자산	3,296,788	3,348,949	△52,161	△1.6
		유무형자산	414,185	427,733	△13,548	△3.2
		기타자산	69	49	20	40.8
	부 채		2,313,118	2,318,936	△5,818	△0.3
		차입부채	2,313,063	2,318,871	△5,808	△0.3
		충당부채	-	-	-	-
		기타부채	56	65	△9	△13.8
	순자산		1,397,924	1,457,796	△59,872	△4.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24,059	△5,702	229,761	4,029.5
	재정운영순원가		344,886	114,871	230,015	200.2
	재정운영결과		344,886	113,971	230,915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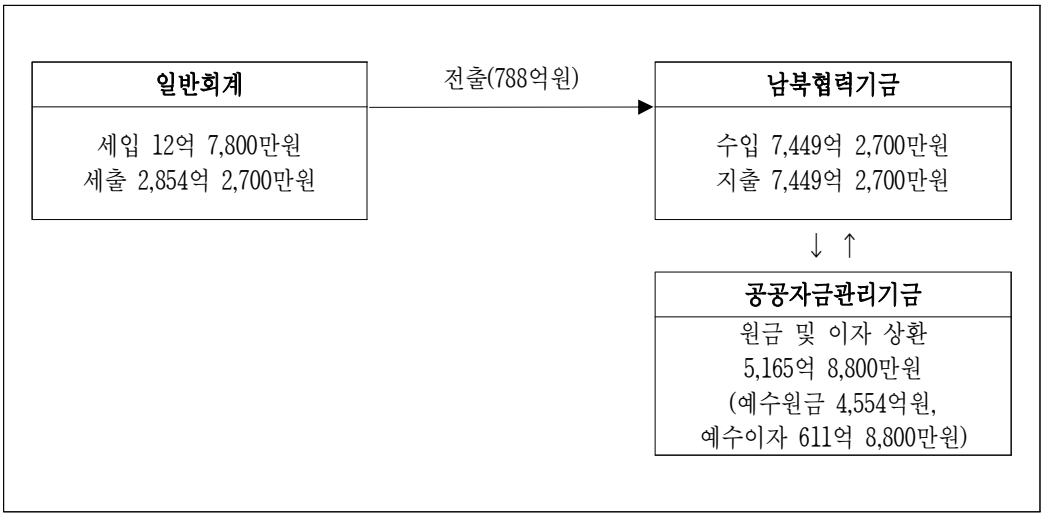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통일부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788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4,554억원이 예수되었고, 남북협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554억원의 예수원금과 611억 8,800만원의 예수이자가 상환되었음.

[2025회계연도 통일부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통일부는 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②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③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④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⑤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85개 세부사업에서 남북대화·교류협력 기반 복원, 분단고통 해소 및 인도적문제해결 노력, 평화·통일정책의 국민참여 원칙을 확립하는 등 각 분야별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음.

2025년도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시 활용방안 미비 등의 지적에 따라 2027년부터 미실시할 예정이나, 3년간 투입된 예산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최초 사업 설계 시 설정했던 통일외교의 추진·보완 방향 모색 및 민간의 통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규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자문기구 운영 시 면밀한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 관련 시의적절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은 당초 2025년 예산에 편성된 시각화자료 콘텐츠 기획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재정법」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넷째,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시 규정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은 연례적인 감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2025년 6월 이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이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함으로써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공용차량 구매·임차: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필요

가. 개 요

2026년 4월말 현재, 통일부는 의전 및 업무용으로 총 58대의 공용차량을 운용하고 있음.

[통일부 공용차량 현황]

(단위: 대, %)

구분		휘발유	경유	LPG	CNG	전기	수소	계
본부	운영지원과	2	1	-	-	2	1	6
	대변인실	-	1	-	-	-	-	1
	남북통합문화센터	-	-	-	-	1	-	1
	6.25.납북자기념관	-	2	-	-	-	-	2
	소계	**2**	**4**	**-**	**-**	**3**	**1**	**10**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영지원과	2	3	-	1	-	-	6
	오두산통일전망대	-	3	-	-	-	-	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1	4	-	-	1	-	6
	소계	**3**	**10**	**-**	**1**	**1**	**-**	**1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소	본원(안성)	2	3	-	1	1	-	7
	분소(화천)	1	3	-	-	-	-	4
	소계	**3**	**6**	**-**	**1**	**1**	**-**	**11**
남북회담본부		5	9	2	3	1	-	20
북한인권기록센터		1	-	-	-	1	-	2
총계		**14 (24.1)**	**29 (50.0)**	**2 (3.5)**	**5 (8.6)**	**7 (12.1)**	**1 (1.7)**	**58 (100.0)**

주 1) LPG: Liqi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 / CNG: 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
2) 2026년 4월말 기준
3) 행사를 위한 단기 임차차량 제외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2025년에 공용차량 구매·임차를 위해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3억 6,672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 통일부 공용차량 구매·임차 관련 집행 현황]

(단위: 원)

구분	세목	집행액
일반회계	임차료	124,161,400
	자산취득비	203,000,000
남북협력기금	자산취득비	39,560,160
합계		366,721,56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하나 2025년도 구매·임차 차량 중 제1종 저공해자동차가 아닌 사례가 있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제1종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2조의5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6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100% 비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함.[2)3)]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 · 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 · 임차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 · 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 · 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해야 한다.

통일부 공용차량 중 2025년에 구매·임차(구매 2대, 임차 4대)한 차량은 6대이고, 이 중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3대, 구매실적에서 제외되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2대이므로, 1대의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음.[4)5)]

[2025년 통일부 공용차량 구매·임차 내역]

(단위: 원)

부서	구매/임차	차량명	연식	사용연료	구매일자 (임차기간)	계약금액 (월임차료)
본부 (운영지원과)	**임차**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9인승)**	**2025**	**휘발유**	**'25.11.1. ('25.11.1.~'28.10.31.)**	**31,777,200 (882,700)**
본부 (남북통합 문화센터)	임차	EV6	2025	전기	'25.5.1. ('25.5.1.~'28.4.30.)	28,800,000 (800,000)
국립평화통일 민주교육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구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11인승)	2025	휘발유	'25.3.31.	39,560,160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가.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4)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9인승으로서 구매실적에서 제외되지 않음.

5)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구매 · 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① 해당 연도에 구매 · 임차한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 ·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가. 일반형(경 · 소 · 중형): 2025년 12월 31일
나. 특수형: 2025년 12월 31일

(단위: 원)

부서	구매/임차	차량명	연식	사용연료	구매일자 (임차기간)	계약금액 (월임차료)
남북회담본부	구매	카운티 일렉트릭	2026	전기	'25.12.5.	203,000,000
북한인권 기록센터	임차	EV3	2025	전기	'25.8.1. ('25.8.1.~'29.7.31.)	31,680,000 (660,000)
	임차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11인승)	2025	휘발유	'25.8.1. ('25.8.1.~'29.7.31.)	36,960,000 (770,00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통일부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공용차량 구매·임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종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고용부담금: 비공무원 상시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가. 개 요

통일부는 2026년 3월 말 기준 공무원 정원 545명 중 23명, 비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상시근로자 295명 중 4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은 각각 공무원 4.22%, 비공무원 1.35%로 나타남.

장애인 채용인원으로 보면 2022년 대비 공무원은 장애인 채용인원이 2명 증가하여 장애인고용률은 0.87%p 증가하였으나, 비공무원은 장애인 채용인원이 오히려 2명 감소하여 장애인고용률이 0.54%p 감소하였음.

[2022년 이후 통일부 공무원 및 비공무원 장애인 채용인원]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공무원	정원	627	616	536	600	545
	장애인 채용인원	21	25	24	23	23
	장애인고용률	3.35	4.06	4.48	3.83	4.22
비공무원	상시근로자	318	293	302	312	295
	장애인 채용인원	6	6	5	4	4
	장애인고용률	1.89	2.05	1.66	1.28	1.35

주 1) 장애인고용공단 신고내역 기준
2) 장애인고용공단 신고방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우 인원수의 두 배로 고용인원 산정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79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4) 각 연도말(2026년은 3월말) 기준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으나 통일부는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비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제27조와 제79조의 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정원 및 상시근로자 수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

그런데 통일부는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준수하였으나, 비공무원 상시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국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2021년 3.4%에서 2024년 이후 3.8%로 높아졌으나, 통일부의 비공무원 상시근로자 장애인 채용인원은 2022년 6명에서 2025년 4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2022년 7,088만원이었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25년 9,313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2022~2026년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명, %,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시근로자 수	318	293	302	312	295
장애인 고용인원	**6**	6	5	**4**	4
장애인 의무고용인원1)	11	11	12	11	11
장애인 고용률	1.89	2.05	1.66	1.28	1.35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여부	미이행	미이행	미이행	미이행	미이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여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70,884,100**	67,016,010	87,759,950	**93,130,240**	-

주) 각 연도말(2026년은 4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통일부는 2025년에 44건의 채용공고를 통해 80명의 비공무원을 모집하면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가점(서류전형 만점의 5%)을 부여하여 장애인 채용을 위한 우대조치는 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우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7)]

[2025년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한 비공무원 채용공고 및 모집인원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채용공고		6	5	5	1	4	4	3	2	3	4	3	4	44
모집 인원	일반	10	11	15	2	4	17	3	2	3	4	5	4	80
	장애	-	-	-	-	-	-	-	-	-	-	-	-	-

주) 채용공고일 기준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제3호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별표 3] 채용시험 가점기준(제21조제4항 관련)

구분		부가점수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통일부는 장애인 채용을 위한 우대조치는 취하고 있으나 채용공고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고, 2026년에는 청년인턴 채용 시 장애인을 별도 모집하는 등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타부처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등은 공무직근로자 관련 내부규정에 장애인 채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구분모집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8)]

또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13조제5항제3호의 추천을 통해 채용공고 없이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자가 없는 경우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 추천을 통해 장애인을 채용하는 방법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임.[9)]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비공무원 채용 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법령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8)「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특례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 및 장애인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을 위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구분모집을 실시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우대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2조(장애인 채용에 대한 특례) ① 채용권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직종에 관계 없이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한 채용권자는 그 사유와 장애인 채용 노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3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통일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AI 구독료: 예산집행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등

가. 개 요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은 효율적 통일업무 수행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화 기반 유지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17억 6,800만원 중 17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6%)되고,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사업은 통일정책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5억 700만원 중 4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2%)되고 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은 국립통일교육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11억 5,500만원 중 10억 8,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9%)되고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5년도 본부 전산운영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본부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1,768	1,768	-	±1	1,768	1,743	-	25	2,497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411	411	-	96	507	427	47	34	503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1,155	1,155	-	±51	1,155	1,085	-	70	1,22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통일부는 각 부서의 행정업무 지원 및 현안 관련 기초자료 수집·정리를 위한 민간 AI 서비스 구독을 위해 2025년에 3개 세부사업에서 일반수용비(210-01목) 617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887만원, 총 1,504만원을 집행하였음.

---

10) 일반회계-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7035-500)(기획조정실)

11) 일반회계-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7011-251)(통일정책실)

12) 일반회계-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5018-250)(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2025년도 AI 구독료 집행 현황]

(단위: 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세목	집행액	집행목적
기획조정실	본부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일반수용비 (210-01)	2,695,395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개자료 요약·정리 등
통일정책실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3,475,334	현안 관련 기초자료 수집·정리
국립통일교육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8,871,322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개자료 요약·정리 및 문안 초안 작성 등
합계			**15,042,051**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통일부는 업무 지원을 위해 민간 AI 구독료를 집행하면서 사용기간을 회계연도와 불일치하게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6년에 필요한 경비를 2025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국립통일교육원은 각각 관서운영경비로 민간 AI 구독료를 집행하였는데 각 부서별로 설정한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국립통일교육원과 통일정책실은 각각 2025년 2월 10일과 4월 25일에 구독료를 집행하면서 사용기간을 1년으로 지정함으로써 사용기간이 회계연도와 불일치하였음.

[2025년도 AI 구독료 집행 현황]

(단위: 원)

부서명	집행일	건명	집행액	사용기간
기획조정실	'25.1.31.	챗GPT 서비스 구독	33,053	'25.1.2~2.2.
	'25.2.25.	챗GPT 서비스 구독	33,046	'25.2.3~3.3.
	'25.3.25.	챗GPT 서비스 구독	325,348	'25.3.7~4.7.
	'25.4.10.	Lilys AI, SUNO AI 서비스 구독	34,640	'25.3.18~4.18.
	'25.5.12.	Lilys AI, SUNO AI 서비스 구독	34,640	'25.4.28~5.28.
	'25.6.10.	SUNO AI 구독	14,108	'25.5.29~6.29.
	'25.7.1.	통일부 직원 AI비서 4-5월 구독료(웍스AI)	950,330	'25.4.1~5.31.

(단위: 원)

부서명	집행일	건명	집행액	사용기간
	'25.7.22.	통일부 직원 AI비서 6월 구독료(웍스AI)	390,660	'25.6.1~6.30.
	'25.8.19.	통일부 직원 AI비서 7월 구독료(웍스AI)	311,240	'25.7.1~7.31.
	'25.9.11.	통일부 직원 AI비서 8월 구독료(웍스AI)	165,160	'25.8.1~8.31.
	'25.10.30.	통일부 직원 AI비서 9월 구독료(웍스AI)	171,000	'25.9.1~9.30.
	'25.11.25.	통일부 직원 AI비서 10월 구독료(웍스AI)	115,090	'25.10.1~10.31.
	'25.12.08.	통일부 직원 AI비서 11월 구독료(웍스AI)	117,080	'25.11.1~11.30.
통일정책실	**'25.4.25.**	**전산소모품 구입주)**	**3,475,334**	**'25.4.~'26.3.**
국립통일교육원 (국립평화통일 민주교육원)	**'25.2.10.**	**AI활용 통일교육 기반구축 사용권 구매**	**8,871,322**	**'25.2.~'26.1.**
합계			**15,042,051**	

주) 전산소모품 구매 건에 함께 기안된 건명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법」은 제3조에서 회계연도 독립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13]

한편 기획조정실에서 민간 AI 구독료를 집행한 사례를 보면 월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면 회계연도 중에 소요가 발생하여 구독하는 경우에도 연간 구독료 집행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구독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목별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를 예시하고 있으나, 통일부는 업무 지원을 위한 민간 AI 구독료를 집행하면서 부서별로 상이한 비목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비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통일부의 민간 AI 구독료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과 통일정책실은 일반수용비 617만원, 국립통일교육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887만원을 집행하여 부서에 따라 집행한 예산의 세목이 상이하였음.

1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025년도 AI 구독료 집행 현황]

(단위: 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세목	집행액	집행목적
기획조정실	본부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일반수용비 (210-01)	2,695,395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개자료 요약·정리 등
통일정책실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3,475,334	현안 관련 기초자료 수집·정리
국립통일교육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8,871,322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개자료 요약·정리 및 문안 초안 작성 등
합계			**15,042,051**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우편 등의 회선사용료, 전기·가스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예시하고 있음.[14)]

이와 관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실시·발표한 「2025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에서는 클라우드 산업 분류체계에 AI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15)16)]

이에 따라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집행지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는 측면이 있음.

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족이 생기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 및 「2025년도 예산총칙」 제10조에 따라 일반수용비 등 타 비목과 달리 예산의 이·전용 금지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음.[17)18)]

---

14)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p.262~265

1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5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6.3., p.139

17) 「국가재정법」

향후 공공부문의 AI 서비스 이용 및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AI 서비스가 클라우드 산업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이·전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는 정부 차원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일부는 민간 AI 구독료 집행에 대한 비목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침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8)「2025년도 예산총칙」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일반회계】

〈세 출〉

4.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사업 결과의 매몰비용화 방지 필요

가. 개 요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은 세계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 인식 조사를 통해 통일외교의 추진·보완 방향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3억 원 중 2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7%)되고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5년도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통일정책추진	1,756	1,756	-	△3	1,753	976	-	777	1,330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706	706	-	-	706	586	-	120	665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300	300	-	-	300	266	-	34	3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통일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 국내에서만 이루어졌던 정례 통일인식 조사(국내 성인 남녀 1천명 대상)의 외연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외교의 추진·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 일반연구비 3억원이 최초 편성·집행되었음.

2024·2025년 사업은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거쳐 통일연구원이 수행하였으며, 조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음.

19) 일반회계-통일정책추진(1031-300)(통일정책실)

[2024~2026년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계약내역]

(단위: 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2024년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2024.4.23. ~2024.12.18.	272,727,270	통일연구원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025년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2025.4.4. ~2025.12.17.	267,272,720	통일연구원	일반경쟁입찰 → 단일응찰에 따른 수의시담
2026년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2026.03.16. ~2026.12.18.	294,000,000	통일연구원	일반경쟁입찰 → 2회 유찰에 따른 수의시담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2025년도에 수행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는 각각 8개국, 9,000여 명 대상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음. 미국과 일본은 핵심관련국으로서, 독일과 폴란드는 분단 및 체제전환 경험국으로서 매년 조사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기타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를 위주로 선정되고 있음.

[2024~2026년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비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조사지역 (대상국)	8개국 (미국, 일본, 독일, 폴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 베트남)	8개국 (미국, 일본, 독일, 폴란드, 몽골,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8개국 (미국, 일본, 독일, 폴란드, 중국, 영국, 프랑스, 호주)
표본규모	9,223명	9,519명	국가별 일반시민 1,000~2,000명 및 전문가 10명 내외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웹조사)	온라인 설문(웹조사)	온라인 설문(앱조사), 심층 인터뷰(대면조사)
조사문항	26문항 (공통 24문항, 국가별 2문항)	27문항 (공통 25문항, 개별 2문항)	-
소요예산	2억 7,273만원(계약) → 2억 6,579만원(정산)	2억 6,273만원(계약) → 2억 6,624만원(정산)	2억 9,400만원(계약)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및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시 활용방안 미비 등의 지적에 따라 2027년부터 미실시할 예정인바, 3년간 투입된 예산이 사실상 매몰비용이 되었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의 주요 항목별 집행 내역에 대한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의 정책 반영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사업 관련 내용(발췌)]

시정요구명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실효성 확보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향후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수행 시 조사비, 인건비 등 주요 항목별 집행 내역에 대한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의 정책 반영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
조치결과	용역수행후 세부 집행내역 산출근거를 명시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정책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심층조사 실시 및 세미나 개최 예정 (조치완료일 : 2026년 4월 30일)
조치상황	조치완료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시 '산출 근거를 명시한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정책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심층조사 실시 및 세미나 개최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자료 요구에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이 사업이 구조조정되어 2027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20)]

또한 통일부가 이 사업을 통해 조사한 국제사회의 통일인식조사 결과는 현재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 외의 활용처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일외교 개선방향 또한 제시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이 3년간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 결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투입된 예산은 모두 매몰비용으로 낭비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음.

20)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2025년부터 국제세미나를 개최(2025.5.21.~23., 2025.9.1.~4., 2026.5.15.~20.)하였으며, 2026년도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시 전문가 심층조사도 실시하였다는 설명임.

통일부는 2026년 4월 24일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가 중점추진과제로 설정되어 있음.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중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내용]

6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 목표 】

- ❖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 ❖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 ❖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
- ❖ 북한자료의 대국민 공개 확대

o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 평화 여건 조성을 위해 미·중·일·러 등 유관국과 전략적 소통 강화
- 재외동포·국제시민사회 등 대상 공공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 결집

자료: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해외 지역별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를 운용하여 지역사회 대상 연대를 통한 평화통일운동인 해외 통일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외동포청은 한인회 대상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통해 정책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각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5년 해외 통일특화사업 사업 내역(일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및 내용
평화통일 공공외교 문화행사 (보스턴협의회)	2025.12.28. ~2025.12.31.	- 사업목적: K-문화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의미와 필요성을 보스턴 지역 시민사회에 전파함으로써 평화지지 여론을 확산 - 사업내용: 보스턴 도심에서 K-pop 댄스공연, 한반도 평화 통일 스피치 발표, 캠페인 진행, 참여 시민 K-snack 제공 등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및 내용
청년 공공외교 토크콘서트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	2025.12.12. ~2025.12.31.	- 사업목적: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활동가, 청년 자문위원 등을 패널로 초청하여 공공외교 및 평화와 통일에 대한 토크콘서트 진행 - 사업내용: 청년 초청 공공외교 토크콘서트 진행
독일과 베트남 통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 강연회 (베트남협의회)	2025.4.15. ~2025.12.31.	- 사업목적: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동포사회 공감대 확산 - 사업내용: '독일통일 35주년, 이제는 우리 차례'를 주제로 청소년·자문위원·교민 대상 강연회 실시
한반도 평화통일 토론회 (일본중부협의회)	2025.4.19. ~2025.12.31.	- 사업목적: 격변의 시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재일동포 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 사업내용: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포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 및 토론
광복 80주년 기념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당 (영국협의회)	2025.7.5. ~2025.12.31.	- 사업목적: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영한인, 탈북민, 현지인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 사업내용: 개회식, 강연, 패널토의 등
주니어평통 평화공공외교 현장견학 (벤쿠버협의회)	2025.7.14. ~2025.12.31.	- 사업목적: 현지 청소년을 주니어평통으로 위촉하고,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화공공외교에 대한 교육 추진 - 사업내용: 주의원 면담, 주의사당 방문 등

자료: e나라도움·보탬e 보조금통합포털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외동포청 2025년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사업 내역(일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및 내용
미주한인 이민 122주년 기념식 및 역사 교육 및 공공외교 (미국오렌지카운티한인회)	2025.1.13.	- 사업목적: 세대 간 연결과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현지 사회와 한인사회의 협력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사업내용: 기념식 및 기념식 계기 문화행사 개최
친한 외국인 기반구축 - 46회 국제 행사 (미국캔자스시티한인회)	2025.8.15. ~2025.8.17.	- 사업목적: 한국문화 홍보, 지역사회와 소통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사업내용: 한국문화 홍보 부스 운영 및 문화공연
2025년 Anzac Day 기념 참전용사 및 가족초청행사/교민단합대회 (뉴질랜드넬슨한인회)	2025.6.8.	- 사업목적: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평화와 희생의 가치 공유, 연대·협력 논의 - 사업내용: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식, 문화행사 및 오찬

자료: 재외동포재단 제출자료 및 언론보도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조사결과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통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북한학과 및 정치외교학과 설치 대학 등에 배포·공유함으로써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등의 적극적인 조사결과 배포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통일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산출한 조사결과를 타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결과를 공유하는 등 사업 결과가 매몰비용화 되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 자문기구 운영 시 면밀한 운영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은 통일 미래전략 구상·수립,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을 자문하기 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통일미래 관련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10억 4,7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37.2%)되고 6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21)]

[2025년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통일정책추진	1,756	1,756	-	△3	1,753	976	-	777	1,330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50	1,050	-	△3	1,047	390	-	65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3년 2월에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서 출범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5년 7월 25일에 현임 장관의 취임 이후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함께 폐지(2025.8.29.)되었음.

폐지 전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9조제1항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회의를 분기마다 1회, 동조 제2항에서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22)]

폐지 전까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고, 2025년에는 전체위원회 1회와 분과위원회 1회의 총 2회의 회의가 개최되였음.[23)]

---

21) 일반회계-통일정책추진(1031-300)(통일정책실)

22)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 또는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025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일자	출석대상	출석인원	회의안건	사례비 집행액
전체회의		2025.5.19.	40	31	- 정세 전환기 통일・대북정책 방향	8,250,000
분과회의	정치・군사	2025.4.29.	9	4	- 최근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통일・대북정책 방향	1,000,000
	경제	2025.5.8.	7	7		1,750,000
	사회・문화	2025.5.2.	7	5		1,000,000
	인권・인도	2025.4.23.	7	7		1,750,000
	국제협력	2025.5.7.	9	8		1,950,000
합계						**15,700,00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규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자문기구 운영 시 면밀한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 관련 시의적절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분기마다 1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음.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25.1.), 미-중 전략경쟁 심화('25.2.), 북한의 러-우전쟁 파병 인정('25.4.)과 북러관계 변화,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25.6.) 등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정세 변화를 파악・진단하고 통일 및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시의적절한 자문 제공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23) 5개 분과위원회가 각 1회 회의 개최하는 것을 분과위원회 회의 1회로 계산함.

그러나 2025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 실적은 각 1회에 불과하여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2023~2025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전체회의	**3회** (3.15. / 8.9. / 12.20.)	**2회** (3.15. / 9.6.)	**1회** (5.19.)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연 4회)
분과회의	**4회** (3.30.~4.4. / 4.24.~5.1. / 8.18.~9.4. / 11.15.)	**3회** (4.3.~4.12. / 7.23.~8.29. / 10.10.~10.23.)	**1회** (4.23.~5.8)	월 1회 개최 원칙 (연 12회)
위원장단 회의	6회 (4.5. / 5.3. / 6.20. / 8.2. / 9.15. / 11.14.)	5회 (2.13. / 3.29. / 4.29. / 6.10. / 9.13.)	-	
특별위원회 회의	2회 (3.31. / 4.21.)	3회 (4.24. / 5.2. / 5.20.)	-	

주) 5개 분과위원회가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분과위원회 1회로 기재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특히 5월 19일 전체회의 개최 이후에는 활동실적이 전무하여 이후 발생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등과 관련한 북한 동향에 대한 자문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24년 12월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방향 및 계획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거나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동 시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5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계획]

Ⅰ. 위원회 주요활동 및 성과 평가

□ 구성・운영

o 민간의 전문성・다양성과 정부의 역량을 결합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 통일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장관 직속「통일미래기획위원회」구성
- △제1기(35명, '23.2.~'24.2.) △제2기(45명, '24.3.~'25.3.) △제3기(40명, '25.3.~'26.3.)

o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등 각급 회의체 운영
- 위원장 1명 外 5개 분과(△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

□ 주요 활동

o 위원회·통일부간 긴밀한 협업 하에 통일미래 구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통일담론 논의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주력

o '24년 3.1절 경축사 이후「8.15 통일 독트린」발표시까지 내용 구성, 의견 수렴 등 핵심 자문 역할 수행

o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8.15 통일 독트린」발표 이후, 국내 공론화 및 국제사회 지지 확산을 위해 국내외 아웃리치 전개, 통일 공감대 형성

Ⅱ. 2025년 운영방향 및 계획

□ 운영방향

o 同 위원회를 플랫폼으로 국내외 反통일 담론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내·외 아웃리치 전개 등을 통해 민·관 통일 협력의 실효성 제고

- △美신행정부 출범, △미중 전략경쟁 심화, △러북밀착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및 대내외 전환기에 대응

□ 향후계획

o △국제정세 전환기 통일·대북정책 방향 자문 △국민적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공론화 행사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공공외교 등

- 6월 이후 세부 활동계획은 국내외 정세 변화를 보아가며 구체화 논의

자료: 통일부

결국 면밀하지 못한 운영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적시적인 회의 개최 및 자문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2025년 중 편성되었던 예산의 60% 이상이 불용되었고, 정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집행이 저해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자문기구 운영 시 면밀한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 관련 시의적절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통일정책추진 사업: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가. 개 요

‘통일정책추진’ 사업은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의 기반조성 및 통일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17억 5,300만원 중 9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55.7%)되고 7억 7,700만원이 불용되었음.[24)]

[2025년도 통일정책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통일정책추진	1,756	1,756	-	△3	1,753	976	-	777	1,330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706	706	-	-	706	586	-	120	665
일반용역비	139	139	-	-	139	100		39	139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50	1,050	-	△3	1,047	390	-	657	-
일반용역비	214	214	-	-	214	61	-	153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통일부는 국내 주요 학회들과 통일부의 핵심 정책의제에 대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해당 의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 활성화 및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였음.

이를 위해 동 사업에 편성된 일반용역비 3억 5,300만원 중 1억 6,090만원으로 9건의 행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집행률 45.6%)하였음.

[2025년 통일정책추진 사업 일반용역비 편성 세부내역]

□ **통일정책추진(일반용역비)**: 3억 5,300만원

○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1억 3,900만원
- 통일·통합 공론화 사업 용역비 : 1억 400만원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감대 확산(위탁운영비): 3,500만원

○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2억 1,400만원
- 자문단 출범식 행사위탁비(일반용역비) 7,400만원

24) 일반회계-통일정책추진(1031-300)(통일정책실)

- 정책공감대 형성 홍보 자료(일반용역비) : 2,000만원
- 정책공감대 형성 콘텐츠 제작(일반용역비) : 3,000만원
- 매체홍보 위탁(일반용역비) : 9,000만원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일반용역비 계약·집행 내역]

(단위: 천원)

내역사업명	계약명	계약기간	집행액	계약상대자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세션 운영」 용역	2025.6.12. ~2025.7.10.	20,000	(사단)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세션 운영 용역	2025.8.19. ~2025.9.5.	10,000	한국정치학회
	「한국세계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세션 운영 용역	2025.8.29. ~2025.9.17.	5,000	한국세계지역학회
	접경지역 평화 공감대 확산 사업	2025.10.28. ~2025.11.27.	35,000	주식회사 메이크잇해픈
	'통일부-한국정치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용역	2025.12.4. ~2025.12.19.	20,000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세션 용역	2025.12.4. ~2025.12.19.	10,000	(사단)한국국제정치학회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5 세계정치학회 통일/북한 세션 위탁 용역	2025.4.3. ~2025.7.31.	20,000	한국정치학회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 계기 통일/북한경제 세션 위탁 용역	2025.4.22. ~2025.8.31.	20,000	(사)한국경제학회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방향' 세미나 위탁 용역	2025.9.22. ~2025.10.15.	20,900	㈜엠박스 커뮤니케이션
합계			**160,90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행사운영, 홍보자료 제작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특정 학술단체의 연례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하는 경우 비용을 분담하여 집행하는 등 규정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통일부가 2025년에 집행한 일반용역비의 실제 행사 내역을 살펴보면 9건의 행사 중 통일부 주최의 행사는 평화 토론회 '접경의 목소리, 평화를 말하다' 등 3건이었고, 나머지 6건은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등 계약상대자가 주최하는 연례학술대회였음.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통일 관련 논의 활성화 및 공론화를 위해 통일부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된 주제로 영향력 있는 여러 학회(한국정치학회, 세계정치학회 등)와 협력하여 행사(학술회의, 세미나) 개최를 위탁하였다는 설명임.

[실제 행사 개최내역]

행사명	일자/장소	(공동)주최	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2025.6.25.~27. 소노캄 여수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한국정당학회	외교부, **통일부**, 최종현학술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일강원연구원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2025.8.21.~23. 부경대	한국정치학회, 서울대학교 통일정책연구원, 한반도평화국립대네트워크, 부경대학교, 국가전략사업단, 한국평화연구학회, 경남통일교육센터, 이화통일교육선도사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일부**, SK telecom,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한국주민자치학회
한국세계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2025.8.20. 이화여대	한국세계지역학회, 이화통일교육선도사업단	**통일부**
평화 토론회 '접경의 목소리, 평화를 말하다' (접경지역 평화 공감대 확산 사업)	2025.11.10. 캠프그리브스	**통일부**	-
통일부-한국정치학회 공동세미나	2025.12.8.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정치학회, **통일부**	-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2025.12.11.~12. 국립외교원	한국국제정치학회	**통일부**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 총회	2025.7.13.~16. 코엑스	세계정치학회	-

행사명	일자/장소	(공동)주최	후원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 (ESWC)	2025.8.18.~22. 코엑스	세계계량경제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학회, 한국은행,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대한항공,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우리금융, 한화생명, SK 미래에셋증권, 아모레퍼시픽, 삼일회계법인, 세아홀딩스, 신한은행, 한국무역협회, KDB산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방향 세미나	2025.9.24. 코리아나호텔	북한연구학회, **통일부**	-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비목별 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임.

민간 연구단체에서 실시하는 연례학술대회는 연구단체의 자체 행사이고, 통일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일반용역비로 연구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 것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부는 기관업무를 보조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해 편성한 일반용역비를 사실상 민간 연구단체의 연례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집행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에 위배되는 집행이라고 볼 여지도 있음.[25)]

통일부가 제시한 행사 목적과 같이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공론화 확대를 위하여 민간 학술대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예산을 민간경상보조(320-01목) 비목으로 편성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모절차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임.

또한 통일부의 설명대로 연구단체와 학술대회 중 일부 세션을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당 세션 개최 비용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면, 통일부가 직접 행사대행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편성된 비목과 공동주최라는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5)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사회자 등의 사례비와 대관료 등을 직접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집행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025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개요]

☐ **행 사 명**: 2025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 **일시 및 장소**: 2025.6.26.(목), 소노캄 여수
☐ **주　　제**: 복합 다중 위기의 시대, 신정부 과학기술외교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
☐ **소요경비**: 4,000만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외교부 기후환경외교국-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관련 세부집행내역]

(단위: 원)

세목	일자	집행내역	집행액	수령인명
일반수용비 (210-01)	2025.7.16.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사례비	7,400,000	김○○ 외 17명
	2025.7.17.	스텝 인건비	2,100,000	김○○ 외 14명
		사진촬영비	2,000,000	김○
		기념품 제작비	6,000,000	조아기프트㈜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1,000,000	이레기획
		자료집 및 프로그램북 인쇄비	3,500,000	경성문화사
		회의장 조성비	5,000,000	㈜소노인터내셔널 여수지점
		영상제작 및 디자인비	3,000,000	㈜블루몬미디어
	소계		**30,000,000**	
임차료 (210-07)	2025.7.18.	대관료	5,000,000	㈜소노인터내셔널 여수지점
	2025.7.17.	영상·음향장비 임차비	5,000,000	㈜블루몬미디어
	소계		**10,000,000**	
합계			**40,000,00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집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 사업 추진 지양 필요

가. 개 요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은 북한 공개정보·실상의 이해 제고를 위해 북한정보 포털(nkinfo.unikora.go.kr) 내 텍스트 형식의 콘텐츠를 카드뉴스·인포그래픽 및 웹툰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1억원 중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0%)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26)]

[2025년도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세분석 역량 강화	2,251	2,251	-	3	2,254	2,171	-	83	3,332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100	100	-	-	100	98	-	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사업 예산의 95%를 차지하는 일반연구비는 북한법령 데이터화를 통한 검색서비스 개발 및 기제작된 북한이해 시각화 콘텐츠 내용 최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계약을 통해 집행되었음.

[2025년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 계약내역]

(단위: 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2025.5.21. ~2025.11.30.	95,000,00	㈜아이지아이 코리아	수의계약 (단일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개 요
    o 사 업 명: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 서비스 개발

26) 일반회계-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정세분석국)

o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11.30.
o 사업내용: 북한법령 데이터화를 통한 검색서비스 개발 및 ‘북한이해’ 시각화 콘텐츠 내용 최신화
o 사업금액: 95,000,000원(VAT 포함)
o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 내용

o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 서비스 플랫폼 구축
o 「북한정보포털」내 ‘북한이해’ 시각화 콘텐츠 내용 최신화

자료: 나라장터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용역(2026.3.26.)’ 입찰공고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당초 2025년 예산에 편성된 시각화자료 콘텐츠 기획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가재정법」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는 2024년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사업을 시작하여 총 150건의 시각화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이를 2025년 2월 14일에 북한정보포털에 공개 게시하였음.

[2024년 북한정보포털 시각화 콘텐츠 제작 건수 및 콘텐츠별 조회수]

(단위: 건, 회)

구분		제작수량	조회수	비고
카드뉴스(92)	정치군사	18	3,772	
	경제	33	2,205	
	사회문화	41	6,170	북한인권보고서 8건 제작 포함
인포그래픽(43)	정치군사	23	2,044	
	경제	11	744	
	사회문화	9	794	
웹툰(6)		6	7,570	
쇼츠(7)		7	1,691	
주요 남북관계 연표(2)		2	736	
합계		**150**	**25,726**	

주) 조회수는 2026년 4월 말 기준
자료: 통일부

2025년에는 2024년에 이어 시각화 자료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일반연구비 9,500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5년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 편성 세부내역]

□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24) 2억 700만원 → ('25) 1억만원, 1억 700만원 감액
- (요구) '북한정보포털' 내 텍스트 형식의 콘텐츠를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할 필요, '24년도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24년도 대비 51.7% 감액 요구
- (산출) 일반연구비 9,500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억 700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700만원 - 기술평가 사례비 및 조달수수료 등 : 700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2억원 - 시각화 자료 콘텐츠 기획 개발 : 1억원 - 시각 콘텐츠 디자인 : 1억원	1억원	○ **일반수용비(210-01)** : 5,000천원 - 기술평가 사례비 및 조달수수료 등 : 500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9,500만원 - 시각화 자료 콘텐츠 기획 개발 : 9,500만원

자료: 통일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통일부는 2025년 예산에 편성된 시각화 자료 콘텐츠 기획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인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음.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결과보고서 중 주요 과업내용]

□ **북한법령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구조화**
- 북한정보포털에 제공된 문서파일(PDF, HWP 등)을 전자 텍스트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
- 법령명, 시행일, 번호 등 메타정보를 포함한 표준 구조 설계 및 확장형 저장 방식 적용

□ **검색서비스 구축**
- 키워드 기반 검색 시스템을 구현하고, 검색 대상별 필터링 및 메타정보 분류 기능 제공
- 메타데이터 기반 고급 필터 검색, 자동완성, 최근 검색어, 시각화 출력 등 탐색 편의성 강화
- 반응형 웹 UI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 검색환경 제공

□ **AI 기반 지능형 검색(PoC)**
- 자연어 질의 기반의 의미 분석, 유사문장 추천 등 AI 기술을 활용한 검색 기능 시범 구현
- 음성 질의 검색, 자동 요약 등 고도화 기능 가능성 검토

□ **시각화 콘텐츠 최신화**
- 카드뉴스, 웹툰 등 기존 콘텐츠를 최신 북한 정책과 사회 변화에 맞춰 재구성
- 주제별 재분석과 스토리 확장을 통해 국민 이해도 향상

□ **북한정보포털과의 연계 및 운영관리**
- 법령 콘텐츠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한 관리자 시스템 구축
- 검색통계, 다운로드, 접속 이력 등 데이터 제공
- G-클라우드 보안환경 적용 및 관리자 교육, 기술이전 문서 포함
- 데이터 품질관리, 보안 정책, 운영 안정화 방안 반영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각화 자료 콘텐츠 기획 개발은 북한정보포털 내의 텍스트 형식의 콘텐츠를 카드뉴스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것이고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은 문서파일 형태의 북한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당초 사업설명으로 제시된 것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집행한 것임.[27]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부는 시각화 콘텐츠 기획·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였으므로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28]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예산 집행 시 「국가재정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예산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27) 기존 제작된 시각화 콘텐츠를 최신화하는 것 또한 포털 내 텍스트 형식의 콘텐츠를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목적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8.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준수 필요

가. 개 요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은 정부혁신·창의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2억 8,000만원 중 2억 7,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29)]

[2025년도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통일업무지원	1,118	1,118	-	±14	1,118	1,062	-	56	1,137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80	280	-	±2	280	273	-	7	28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통일부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회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전체회의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30)]

[2025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 **임기**: 1년(2025.1.1.~2025.12.31.)
□ **구성**: 6개 분과, 총 92명 규모로 구성
※ 분과: 통일정책, 인권인도, 정보분석, 통일협력, 남북관계관리, 통일교육
※ 2026년에는 6개 분과, 총 135명 규모로 구성
(분과: 통일정책, 평화교류, 정세분석, 사회문화협력, 남북회담, 평화통일민주교육)
□ **운영**: 정례자문(전체회의 1회, 분기별 분과회의 1회) 및 수시자문(필요시)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9) 일반회계-통일업무지원(7032-303)(기획조정실)

30)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025년 중 전체회의는 1회, 분과회의는 총 12회 개최되었고, 이를 위해 회의출석수당 4,08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일자	회의안건	출석 대상	출석 인원	수당 집행액
전체회의		2025.2.11.	- 위촉장 수여 및 현안 토의	92	69	13,800,000
분과 회의	통일 정책	2025.3.25.	- 국제·한반도 정세평가 및 통일·대북 정책 추진방향 - 북한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	15	11	2,600,000
		2025.7.31.	- 한반도 정세평가 및 대북·통일정책 추진 방향 등 의견수렴	15	11	2,400,000
	인권 인도	2025.4.30.	- 정책 추진 현황 보고 - 현안 토의	16	11	2,200,000
	정보 분석	2025.4.7.~8.	- 분과위원장 선출 - 우크라이나 전쟁 평가 및 국제안보 동향	14	13	2,700,000
		2025.11.18.~23.	-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대외 입장 평가 - 제8기 제13차 당 전원회의 전망	14	14	3,000,000
		2025.12.23.	- 제8기 제13차 당 전원회의 평가 및 제9차 당대회 전망	14	13	2,600,000
	통일 협력	2025.3.26.	- 2025년도 통일협력국 업무 소개 및 관련 자문 - 분과위원장 호선	14	11	1,650,000
	남북 관계 관리	[1차] 2025.4.30. [2차] 2025.5.8.	-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관리방안 및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 남북대화 관점에서 北 2국가론 대응방안	17	13	3,500,000
		2025.9.23.	- 최근 대내외 정세평가 및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 정책제언	17	10	2,000,000
	통일 교육	2025.3.24.~28.	- 통일교육주간 행사 관련 의견수렴 - 글로벌 통일체험 관련 의견수렴	16	16	2,400,000
		2025.8.1.~6.	- 제13회 통일교육 주간 평가 - 2025년 국립통일 교육원 전략체계도 개선(안) 관련 의견 수렴	16	13	1,950,000
합계				**260**	**205**	**40,800,00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시 규정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제2항은 정책자문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31)]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정책자문위원회에 통일정책·인권인도·정보분석·통일협력·남북관계관리·통일교육분과를 두고 있으므로, 규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2025년 중 총 24회(6개 분과 × 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그러나 2025년 중 분과위원회는 총 12회 개최되었고, 특히 4분기에는 정보분석분과 회의만 2회 개최되는 등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2025년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회)

분과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통일정책	1 (3.15.)	-	1 (7.31.)	-	2
인권인도	-	1 (4.30.)	-	-	1
정보분석	-	1 (4.7.~8.)	-	2 (11.18.~23., 12.23.)	3
통일협력	1 (3.26.)	-	-	-	1
남북관계관리	-	2 (4.30., 5.8.)	1 (9.23.)	-	3
통일교육	1 (3.24.~28.)	-	1 (8.1.~6.)	-	2
합계	**3**	**4**	**3**	**2**	**12**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1)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분과위 소속 위원 외에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2월에 개최된 전체회의에 이어서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회의가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2025년 6월 새로운 행정부 출범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기능 조정 및 통일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구성되었던 분과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통일부의 설명대로 전체회의 개최를 분기별 개최횟수에 산입하더라도 1분기만 규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기간은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분과의 경우 2025년과 2026년에 구성된 분과 중 인권인도분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분과를 보면 통일정책분과의 경우 그 명칭이 동일하고, 정보분석분과와 정세분석분과, 통일교육분과와 평화통일민주교육분과 등은 명칭과 같이 그 분야가 유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25년 6월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기존 구성되었던 분과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인원을 조정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방안은 추진되지 않았음.

[2025·2026년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및 구성인원 현황]

(단위: 명)

2025년 분과명	구성인원	2026년 분과명	구성인원
통일정책	15	통일정책	25
정보분석	14	정세분석	21
통일협력	14	평화교류	24
		사회문화협력	24
남북관계관리	17	남북회담	18
통일교육	16	평화통일민주교육	23
인권인도	16	-	-
합계	**92**	**합계**	**135**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국 정책자문위원회가 규정된 대로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일부는 향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시 규정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통일부 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9.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사업 규모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은 미국・일본 등 유관국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납북자 문제 협력 모색을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2,600만원 중 600만원이 집행(집행률 23.1%)되고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32)]

[2025년도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송환 업무 지원	601	601	-	3	604	516	-	88	732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62	62	-	△36	26	6	-	20	6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 예산은 유관국・국제기구와의 회의 및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비로서 국외업무여비,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를 편성하였는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국외출장 기준 횟수를 2회 늘려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편성 세부내역]

□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24) 5,200만원 → (’25) 6,200만원, 1,000만원 증액
- (요구) 일본・미국 등 유관국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납북자 문제 협력 모색, 6,200만원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3,400만원, 국외여비 2,000만원, 임차료 800만원

○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4년 예산	산출내역	2025년 예산	산출내역
5,200만원	○ **일반수용비(210-01)**: 3,400만원 - 2회 × 1식 × 1,700만원 = 3,400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000만원 - 2회 × 250만원 × 2명 = 1,000만원 ○ **임차료(210-07)** : 2,000만원 - 1회 × 800만원 = 800만원	6,200만원	○ **일반수용비(210-01)**: 3,400만원 - 2회 × 1식 × 1,700만원 = 3,400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000만원 - 4회 × 250만원 × 2명 = 2,000만원 ○ **임차료(210-07)** : 2,000만원 - 1회 × 800만원 = 800만원

자료: 통일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2) 일반회계-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송환 업무 지원(2133-306)(사회문화협력국)

2025년에는 편성된 예산 6,200만원 중 600만원을 소모품 등 구입비용으로 집행하였음.

[2025년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예산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구분	편성근거	집행내역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 6,200만원 - 유엔・미국 등 협력: 5,200만원 - 한일 협력채널 구축: 1,000만원	○ 600만원 - 소모품 등 구입: 600만원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은 연례적인 감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2025년 6월 이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이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함으로써 납북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납북자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전시납북자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후납북자를 포함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을 말하며, 통일부에 따르면 전시・전후 납북자는 약 10만여 명으로 추산됨.[3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더불어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34)35)]

33) 전시납북자 95,000여 명(추정),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 결정(2017.5.)에 따른 전시납북자 4,777명 및 전후납북자 516명

3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유관국·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대응하고자 2024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매년 편성된 예산의 상당부분이 감액조정되어 다른 내역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특히 2025년에는 감액조정된 금액이 이 사업 전체 예산의 58.1%(3,600만원)에 달하였는데, 본예산 대비 감액된 예산현액의 집행률도 23.1%에 그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2024~2026년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예산 편성·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E/A	E/D
2024년	52	52	-	△19	33	33	-	-	63.5	100.0
2025년	62	62	-	△36	26	6	-	20	9.7	23.1
2026년	62	62	-	-	-	-	-	-	-	-

주 1) '이·전용 등'에 내역변경 및 세목조정을 포함
2) 2026년: 2026년 4월 말 기준
자료: 통일부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6월 이후 2026년 4월까지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5년 11월 통일부 직제개편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던 납북자대책팀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폐합되어 전담 조직도 해체되었음.

[2025년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세부집행내역]

(단위: 천원)

일자	건명	세목	집행액	수령인명
2025.2.7.	감사패 제작비(주 독일통일관 전수)	일반수용비	2,130	금빛제작소
2025.3.13.	외교행낭 발송료	일반수용비	135	선진해운항공(주)
2025.3.18.	업무관련 사무용품 구입(토너)	일반수용비	1,800	준성종합사무기기
2025.5.14.	IRFBA, WGAD, APPG-NK 의장단 화상회의 서한 동시통역비 지급	일반수용비	700	이○○
2025.5.28.	납북피해자 문제 해결 업무에 필요한 업무용 쇼핑백 제작	일반수용비	902	웃고문화사
계			5,667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2025년 제1회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2025.6.28.) 개최를 위해 이 사업에서 감액조정(세목조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해외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사업을 미실시하였다는 입장이나, 국제기구 회의 참석 및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등을 위해 소요되는 국외업무여비는 감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감액조정 전인 2025년 6월 이전에 유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회의 및 출장 등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다른 사업 추진을 위해 감액조정이 된 것이므로 이는 사업의 필요성이 낮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2025년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5.20.)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133-306)	210-01	28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133-306)	210-14	2024년 12월 납북자 기억의 날(6.28.) 법정 기념일 지정에 따라, 법정 기념일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실시하고자 세목 조정
		210-07	8			
합계			36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국가재정법」은 제1조에서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신규 편성된 이후 연례적인 감액조정 및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36)]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이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함으로써 납북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36)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 · 기금 · 결산 ·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　타】

10.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통일부에 대해 시정요구 40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건・주의 11건・제도개선 29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	11	29	1	40
예비비	-	-	-	-	-	-	-
합계	-	-	1	11	29	1	40

통일부는 시정요구사항 40건에 대해 3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0%)하고 8건을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40	32	80	8
예비비	-	-	-	-
합계	40	32	80	8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통일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통일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5년도 본예산	(61) 통일부는 탈북민 피폭 건강검진 결과가 핵실험 영향의 규명에 활용되도록 충실한 데이터 공개를 전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600만원(△46.2%)이 적은 700만원으로, 전년과 수납액이 동일함.[1)]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	5	7	2	13	13	7	△6	-
총수입	5	5	7	2	13	13	7	△6	-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9억 2,400만원(△2.6%)이 적은 348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400만원(2.4%)이 증가됨.

문의: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4,974	34,974	33,996	△978	35,764	35,764	34,840	△924	844
총지출	34,974	34,974	33,996	△978	35,764	35,764	34,840	△924	844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300만원으로, 1,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00만원이 수납(수납률 36.8%)되고, 1,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3	13	-	13	19	7	12	-
합 계	13	13	-	13	19	7	12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57억 6,400만원으로, 348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4%)되고 9억 2,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5,764	35,764	-	-	-	35,764	34,840	-	924
합 계	35,764	35,764	-	-	-	35,764	34,840	-	924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산은 전년 대비 1억 4,900만원이 감소된 287억 4,0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이 감가상각 등으로 1억 4,900만원 감소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과 같이 기말 잔액이 없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억 4,900만원이 감소된 287억 4,0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61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9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61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9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8,740	28,889	△149	△0.5
		금융자산	-	-	-	-
		유·무형자산	28,740	28,889	△149	△0.5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	-	-	-
		차입부채	-	-	-	-
		충당부채	-	-	-	-
		기타부채	-	-	-	-
	순자산		28,740	28,889	△149	△0.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6,144	35,085	1,059	3.0
	재정운영순원가		36,137	35,078	1,059	3.0
	재정운영결과		36,137	35,078	1,059	3.0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5년도 주요 정책추진 방향인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일반회계(2개 프로그램)에서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운영’ 및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총 11개 세부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자문회의 운영’ 사업의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성 부의장 인원 및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향후 여성 부의장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내·해외 출범회의’ 사업은 제22기 출범회의 참석률이 48.7%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향후 회의일정 조기 수립과 함께 출범회의의 상징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출범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자문회의 운영 사업: 여성 부의장 비율 확대 노력 필요

가. 개　요

‘자문회의 운영’ 사업은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통일정책을 건의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등 법정회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0억 5,400만원 중 38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8%)되고 2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자문회의 운영	4,054	4,054	-	±143	4,054	3,844	-	210	4,66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평화통일정책 관련 자문 및 건의,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및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인사들을 2년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3)]

---

2) 일반회계-자문회의 운영(1031-300)(자문건의국, 위원지원국)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3년 9월 1일에 총 21,984명의 제21기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2년 임기로 활동하였으며. 2025년 11월 1일에는 제22기 자문위원 22,824명이 위촉되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는데 제22기 자문회의에서도 25명의 부의장이 임명되었음.[4)]

부의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당연직 상임위원이 되고, 동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신 지역의 지역회의를 주재함.[5)]

[제19~22기 자문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제19기 자문회의 ('19.9.1.~'21.8.31.)	제20기 자문회의 ('21.9.1.~'23.8.31.)	제21기 자문회의 ('23.9.1.~'25.8.31.)	제22기 자문회의 ('25.11.1.~'27.10.31.)
국내	지역대표	3,118	2,944	3,288	3,066
	지역부의장	**25**	**25**	**25**	**25**
	지역협의회장	271	273	273	273
	직능대표	12,282	13,156	14,658	15,721
	소계	**15,400**	**16,100**	**17,946**	**18,787**
해외	재외동포대표	3,600	3,900	4,038	4,037
총계		**19,000**	**20,000**	**21,984**	**22,82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 · 직능단체 · 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의장 · 부의장) 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5)「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상임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29조(지역회의 등)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나. 검토의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성 부의장 인원 및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향후 여성 부의장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제2항은 의장이 부의장을 임명하는 경우, 여성이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6)]

부의장이 동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자의 출신 지역의 지역회의를 주재하여 지역회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고려하면, 동법 제6조제2항은 부의장 중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 자문위원에게 할당하는 방식을 통해 여성 자문위원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따르면 제19·20기 자문회의 부의장 25명 중 여성은 각각 8명(32%)과 7명(28%)으로 25%를 초과한 비율이었음.

그러나 제21기 자문회의의 경우 부의장 25명 중 여성은 총 2명으로 8%에 그쳤고, 제22기 자문회의에서는 여성 부의장이 1명으로 전체 부의장의 4% 비율에 그쳐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제19~22기 자문회의 부의장 현황]

(단위: 명)

구분		제19기 자문회의 ('19.9.1.~'21.8.31.)	제20기 자문회의 ('21.9.1.~'23.8.31.)	제21기 자문회의 ('23.9.1.~'25.8.31.)	제22기 자문회의 ('25.11.1.~'27.10.31.)
부의장	남성	17 (68%)	18 (72%)	23 (92%)	24 (96%)
	여성	**8 (32%)**	**7 (28%)**	**2 (8%)**	**1 (4%)**
	계	25 (100%)	25 (100%)	25 (100%)	25 (1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향후 자문회의 구성 시 여성 자문위원의 역할 증대라는 법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여성이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의장 · 부의장) 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2. 국내·해외 출범회의 사업: 출범회의 참석률 제고 필요

가. 개 요

‘국내・해외 출범회의’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활동방향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9억 9,100만원 중 18억 4,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8%)되고 1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5년도 국내·해외 출범회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자문회의 운영	4,054	4,054	-	±143	4,054	3,844	-	210	4,663
국내・해외 출범회의	2,041	2,041	-	△50	1,991	1,847	-	144	2,86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에는 제22기 자문회의 출범에 따라 12월 2일에 경기도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가 개최되었음.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개요]

구분	내용
회의명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일시 및 장소	2025. 12. 2.(화) 14:00~16:00,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
슬로건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
참석대상	• 자문위원 18,814명 - 국내 자문위원 18,556명 - 해외 자문위원 258명(간부 154명, 공공외교분과위원장 및 위원 104명) • 초청인사 200여 명(정당・국회, 행정부, 광역・기초단체장 등)
참석	• 자문위원 9,159명 - 국내 자문위원 8,935명 - 해외 자문위원 224명(간부 120명, 공공외교분과위원장 및 위원 104명) • 초청인사 35명

7) 일반회계-자문회의 운영(1031-300)(자문건의국, 위원지원국)

구분	내용
주요내용	• 개회 선언 • 제22기 구성 경과보고 • 의장(대통령) 개회사 • 제22기 활동방향 보고 및 의결 • 자문위원 선서 및 다짐 발표 • 폐회 선언
집행액	10억 7,968만원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제22기 출범회의 참석률은 48.7%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향후 회의일정 조기 수립과 함께 출범회의의 상징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출범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범회의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0조에 따라 의장이 자문회의 임기 중 1회 소집하는 전체회의로서 가장 많은 자문위원이 참여하고 최상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의결기구로서 상징성과 중요성이 큰 법정회의임.[8)]

또한 이 회의에서 위촉장 수여 및 자문위원 선서 등을 통해 자문회의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자문위원의 소속감 및 활동 의지를 고양하고, 의장(대통령)의 개회사 및 수석부의장의 보고 등을 통해 향후 임기 중의 활동방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음.

그러나 제22기 출범회의 참석률은 48.7%로, 제17기 60.1%, 제20기 64.0%에 비해 저조하였음.

[제17기~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개최 현황]

구 분	제17기	제18기	제20기	제21기	제22기
임기	'15.7.1.~'17.6.30.	'17.9.1.~'19.8.31.	'21.9.1.~'23.8.31.	'23.9.1.~'25.8.31.	'25.11.1.~'27.10.31.
일시	'15.7.1.(수)	'17.10.31.(화)	'21.12.17.(금)	'23.11.28.(화)	'25.12.2.(화)

8)「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 · 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구 분	제17기	제18기	제20기	제21기	제22기
장소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강릉 아이스아레나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참석률	**60.1%** (10,106 / 16,805)	**48.1%** (7,781 / 16,174)	**64.0%** (12,613 / 19,718)	**48.8%** (10,525 / 21,567)	**48.7%** (9,159/18,814)

주) 제19기 출범회의 미실시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 개최된 제18기 출범회의의 참석률이 48.1%로 제21기 출범회의 참석률보다 낮았으나, 이때는 회의가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됨에 따라 거리 문제가 참석률 저조에 크게 작용하였고, 당시 회의장 가용 좌석수(9,000석)의 한계로 참석 가능한 자문위원의 수를 55%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22기의 참석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제20기 출범회의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원격영상회의를 병행함으로써 참석률이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 이를 제외하면, 제18기 출범회의부터 참석률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5년의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문위원 위촉 절차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출범회의 날짜와 장소가 11월에 결정되는 등 자문위원에게 참석 안내 및 홍보를 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평일·연말에 회의가 개최된 점 또한 참석률 저조의 원인이 되었다는 설명임.

출범회의는 자문위원 임기 중 1회만 개최되고, 의장이 참석하여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의장에게 건의하는 법정회의로서 자문위원의 참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참석률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출범회의 프로그램 중 '제22기 활동방향 보고 및 의결' 순서가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2조는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9] 이러한 의결 절차의 법률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의 적극적인 참석이 필요함.[10]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 순서가 형식상의 의결로서, 박수로 찬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하였음.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개최 결과보고서 중 활동방향 보고 및 의결 관련 내용(발췌)]

⑧ 제22기 활동방향 보고 및 의결

○ 보고자: 이해찬 수석부의장

○ 주요 내용

① 국민의 희망을 담은 평화통일 정책 건의

- 국민여론에 기반한 국민참여형 정책건의를 추진
- 온라인 소통플랫폼「평화통일, 국민이 합니다」개설

②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여는 평화 정착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로 소통과 존중의 평화문화 확산
- '생활 속 평화운동' 국민의 일상에서 평화 체감하도록 추진

③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평화통일 구현

- 청년 자문위원이 주체가 되는 평화통일 플랫폼 강화
- '평화 촉진자', '피스 리더'로서의 청년의 역량 강화

④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K-평화 네트워크 구축

- 해외 현지사회가 참여하는 K-평화 활동 추진
-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재외동포 사회의 공감대 확산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향후 출범회의를 자문회의 출범시기에 맞추어 조기에 개최함과 동시에 회의 일정을 빠르게 확정하여 자문위원에게 충분한 안내·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출범회의의 주말 개최, 프로그램 다양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출범회의 참석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 시정요구 7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건・제도개선 6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1	6	-	7
예비비	-	-	-	-	-	-	-
합계	-	-	-	1	6	-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시정요구사항 7건에 대해 5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1.4%)하고 2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7	5	71.4	2
예비비	-	-	-	-
합계	7	5	71.4	2

재외동포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억 2,700만원(51.4%)이 많은 15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4,900만원(△82.4%)이 감소됨.[1)2)]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	9	8,802	8,793	1,026	1,026	1,553	527	△7,249
총수입	9	9	8,802	8,793	1,026	1,026	1,553	527	△7,249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8억 7,700만원(△4.6%)이 적은 1,021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600만원(1.5%)이 증가됨.

문의: 02-6788-5696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 舊 재외동포재단 해산 시 보유자금(58억 2,000만원) 반납액 포함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06,660	106,660	100,700	△5,960	107,063	107,063	102,186	△4,877	1,486
총지출	106,660	106,660	100,700	△5,960	107,063	107,063	102,186	△4,877	1,486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억 2,600만원으로, 15억 5,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이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026	1,026	-	1,026	1,553	1,553	-	-
합 계	1,026	1,026	-	1,026	1,553	1,553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78억 8,300만원으로, 1,021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7%)되고 29억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7억 8,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07,063	107,063	820	-	-	107,883	102,186	2,908	2,789
합 계	107,063	107,063	820	-	-	107,883	102,186	2,908	2,789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재외동포청 자산은 전년 대비 63억 3,200만원 감소한 148억 8,7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5,000만원, 기타자산이 4억 3,000만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자산이 68억 1,2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6억 8,900만원 증가된 6억 8,900만원으로 충당부채 6억 3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0억 2,100만원이 감소한 141억 9,8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의 프로그램순원가는 831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억 2,8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066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4억 4,6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4,887	21,219	△6,332	△29.8
		금융자산	1,657	1,607	50	3.1
		유·무형자산	11,480	18,292	△6,812	△37.2
		기타자산	1,750	1,320	430	32.6
	부 채		689	-	689	순증
		차입부채	86	-	86	순증
		충당부채	603	-	603	순증
		기타부채	-	-	-	-
	순자산		14,198	21,219	△7,021	△33.1
		기본순자산	-	-	-	-
		적립금및잉여금	14,198	21,219	△7,021	△33.1
		순자산조정	-	-	-	-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83,150	70,322	12,828	18.2
	재정운영순원가		106,666	90,206	16,460	18.2
	재정운영결과		106,666	90,206	16,460	18.2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재외동포청은 ①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②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③ 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호·지원 강화, ④ 한인 네트워크 강화, ⑤ 편리한 동포 생활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에 2개의 프로그램과 32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재외동포 보듬기, 한인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모국과의 유대 강화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사업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이 연례적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정책연구비 중 상당액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향후 재외동포청은 정책연구용역 추진 시기를 조정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재외동포단체 및 한인회 대상 보조금 사업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재외동포청은 향후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및 이를 통한 사업성과 관리·감독이 법령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은 2024·2025년도 관리용역비 예산의 상당액이 감액조정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청은 향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취지에 따라 낙찰차액을 세목조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용역비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사업: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 필요 등

가. 개　요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사업은 재외동포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평가 및 개선점 발굴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억 9,600만원 중 8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77.6%)되고 1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5년도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1,114	1,114	303	△50	1,367	1,104	182	81	583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861	861	260	△25	1,096	851	182	63	414
정책연구비	456	456	260	△52	664	463	182	18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에 재외동포청은 동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260-02목)로 5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3억 8,400만원의 계약액 중 2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음.

3) 일반회계-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5031-301)(재외동포정책국)

[2025년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내역]

(단위 : 백만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한글학교 표준 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5.9.~'25.12.	70	70	-
필리핀 체류 한인 혼혈자녀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사)한국동남아협회	'25.10.~'26.2.	86	55	31
해외 및 국내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	(사)글로벌컨센서스 연구원	'25.10.~'26.5.주)	110	77	33
재외동포청년 직업교육·훈련 필요 분야 및 직종 수요조사 연구용역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25.11.~'26.2.	20	-	20
해외이주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5.12.~'26.7.	98	-	98
합계			**384**	**202**	**182**

주) 당초 종료기간 '26.4.13.에서 '26.5.27.로 변경(사유: 러-우 전쟁 상황 지속에 따른 우크라이나 지역 설문 응답자 확보 곤란)

자료: 재외동포청

나. 검토의견

첫째,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이 연례적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정책연구비 중 상당액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향후 재외동포청은 정책연구용역 추진 시기를 조정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청이 2024·2025년에 체결한 17건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12건의 계약 중 9건(75%), 2025년에는 5건의 계약 중 4건(80%)이 각각 그 다음 회계연도에 용역 수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체결되었음.

[2024·2025년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사업 정책연구비 계약 체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2024[1)]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사)다산경제연구원	'24.7.~'24.11.	36	36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재외동포 이해 교육의 교육과정(학습성취기준) 및 교과서 반영 방안 연구용역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4.12.-'25.3.	78	55	23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연구용역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4.7.-'25.1.	70	49	21
	국내동포 정착지원안내서 제작 연구용역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4.7.-'25.1.	40	28	12
	재외동포현황 통계 개선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4.5.-'25.1.	93	65	28
	재외동포기업 모국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 용역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4.12.~'25.5.	95	-	95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연구용역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	'24.12.~'25.6.	80	64	16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북미 지역 재외동포정책 연구 용역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4.10.~'25.2.	49	42	7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중남미 지역 재외동포정책 연구 용역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4.10.~'25.2.	50	42	8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글로벌컨센서스 연구원	'24.3.~'24.8.	80	80	-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고려인 실태조사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24.4.~'24.9.	56	56	-
	사할린동포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엔케이소셜리서치	'24.12.~'25.5.	50	-	50
	소계			**776**	**517**	**260**
2025	한글학교 표준 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5.9.~'25.12.	70	70	-
	필리핀 체류 한인 혼혈자녀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사)한국동남아협회	'25.10.~'26.2.	86	55	31
	해외 및 국내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	(사)글로벌컨센서스 연구원	'25.10.~'26.5.[2]	110	77	33
	재외동포청년 직업교육·훈련 필요 분야 및 직종 수요조사 연구용역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25.11.~'26.2.	20	-	20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해외이주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5.12.~'26.7.	98	-	98
	소계			**384**	**202**	**182**

주 1) 2024년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5033-302)',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5034-301)', '아주 러시아동포 정책 강화(5034-302)' 사업의 정책연구비가 2025년부터 재외동포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2) 당초 종료기간 '26.4.13.에서 '26.5.27.로 변경(사유: 러-우 전쟁 상황 지속에 따른 우크라이나 지역 설문 응답자 확보 곤란)
자료: 재외동포청

이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 차년도로 이월된 정책연구비는 각각 2억 6,000만원(본예산 대비 40.6%)과 1억 8,200만원(본예산 대비 39.9%)으로, 매년 본예산 대비 약 40%의 예산이 이월되었음.

[2024~2026년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사업 정책연구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이월액 (D)	이월률 (D/A)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2024	640	640	30	274	824	548	66.5	260	**40.6**	16
2025	456	456	260	△52	664	463	69.7	182	**39.9**	18
2026	-	-	182	-	182	-	-	-	-	-

주 1) 2024년은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5033-302)',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5034-301)', '아주 러시아동포 정책 강화(5034-302)' 사업의 정책연구비 기준
2) 2024년도 집행액은 상기 계약현황 표의 집행액(5억 1,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집행(3,000만원)과 제안서 평가위원 사례금 집행(120만원)을 더한 금액
3) 2026년에는 정책연구비(260-02목) 미편성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책연구비의 상당 부분이 이월되는 것은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 계약 체결이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실제 2024~2025년에 이루어진 정책연구용역 17건 중 3건(17.6%)만이 상반기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15건(82.4%)은 하반기에 체결되었음.

한편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그 예외로서 제23조의 계속비와 제24조의 명시이월비, 제48조의 세출예산의 이월을 규정하고 있음.[4)]

4) 「국가재정법」

이에 따라 각 연도의 세출예산은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예외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재외동포청은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 정책연구용역을 하반기에 계약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기간이 다음 회계연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설정되었고, 이에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본예산의 40%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되었으므로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시 연구용역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정요구가 있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중 재외동포청 정책연구비 관련 내용]

조치대상기관	재외동포청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5034-301)
지적사항	○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구용역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점에 추진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시기적 부적절성으로 인해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연구용역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시행 계획을 수립(2025.3.19.)하고 과제를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나, 상기한 바와 같이 2025년에도 본예산 대비 약 40%의 이월이 발생하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제24조(명시이월비)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향후 정책연구용역 추진 시기를 조정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은 정책연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청은 향후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정책연구 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심의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원장 1명(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7조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

---

5)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① 재외동포청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차장이 되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조정관
2. 재외동포정책국장
3. 교류협력국장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청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그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반기별로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은 2023년 12월 8일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재외동포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소속	직위	비고
내부 (4)	재외동포청	차장	위원장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교류협력국장	공석
외부 (6)	고려대학교	교수	
	상명대학교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한성대학교	교수	
	인천대학교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주) 임기: 2023.12.8.~2025.12.7.(2년)
자료: 재외동포청

그러나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이후 임기 만료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2024・2025년에 추진한 총 17건의 정책연구용역은 그 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나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각 국별로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는 입장임.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8조제1항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6)]

6)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8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운영) ① 재외동포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각 국별로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 ·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의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향후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정책연구 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심의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정책연구 관리가 규정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사업: 법령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세대별·분야별 재외동포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8억 9,800만원 중 56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4%)되고 2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5년도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5,896	5,896	-	2	5,898	5,687	-	211	5,979
동포단체 활성화	3,150	3,150	-	3	3,153	3,073	-	80	3,150
해외경상이전	3,039	3,039	-	-	3,039	2,961	-	78	3,039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	893	893	-	-	893	831	-	62	813
해외경상이전	813	813	-	-	813	774	-	39	813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590	590	-	△1	589	578	-	11	590
해외경상이전	590	590	-	△1	589	578	-	11	59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동포단체 활성화’**은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권익신장 활동, 동포사회 결속력 강화,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및 동포단체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1억 5,300만원 중 30억 7,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은 거주국 내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 및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회와 관련 단체 등의 공공외교활동을 지원, 현지 취약계층 지원 및 주재국 정부 주최 행사 참가, 현지 기념일 관련 활동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억 9,300만원 중 8억 3,100만원만원이 집행(집행률 93.1%)되었음.

---

7) 일반회계-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5034-301)(교류협력국)

또 다른 내역사업인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은 차세대 교육시설, 한인회관 등 다목적 회관의 건립, 매입, 개보수, 증·개축 등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억 8,900만원 중 5억 7,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1%)되었음.

세 내역사업은 모두 재외동포단체 및 한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예산은 해외경상이전(340-01목)으로 편성·집행되었음.[8)]

[2025년 동포단체 활성화,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내역사업명	편성근거	집행내역
동포단체 활성화	ㅇ **31억 5,000만원** - 운영비 1,000만원 - 여비 8,000만원 - 업무추진비 2,100만원 - 해외경상이전 30억 3,900만원	ㅇ **30억 7,300만원** - 동포단체 지원사업 심의 및 동포단체 업무협의 3,300만원 - 동포단체 행사 참여 등 여비 7,900만원 - 재외동포 단체지원 29억 6,100만원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	ㅇ **8억 9,300만원** - 운영비 100만원 - 여비 7,500만원 - 업무추진비 400만원 - 해외경상이전 8억 1,300만원	ㅇ **8억 3,100만원** - 국외 여비 및 업무협의 사업추진비 5,700만원 - 해외경상이전 7억 7,400만원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ㅇ **5억 9,000만원** - 해외경상이전 5억 9,000만원	ㅇ **5억 7,800만원** - 해외경상이전 5억 7,800만원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외동포청은 2025년 중 679개 단체의 838개 사업에 총 313만 달러를 지원하여 4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 재외동포단체 및 한인회 지원내역]

(단위: 개, 달러, 백만원)

내역사업명	지원단체수	지원사업수	지원금액	
			달러화	원화
동포단체 활성화	542	689	2,171,100	2,961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	121	133	556,100	774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16	16	402,880	578
합계	**679**	**838**	**3,130,080**	**4,313**

주 1) 지원금액 중 달러화는 지원결정액 기준이며, 잔액 및 반납액 제외
2) 원화는 해외경상이전(340-01목) 집행액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 세 내역사업 본예산 총액 46억 3,300만원의 95.9%인 44억 4,200만원이 해외경상이전(340-01목)으로 편성됨.

나. 검토의견

첫째,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재외동포단체 및 한인회 대상 보조금 사업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재외동포청은 향후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및 이를 통한 사업성과 관리·감독이 법령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9][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은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산보고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실적과 함께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은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의도한 성과를 도출하였는지를 검증하므로 보조금 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2025년에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단체 및 한인회를 지원한 내역 및 이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838개 사업 중 144개 사업(17.2%)에서 실적보고가 2개월 이상 경과하여 제출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5년 재외동포단체 및 한인회 지원내역]

(단위: 개, %)

내역사업명	지원사업수	실적보고서 제출			전액반납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미제출	
동포단체 활성화	689 (100.0)	548 (79.5)	108 (15.7)	9 (1.3)	24 (3.5)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	133 (100.0)	104 (78.2)	20 (15.0)	- (-)	9 (6.8)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16 (100.0)	8 (50.0)	2 (12.5)	5 (31.3)	1 (6.2)
합계	**838** (100.0)	**660** (78.8)	**130** (15.5)	**14** (1.7)	**34** (4.0)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은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안내하고 있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도과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되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임.[11][12]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단체 현황]

(단위: 개)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제재단체 수	57	19	76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3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그러나 재외동포청의 안내 및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을 살펴보면,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2024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2024·2025년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내역]

(단위: 개, %)

구분		지원사업수	실적보고서 제출			전액반납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미제출	
동포단체 활성화	2024	698 (100.0)	582 (83.4)	**55** **(7.9)**	**8** **(1.1)**	53 (7.6)
	2025	689 (100.0)	548 (79.5)	**108** **(15.7)**	**9** **(1.3)**	24 (3.5)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향후 재외동포단체 및 한인회 지원 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실적보고서 제출이 법령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사업성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내역사업인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은 차세대 교육시설, 한인회관 등 다목적 회관의 건립, 매입, 개보수, 증개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본형성적 성격에 해당하므로, 재외동포청은 향후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 예산을 해외자본이전(340-03목)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은 재외동포단체 또는 한인회가 차세대 교육시설, 한인회관 등 다목적 회관의 건립, 증개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한 예산을 전액 해외경상이전(340-01목)으로 편성·집행하였음.

[2025년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내역사업명	편성근거	집행내역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ㅇ **5억 9,000만원** - 해외경상이전 5억 9,000만원	ㅇ **5억 7,800만원** - 해외경상이전 5억 7,800만원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회관의 건립, 매입 또는 증개축하는 사업은 신규로 자본을 형성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이므로 자본형성적 성격으로 볼 수 있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해외경상이전(340-01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이고, ‘해외자본이전(340-03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또는 해외 출자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음.[13)]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은 자본형성적 성격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재외동포청은 이를 경상경비를 보조하는 해외경상이전(340-01목)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므로 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예산을 해외경상이전이 아닌 해외자본이전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지침과 예산의 편성·집행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3)「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279쪽

목번호	목	세목(내역)
340	해외이전	340-01 해외경상이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340-03 해외자본이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①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② 해외 출자금

3.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관리용역비 예산 과다편성 지양 필요

가. 개 요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은 재외동포청 조직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5억 4,000만원 중 22억 8,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9%)되고 2억 5,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5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관운영 기본경비	2,374	2,374	156	10	2,540	2,282	252	5	2,854
관리용역비	449	449	-	△112	337	330	7	-	41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예산 중 관리용역비는 본청 무인경비, 본청 특수경비 용역, 본청 청소관리 용역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억 3,700만원 중 3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고 700만원이 이월되었음.[15)]

[2025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관리용역비 계약·집행 내역]

(단위: 원)

계약명	입찰금액	계약금액	낙찰차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재외동포청 본청 무인경비	-	2,760,000	-	2025.1.1. ~2025.12.31.	에스케이 쉴더스(주)
2025년 재외동포청 본청 특수경비 용역	246,425,590	230,623,100	15,802,490	2025.1.1. ~2025.12.31.	명신방호실업
2025년 재외동포청 본청 청소관리 용역	108,000,000	94,107,510	13,892,490	2025.1.1. ~2025.12.31.	주식회사 대물건설
재외동포청 본청 카페트 습식 청소 용역	-	2,421,100	-	2025.3.4.	포스코와이드
합계		**329,911,710**	**29,694,980**		

주) ‘재외동포청 본청 무인경비 용역’ 및 ‘재외동포청 본청 카페트 습식 청소 용역’은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제1항제5호가목1)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4) 일반회계-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운영지원과)

15) 이월액 발생 사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본경비 이월(100분의 15한도)

나. 검토의견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관리용역비는 2024·2025년도 편성 예산의 상당액이 감액 조정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청은 향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취지에 따라 낙찰차액을 세목조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용역비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이후 기관운영 기본경시 사업 관리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관리용역비 예산의 상당액(관리용역비 본예산의 24.9~51.5%)이 감액 조정되었음.

[2023~2026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관리용역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이월	이·전용 등 (본예산 대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3	-	-	152	152	81	-	71
2024	738	-	△380 (△51.5%)	358	264	-	94
2025	449	-	△112 (△24.9%)	337	330	7	-
2026	414	7	-	421	61	-	-

주) 이·전용 등: 이용, 전용, 세목조정, 예비비 등

재외동포청은 2025년 11월 14일에 연말 다이어리 및 달력 제작 등을 위해 1억 5,400만원을 세목 조정하였는데, 이 중 관리용역비 1억 1,200만원 감액이 포함되어 있었음.

[2025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관리용역비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1.1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피복비(210-03)	15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일반수용비 (210-01)	연말 다이어리 및 달력 제작 등 비목별 예산 부족분 충당
		임차료(210-07)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일반용역비 (210-14)	
		관리용역비 (210-15)				

주)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세목조정은 관리용역비 예산으로 지출될 금액이 2025년 1분기 중 모두 확정되었기 실제 집행되지 않을 불용예상액을 감액조정한 것으로써 2025년에 편성된 관리용역비가 실제 소요 대비 과다하게 편성되었음을 보여줌.

또한「국가재정법」제45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를 통해 발생하는 낙찰차액은 불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외동포청은 낙찰차액을 세목조정하여 연말 다이어리 등 제작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16)]

이와 관련하여 2026년 관리용역비 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관리용역비 본예산은 4억 1,400만원이고, 계약 체결한 금액은 3억 4,312만원(본예산의 82.9%)이므로 2026년에도 약 7,000만원의 불용 또는 감액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17)]

[2026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관리용역비 계약 내역]

(단위: 원)

계약명	입찰금액	계약금액	낙찰차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재외동포청 본청 무인경비	-	1,969,000	-	2026.1.1. ~2026.9.24.	에스케이 쉴더스(주)
2026년 재외동포청 본청 특수경비 용역	279,310,280	240,112,720	39,197,560	2026.1.21. ~2026.12.31.	㈜광명실업
2026년 재외동포청 본청 청소관리 용역	115,279,750	101,038,670	14,241,080	2026.1.1. ~2026.12.31.	주식회사 블루문
합계	**394,590,030**	**343,120,390**	**53,438,640**		

주)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외동포청은 관리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2026년도 재외동포청 본청 특수경비 용역 및 청소관리 용역의 낙찰차액은 총 5,344만원이었으므로 낙찰차액을 고려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18)19)]

16)「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7) 전년도 이월액 700만원을 포함하는 경우 약 7,700만원의 불용 또는 감액조정이 예상됨.

18) 통상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에 낙찰하한율(약 86~88%)을 곱한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되므로 낙찰차액은 사업예산의 12% 내외로 나타남. 그러나 재외동포청은 2026년에도 관리용역비의 약 17%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소 5% 이상 과다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9) 감사원,「공공계약 실무가이드(2024년 개정판)」, 2024.12., 179~180쪽
■ 낙찰하한율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입찰가격을 제외한 비가격요소(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의 평점이 만점임을 전제로 했을 때,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의미한다.
- 적격심사시 낙찰하한율은 적격통과점수(92점 또는 95점)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향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취지에 따라 낙찰차액을 세목조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용역비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공사규모(추정가격)	평점한도		적격통과점수 (b)	낙찰하한율(%)	비고
	공사수행능력(a)	가격			
3억원 미만	10	90	95	87.745	1%당 20점 감점
3억원~10억원	20	80		87.745	1%당 20점 감점
10억원~50억원	30	70		86.745	1%당 4점 감점
50억원~100억원	50	50		85.495	1%당 2점 감점

4.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개 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공간적 핵심기능 수행을 위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2억 3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20)]

[2025년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7,757	27,757	-	-	27,757	27,757	-	-	23,778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7,203	7,203	-	-	7,203	7,203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경기도 시흥에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면적 6,758㎡ 규모의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26년 5월 현재 총사업비는 299억 7,400만원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공사비	22,241	· 건축비: 181억 3,941만원 = 2,325,565원/㎡ X 7,800㎡(유사 시설물 평균 공사비 x 면적) · 전시시설 설치비: 31억 8,116만원 · 유물수집비: 9억 2,063만원
건설보상비	4,721	· 47억 2,124만원 = 3,240,387원/㎡ X 1,457㎡(마곡부지 부지매입 조성원가 x 면적)
설계비	1,483	· 설계비: 8억 8,931만원 = 164억 9,037만원(적용공사비) X 4.90%(요율) · 추가 인증 설계비: 1억 3,858만원 · 공모보상비: 1억원 · 측량 및 조사비: 1억 8,139만원 · 녹색건축 예비인증수수료: 639만원 · 녹색건축 본인증수수료: 874만원

20) 일반회계-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8032-302)(교류협력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 BF 예비인증수수료: 272만원 · BF 본인증수수료: 532만원 · 전시실 설계비: 1억 5,031만원
감리비	1,486	· 14억 8,587만원 = 164억 9,037만원(적용공사비) x 8.19%(요율)
시설부대비	43	· 4,299만원 = 164억 9,037만원(적용공사비) x 0.24%(요율)
계	**29,974**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최초 서울시 마곡지구에 건설이 계획되어 2021년에 부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음.

그러나 부지 계획에 차질이 생겨 2022년 9월 재외동포재단과 서울대학교 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부속 합의 체결에 따라 건립 부지가 경기도 시흥으로 확정되었음.[21)]

이후 2023년에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서울대학교 캠퍼스 위원회의 시설사업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진행 중이던 설계용역이 2024년 1월 19일부터 일시 정지되었다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된 이후 2025년 1월에 재개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었음.[22)]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5년 9월에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하였으나 2029년까지의 사업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보받았음.

이에 따라 2026년 5월 현재 재외동포협력센터는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에 의뢰하여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는 2026년 8월 이후 절차(실시설계,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를 준비하고 있음.

21) 건립부지: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교 173,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M1 부지 내

22) ○ 2023.11. 서울대학교 캠퍼스위원회 시설사업 심의 안건 상정 결과: 재심의
○ 2024.2. 서울대학교 캠퍼스위원회 시설사업 심의 안건 상정 결과: 원안보류
○ 2024.5. 서울대학교 캠퍼스위원회 시설사업 심의 안건 상정 결과: 원안의결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절차]

예비타당성조사		* 미해당(총사업비 500억원이상 & 국비300억원 이상)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 [마곡] 2019.11.~2020.3. 기본구상 연구용역 2020.4.~2020.10.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마곡부지 건립계획 무산, 건립대상지 재선정 2021.6. SH공사, 마곡지구 매입불가 통보 2021.12. 재외동포재단-서울대-시흥시 MOU체결 * 2021.12.29. 총사업비 신규등록 * [시흥] 2022.1.~2022.5. 기획단계 수립 연구용역
▼		
기본설계	**계획설계 (2023.1.~)**	* 건축물의 전반적 형태와 동선, 공간구성 계획
	적정성검토 [조달청] (2024.8.~11.)	* 건축물 규모와 배치를 주로 검토
	중간설계 (2025.1.~)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공사기간, 공사비 산정) * 각종 설비배관 및 시스템용량 확정 *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 내용 반영 * 각종 인증(녹색건축, BF, 제로에너지) 취득 반영
	적정성검토 [조달청] (2025.6.~9.)	* 공사기간 및 공사비 검토 증액사유 검토를 포함하여 공사비 확정을 목표로 검토
	총사업비협의 [기재부] (2025.9.~)	* 조달청 적정성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와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 ⇒ 사업기간 2년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26.1.~)	***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효율적 대안 검토**
	총사업비 협의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재협의
실시설계		*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적정성검토[조달청]	* 발주 준비를 하기 위해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검토
	총사업비 협의 [기획예산처]	* 조달청 적정성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와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
▼		
발주 및 계약		* 건축, 전기통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등
▼		
시공		* 착공신고 → 공사 → 사용승인(준공)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최초 2025년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 2029년 완공 예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에 교부된 설계비 일부도 현재까지 이월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사업 단계별 면밀한 협의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재외동포협력센터에 총 156억 5,900만원이 교부되었고 이 중 설계비 등으로 9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6.3%)되었으며, 146억 7,600만원이 2026년도로 이월되었음.[23)]

2021년에 최초 교부되었던 설계비가 12억 7,000만원이고, 2025년까지 집행액이 9억 8,300만원이므로 2021년에 교부된 예산 중 2억 8,700만원이 2026년까지 이월되고 있음.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C)	집행액 (D)	이월액	실집행률 (D/C)
2021년	1,270	1,270	100.0	1,270	-	1,270	-	1,270	-
2022년	7,186	7,186	100.0	7,186	1,270	8,456	-	8,456	-
2023년	-	-	-	-	8,456	8,456	647	7,809	7.7
2024년	-	-	-	-	7,809	7,809	-	7,809	-
2025년	7,203	7,203	100.0	7,203	7,809	15,012	336	14,676	2.2
2026년	-	-	-	-	14,676	14,676	-	-	-

자료: 재외동포청

2026년 8월 이후 남아있는 일정을 보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재협의, 실시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조달청 적정성 검토,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절차가 남아있음.

국토교통부 고시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3조제2항 및 별표 1의 공종별 설계 기간에 따르면 사업비 100~500억원인 건축 사업의 실시설계 기간은 7개월로 예시되어 있음.[24)]

---

23)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위해 교부된 사업출연금(350-02목)에서 발생한 이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0조에 따라 사업 완료 시 전액 국고 반납 예정임.

24)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3조(설계기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이하 "설계"라 한다)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500억원 이하 청사 공사기간 산정공식에 따르면 공사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을 제외한 적정 공사기간이 약 760일로 산정됨.[25][26]

이를 통해 2026년 8월 이후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해보면, 실시설계부터 입찰공고를 거쳐 건립공사 완료까지 별도의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029년 6월 정도에 건립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향후 예상 일정]

구분	예상 일정	비고
실시설계	2026.9.~2027.3.	약 7개월
조달성 적정성 검토		약 15일
총사업비 조정 협의		특정 곤란
입찰공고 및 계약	2027.4.~2027.5.	약 2~3개월
공사	2027.6.~2029.6.	760일(약 2년 1개월)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통상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상하기 어렵고 최근 공공부문 공사 유찰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어 2029년으로 예정된 사업 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27]

---

② 발주청은 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공사의 규모와 특성과 발주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별표 1의 공종별 설계 기간을 참고할 수 있다.

[별표 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 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 이상
건축	4.5	7	9.5	7	7.5	8

25) 국토교통부,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5.12.

[부록 5]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

1. 건축물

건축물 유형	산정공식	변수 정의	적용범위
청사	Y = 155.94ln(x) - 82.355	Y = 공사기간(일) X = 총공사비(억원)	총공사비 500억원 이하

※ 공사기간 산정공식에 의해 산정된 값(Y)에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26) 760.4일 ≒ 155.94 x ln(공사비 299.74억원) - 82.355

27) 매일경제, “외면받는 공공공사... 유찰률 75%까지 치솟았다”, 2026.6.1.

따라서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절차 및 공사 입찰 관련 유관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착공 이후에도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기성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2029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재외동포청에 대해 시정요구 7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건・제도개선 6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1	6	-	7
예비비	-	-	-	-	-	-	-
합계	-	-	-	1	6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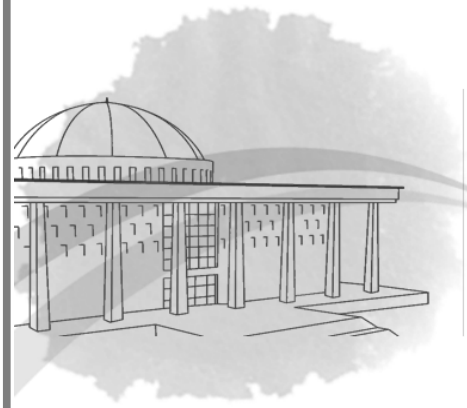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재외동포청은 시정요구사항 7건에 대해 5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1.4%)하고 2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7	5	71.4	2
예비비	-	-	-	-
합계	7	5	71.4	2

국방위원회



국 방 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9,470억 4,500만원(△31.8%)이 적은 2조 265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05억 5,800만원(△23.4%)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41,418	841,418	1,262,516	421,098	1,587,870	1,587,870	592,591	△995,279	△669,925
기 금	1,410,818	1,410,818	1,384,547	△26,271	1,385,680	1,385,680	1,433,914	48,234	49,367
총 수 입	2,252,236	2,252,236	2,647,063	394,827	2,973,550	2,973,550	2,026,505	△947,045	△620,558

문의: 02-6788-567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조 752억 6,600만원(△2.4%)이 적은 44조 2,979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60억 6,200만원(2.3%)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8,706,244	38,706,244	38,349,103	△357,141	40,110,023	40,249,521	39,230,211	△1,019,310	881,108
기 금	4,683,915	5,009,341	4,952,829	△56,512	4,951,031	5,123,739	5,067,783	△55,956	114,954
총 지 출	43,390,159	43,715,585	43,301,932	△413,653	45,061,054	45,373,260	44,297,994	△1,075,266	996,062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조 4,018억 8,700만원으로, 1조 7,850억 9,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5,423억 7,300만원이 수납(수납률 86.4%)되고 2,375억 5,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51억 6,3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29,476	329,476	-	329,476	568,842	334,345	231,297	3,200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회계	572,137	572,137	-	572,137	595,784	592,906	2,868	9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1,500,274	1,500,274	-	1,500,274	620,467	615,122	3,392	1,954
합 계	2,401,887	2,401,887	-	2,401,887	1,785,093	1,542,373	237,557	5,163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6조 3,913억 9,300만원으로, 43조 8,566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5%)되고 7,963억 5,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7,383억 8,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3,400,743	43,540,241	670,866	±683,865	-	44,211,107	42,669,084	768,514	773,509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회계	572,137	572,137	35,554	±19,673	-	607,691	585,969	14,318	7,404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1,500,274	1,500,274	72,321	±3,997	-	1,572,595	601,601	13,521	957,473
합 계	45,473,154	45,612,652	778,741	±707,535	-	46,391,393	43,856,654	796,353	1,738,386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5조 6,169억 8,900만원으로, 5조 8,863억 3,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조 8,467억 7,5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3%)되고, 385억 4,200만원은 미수납되어 10억 1,7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군인연금기금	4,605,166	4,605,166	4,682,876	4,668,174	14,607	95
군인복지기금	1,011,823	1,011,823	1,203,458	1,178,601	23,935	922
합 계	5,616,989	5,616,989	5,886,334	5,846,775	38,542	1,017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5조 6,223억 6,800만원으로, 5조 8,467억 7,500만원이 지출(집행률 104.0%)되고 111억 4,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99억 4,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군인연금기금	4,605,166	4,605,166	-	4,605,166	4,668,174	-	3,519
군인복지기금	1,011,823	1,011,823	5,379	1,017,202	1,178,601	11,146	56,426
합 계	5,616,989	5,616,989	5,379	5,622,368	5,846,775	11,146	59,94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방부 자산은 전년 대비 8조 2,142억 5,400만원이 증가한 287조 8,467억 3,9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유·무형자산이 7조 908억 3,6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6조 9,025억 1,700만원이 증가한 287조 1,954억 5,0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충당부채가 전년 대비 8조 710억 5,5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 3,117억 3,700만원이 증가한 6,512억 8,9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국방부의 수익은 8조 3,680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79억 5,400만원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64조 6,009억 4,500만원으로 1조 5,633억 7,4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는 56조 2,328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54억 2,0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방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87,846,739	279,632,485	8,214,254	2.9
		금융자산	1,952,534	1,786,953	165,581	9.3
		유·무형자산	278,130,758	271,039,922	7,090,836	2.6
		기타자산	7,763,447	6,805,610	957,837	14.1
	부 채		287,195,450	280,292,933	6,902,517	2.5
		차입부채	10,027,004	10,572,881	△545,877	△5.2
		충당부채	276,121,287	268,050,232	8,071,055	3.0
		기타부채	1,047,159	1,669,820	△622,661	△37.3
	순자산		651,289	△660,448	1,311,737	△198.6
재정 운영표	수 익		8,368,073	7,650,119	717,954	9.4
		이전수익	1,397	2,027	△630	△31.1
		국가운영수익	8,366,676	7,648,092	718,584	9.4
	비 용		64,600,945	63,037,571	1,563,374	2.5
		이전비용	2,939,004	2,285,039	653,965	28.6
		국가운영비용	61,661,941	60,752,532	909,409	1.5
	재정운영결과		56,232,872	55,387,452	845,420	1.5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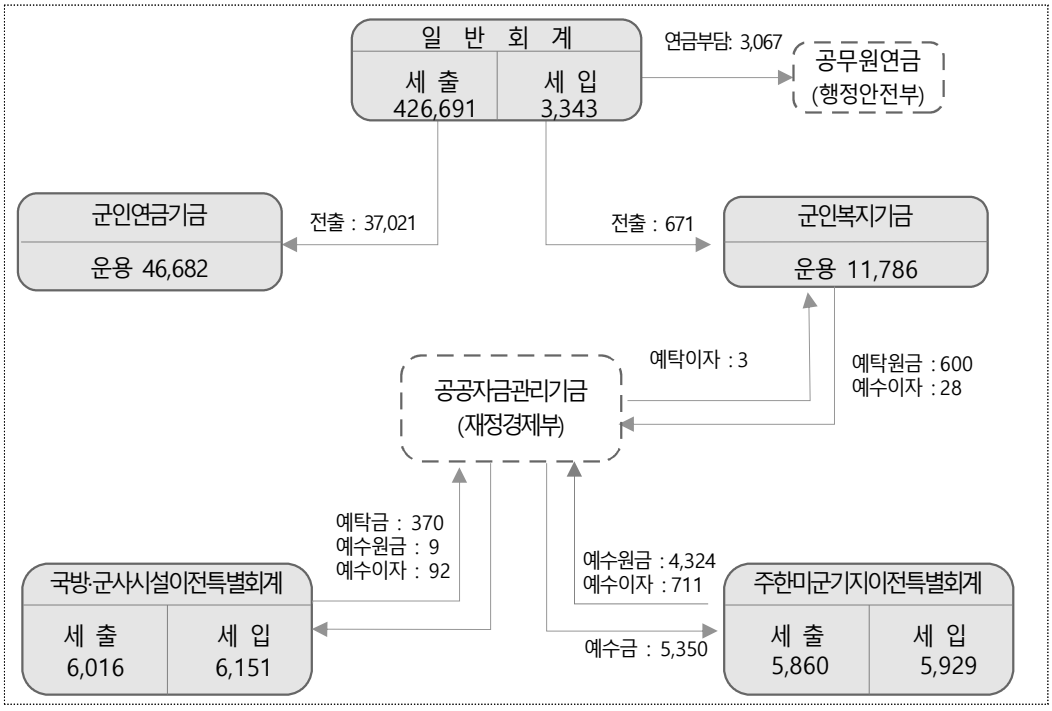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및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등 3개 회계와 군인연금기금 및 군인복지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3,067억원, 군인연금기금으로 3조 7,021억원, 군인복지기금으로 671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재정경제부)으로 370억원이 예탁되었으며, 예수원금 9억원과 예수이자 92억원이 상환되었음.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재경부)으로 예수원금 4,324억원과 예수이자 711억원이 상환되었으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로 예수금 5,350억원이 수납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군인복지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재정경제부)으로 600억원이 예탁, 예수이자 28억원이 상환되었으며, 군인복지기금으로 예탁이자 3억원이 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방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방부는 전투임무 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전투역량강화비 및 부대별 작전예산을 증액했고, 병 봉급 인상·병 내일준비지원금 확대·1인 1실 간부숙소 확충 및 노후 주거시설 보수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국방분야 R&D 확대·스마트부대 확산 및 첨단훈련 장비와 훈련장시설의 지속 확보·개선 등을 통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실전적·과학적 훈련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음.

2025년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방부는 최근의 인력 감소 추세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추계함으로써 부사관 인건비 등의 인건비 예산이 적정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편성된 인건비 예산을 이·전용하여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방부는 대규모 정보화 사업 등 국가계약을 추진할 때 발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셋째, 국방부는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정확한 소요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품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제 공정률과 납품 시기를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분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임.

넷째, 장애보상금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방부는 재해보상금 편성 시 장애보상금 지급인원 감소 추이 및 연도별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은 국방부가 개정되기 전 법률 규정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미집행 예산을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이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여섯째, 국방부는 합성훈련환경 체계구축 사업의 사례와 같이 사업추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사업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지출원인행위 준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임.

일곱째, 국방부는 과거사 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 소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군배상금 사업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 이·전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징계부과금: 미수납 채권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징계부과금’ 은 금품 수수·공금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외에 금품 수수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이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징수결정액 145억 4,800만원 중 1억원이 수납(수납률 0.7%)되고 미수납액 144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음.[2)]

[2025년도 징계부과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징계부과금	16	16	14,548	100	14,448	-	0.7	3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징계부과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공무원이 금전·물품·부동산 및 향응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배임 및 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득 금액의 5배 내에서 부과되는 것임.[3)]

---

2) 일반회계-징계부과금(56-564)(기획조정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

나. 검토의견

국방부는 최근 징계부과금의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인 국세청에 미수납 채권 관련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등 추가적인 미수납 채권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징계부과금 수납실적과 미수납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도 및 2025년도 징계부과금 수납률은 0.7%로 낮게 나타나는 데 비해 연도별 미수납액은 2021년도 2억 5,100만원, 2022년도 2억 7,600만원, 2023년도 2억 8,000만원, 2024년도 131억 8,200만원, 2025년도 144억 4,8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징계부과금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	-	-	263	13	-	4.9	251	-
2022	-	-	-	276	-	-	-	276	-
2023	16	16	16	311	31	193.8	10.0	280	-
2024	16	16	16	13,270	88	550.0	0.7	13,182	-
2025	16	16	16	14,548	100	625.0	0.7	14,448	-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2024년에 있었던 특정 사건과 관련된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에 따라 징수결정액이 단기간에 증가한 것이며, 수납액의 경우 2023년 3,100만원, 2024년 8,800만원, 2025년 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4)]

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국방부는 2024년도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 증가의 경우 특정 사건에 의한 것으로, 해군 ○함대에서 함정 공사 등 내부 정보를 관련 업체에 제공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무원 1명에게 비위 금액의 4배인 약 117억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또한 국방부는 미수납 채권에 관한 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전군에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함.[5)]

그러나 2025년도 징계부과금 수납률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징수결정액 대비 0.7%에 불과하고 미수납액 증가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국방부는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인 국세청에 미수납 채권 관련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미수납 채권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방부는 기부과된 징계부과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향후 유사 금전적 제재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을 요구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026. 4.30)
미수납 징계부과금 철저 추징 필요	ㅇ [지적사항] '징계부과금'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비위일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액의 5배 내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132억 7,000만원 중 8,800만원이 수납되었고 131억 8,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미수납액이 과도한 것은 국방부가 징계부과금 추징을 세무서장에 위탁했을 뿐 적극적 추징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국민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얻을 우려가 있음	주의	ㅇ 국방부는 행안부·국토교통부·국세청과 협조하여 2025년 12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군인사법 등 강제징수」 이용사무를 신설하여 전군에 안내함. 이에 따라 징계부가금 등 국방부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 채권 관련하여 군 부대에서 채무자의 거주지 주소, 거주지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을 자체적으로 조회하여 조기에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되었음 ㅇ 국방부는 미수납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적극적으로 위탁	조치 완료

5) 징계부과금 적극적 추징을 위한 조치사항(국방부 제출자료)
- 국방부는 미수납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적극적으로 위탁하여 미수납 채권의 수납률을 향상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관 간 기존 채권현황을 현행화하고, 위탁채권 관리 전산망을 연계·구축하여 운영 중임.
- 또한, 행안부·국토교통부·국세청과 협조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군인사법 등 강제징수" 이용사무를 신설하여 전군에 안내함. 이에 따라 징계부과금, 명예전역수당 등 국방부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 채권과 관련하여 군 부대에서 채무자의 거주지 주소, 거주지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을 자체적으로 조회하여 조기에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되었음(구체적인 실적치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026. 4.30)
	ㅇ [시정요구사항] 국방부는 기부과된 징계부과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향후 유사 금전적 제재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하여 미수납 채권의 수납율을 향상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관 간 기존 채권현황을 현행화하고, 2025년 12월에 위탁채권 관리 전산망을 연계·구축하였음 ㅇ 유관기간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 국토교통부 협조, 재산조회: 분기별에서 월별로 확대 - 한국자산관리공사: 연중 발견재산(9종) 통보 * 건설기계가구, 경매사건, 공탁금, 어선, 지적재산, 청약정보, 급여소득, 토지보상권, 자동차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2. 변상금: 미수납 채권 회수율 제고를 통한 불납결손 최소화

가. 개 요

‘변상금’ 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수납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131억 6,300만원 중 18억 800만원이 수납(수납률 13.7%)되고 101억 9,900만원이 미수납되어, 11억 5,6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음.[6)]

[2025년도 변상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변상금	3,244	3,244	13,163	1,808	10,199	1,156	13.7	3,40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방부는 변상금과 관련하여 미수납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징수하는 등 불납결손을 최소화하고 미수납 채권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연도별 변상금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2년 85.3%, 2023년 78.4%, 2024년 13.8%, 2025년 13.7%로 감소하는 추세임. 또한 미수납액의 규모는 2022년 104억 7,600만원, 2023년 114억 900만원, 2024년 112억 4,000만원, 2025년 101억 9,900만원으로 매년 100억원을 상회하였음. 한편 국방부는 2025년에 11억 5,600만원에 달하는 미수납 채권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6) 일반회계-변상금(57-571)(기획조정실)

[2022~2025년도 변상금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2,940	2,940	13,009	2,509	85.3	19.3	10,476	24
2023	2,987	2,987	13,751	2,342	78.4	17.0	11,409	-
2024	3,244	3,244	13,033	1,793	55.3	13.8	11,240	-
2025	3,244	3,244	13,163	1,808	55.7	13.7	10,199	1,156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미수납 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군 및 국직 기관의 채권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중 1회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7] 국토교통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여 채권 회수율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함.[8] 한편 국방부는 2025년 중 총 18건(11억 5,600만원)의 미수납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불납결손 처리하였다고 설명함.

[불납결손 건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납부자명	금액	결의일자	불납결손 사유
1	한○○	399	2025-02-24	시효완성
2	이○○	377	2025-02-24	시효완성
3	김○○	160	2025-02-24	시효완성
4	이○○	134	2025-10-28	시효완성
5	전○○	18	2025-10-28	시효완성
6	성○○	17	2025-02-24	시효완성
7	곽○○	16	2025-02-24	시효완성
8	김○○	10	2025-10-27	시효완성
9	방○○	9	2025-02-24	시효완성
10	홍○○	5	2025-10-27	시효완성
11	김○○	2	2025-02-24	시효완성
12	이○○	2	2025-10-27	시효완성
13	김○○	2	2025-10-27	시효완성
14	한○○	2	2025-10-28	시효완성

7) 채권업무 담당자 등 77명 참석

8)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미수납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적극적으로 위탁하여 미수납 채권의 수납률을 향상하고자 2025년 12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관 간 기존 채권현황을 현행화하고, 위탁채권 관리 전산망을 연계·구축하여 운영 중이라고 함.

(단위: 백만원)

구분	납부자명	금액	결의일자	불납결손 사유
15	염○○	2	2025-10-31	시효완성
16	손○○	1	2025-10-31	시효완성
17	박○○	1	2025-10-28	시효완성
18	최○○	1	2025-10-28	시효완성
합 계	-	1,156	-	-

자료: 국방부

그런데 2025년 기준 미수납액 101억 9,900만원을 미수납 사유별로 살펴보면,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은 90억 2,300만원(88.5%), 납기 미도래는 7억 5,300만원(7.4%), 징수유예 등은 4억 2,400만원(4.1%)으로 나타남. 이처럼 변상금 미수납액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미수납 채권은 적극적인 회수 전략이 없을 경우 소멸시효까지의 수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2025년도 변상금 미수납 내역(사유별)]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사유별 미수납액	
변상금	13,163	1,808	1,156	10,199	9,023 (88.5%)	재력부족/ 거소불명
					753 (7.4%)	납기 미도래
					424 (4.1%)	징수 유예 등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각 미수납 사유별 미수납액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자료: 국방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 처리는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즉 불납결손 처리는 징수권 확보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은닉 재산 추적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재 파악 등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9][10]

9) 특히 체납자의 재력부족이나 거소 불명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수납을 포기하고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은 미수납 채권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0) 일례로 국방부는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인 국세청에 미수납 채권 관련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미수납 채권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국방부는 미수납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징수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거소불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행정정보 공유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불납결손을 최소화하고 채권 회수율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세 출〉

3. 부사관인건비 사업: 적정 소요 편성 및 집행잔액의 과다한 이·전용 방지

가. 개 요

‘부사관인건비’ 사업은 부사관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조 7,577억 7,600만원 중 6조 7,530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47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5년도 부사관인건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부사관인건비	7,018,290	7,018,290	-	△260,514	6,757,776	6,753,022	-	4,754	7,172,23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부사관인건비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최근의 인력 감소 추세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추계함으로써 부사관인건비 예산이 적정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동 사업의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22년 99.9%에서 2023년 97.8%, 2024년 96.9%, 2025년 96.2%로 낮아지고 있음.

11) 일반회계-부사관인건비(1101-152)(인사복지실)

당초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과의 차액이 2022년 22억 8,100만원에서 2023년 1,444억 1,600만원, 2024년 2,123억 5,300만원, 2025년 2,652억 6,9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액이 7조 182억 9,000만원으로 미세한 집행률의 변동으로도 수백억원 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당초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과의 차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임.

[2022~2025년도 부사관인건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당초 예산액(A)	집행액(B)	차액(B-A)	집행률(B/A)
2022	6,318,581	6,316,300	2,281	99.9
2023	6,674,580	6,530,164	144,416	97.8
2024	6,856,750	6,644,397	212,353	96.9
2025	7,018,290	6,753,021	265,269	96.2

자료: 국방부

2025년도 동 사업의 집행률 저하에 대하여 국방부는 부사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예상보다 낮아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설명은 국방부가 동 사업 예산을 실제보다 과다 편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최근 연도별 부사관 정원 대비 실제 운영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부사관 정원은 2023년 13만 2,798명, 2024년 13만 3,483명, 2025년 13만 4,631명으로 늘어났으나, 실제 운영인력은 2023년 12만 1,911명, 2024년 11만 7,119명, 2025년 11만 2,807명으로 감소하였음. 이로 인해 부사관 정원 대비 운영 인력의 비율(이하 “부사관 운영률”)은 2023년 91.8%, 2024년 87.7%, 2025년 83.8%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12)]

국방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부사관 운영률을 90.4%로 예상하고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실제 운영률(83.8%)보다 6.6%p를 과다하게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임.

12) 부사관 운영률이 낮아지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국방부는 병역자원의 감소 및 병 처우개선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에 따른 부사관 지원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부사관 운영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함. 국방부는 부사관 모집·홍보활동 강화, 처우개선 및 장기복무 선발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및 장기활용 여건 마련과 부사관 운영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부사관 정원 대비 운영인력 현황]

구 분	부사관 정원(A)	부사관 운영인력(B)	운영률(B/A)
2023	132,798명	121,911명	91.8%
2024	133,483명	117,119명	87.7%
2025	134,631명	112,807명	83.8%

자료: 국방부

그런데 국방부는 당시 이러한 예산 과다 편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부사관 임관율은 2021년 86.4%, 2022년 79.4%에서 2023년 56.6%, 2024년 45.2%로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부사관 운영률도 2022년 93.4%를 정점으로 2023년 91.8%, 2024년 87.7%로 하락 추세였음. 그럼에도 국방부는 2025년도 예산편성 시 부사관 운영률을 90.4%로 설정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한 문제가 있음.

[2020~2025년도 부사관 선발률·임관율 및 운영률 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선발률	94.7%	91.5%	86.0%	55.1%	50.1%	61.0%
임관율	86.0%	86.4%	79.4%	57.4%	46.5%	55.7%
운영률	92.0%	92.6%	93.4%	91.8%	87.7%	83.8%

자료: 국방부

이처럼 연례적인 인건비 예산 과다 편성은 필연적으로 예산 미집행을 초래하여 해당 연도에 다른 시급한 국방사업에 활용될 수 있었던 재원을 집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기회비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액이 7조 182억 9,000만원으로 예산 추계 시 미세 조정으로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당초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국방부는 최근의 급격한 인력 감소 추세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추계함으로써 부사관인건비가 적정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둘째, 국방부는 부사관인건비 사업의 과다 편성 예산을 이·전용하여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인건비 예산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칙에 따라 불용 처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방부는 동 사업의 과다 편성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감)하여 집행한 것으로 파악됨.

2025년도 동 사업의 이·전용(감) 내역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2025년 5월부터 동 사업 예산을 이·전용(감)하여 '군배상금'·'재난 및 안전관리'·'인사정책지원'·'특수임무수행자보상' 및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해당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사관인건비 사업 예산을 이·전용(감)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2025년 5월부터 동 사업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감)하였다는 점은 2025년 5월 이전부터 동 사업의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2025년도 부사관인건비 사업 이·전용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세부사업 명	금액 (백만원)	~으로 세부사업 명	이·전용 등 사유
자체이용 (25.5.20./8.11.)	부사관인건비 (1101-152)	67,000	군배상금 (7136-301)	과거사 소송 배상금 예산 지원
자체이용 (25.5.30./6.20.)	부사관인건비 (1101-152)	4,151	재난 및 안전관리 (2337-301)	포천 오폭사고 주민지원금 등 지원
조정 (25.7.7.)	부사관인건비 (1101-152)	18,561	장교인건비 (1101-151)	장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지원
자체이용 (25.7.25./10.28.)	부사관인건비 (1101-152)	4,671	인사정책지원 (2439-306)	군무원채용 고용부담금 예산 지원
자체이용 (25.7.28.)	부사관인건비 (1101-152)	8,000	특수임무수행자보상 (7131-301)	특수임무수행자보상 예산 지원
자체전용 (25.12.2.)	부사관인건비 (1101-152)	950	공무원인건비 (1103-101)	공무원인건비 예산 지원
자체전용 (25.12.3.)	부사관인건비 (1101-152)	146,267	군무원인건비 (1102-151)	군무원인건비 예산 지원
이용 (25.12.26.)	부사관인건비 (1101-152)	10,914	병내일준비지원 (2242-304)	장병내일준비지원적금 예산 지원

자료: 국방부

구조조정지출대상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였음에도, 국방부는 지출구조조정이 포함된 정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동 사업 감액안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6/23일 ~ 7/4일) 전후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동 사업 예산을 이·전용(감)하여 집행한 것임.

연도 중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국방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이를 감액하여 시급한 민생사업이나 국가적 현안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이·전용(감)하여 다른 사업으로 집행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한편 '군배상금'·'재난 및 안전관리'·'인사정책지원'·'특수임무수행자보상' 및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경우 그 목적이 인건비성 지출 사업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국방부의 집행행위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국가재정법」제45조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 보임.[13)14)]

따라서 국방부는 부사관인건비 사업의 과다 편성 예산을 이·전용하여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국가재정법」제45조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거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공식적인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13)「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4) 재정법령의 규정취지는 집행잔액의 경우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전용이 허용하는 것임.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빈번하게 이·전용한 것은 재정법령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4. 정보체계개발유지(정보화) 사업: 집행계획 철저 등

가. 개 요

‘정보체계개발유지(정보화)’ 사업은 국방 업무 전반에 대한 응용 체계의 개발과 성능 개선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565억 8,900만원 중 2,446억 5,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3%)되고 77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1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5년도 정보체계개발유지(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보체계개발유지 (정보화)	187,774	187,774	12,852	55,963	256,589	244,657	7,760	4,171	183,05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국방부는 정보체계개발유지(정보화) 사업과 같이 대규모 배상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예산에 해당 지출 소요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정보체계개발유지(정보화)의 세부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동 사업에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배상금(310-02목) 집행을 위해 다른 사업에서 531억 6,000만원을 이용(증)하고 51억 8,400만원을 전용(증)하는 등 총 583억 4,400만원을 조달하여 이 중 58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육·해·공 군수정보시스템 통합사업의 사업자에 부과하였던 지체상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가 최종 확정(2025.12.11.)되었고, 이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다른 사업의 미집행 잔액을 이·전용하여 배상금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15) 일반회계-정보체계개발유지(정보화)(2131-302)(국방정보화국)

[2025년도 정보체계개발유지(정보화) 사업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조정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보체계개발유지	187,774	187,774	12,852	53,160	4,092	△1,288	256,589	244,657	7,760	4,171
-일반수용비(210-01)	3,202	3,202	9	-	-	272	3,483	3,316	36	131
-임차료(210-07)	3,126	3,126	-	-	-	499	3,625	3,471	-	154
-시설장비유지비(210-09)	47	47	-	-	-	-	47	39	-	8
-재료비(210-11)	146	146	-	-	-	-	146	112	-	33
-관리용역비(210-15)	76,840	76,840	39	-	△609	△1,364	74,907	71,011	2,671	1,226
-국내여비(220-01)	30	30	-	-	-	-	30	29	-	-
-일반연구비(260-01)	63,056	63,056	10,987	-	△470	-	73,572	67,122	4,729	1,721
-정책연구비(260-02)	776	776	-	-	-	-	776	629	80	68
-배상금(310-02)	-	-	-	53,160	5,184	-	58,344	58,329	-	15
-사업출연금(350-02)	10,500	10,500	-	-	-	-	10,500	10,500	-	-
-연구개발인건비(360-01)	564	564	-	-	-	-	564	564	-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9,686	9,686	-	-	-	-	9,686	9,686	-	-
-자산취득비(430-01)	19,802	19,802	1,817	-	△13	△695	20,911	19,850	245	816

자료: 국방부

[배상금 집행을 위한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5. 12.26.)	간부확보장려사업 (2439-301) 등 49개 세부 사업	53,160	정보체계개발유지 (2131-302)	310-02	군수통합정보체계 배상금 지원
전용 (2025. 12.26.)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2131-301) 등 6개 세부 사업	5,184			
합계		58,344			

자료: 국방부

그러나 이러한 배상금 지출 소요는 “예상하지 못한 소요”라는 국방부 설명과는 달리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출 소요로 보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1심 판결은 이미 2024년 1월 국방부의 패소로 결론이 났으므로, 국방부는 최종 패소 및 대규모 배상금 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16]

참고로 해당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피고(국방부)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한 기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향유 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사업자 측에) 반환할 이유가 있고, 지체상금도 원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지체된 것이므로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음.

이처럼 대규모 배상금 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국방부는 2025년도 예산편성 시 이러한 우발채무 소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2025년 12월 말에 이르러서야 총 55개의 세부 사업에서 583억 4,400만원을 이·전용(증)하여 집행한 것임.

따라서 국방부는 대규모 배상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지출소요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둘째, 국방부는 대규모 정보화 사업 등 국가계약을 추진할 때 발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편 국방부는 해당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상소(2심·3심)를 추진하였으나 최종 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지연손해금 부담 등 추가적인 국고 지출이 발생되었음.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계약 범위를 초과한 과업을 무상으로 요구한 점과 부당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한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으며 456억원의 배상(부당이득금 반환)을 판시(2024년 1월)하였음. 국방부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2심 역시 패소(2025년 8월)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패소(2025년 12월)하였음.

그 결과 당초 456억원이었던 배상금에 지연손해금이 추가되었으며 총 재정지출은 583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즉 동 사업은 지연손해금 부담 등의 사유로 127억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한 것임.[17]

---

16) 참고로, 동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의 “항소제기지휘의견서”에서는 1심 결과에 대하여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전부패소하였다고 평가함.

따라서 국방부는 대규모 정보화 사업 등 국가계약을 추진할 때 발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소송 수행 시 외부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의 경우 조기 조정이나 상소 포기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연이자 누적에 따른 재정지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17)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정책적·법리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음에도 임의로 종결할 경우 오히려 상급심 판단을 받지 않은 것을 지적받을 수 있으며, 해당 상소(2심·3심)의 경우 법무부의 소송지휘에 따른 것이라고 함.

5.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 획득 소요 기간을 감안한 적정 소요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환자 후송 및 방역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급차 등 의무기동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74억 6,600만원 중 173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4,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2025년도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의무장비획득	40,196	40,196	967	△856	40,307	37,133	1,559	1,616	37,983
의무기동장비 획득	17,371	17,371	-	95	17,466	17,384	49	33	18,21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국방부는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정확한 소요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품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제 공정률과 납품 시기를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분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임.

당초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에 상용구급차 176대·환자후송버스 3대·방역차 16대 및 이동검사차량 1대 등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이 중 환자후송버스의 경우 당초 도입하기로 계획된 3대 중 1대만 도입되고 나머지 2대의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18) 일반회계-의무장비획득(2231-302)(인사복지실)

[2025년도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 편성단가 및 물량(환자후송버스)]

(단위: 천원, 대)

부대	장비명	편성액 (단가)	편성대수 (물량)	총액	비고
의무사	환자후송버스(41인승)	201,951	2	403,902	-조달청 조달 **-조달 취소**
	환자후송버스(38인승)	235,380	1	235,380	-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미도입 환자후송버스 2대의 경우 당초 조달청 조달을 통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조달을 취소하였다고 설명함. 즉 국방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형버스 출고 대기 물량이 많아 납품기한을 18개월로 설정하여 조달계약을 진행하였으나, 납품기한을 24개월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조달청(납품업체[19])의 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을 유보하였다는 것임.[20]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설명은 차량제작 및 납품이 18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예산편성 당시부터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집행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소요 예산 전액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의미함.

이러한 예산편성 방식은 필연적으로 "예정된 사고이월"이나 조달 계약 미체결에 따른 예산 불용을 초래하여 해당 연도에 다른 시급한 국방사업에 활용될 수 있었던 재원을 집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2025년도 환자후송버스 도입과정 중 국군의무사령부의 사업 부서에서 단년도 예산집행을 위해 "당해연도 내 100% 선급금 지급"이라는 예외적인 조치를 적용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21] 이러한 사업 추진 역시 부적정한 재정 운영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의 철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정확한 소요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19) 현대자동차(주)

20) 국방부는 납품기한을 18개월로 설정할 당시에는 일부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2026년도)로 사고 이월하여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나, 납품기한을 24개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산의 재이월(2027년도)이 발생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조달취소를 결정하였다고 함. 국방부는 조달취소 물량(2대)의 경우 2026년도 예산에 물량을 추가 반영(총 5대 = 당초 물량 3대 + 추가 물량 2대)하였다고 설명함.

21) 국군의무사령부 의무군수처가 의무사령부 재정과에 발송한 내부공문(제목: 2025년 조달 의무기동장비(환자수송버스 41인승) 구매 수정 계약 의뢰)에서 "협조사항: 연내 예산 집행 불가로 예산사고방지를 위해 선급금 100%로 진행 요망"이란 문구가 발견됨.

것이며, 납품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의 경우 단년도 예산으로 전액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정률과 납품 시기를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차별로 예산을 분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임.

또한 국방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외적인 100% 선급금 지급이나 관행적인 사고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임.

둘째, 국방부는 사업 취소나 조달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을 목적 외의 소요에 임의로 사용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편 국방부는 환자후송버스 조달 취소에 따라 불용 처리가 필요한 4억 4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긴급 소요에 대한 대응 및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해 조달 취소 예산을 활용하였다고 설명함.

이 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긴급 소요”에 대하여 국방부는 2025년 10월에 충청권역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장비를 긴급하게 도입한 사례 등을 예시로 설명하는데, 식중독 사태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긴급 소요는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22)]

따라서 국방부는 사업 취소나 조달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을 목적 외의 소요에 임의로 사용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2)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6. 재해보상금 사업: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재해보상금’ 사업은「군인 재해보상법」제33조 및 제39조를 근거로 군 복무 중 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38억 5,300만원 중 217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0%)되고, 21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23)24)]

[2025년도 재해보상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해보상금	25,853	25,853	-	△2,000	23,853	21,701	-	2,152	23,043
장애보상금	9,862	9,862	-	△2,000	7,862	7,300	-	562	7,871
사망보상금	15,991	15,991	-	-	15,991	14,401	-	1,590	15,17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3) 일반회계-재해보상금(2242-301)(인사복지실)

24)「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나.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다.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라.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제39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재해보상금은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군인에게 장애등급 및 장애원인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보상금과 군 복무 중 공무상 사망(전사·특수직무순직 또는 그 밖의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으로 구분됨.

장애보상금의 지급배율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1급)·6배(2급)·4.5배(3급) 및 3배(4급)에, 원인별로 1배(일반장애)·1.88배(특수직무공상) 및 2.5배(전상)가 적용되고 있음. 사망보상금의 지급배율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공무상 사망)·45배(특수직무순직) 및 60배(전사)가 적용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장애보상금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방부는 재해보상금 편성 시 장애보상금 지급인원 감소 추이 및 연도별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보상금 내역사업은 당초 예산액 98억 6,200만원의 74.0%인 73억원이 집행되었고, 사망보상금 내역사업은 당초 예산액 159억 9,100만원의 90.1%인 144억 100만원이 집행되었음.

집행 실적 부진에 대하여 국방부는 재해보상금 인원 및 금액을 정확히 추계하기가 어려워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025년도 내역사업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해보상금	25,853	25,853	-	△2,000	23,853	21,701	83.9	-	2,152
장애보상금	9,862	9,862	-	△2,000	7,862	7,300	74.0	-	562
사망보상금	15,991	15,991	-	-	15,991	14,401	90.1	-	1,59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재해보상금의 특성상 우발적인 사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 수 및 보상금액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연례적으로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측의 어려움이라기보다 국방부가 동 사업의 예산액을 실제 발생 가능한 수준보다 구조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음을 의미함.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동 사업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22년도 83.4%, 2023년도 90.1%, 2024년도 73.7%, 2025년도 83.9%임. 국방부가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수 및 보상금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동 사업 예산액을 편성하고자 하였다면 매년 연례적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

[2022~2025년도 재해보상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28,492	28,492	-	-	28,492	23,779	83.4	83.4	-	4,713
2023	24,726	24,726	-	-	24,726	22,287	90.1	90.1	-	2,439
2024	25,853	25,853	-	-	25,853	19,069	73.7	73.7	-	6,784
2025	25,853	25,853	-	△2,000	23,853	21,701	83.9	91.0	-	2,152

자료: 국방부

이러한 예산 과다 편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산출 시 적용되는 핵심적인 변수인 물량(지급대상자수) 추정 방식의 구조적 한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국방부는 동 사업 예산편성 시 "물량(지급대상자수) × 단가 × 지급배율(등급별)"의 산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물량(지급대상자수)의 경우 과거 3년간의 실제 지급인원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고 있음. 일례로 2025년도 물량(지급대상자수)의 경우 2021년~2023년의 과거 3년 평균치를 사용하였음.[25)]

그러나 이러한 단순 평균 방식은 지급 대상자 수가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할 때만 유효할 뿐이고 현재와 같이 지급 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 필연적으로 향후 발생 물량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오류를 유발하게 됨.

장애보상금 및 사망보상금의 연도별 지급 대상자 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자 수는 2022년 458명에서 2025년 29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러한 감소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지급 대상자 수가 많았던 과거의 수치가 포함된 평균치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물량(지급대상자수)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임.

25)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기존의 물량(지급대상자수) 추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기존의 추정 방식에 "10% 감액조정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장애보상금 지급인원 감소 추이를 감안하였다고 설명함.

[2022~2025년 연도별 장애보상금 및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 수 발생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수	458명	323명	287명	297명	2025 예산편성: 423명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 수	243명	271명	205명	241명	2025 예산편성: 242명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재해보상금 예산편성 시 장애보상금 지급인원 감소 추이와 연도별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과거 3개년 단순 평균 방식에서 탈피하여 최근 연도별 실적치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평균방식을 도입하거나 연도별 감소 추세율을 직접 산식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국방부는 재해보상금 미집행 예산을 당초 사업 목적과는 관련성이 높지 않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면밀한 사전 계획이나 타당성 검토없이 잔여 예산을 소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편 국방부는 이와 같이 실적 부진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을 연도 말에 이르러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등으로 전용(감)하여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와 같은 집행은 당초의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45조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26)27)]

또한 이러한 집행은 면밀한 사전 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잔여 예산을 소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임.

[2025년도 재해보상금 사업 이·전용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세부사업 명	목-세목	
조정 (2025.12.22.)	재해보상금 (2242-301)	320-03	390	보건복지지원 (2242-303)	320-09	성고충전문상담관 퇴직금 적립금 부족소요 충당
전용 (2025.12.26.)	재해보상금 (2242-301)	320-03	1,610	병내일준비지원 (2242-304)	310-04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 부족사유 발생

자료: 국방부

26)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7)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등 예산 부족 사업에 미집행 예산을 전용한 것이라고 설명함.

7.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 계약 체결 확대 필요 등

가. 개 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및 안전교육훈련 발전 등 국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80억 9,800만원 중 349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8%)되고 4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7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28)]

[2025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난 및 안전관리	32,245	32,245	296	5,557	38,098	34,967	429	2,702	31,68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재난예방공사는 병영 내 인명과 군사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을 보강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

나. 검토의견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재난예방공사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재난예방공사의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국방부가 2025년에 재난예방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총 170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123건(72.4%),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이 47건(27.6%)으로 나타남. 재난예방공사 수의계약 비율은 2021년 89.8%에서 2022년 88.9%, 2023년 83.8%, 2024년 75.8%, 2025년 73.5%로

28) 일반회계-재난 및 안전관리(2337-301)(군수관리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의계약의 비율(73.5%)이 경쟁입찰의 비율(26.5%)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지명경쟁·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으나, 국방부는 73.5%에 해당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경쟁입찰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임.[29)]

[최근 5년간 재난예방공사 계약 현황(건수 기준)]

(단위: 건, %)

연도	수의계약		경쟁입찰		총 계약건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1년	221	89.8	25	10.2	246	100.0
2022년	160	88.9	20	11.1	180	100.0
2023년	171	83.8	33	16.2	204	100.0
2024년	160	75.8	51	24.2	211	100.0
2025년	125	73.5	45	26.5	170	100.0

자료: 국방부

[최근 5년간 재난예방공사 계약 현황(금액 기준)]

(단위: 백만원, %)

연도	수의계약		경쟁입찰		전체계약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1년	12,156	78.6	3,319	21.4	15,475	100.0
2022년	10,516	78.3	2,914	21.7	13,430	100.0
2023년	11,521	72.2	4,443	27.8	15.964	100.0
2024년	10,948	64.2	6,097	35.8	17,045	100.0
2025년	12,080	70.1	5,153	29.9	17,233	100.0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① 재난취약지역 특성상 긴급 보강이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따른 공사 지연을 방지하고 광역 단위 지역 제한으로 원거리 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정이 가능한 수의계약을 자주 활용하였다는 입장임.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는 ② 군사시설 특성상 지형이 험난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GP·GOP 및 도서·산간 등)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장비를 운반한 경험이 있고 신원조회가 완료된 보안조치 이행 가능 업체를 선정할 필요성도 있으며,

③ 현재 대부분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 임의 선정이 불가능한 계약시스템(국방전자조달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 자동 선정 방식의 “공개수의계약(69.4%)”으로 진행되어 투명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함.

그러나 ① 재난예방공사는 본질적으로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므로 우기 이전 실시를 목표로 전년도 또는 연초부터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한다면 경쟁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② 격오지 공사 경험이나 보안조치 이행 능력 등은 지명경쟁, 제한경쟁 또는 입찰적격심사 시 평가 기준으로 명시하여 경쟁입찰의 틀 안에서 충분히 업체를 선별할 수 있으며,

③ 국방부가 주장하는 “공개수의계약(견적입찰)”으로 진행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완전한 경쟁입찰 방식에 비해 다수 업체의 참여가 제한되어 실질적인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타당성이 낮다고 할 것임.

향후 국방부는 재난예방공사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관행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 계약 집행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방부는 향후 재난 복구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개별 지원금의 구체적인 성격과 목적을 엄격히 구분하여 그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세분하여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방부는 2025년도에 당초 계획에 없던 자치단체 자본보조 목적으로 41억 5,100만원을 이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2025년 3월에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응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복구지원사업 보조금(25억 200만원) 및 주민안정지원금(16억 4,800만원) 등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함.[30)]

30)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는 2025년 3월 6일 10시경 승진 훈련장에서 투하 훈련을 진행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2대가 항공 폭탄 8발을 확인절차 없이 투하하여 대한민국 육군 군종시설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21-1번지(천주교 승진성당) 일대에 낙탄된 사건을 말함.

[2025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이용(증)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난 및 안전관리	32,245	32,245	296	4,151	1,407	38,098	34,967 (33,723)	429	2,702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원	-	-	-	4,151	-	4,151	4,151 (2,907)	-	-
피해복구 지원	-	-	-	2,502	-	2,502	2,502 (1,266)	-	-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	-	-	2,502	-	2,502	2,502 (1,266)	-	-
주민안정 지원금 지급	-	-	-	1,648	-	1,648	1,648 (1,641)	-	-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	-	-	1,648	-	1,648	1,648 (1,641)	-	-

자료: 국방부

[자치단체 자본보조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지원금액	실집행액
○ 3.6.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복구지원	2,502	1,266
- 마을주민 심리상담 지원	58	46
- 피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923	427
- 폐기물 해체/수집/운반 및 소각 비용	148	41
- 도로 포장공사	265	236
- 피해현장 의료지원, 심리지원 응급키트 등	79	69
- 피해주민 긴급이사비용, 피해주민 사고현장 지원 등	309	120
- 상수도관 복구공사	3	3
- 이재민 식비지원 및 사무용품 구입	81	76
- 임시 조립주택 설치, 전기 긴급복구	634	246
- 재난현장 이동식 화장실 임대설치비	2	2
○ 3.6. 전투기 오폭사고 관련 주민안정지원금 지급	1,648	1,641
- 주민안정지원금 지급	1,648	1,641

자료: 국방부

그러나 이러한 집행은 지원금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이한 비목의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하나의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임. 일례로 주민안정지원금은 피해 주민의 생계 및 생활 안정을 직접 지원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건축이나 자산 취득 등 자본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비목으로 잘못 집행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복구지원사업 보조금과 주민안정지원금을 복구계획에 포괄된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나,[31] 이러한 국방부의 설명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와 자본적 보조를 구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목별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임.

참고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와 자본적 보조를 각각 다른 비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경우 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을 위한 경비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경우 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보조금의 집행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의 보조금 분류를 살펴보면, 보조금은 그 지원 내용에 따라서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경상보조금의 경우 인건비·운영비·여비 및 용역비 등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자본보조금의 경우 토지매입비·시설건축비 및 자산취득 등을 위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구분됨.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재난 복구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개별 지원금의 구체적인 성격과 목적을 엄격히 구분하여 그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세분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임.

31) 또한 국방부는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재난복구지원금(보조금)을 교부한 최초의 사례였으며, 사업 추진 당시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와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의 구분 적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복구지원사업 보조금(약 25억)과 주민안정지원금(약 16억)을 복구계획에 포괄된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예산코드(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로 지급하였다고 설명함. 이와 함께 국방부는 향후 보조사업의 성격과 예산과목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함.

8. 합성훈련환경 체계구축 사업: 사전절차 완료 후 신규예산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합성훈련환경 체계구축’ 사업은 서로 다른 과학화 훈련 체계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 18억원이 전액 불용(집행률 0.0%)되었음.[32)]

[2025년도 합성훈련환경 체계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과학화훈련	87,834	87,834	7,841	△8,444	87,231	71,243	3,951	12,037	84,389
첨단과학훈련장비	52,736	52,736	7,000	△7,076	52,660	39,771	1,841	11,048	57,272
합성훈련환경 체계구축	1,800	1,800	-	-	1,800	-	-	1,800	9,22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가상훈련·전투지휘훈련 및 게임훈련 통합 소프트웨어 체계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대급 합성훈련환경(STE: Synthetic Training Environment)을 구축하려는 것임.

당초 동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가 110억 7,000만원이었으나, 사업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이 2027년까지로 변경되었고 시험평가 필요소요 증가에 따라 총사업비가 124억 6,000만원으로 증가되었음.

32) 일반회계-과학화훈련(2434-301)(국방정책실)

나. 검토의견

첫째, 국방부는 합성훈련환경 체계구축 사업의 사례와 같이 사업추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사업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액 18억원이 전액 미집행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집행부진에 대하여 국방부는 동 사업에서 추진 중인 합성훈련환경 체계의 경우 전군 최초로 도입되는 신규 체계로서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 성능에 대해 예상치 못한 수정소요가 다수 발생하였고, 그 결과 소요제기서 및 사업추진기본계획서 등을 확정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집행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이와 같이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으나 2026년 1월 합성훈련환경 체계 구축을 위한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2026년 5월부터 실제 시제품 제작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33)]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설명은 사업추진기본계획 등의 필수적인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 단계에 이르러 이러한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을 의미함.

[전력지원체계 업무절차]

소요요청	⇒	소요제기 및 결정	⇒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국방중기 계획 작성	⇒	예산 편성
국방부/소요군, 산·학·연		국방부/ 소요군		국방부/ 소요군		국방부		(국방부/ 소요군

자료: 국방부

이러한 행정절차 지연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단계에서 이미 지적되었으며,[34)] 이에 동 사업은 관련 예산 감액 조치 또는 국방부의 면밀한 사업 추진이

33) 사업 추진 경과(국방부 제출자료)
- 2024. 6월 ~ 2025. 4월 : 소요결정 및 선행연구
- 2025. 7월 ~ 2025. 9월 : 소요제기서 및 사업추진기본계획서 작성 / 제안요청서 확정
- 2025. 9월 : 입찰공고 의뢰, 이후 산출내역서 및 원가검증 기간 장시간 소요(2개월)
- 2025.11월 : 대대급 합성훈련환경(STE) 체계구축 관련 입찰공고
- 2026. 1월 ~ 2월 : 계약체결(2026. 1. 29.), 선금집행 및 착수토의 실시
- 2026. 3월 ~ 4월 : 기본설계 검토회의 및 상세설계 검토회의 실시
- 2026. 5월 ~ 현재 : 체계개발 및 시제품 제작 중

34)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4. 10, pp.242~246에서는 2020년에 이루어진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사업내용도 일부 변화하여, 2024년 초 이루어진 소요결정을 바탕으로 새롭게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요구되었음. 그럼에도 국방부는 2025년도에 동 사업 신규 예산을 편성하고서 부실한 사업 관리로 사업 기간 연장(전력화 지연) 및 예산 전액 미집행(예산의 효율적 배분 저해)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선행 연구 및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절차 미준수 또는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거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둘째, 국방부는 지출원인행위 준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자금 미배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편 국방부는 체계구축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로 하여금 실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25년도 예산액 18억원을 불용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을 근거로 시행(2025년 11월)한 입찰공고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해당 입찰공고를 근거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2026년 1월)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출원인행위 준칙을 규정하고 있는데,[35] 국방부의 사업 추진은 이러한 지출원인행위 준칙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동 사업 예산을 이월하려 하였으나,[36][37]

---

35)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36)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7)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연말 “국고당국의 자금 미배정”에 따라 불가피한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것이며, 장기계속사업이라는 점과 2026년도 동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동 사업의 추가적인 순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함.[38]

이러한 설명은 자금 미배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으로 향후 정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고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국방부는 지출원인행위 준칙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8) <국방부 제출의견>
○ 2025년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음에 따라 기존 공고는 취소하고 2026년도에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에 따라 기존 공고를 유지하였음.
• 첫째, 공고 취소 시 2025년 예산 18억 원의 사고이월 제한으로 불용이 확실시 되어 추가예산 확보 전까지 사업추진 불가
• 둘째, 판단 시점(2025. 11월)은 2026년 예산의 국회심의가 마무리되고, 의결단계 상태로 2025년도 불용되는 18억 원에 대한 추가 요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추가 반영없이 2026년 예산확정이 되면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제한, 2026년 편성예산(92억) 전액 불용 우려 → 2027년 이후 전액 재편성 추진 필요
• 셋째, 사업추진 장기간 지연 시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검증 및 예산 추가소요 발생, 해당사업의 기술적·환경적 변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추진계획 및 내역수정 소요 발생에 따라 추가 행정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지연의 악순환 발생 우려
○ 위 과정을 통해 사고이월 예산으로 사업을 정상추진하려 하였으나 2025년 12월 말, 이월자금 제한으로 해당 예산이 예기치 않게 불용됨.
○ 합성훈련환경(STE) 체계구축 사업은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LVCG*체계를 가상 전장환경에서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실전적 훈련을 할 수 있는 미래 우리 군의 주력 과학화 훈련체계임. 실전적 훈련을 통한 전투수행능력 극대화는 물론 훈련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 위험성 감소, 국내 신규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LVCG : L(Live: 실기동훈련), V(Virtual: 가상훈련), C(Constructive: 워게임), G(Game: 게임)
○ 이상의 합성훈련환경(STE) 체계구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국회의 공감을 얻은바, 이후 재공고 추진 시에는 사업이 예정보다 3년 이상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이월 후 1개월 이내 정상집행 예정이었으나, 이월자금 제한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용된 이후, 계획 대비 단 1개월 지연 후(2025.12월 → 2026.1월) 현재는 계약체결을 완료함.

9. 문화활동지원 사업: 일부사업 군인복지기금으로 이관 검토 필요

가. 개 요

‘문화활동’ 사업은 장병의 영화·공연관람 및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병영 독서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10억 7,400만원 중 199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7%)되고 4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39)]

[2025년도 정훈문화활동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훈문화활동	47,938	47,938	216	△35	48,119	45,680	696	1,743	55,203
문화활동	21,034	21,034	121	△81	21,074	19,967	420	687	28,26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진중문고·정기간행물 보급 및 병영도서관 운영 지원 등의 병영독서활동 지원에 102억 5,900만원, 민간 예술단체의 부대 방문공연 지원·장병 문화 체험교육 등의 문화활동 지원에 60억 6,600만원, 그 밖에 군악대 운영 등에 36억 4,1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정훈문화활동 사업 세부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적	2025년 예산액	2025년 집행액	2026년 예산액
병영 독서활동	정신전력 강화 및 장병 교양증진을 위해 진중문고·간행물 보급, 병영도서관 운영 등 **병영 독서 지원** 사업 ※ 병영도서관: 대대급 이상 부대에 설치, 이용 대상은 병사, 관련예산은 도서구입비·환경개선비·비품구매비 및 유지비 등으로 구성(1,685개 운영중)	10,738	10,259	10,740
문화 활동지원	**영화 및 공연관람**, 전적기념물 및 군문화재 관리 사업, 병영 **문화·예술 체험활동**, 병영문학상 작품 공모	6,583	6,066	6,561

39) 일반회계-정훈문화활동(2435-301)(국방정책실)

(단위: 백만원)

구분	목적	2025년 예산액	2025년 집행액	2026년 예산액
군악활동	군악연주회, 국군교향악단 운영, 국제군문화 교류 및 협력, 군가 제작·보급 및 경연대회 지원	3,713	3,641	3,704
동아리 지원	장병 정서함양 및 단결심 고취를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	1,228
병영문화 프로그램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연·공연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신세대 장병들의 소통·존중·공감 문화를 확산시키고 심리적 유대감을 증진하여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전투력 유지·향상에 기여하는 병영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	-	6,032
합계		21,034	19,967	28,26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국방부는 일반회계의 문화활동 사업 중 군인복지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문화행사 및 독서 지원 사업의 경우 군인복지기금으로 예산을 일원화하여 편성·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은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의 자금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즉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는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의 자금으로 장병 격려와 각종 문화 행사 등과 같은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40][41]

---

40)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1)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으로 ‘장병격려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의 장병격려사업은 체육행사·민군화합행사·문화행사 등의 각종 행사지원·작은도서관운영 지원 및 장병자기개발교육비 지원 등의 내역으로 구성됨.[42][43]

[2025년도 장병격려사업(기금) 내역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장병격려비	4,471	4,661	-	4,661	4,369	-	292
· 행사지원	**1,147**	**864**	**-**	**864**	**806**	**-**	**58**
· 임무수행부대격려사업	5,425	5,239	-	5,239	4,766	-	473
· 30년근속 위로사업	1,235	849	-	849	839	-	10
· 모범장병·군무원격려사업	2,395	2,855	28	2,883	2,845	28	10
· 병사망위로금	270	270	-	270	270	-	-
· 전우사랑보험제도	3,400	3,400	-	3,400	2,650	-	750
· 군인가족지원사업	1,405	1,718	4	1,722	1,624	-	98
· 재해장병 및 유가족위로사업	740	677	-	677	400	-	277
· 기타사업	1,691	1,644	-	1,644	1,216	-	427
· 작은도서관운영	**2,100**	**2,102**	**-**	**2,102**	**2,069**	**13**	**20**
· 장병자기개발교육	15,986	15,986	-	15,986	15,986	-	-
· 국내연수	162	162	-	162	161	-	2
합 계	40,427	40,427	32	40,459	38,000	41	2,417

자료: 국방부

1. 체육·문화행사, 예비역 초청행사 및 민군화합행사의 지원 및 포상
2. 부대 및 모범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특수지역 근무군인 및 작전유공 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
5.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
6.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
7. 「군인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부사관 및 준사관의 가족에 대한 위로 및 격려

42) 각종 행사지원: 체육행사, 부대창설행사, 민군화합행사, 문화행사 등 행사지원을 위한 장병격려사업(대령급 이하 체육행사비, 추계체육대회, 예비역부대초청행사 등)
※ 문화행사 예시: 동아리 발표회, 송년의 밤, 축제 및 친선행사 등 부대 장병이 참석하는 각종 문화행사

43)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군인아파트 내에 군인 가족과 자녀를 위한 작은 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67개소)하는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로 구성
※ 주거지원계정에 일반회계전입금 편성 조건으로, 일반회계 복지사업(장병보건및복지향상 프로그램)을 복지계정에 전환편성한 사업(2025년~)

이처럼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을 통해 이미 방문 공연 및 도서관 운영 등 문화활동 성격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진중문고 및 병영도서관 지원, 민간 예술단체 방문 공연 등)을 국방부 일반회계(동 사업, 문화활동 사업)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임.

동일·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일반회계와 군인복지기금에 분절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는바, 사업 추진 주체와 재원이 이원화됨에 따라 장병에게 제공되는 문화 혜택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통합적인 성과관리나 효과성 분석이 어려워지게 됨.[44)]

이에 장병 사기 진작이라는 군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아닌 군인복지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의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 받는 조건 하에 기존 일반회계 사업이었던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장병자기개발교육 비용 지원 등을 군인복지기금으로 전환해 온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부처 간 예산 협의 과정에서의 편의(조건부 교환)를 이유로 일부 사업만을 군인복지기금으로 이관했다는 국방부의 해명은 일반회계와 군인복지기금에 유사 성격의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예산 구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

군인복지기금의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일반회계로 분산하여 편성해 온 것이라면 국방부는 군 체력단련장 이용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군인복지기금의 자체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국방부는 일반회계의 문화활동 사업과 군인복지기금의 장병격려사업 간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군인복지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행사 및 독서지원 사업 등의 경우 군인복지기금으로 예산을 일원화하여 편성·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4) 국방부는 두 사업(군인복지기금의 장병격려사업 및 일반회계의 문화활동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있으나, "문화"·"행사"·"도서관" 등 유사한 대상이나 개념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유사·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목적·내용상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예산 사업명·대상·목적 등을 명확히 재정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10. 단기복무장려금 사업: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 준수 및 예산의 목적외 집행 지양

가. 개 요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은 학군사관후보생 및 학사사관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단기복무 간부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94억 9,900만원 중 294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45] 참고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487억 9,200만원) 대비 집행률은 60.4%에 불과함.

[2025년도 단기복무장려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93,380	-	△17,999	75,381	75,060	88	233	159,993
단기복무장려금	48,792	48,792	-	△19,293	29,499	29,484	-	15	91,86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동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2011년부터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에 「군인사법」 제62조의2 신설을 통해 법률에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동 법률 조항 및 하위 법령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군인사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에서는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46]

---

45) 일반회계-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인사복지실)

46) 「군인사법」[법률 제20018호]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군은 국방부의 「군 장려금 지급 규칙」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체력 검정 및 군사훈련 결과 등을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선발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에게 사관후보생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단기복무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하고 있음.[47]

나. 검토의견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은 국방부가 개정되기 전 법률 규정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미집행 예산을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이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25년도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25년도 당초 예산액 487억 9,200만원 중 294억 8,400만원만 집행(집행률 60.4%)되었음.

[2025년도 단기복무장려금 사업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단기복무장려금	48,792	48,792	-	△19,293	29,499	29,484	60.4	-	15
- 기타보전금 (310-04)	48,792	48,792	-	△19,293	29,499	29,484	60.4	-	15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의 집행부진에 대하여 국방부는 당초 총 4,066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급인원이 2,467명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48] 특히 지급대상 확대(졸업 후 사관후보생 포함)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 60억원(500명분)을 편성하였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어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고 함.

47)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2026년 8월부터 확대)될 예정으로 해당 대상자의 장려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음
1) 졸업 후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장교 양성교육 과정 때 지급
2)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부사관 양성교육 과정 때 지급
3) 임기제부사관: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48) 미달 사유에 대하여 국방부는 지급대상자의 중도포기·제적·휴학·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등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첫째, 국방부가 법적 근거(지급대상 확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49]

둘째,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인원(500명)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지급 인원(2,467명)이 지급 목표인원(3,566명)의 69.1%에 불과한 것은 단기복무장려금 지원이 초급간부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 할 것임.[50]

셋째, 국방부는 이처럼 실적 부진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을 연도 말에 이르러 '정보체계개발유지(정보화)' 사업으로 이용(감)하여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와 같은 집행은 당초의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이용하여 집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45조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51]

또한 이러한 집행은 면밀한 사전 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잔여 예산을 소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임.

[2025년도 단기복무장려금 사업 이·전용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이용 (2025.12.26.)	간부확보장려사업 (2439-301)	△17,999	정보체계개발유지(정보화) (2131-302)	정보체계개발 관련 배상금 부족액 충당

자료: 국방부

49) 이와 관련하여 졸업 후 사관후보생을 사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40호)이 2024년 8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었으나 부처간 이견(기획재정부의 법개정 반대의견)이 있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2026년 1월 15일에 이르러서야 동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5114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참고로 해당 법률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50) 이와 관련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자료(초급간부 지원동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단기복무장려금 수령 가능" 사유는 초급간부 지원동기 33개(설문대상 지원동기) 중 상위 23위(5점 척도 기준 3.3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한국국방연구원, "장교·부사관 지원동기 등에 관한 심층분석", 2025, p. 27).

5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금 사업 추진 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 예산을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이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이 입대 의사결정에 실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 분석 등을 통해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임.

11. 동원훈련 사업: 훈련 인원 감소 추이를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동원훈련’ 사업은 전시에 증설 또는 창설이 계획된 부대에 대한 병력 동원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40억 4,800만원 중 425억 7,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7%)되고 8,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3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음.[52] 참고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513억 9,600만원) 대비 집행률은 82.8%임.

[2025년도 동원훈련 사업 및 일반훈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동원훈련	51,396	51,396	-	△7,348	44,048	42,573	86	1,389	51,371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Ⅰ형,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으로 구분됨.

우선 동원훈련Ⅰ형은 예비군 간부 1~6년차와 병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동원지정자)가 병력동원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3일(28H)동안 숙영하며 전시 대비 소속 편제를 유지하여 실시하는 훈련임.

한편 동원훈련Ⅱ형은 예비군 간부 1~6년차와 병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아닌 자(동원미지정자) 및 동원훈련Ⅰ형을 미이수한 예비군이 동원훈련장 또는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숙영(2박3일) 또는 비숙영(4일)하며 개인 기본전투기술과 주특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훈련임.[53]

한편 기본훈련은 예비군 병 5~6년차와 대학생예비군 대상자 등이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1일(8시간) 동안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훈련임.

끝으로 작계(작전계획)훈련은 예비군 병 5~6년차 및 간부 1~6년차 중 주요 직위자(소대장·부중대장)가 작계(작전계획)지역에서 연 2회(전·후반기) 각 6시간씩 지역방위 작전 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훈련임.

52) 일반회계-동원훈련(2632-303)(인사복지실)

53) 간부와 공군 병은 예외적으로 숙영훈련을 실시하며, 동원훈련Ⅰ형으로 훈련참가비가 지급됨.

[예비군훈련 유형 및 대상자별 훈련기간]

구 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동원훈련 Ⅰ형(숙영)	동원훈련 Ⅱ형(비숙영)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	-	-	-
병	1~4 년차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28시간 (2박 3일)	-	-	-
		동원훈련 Ⅰ형 미참석자	28시간 (2박 3일)	32시간 (4일)	-	-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	32시간 (4일)	-	-
		공군 병	-	28시간 (2박 3일)	-	
	5~6 년차		-	-	8시간	12시간 * 반기 6시간
	7~8 년차		미이수 훈련			
간부	1~6 년차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28시간 (2박 3일)	-	-	-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	28시간 (2박 3일)	-	-
	7년차~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예비군법」제11조 및「병역법」제52조제1항을 근거로 예비군 훈련자에게 훈련비 및 여비(교통비) 등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54)55)]

국방부는 동원훈련 사업 예산으로 동원훈련Ⅰ형(구(舊) 동원훈련 및 구(舊) 동미참훈련(입영)) 훈련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및 귀향여비 등을 지원하고, 또 다른 세부사업인 일반훈련 사업 예산으로 동원훈련Ⅱ형(구(舊) 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의 훈련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및 교통비 등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함.[56)]

54)「예비군법」
제11조(훈련비 등 지급)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55)「병역법」
제52조(병력 동원훈련 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 동원훈련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56) 일반회계-일반훈련(2632-304)(인사복지실)

[2025년 예비군훈련 유형별 손실보상금 지원금액(단가)]

세부사업	구분(년간)		지원항목	지원금액(원)
동원훈련 (2632-303)	동원훈련 Ⅰ형 (2박3일)	구(舊) 동원훈련	훈련비	82,000
			귀향 여비	- 60km 미만: 1일 4~8천원 - 61km 이상: {(유류비)156원/km × 이동거리} + (톨게이트 기본료) 900원
			급식비	13,000
		구(舊) 동미참 (입영)	훈련비	82,000
			입·퇴소 여비	- 138.41원/km × 이동거리
			급식비	13,000
일반훈련 (2632-304)	동원훈련Ⅱ형 [구(舊) 동미참 (출·퇴근)] (4일)		훈련비	40,000
			교통비	- 60km 미만: 1일 8~16천원 - 61km 이상: 131.82원/km × 이동거리
			중식비	8,000
	기본훈련 (1일)		훈련비	-
			교통비	- 60km 미만: 1일 8~16천원 - 61km 이상: 131.82원/km × 이동거리
			중식비	8,000
	작계훈련 (6시간 × 2회)		훈련비	-
			교통비	3,000
			중식비	8,00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국방부는 향후 동원훈련 사업 예산편성 시 실제 훈련인원의 감소 추세 및 연도별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원훈련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023년도 83.4%, 2024년도 81.0%, 2025년도 82.8%임.

[2023~2025년도 동원훈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3	49,873	49,873	29	△1,446	48,456	41,635	**83.4**	85.9	11	6,809
2024	50,191	50,191	11	△297	49,905	40,690	**81.0**	81.5	-	9,215
2025	51,396	51,396	-	△7,348	44,048	42,573	**82.8**	96.7	86	1,389

자료: 국방부

이러한 집행실적의 부진은 실제 훈련 인원보다 예산편성 인원이 과도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동원훈련 사업의 예산편성 인원과 실제 훈련 인원을 비교하면, 실제 훈련 인원의 비율은 2023년도 85.2%, 2024년도 79.6%, 2025년도 81.4%로 나타남.

[동원훈련 사업의 예산편성 인원 대비 실제 훈련 인원 비교]

(단위: 명, %)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편성 계획인원 (A)	실제 훈련 인원 (B)	비율 (B/A)	예산편성 계획인원 (A)	실제 훈련 인원 (B)	비율 (B/A)	예산편성 계획인원 (A)	실제 훈련 인원 (B)	비율 (B/A)
동원 훈련	428,438	365,147	85.2	431,813	343,630	79.6	425,046	346,031	81.4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동원훈련 사업 및 일반훈련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과거 3개년 평균 훈련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법령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자에 대한 훈련비 및 여비(교통비) 등이 부족함이 없도록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원훈련 사업 훈련인원 관련 과다편성 규모는 2022년 1만 158명, 2023년 6만 3,291명, 2024년 8만 8,183명, 2025년 7만 9,01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동원훈련 사업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추계에서 구조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훈련인원 추정 시 과거 3년간의 실제 훈련인원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순 평균 방식은 실제 훈련인원이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할 때만 유효할 뿐이고 최근과 같이 실제 훈련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 필연적으로 향후 발생 물량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오류를 유발하게 됨.

참고로 동원훈련 사업의 최근 실제 훈련인원은 2022년 41만 8,280명, 2023년 36만 5,147명, 2024년 34만 3,630명, 2025년 34만 6,03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동원훈련 사업의 연도별 예산편성 계획인원 대비 실제 훈련인원 비교]

(단위: 명)

구분	구(舊).동원훈련			구(舊).동미참훈련(입영)			합 계		
	예산 편성 (A)	실제 훈련 인원(B)	과다 편성 (A-B)	예산 편성 (A)	실제 훈련 인원(B)	과다 편성 (A-B)	예산 편성 (A)	실제 훈련 인원(B)	과다 편성 (A-B)
2018	421,381	401,882	19,499	17,231	21,614	△4,383	438,612	423,496	15,116
2019	411,249	396,336	14,913	17,076	19,065	△1,989	428,325	415,401	12,924
2022	408,984	405,522	3,462	19,454	12,758	6,696	428,438	**418,280**	**10,158**
2023	408,984	351,563	57,421	19,454	13,584	5,870	428,438	**365,147**	**63,291**
2024	411,769	328,344	83,425	20,044	15,286	4,758	431,813	**343,630**	**88,183**
2025	406,889	331,324	75,565	18,157	14,707	3,450	425,046	**346,031**	**79,015**

주 1) 2022년도의 경우 일부 훈련 미실시
2) 2020년도 및 2021년도 자료는 코로나19로 인한 동원훈련 미실시 등을 감안하여 미기재
자료: 국방부

이처럼 물량을 과대평가하는 국방부의 예산편성 방식은 필연적으로 예산 미집행을 초래하여 해당 연도에 다른 시급한 국방사업에 활용될 수 있었던 재원을 집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기회비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동원훈련 사업 예산편성 시 실제 훈련인원 감소 추세와 연도별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거 3개년 단순 평균 방식에서 탈피하여 최근 연도의 실적치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하거나 연도별 감소 추세율을 직접 산식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군배상금 사업: 연례적 예산 과소 편성 및 연말 자금 미배정에 따른 국민 불편 유발 방지 필요

가. 개 요

‘군배상금’ 사업은 국가 또는 군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895억 6,300만원 중 1,794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7%)되고 1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0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57][58]

[2025년도 군배상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군배상금	17,689	17,689	-	171,874	189,563	179,426	130	10,007	20,01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국방부는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군배상금 사업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 이·전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연도별 군배상금 사업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022년도 119.5%, 2023년도 317.2%, 2024년도 767.3%, 2025년도 1,014.3%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군배상금 사업 예산액이 2022년도 827억 900만원에서 2025년도 176억 8,900만원으로 감소된 반면, 집행액이 2022년도 989억 800만원에서 2025년도 1,794억 2,600만원으로 증가됨에 기인함.

57) 일반회계-군배상금(7136-301)(법무관리관실)

58) • (소음피해배상금)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배상금
• (일반배상금)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를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2022~2025년도 군배상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82,709	82,709	-	16,294	99,003	98,908	119.5	99.9	-	95
2023	27,705	27,705	-	60,693	88,398	87,898	317.2	99.4	-	500
2024	17,689	17,689	-	118,049	135,738	135,737	767.3	99.9	-	-
2025	17,689	17,689	-	171,874	189,563	179,426	1,014.3	94.6	130	10,007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최근 급격하게 배상금 소요액이 증가한 주된 사유로 과거사 관련 대규모 소송에 따른 배상 판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일례로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관련 배상 소송이 급증하였다고 함.[59)]

국방부는 특히 2025년의 경우 삼청교육대 사건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2025년 9월), 여수·순천 10.19사건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2025년 10월) 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배상금 판결이 증가하여 예산편성액을 초과하는 군배상금 집행 소요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국방부는 군배상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이·전용(증)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사관인건비' 사업에서 200억원(2025년 5월 20일) 및 470억원(2025년 8월 11일)을 이용(증)하는 등 총 1,718억 7,400만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에서 이용(증)하였음.

[2025년도 군배상금 사업 이·전용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2025.05.20.)	부사관인건비 (1101-152)	110-01	20,000	군배상금 (7136-301)	310-02	5.18.사건 등 군배상금 부족소요 발생

59) 1990년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은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는데, 2021년 헌법재판소는 재판상 화해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2025.07.14.)	항공장비 (2331-303)	430-01	61			
자체이용 (2025.07.14.)	통신전자장비 (2331-305)	430-01	6			
자체이용 (2025.07.14.)	일반장비 (2331-306)	430-01	74			
자체이용 (2025.07.14.)	특수장비 (2331-307)	430-01	60			
자체이용 (2025.07.14.)	정비장비 (2331-309)	430-01	99			
자체이용 (2025.07.14.)	난방연료 (2335-302)	210-02	200			
자체이용 (2025.07.14.)	과학화훈련 (2434-301)	430-01	470			5.18.사건 등 군배상금 부족소요 발생 및 법무부의 항소포기 지휘에 따라 예상보다 빠른 판결 증가로 배상금 부족 * 2025. 9. 28. 삼청교육대 사건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 * 2025.10. 13. 여수·순천 10.19사건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 * 기타 과거사(제주4.3, 보도연맹 등) 사건도 빠른 재판 종결에 따른 배상금 증가
자체이용 (2025.07.14.)	부대훈련및지원 (2438-301)	260-01	30			
자체이용 (2025.08.11.)	**부사관인건비 (1101-152)**	**110-01**	47,000			
자체이용 (2025.08.11.)	장비연료 (2335-303)	210-08	13,000	군배상금 (7136-301)	310-02	
자체이용 (2025.11.03.)	과학화훈련 (2434-301)	430-01	5,874			
자체이용 (2025.11.07.)	난방연료 (2335-302)	210-08	22,300			
자체이용 (2025.11.07.)	장비연료 (2335-303)	210-08	22,700			
자체이용 (2025.12.08.)	기동장비(유지) (2333-305)	430-01	3,192			
자체이용 (2025.12.08.)	함정장비(유지) (2333-308)	430-01	3,840			
자체이용 (2025.12.08.)	난방연료 (2335-302)	210-08	10,900			
자체이용 (2025.12.08.)	장비연료 (2335-303)	210-08	500			
자체이용 (2025.12.08.)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2339-304)	210-11	7,420			
자체이용 (2025.12.08.)	간부양성교육 (2431-302)	310-04	4,148			
자체이용 (2025.12.26.)	병참물자 (2332-302)	210-07	266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2025.12.26.)	병참물자 (2332-302)	430-01	2,567	군배상금 (7136-301)	310-02	5.18.사건 등 군배상금 부족소요 발생 및 법무부의 항소포기 지휘에 따라 예상보다 빠른 판결 증가로 배상금 부족 * 2025. 9. 28. 삼청교육대 사건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 * 2025.10. 13. 여수·순천 10.19사건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 * 기타 과거사(제주4.3, 보도연맹 등) 사건도 빠른 재판 종결에 따른 배상금 증가
자체이용 (2025.12.26.)	물자유지 (2332-305)	210-01	184			
자체이용 (2025.12.26.)	물자유지 (2332-305)	210-07	234			
자체이용 (2025.12.26.)	기동장비(유지) (2333-305)	210-09	155			
자체이용 (2025.12.26.)	기동장비(유지) (2333-305)	430-01	2,764			
자체이용 (2025.12.26.)	화력장비(유지) (2333-306)	210-11	139			
자체이용 (2025.12.26.)	항공장비(유지) (2333-307)	210-09	727			
자체이용 (2025.12.26.)	항공장비(유지) (2333-307)	210-11	1,574			
자체이용 (2025.12.26.)	함정장비(유지) (2333-308)	210-11	774			
자체이용 (2025.12.26.)	통신전자장비(유지) (2333-309)	210-09	616			

자료: 국방부

이와 같이 예산의 과소 편성과 대규모 이용(증)을 통한 집행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적절성이 미흡함을 의미함. 국방부는 국가배상 관련 소송의 판결 시점이나 금액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과거사 관련 배상 소요의 급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국방부는 군배상금 사업 예산액을 2022년 827억 900만원에서 2025년 176억 8,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것임.

이와 같은 국방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행위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배상금 지급을 원활하지 않게 하여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으며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 비용 부담까지 추가적으로 유발하여 국가 재정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국방부의 집행행위는 국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과도하게 집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국방부는 과거사 사건 관련 배상 소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군배상금 사업에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 이·전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방부는 군 배상금에 대하여 관련 소송 경과 및 기존 피해자 통계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이용 재발을 방지하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을 요구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6.4.30)
대규모 이용액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예산 편성 적절성 제고 필요	ㅇ [지적사항] 일반배상금은 2021년 이·전용 규모가 10억원으로 소규모였으나, 2022년 162억 9,400만원, 2023년 606억 9,3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방부 이·전용 사업 중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용증액(1,180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이용규모의 증가는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에 관한 2022년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하여 과거사로 인한 배상금 지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170억 8,900만원으로 과소편성 하였기 때문임 ㅇ 2025~2026년부터는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 재판, 제주4·3사건 관련 재판, 여순사건 관련 재판도예정되어 있어 더욱 막대한 군 배상금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ㅇ [시정요구사항] 국방부는 군 배상금에 대하여 관련 소송 경과 및 기존 피해자 통계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이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	ㅇ 2027년도 예산편성시 각 군의 소송 경과 및 주요 과거사 통계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이용을 최소화하겠음 ㅇ조치완료일 : 2026년 1월 20일 · 송무소청팀-587(2026. 1.20.) 월간 소송현황 보고 요청 - 각 군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배상금 예산 편성 적절성 제고를 위하여 지시공문 하달	조치완료

둘째, 정부는 군배상금 사업에서의 사례와 같이 자금 미배정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국가 재정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편 2025년도 동 사업의 불용액은 100억 700만원임.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이 중 100억원의 경우 연말 “국고당국의 자금 미배정”에 따라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 처리한 것이며,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지급한 배상금의 경우 2026년 1월 말까지 2026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을 완료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집행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배상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아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였다는 점 및 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8,200만원)가 추가로 발생하여 국가 재정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정부는 자금 미배정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국가 재정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연말 집행지연에 따른 추가이자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순번	구분	사건유형	미지급액	지연이자	최종 지급액	비고
1	강○○ 외2	군복무중 순직	216	1	217	1.12. 지급
2	김○○	삼청교육피해	7	-	7	1. 9. 지급
3	강○○ 외13	삼청교육피해	1,032	3	1,035	1.12. 지급
4	김○○ 외6	전남장성 민간인학살	152	1	153	1.12. 지급
5	김○○	삼청교육피해	154	1	155	1.12. 지급
6	김○○ 외8	거창 민간인 학살	864	3	867	1.12. 지급
7	김○○ 외12	충북청주 민간인학살	495	2	497	1.12. 지급
8	정○○	삼청교육피해	183	1	184	1.12. 지급
9	모○○	전남함평 민간인학살	300	1	301	1.12. 지급
10	임○○ 외7	거창 민간인 학살	1,527	6	1,533	1.12. 지급
11	홍○○ 외15	거창 민간인 학살	924	3	927	1.12. 지급
12	곽○○ 외9	거창 민간인 학살	1,239	4	1,243	1.12. 지급
13	정○○ 외16	전남장성 민간인학살	140	1	141	1.12. 지급
14	나○○ 외5	삼청교육피해	162	-	162	1.31. 지급 지연이자 없음
15	김○○ 외3	5.18광주민주화	196	-	196	1. 9. 지급
16	김○○ 외24	거창 민간인 학살	1,610	6	1,616	1.12. 지급
17	박○○ 외17	거창 민간인 학살	664	3	667	1.12. 지급
18	정○○	삼청교육피해	135	46	181	1.12. 지급
합 계			**10,000**	**82**	**10,082**	-

자료: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 출〉

13.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사업: 사업경과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미집행 예산 과다 전용 재발 방지 필요

가. 개 요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은 200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264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시에 위치한 광주기지 영외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인접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억 4,500만원이 전액 불용(집행률 0.0%) 되었음.[60)61)]

[2025년도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1,543	1,543	-	△698	845	-	-	845	5,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0)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광주기지영외탄약고이전(4131-341)(군사시설국)

61) 사업추진경과
- 2005. 12월 : 이전 사업 승인
- 2006~2007년 : 탄약고 이전 반대 민원으로 사업 순연
- 2008. 2월~12월 : 광주 군 공항 종합연구용역 시행(국방부/KIDA)
  ※ 용역 결과 : 군 공항 이전은 장기간 소요, 현안 민원 해소와 도시 발전을 위해 탄약고 이전 필요
- 2009~2012년 : 부지 매입, 문화재·환경 관련 용역, 설계 진행
- 2013. 5월 : 탄약고 형태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 조정(폭발물 안전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
- 2014. 8월 : 폭발물 안전심의 재심의 완료
- 2016. 9월 : 설계 완료
- 2016~2019년 :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가시화로 공사 착공 잠정 보류
- 2019. 12월~2020. 5월: 공사 추진을 위한 기존 설계 내역 재검토 및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
- 2020. 11월~2023. 6월: 연약지반공사 완료
- 2024. 11월~12월: 국회 국방위·예결위, 광주 군 공항 이전 장기화에 따른 사업 재개 필요 의견
- 2025. 12월 : 3차 총사업비 협의조정(3,262억원 → 3,265억원, 사업기간: ~2025년→ ~2030년)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의 목적은 군공항 인접지역으로 탄약고를 이전하여 신속한 탄약지원과 군의 작전지원능력을 개선하려는 것임. 동 사업에 따라 광주기지영외탄약고를 이전 예정지(現 광주 군 공항 인근)에 신축한 이후 광주 군 공항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이전하는 광주 군 공항 인근으로 탄약고를 재이전해야 함.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광주시 및 지역 주민의 탄약고 이전 요구에 따라 상무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광주기지영외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옆으로 이전하는 사업임
- (임　　무) 전시 미군 항공기 탄약 및 미사일 등 저장
- (사업 위치) 광주 서구 마륵동 → 광산구 신촌동(軍 공항 인접부지)
- (총사업비) 3,265억원 (2,681억원 집행*), 사업기간 : '09 ∽ '30
  * 집행내역: 토지매입・이주대책 등 보상비(2,294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163억원), 설계비(17억원), 연약지반개선공사(207억원)
- (사업 규모) 탄약고 및 사무실 등 68동(12,608㎡)

나. 검토의견

국방부는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제 집행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적정한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불용 처리할 필요가 있음.

당초 2025년도 동 사업 예산은 15억 4,300만원으로, 이주 대상자들에 대한 이주정착금 보상을 위한 건설보상비 15억 4,100만원[62],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고려한 최소 공사비 100만원 및 기타 시설부대비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그런데 동 사업은 이러한 건설보상비·공사비 및 시설부대비가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특히 건설보상비의 경우 6억 9,800만원이 다른 사업으로 조정(감)되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됨.

[2025년도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광주기지 영외탄약고이전	1,543	1,543	-	△698	845	-	-	845	5,000
- 건설보상비	1,541	1,541	-	△698	843	-	-	843	-
- 실시설계비	-	-	-	-	-	-	-	-	301
- 공사비	1	1	-	-	1	-	-	1	4,482
- 감리비	-	-	-	-	-	-	-	-	160
- 시설부대비	1	1	-	-	1	-	-	1	57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동 사업의 경우 향후 광주 군공항 이전 시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의 발생이 우려[63]됨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었으나 이주 대상자들과의 이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주정착금 보상을 위한 건설보상비를 2025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함.

62) 건설보상비는 미이주 63세대에 대한 보상비

63) 동 사업에 따라 광주기지 영외탄약고를 이전 예정지(現 광주 군 공항 인근)에 신축한 이후에 광주 군 공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이전하는 광주 군 공항 인근으로 탄약고를 재이전해야 함.

다만 국방부는 2025년에 이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사업 건설보상비의 집행이 불가능하였고 미집행 잔액 중 일부를 건설보상비가 부족한 다른 사업으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25년 6월 동 사업 예산 중 6억 8,300만원을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으로 조정(감)하였는데, 이처럼 국방부가 2025년 6월에 동 사업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조정(감)하였다는 점은 국방부가 2025년 6월 이전에 이미 동 사업의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그럼에도 국방부는 지출구조조정이 포함된 정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동 사업 감액안을 누락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6/23일 ~ 7/4일) 도중에 미집행이 예상되는 동 사업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집행한 것임.

[2025년도 건설보상비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06.24.)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4131-341)	410-00	683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4131-485)	410-00	건설보상비 부족예산 확보
조정 (2025.12.03.)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4131-341)	410-00	16	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 (4131-480)	410-00	건설보상비 부족예산 확보

자료: 국방부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국방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이를 감액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 심의 기간 중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조정(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2022~2025년도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22,373	22,373	1,326	-	23,699	23,152	103.4	97.6	509	38
2023	773	773	509	527	1,809	1,786	230.9	98.7	20	3
2024	2,195	2,195	20	△145	2,070	96	4.3	4.6	-	1,973
2025	1,543	1,543	-	△698	845	-	-	-	-	845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부는 실제 집행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적정한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불용 처리하거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공식적인 예산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임.

14.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 조속한 부지 반환 노력 필요

가. 개 요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은 문화재 보호구역인 서오릉(西五陵) 내에 위치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전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학교를 국군방첩사령부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64][65] 2025년도 예산현액 90억 7,100만원 중 23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26.2%)되었으며, 66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66]

[2025년도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8,352	8,352	10	710	9,072	2,380	-	6,692	15,63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이 문화재 보호 필요성 및 지역사회의 부지 환원 요청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오릉 부지 내 건물 철거 및 해당 부지 반환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575억 7,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임.[67]

---

64) 서오릉(西五陵)은 서쪽에 있는 5기의 능이라는 뜻으로 경릉(敬陵), 창릉(昌陵), 익릉(翼陵), 명릉(明陵), 홍릉(弘陵)의 다섯 능을 의미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위치함.

65)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사업규모: 2022년~2027년 / 575억 7,800만원 / 건물 5동(연면적 16,158㎡) 이전

66)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4131-485)(군사시설국)

67) 사업추진경위
- 2019. 10월: 선행연구 완료
- 2019. 12월 ~ 2020. 6월: 사업타당성 검토
- 2022. 12월: 설계계약 체결
- 2024. 2월: 조달청 기본설계(설계 30%) 적정성 검토 완료
- 2024. 5월: 조달청 중간설계(설계 60%) 적정성 검토 자료 접수

2025년도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은 2025년도 예산현액 90억 7,200만원 중 23억 7,000만원만 집행(집행률 26.1%)되었음. 특히 동 사업은 공사비와 감리비 등이 전액 미집행됨.

[2025년도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 세부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 예산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8,352	8,352	10	710	9,072	2,370	26.1%	15,633
· 건설보상비(410-00)	1,639	1,639	-	683	2,322	2,322	100.0%	-
· 실시설계비(420-02)	-	-	10	-	10	-	-	-
· 공사비(420-03)	6,358	6,358	-	±340	6,358	-	-	14,940
· 감리비(420-04)	333	333	-	-	333	-	-	673
· 시설부대비(420-05)	22	22	-	27	49	48	98.0%	20

자료: 국방부

이러한 집행실적 부진에 대하여 국방부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로 상반기 중 집행이 제한되었다고 설명함. 이와 함께 국방부는 2025년 8월 총사업비 협의 완료 이후 공사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의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사업의 추진이 2025년 8월부터 중단되어 공사비 등의 집행이 제한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당초 동 사업은 문화재 보호 필요성 및 지역사회의 부지 환원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조직개편이나 기능 이관 또는 폐지 등과 무관하게 서오릉 부지 내 건물 철거 및 부지 반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조직개편을 이유로 서오릉 부지 내 건물 철거 및 부지 반환을 지체하는 것은 국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으로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이 문화재 보호 필요성 및 지역사회의 부지 환원 요청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오릉 부지 내 건물 철거 및 해당 부지 반환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24. 6월: 개발제한구역 경미한 변경 계약 체결(~2024. 12. 28.)
- 2024. 11월: 총사업비 협의 조정
  (총사업비: 485억 8,600만원 → 555억 4,800만원, 사업기간: 2022년~2025년 → 2022년~2027년)
- 2025. 8월: 총사업비 협의 조정(총사업비: 555억 4,800만원 → 575억 7,800만원)
- 2025. 8월: 방첩사 폐지 발표에 따른 사업 재검토 필요

둘째, 국방부는 예산관리 시스템 및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사전 소요 예측 및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동 사업과 관련된 예산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2025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동 사업과 관련된 예산 조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됨.

우선 국방부는 2025년 6월 11일에 ‘1군지사이전’ 사업 공사비(420-03목) 예산 중 3억 4,000만원을 동 사업의 공사비(420-03목)로 조정(증)하였으며, 이로부터 5일 후인 6월 16일에 동 사업의 공사비(420-03목) 예산 중 3억 4,000만원을 ‘350군사안보지원부대’ 사업의 공사비(420-03목)로 조정(감)하였음.

한편 국방부는 2025년 6월 24일에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사업 건설보상비(410-00목) 예산 중 6억 8,300만원을 동 사업의 건설보상비(410-00목)로 조정(증)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도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06.11.)	1군지사이전 (4131-307)	420-03	340	군사안보지원학교 (4131-485)	420-03	공사비 부족예산 확보
조정 (2025.06.16.)	군사안보지원학교 (4131-485)	420-03	340	350군사안보지원부대 (4131-486)	420-03	공사비 부족예산 확보
조정 (2025.06.24.)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4131-341)	410-00	683	군사안보지원학교 (4131-485)	410-00	건설보상비 부족예산 확보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공사비 조정(증감) 부분의 경우 예산 조정 시스템 처리 중 사업코드 오입력에 따른 단순 오류라는 입장이며, 건설보상비 조정(증) 부분의 경우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부지 관련 그린벨트 보전 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사업코드 오입력”에 따른 예산 조정이 발생한 것은 국방부의 예산관리 시스템과 검증 체계가 부실함을 방증하는 것임. 또한 그린벨트 보전 부담금과 같은 법정 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당초 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타 사업 예산에서 사후에 충당한 것은 국방부의 사전 소요 예측 및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임.

따라서 국방부는 사업코드 오입력과 같은 단순 오류에 따라 수억원의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관리 시스템 및 검증 체계를 점검하여 개선하고 사전 소요 예측 및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

〈수 입〉

15. 입장료수입: 요금 인상 등 수입증대 방안 적극 추진 필요

가. 개 요

‘입장료수입’은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및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입장료 수입금을 수납하는 수입과목으로, 징수결정액 1,139억 7,100만원 중 1,137억 5,0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8%)되고 미수납액 2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음.[68]

[2025년도 입장료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입장료수입	125,744	125,744	113,971	113,750	220	-	99.8	128,826

국방부는 총 35곳에 달하는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운영 중으로 신분별로 차등화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음. 정회원은 장교·부사관·군무원 및 병 등으로서 준회원 또는 비회원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가 적용됨.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의 이용 요금은 2024년 5월 인상 후 2026년 6월말 현재까지 변동이 없음.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요금 구분 기준]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 병 · 근속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인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 등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 등	· 정회원, 준회원 이외의 민간인

자료: 국방부

68)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입장료수입(64-641)(인사복지실)

[군 체력단련장(골프장)별 이용요금(2026년 5월말 기준)]

(단위: 원)

구 분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평일	주말	카트비	평일	주말	카트비	평일	주말	카트비
국군복지단(4)	태릉	47,200	47,200	6,000	79,000	79,000	17,000	190,000	230,000	20,000
	남수원	47,200	47,200	6,000	79,000	79,000	17,000	140,000	200,000	20,000
	동여주	47,200	47,200	6,000	79,000	79,000	17,000	140,000	200,000	20,000
	처인	47,200	47,200	6,000	79,000	79,000	17,000	140,000	200,000	20,000
육군(12)	계룡대	38,000	38,000	6,000	72,000	79,000	10,000	124,000	170,000	20,000
	구룡대	38,000	38,000	6,000	72,000	79,000	10,000	124,000	170,000	20,000
	자운대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7,000	86,000	100,000	12,000
	남성대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10,000	78,000	94,000	20,000
	창공대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7,000	70,000	98,000	12,000
	함안대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10,000	68,000	94,000	20,000
	무열대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7,000	78,000	97,000	12,000
	선봉대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10,000	91,000	107,000	20,000
	비승대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10,000	83,000	97,000	20,000
	사자대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10,000	91,000	107,000	20,000
	상무대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7,000	55,000	82,000	12,000
	충성대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10,000	69,000	90,000	20,000
해군/해병대(5)	한산대	33,000	33,000	5,000	51,000	58,000	7,000	108,000	125,000	15,000
	만포대	33,000	33,000	6,000	51,000	58,000	10,000	128,000	149,000	20,000
	낙산대	29,000	29,000	6,000	45,000	52,000	10,000	68,000	88,000	20,000
	충무대	29,000	29,000	5,000	45,000	52,000	7,000	50,000	79,000	12,000
	덕산대	29,000	29,000	5,000	51,000	58,000	9,000	88,000	94,000	20,000
공군(14)	광주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4,000	58,000	78,000	12,000
	사천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6,600	68,000	90,000	20,000
	김해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4,000	72,000	88,000	12,000
	원주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6,600	72,000	88,000	20,000
	수원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6,600	87,000	98,000	20,000
	대구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4,000	78,000	92,000	12,000
	성남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6,600	90,000	100,000	20,000
	예천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4,000	54,000	83,000	12,000
	청주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4,000	79,000	89,000	12,000
	강릉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4,000	70,000	90,000	12,000
	충주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6,600	88,000	110,000	20,000
	서산	33,000	33,000	6,000	51,000	58,000	6,600	90,000	120,000	20,000
	공사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6,600	70,000	90,000	20,000
	오산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6,600	84,000	98,000	20,00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국방부는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요금 인상이나 정회원 계급별 요금 차등화 등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국방부는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이용하는 병사의 수가 많지 않으나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장병 격려사업, 체력단련기구 보급 관련 사업, 장학사업 및 취업활동지원 사업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설명하였음.[69)]

[2025년도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 주요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집행액	2024 집행액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당초	수정 (A)			
복지시설운영(2237-641)	325,294	337,180	374,133	375,872	355,439	94.6	400,579
복지시설확보(2237-642)	30,043	22,060	40,366	40,367	32,914	81.5	48,025
장병격려사업(2238-643)	20,788	19,788	40,427	40,427	38,000	94.0	24,591
부대시설운영지원(2238-644)	4,456	5,097	8,290	8,290	8,043	97.0	8,250
장학사업(2239-646)	2,313	2,678	2,400	2,401	2,401	100.0	2,900
취업활동지원(2239-647)	16,279	15,149	15,184	15,183	15,033	99.0	14,891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운영은 국방부도 일부 인정한 것과 같이 제한된 일부 인원의 복지에 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병사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과도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운영은 군인복지기금의 수입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입장료수입은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의 주요 수입원이므로, 국방부가 설명한 것과 같이 장병 격려사업·체력단련기구 보급 관련 사업·장학사업 및 취업활동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입액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69) 국회사무처,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2025. 9. 4, pp. 58~63.

[2025년도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수납액	2024 수납액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당초	수정(A)			
토지대여료(51-511)	209	90	125	125	80	64.2	125
건물대여료(51-512)	14,670	13,487	24,873	24,873	12,860	51.7	21,816
기타관유물대여료(51-513)	-	-	-	-	5	-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6,341	5,351	4,883	4,883	52,535	1,075.9	5,029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	14	-	-	-	-	-
변상금(57-571)	13	70	25	25	5	21.3	36
위약금(57-572)	100	104	100	100	136	135.6	105
가산금(58-581)	-	-	-	-	2	-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2,956	3,260	4,225	4,225	3,022	71.5	3,602
입장료수입(64-641)	**112,045**	**119,653**	**125,744**	**125,744**	**113,750**	**90.5**	**128,826**
기타잡수입(69-691)	**312,890**	**336,157**	**342,518**	**342,518**	**363,503**	**106.1**	**381,753**
한국은행예치금회수(85-851)	13	5	-	-	29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85-852)	67,669	87,190	59,244	59,244	109,918	185.5	70,29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85-853)	64,678	70,709	57,354	57,354	168,756	294.2	29,731
기금예탁원금회수(92-923)	-	-	-	-	-	-	60,000
기금예탁이자수입(95-953)	-	-	1,020	1,020	309	30.3	902
복지계정 소계	581,595	636,090	620,111	620,111	824,911	133.0	702,221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운영을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방부는 2026년도에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개선, 전동승용카트 도입, 안전펜스 설치 등을 위해 75억 2,300만원을 군인복지지금 복지계정에서 투자할 계획임.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관련 지원사업 목록(2026년도 계획 반영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내역	2025년	2026년	2027년	총사업비
계룡대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개선	90	1,396	-	1,486
무열대 체력단련장 전동승용카트 도입	50	2,389	-	2,439
청주·충주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개선	158	2,202	-	2,360
육군 체력단련장 전산시스템 개선	95	442	3,675	4,212
충무대 체력단련장 안전망 교체	-	594	-	594
국방대 체력단련장 안전펜스 설치 공사	-	500	-	500
합 계	393	7,523	3,675	-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요약하면,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은 제한된 일부 인원의 복지에 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더 많은 장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충분한 수입액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관련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이용요금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70]

한편 국방부는 2024년 5월 요금인상 이후 2026년 5월말 현재까지 이용요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이용요금을 조정(인상)하는 방안[71]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장교·부사관·군무원 및 병에게 동일한 이용요금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계급별 요금 차등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72]

70)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군 체력단련장 이용요금을 2024. 5월 부로 30% 대폭 인상(정회원 기준)하였으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인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71) 국방부는 최근 결산수치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으로 수입계획액을 산정하고 있음.

72)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정회원 등에 대하여 비회원처럼 주중 요금과 주말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정회원의 주중/주말요금 차등화는 대응태세 유지와 여가 중 체력단련을 병행하는 군인들의 휴일 대기 및 체력단련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현재의 요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2025년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현황]

구분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계
주중	569,156명	48,652명	740,740명	1,358,548명
주말	324,710명	15,617명	188,348명	528,675명
계	893,866명	64,269명	929,088명	1,887,223명

자료: 국방부

【기　타】

1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군배상금 사업 대규모 이용액 발생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방부에 대해 시정요구 67건(중복 5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6건·주의 24건·제도개선 32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6	24	32	5	67
예비비	-	-	-	-	-	-	-
합계	-	-	16	24	32	5	67

국방부는 시정요구사항 67건에 대해 56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3.6%)하고 1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67	56	83.6	11
예비비	-	-	-	-
합계	67	56	83.6	11

국회가「2025년도 예산안」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국방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국방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5년도 본예산	(1) 국방부는 장병급식과 관련하여 잔반절감계획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급식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2) 국방부는 부대개편 5차 사업 예산이 △3백만원 감액된 취지에 따라 고양시에 소재한 1군단 예비군훈련대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주민협의 및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산 전용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사업집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1)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에 따른 협의기구에 적극 참여·협력한다.
2024회계연도 결산	(1) 국방부는 소형자폭드론 구매 관련 과도한 예산 이·전용에 대해 자체 정책 감사를 실시한다.

나. 검토의견

국방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 ‘군배상금’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소송 경과 및 기존 피해자 통계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이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예산 과소 편성 및 대규모 이용액 발생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시정요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방부는 ‘군배상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군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시 공문을 하달(2026년 1월 20일)하는 등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군배상금 사업의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22년 119.5%, 2023년 317.2%, 2024년 767.3%, 2025년 1,014.3%로 증가하였으며,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용(증)금액 규모도 2022년 162억 9,400만원, 2023도 606억 9,300만원, 2024년 1,180억 4,900만원, 2025년 1,718억 7,4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예산 과소 편성 및 대규모 이용액 발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기존 조치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2~2025년도 군배상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82,709	82,709	-	16,294	99,003	98,908	119.5	99.9	-	95
2023	27,705	27,705	-	60,693	88,398	87,898	317.2	99.4	-	500
2024	17,689	17,689	-	118,049	135,738	135,737	767.3	99.9	-	-
2025	17,689	17,689	-	171,874	189,563	179,426	1,014.3	94.6	130	10,007

자료: 국방부

[군 배상금 사업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대규모 이용액 발생에 관한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43) 대규모 이용액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예산 편성 적절성 제고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국방부는 군 배상금에 대하여 관련 소송 경과 및 기존 피해자 통계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이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2027년도 예산 편성시 각 군의 소송 경과 및 주요 과거사 통계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이용을 최소화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6년 1월 20일 ・송무소청팀-587(2026. 1. 20.) 월간 소송현황 보고 요청 - 각 군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배상금 예산 편성 적절성 제고를 위하여 지시 공문 하달

병 무 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억 5,600만원(178.0%)이 많은 7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800만원(60.2%)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A-B)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36	336	444	108	256	256	712	456	268
총수입	336	336	444	108	256	256	712	456	268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21억 5,800만원(△2.6%)이 적은 4,610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1억 4,600만원(17.9%)이 증가됨.

문의: 02-6788-567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11,873	411,873	390,892	△20,981	473,196	473,196	461,038	△12,158	70,146
총지출	411,873	411,873	390,892	△20,981	473,196	473,196	461,038	△12,158	70,146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5,600만원으로, 9억 1,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억 1,200만원이 수납(수납률 77.5%)되고 2억 6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56	256	-	256	918	712	-	206
합 계	256	256	-	256	918	712	-	206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731억 9,600만원으로, 이 중 4,610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4%)되고, 121억 5,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73,196	473,196	-	±2,631	-	473,196	461,038	-	12,158
합 계	473,196	473,196	-	±2,631	-	473,196	461,038	-	12,158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병무청 자산은 전년 대비 63억 2,700만원이 증가된 3,866억 2,5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이 6억 4,000만원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10억 1,100만원 증가되고 기타자산이 59억 5,5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67억 6,700만원 증가된 2,330억 9,000만원으로 충당부채 608억 6,2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04억 4,000만원이 감소된 1,535억 3,5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병무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07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357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8,4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병무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86,625	380,298	6,327	1.7
		금융자산	18,431	17,420	1,011	5.8
		유·무형자산	361,888	362,528	△640	△0.2
		기타자산	6,306	351	5,955	1,696.6
	부 채		233,090	176,323	56,767	32.2
		차입부채	7,398	11,531	△4,133	△35.8
		충당부채	225,593	164,731	60,862	36.9
		기타부채	99	60	39	65.0
	순자산		153,535	203,975	△50,440	△24.7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0,719	29,658	1,061	3.6
	재정운영순원가		535,713	532,929	2,784	0.5
	재정운영결과		535,713	532,929	2,784	0.5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단일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의 기여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21개 세부사업에서 병역자원선발, 병역자원충원, 보충역복무지원, 병무행정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병무청은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의 최근 낙찰단가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병무청은 매년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여비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의 수검인원을 다른 세부사업과 다르게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중도 해지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

가. 개 요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은 병역판정검사자(2026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입영판정검사자로 축소)에 대해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5억 6,000만원 중 25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72.8%)되고, 9억 6,800만원은 불용되었음.[2)]

[2025년도 잠복결핵검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병역판정검사	22,519	22,519	-	±681	22,519	21,408	-	1,111	18,228
잠복결핵검사	3,560	3,560	-	-	3,560	2,592	-	968	63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은「결핵예방법」제3조에 따라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2017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음.[3)]

---

2) 일반회계-병역판정검사(1131-301)(병역자원국)

3)「결핵예방법」
제3조(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 · 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자[4] 전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검사대상을 사회복무요원[5](입영판정검사자[6][7])으로 축소 조정하였음.

한편 병무청은 위탁사업자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방식 및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8] 기술능력평가(배점: 80점, 평가: 병무청) 및 입찰가격평가(배점: 20점, 평가: 조달청)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순서를 정하고 있음.

---

4)「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5)「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6)「병역법」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7)「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병무청은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미만인 업체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예산액) 대비 70% 미만인 업체의 경우 가격점수의 30%에 해당하는 평점만을 부여(페널티 부여)하고 있음.[9)]

나. 검토의견

병무청은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의 최근 낙찰단가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현액 35억 6,000만원 중 25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72.8%)되고, 9억 6,800만원은 불용되었음.

이러한 집행실적 부진에 대하여 병무청은 위탁검사 사업자 결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예산 편성단가(16,000원)보다 실제 계약단가(11,580원)가 낮게 형성되어 이로 인한 낙찰차액 9억 6,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고 설명함.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위탁사업자 선정 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예산액)의 70% 미만인 업체에 낮은 평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적용되어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다소 제한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단가가 처음부터 높게 설정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에 어려움이 있음.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공고문 내용(입찰 방법)]

입찰 방법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 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 □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사업자선정 방식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80점) 및 입찰가격평가(20점)
- 평가주체: 기술능력평가(병무청) / 입찰가격평가(조달청)
- 세부방법: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

그런데 병무청은 실제 낙찰단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동일한 예산 편성단가(1만 6,000원)를 적용하는 등 적정 예산편성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낙찰 현황을 살펴보면, 낙찰률이 2022년 99.5%, 2023년 90.6%, 2024년 77.5%, 2025년 71.0%로 하락하였음. 같은 기간 낙찰단가는 2022년 1만 5,570원에서 2023년 1만 4,500원, 2024년 1만 2,400원, 2025년 1만 1,358원으로 꾸준히 하락하였음.

[최근 5년간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낙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결산		낙찰차액 (A-B)	낙찰률 (B/A)
	예산액(A)	1인당 단가	낙찰액(B)	1인당 단가		
2022	4,069	16,000원	4,047	15,570원	22	99.5
2023	4,014	16,000원	3,638	14,500원	376	90.6
2024	3,688	16,000원	2,858	12,400원	830	77.5
2025	3,560	16,000원	2,527	11,358원	1,033	71.0
2026	639	33,600원	447	23,520원	192	70.0

주) 2026년도의 경우 검사대상 축소에 따른 단가인하 효과가 제한되어 1인당 단가를 높게 편성하였으나, 실제 낙찰률은 최저낙찰률에 해당하는 70.0%로 나타남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2024년 낙찰단가가 예산편성 단가(1만 6,000원)의 77.5%에 불과한 1만 2,400원임을 인지하고서도(2024년 잠복결핵 위탁검사 용역 계약 체결: 2023년 12월), 2024년도와 동일한 예산편성 단가(1만 6,000원)를 적용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그 결과 2025년도 동 사업은 낙찰차액 규모가 전년도 대비 확대되었음.

특히 최저입찰률(70.0%[10])에 근접한 71.0%의 낙찰률을 보인다는 점,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가 최저입찰률(70.0%)에 근접한 입찰률로 투찰하였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병무청이 전년도 실제 낙찰단가를 고려하여 더 낮은 예산편성 단가를 적용하였다면 동 사업 집행예산의 절감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10)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예산액)의 70% 미만인 업체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이 부여되는 패널티를 받게 됨.

[2025년도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입찰참여업체별 입찰 현황]

순위	업체명	입찰금액(원)	입찰률(%)	입찰일자	비고
1	A	2,527,438,950	**71.0**	2024-12-05	정상입찰
2	B	2,730,000,000	**76.7**	2024-12-05	정상입찰
3	C	2,559,037,500	**71.9**	2024-12-06	정상입찰
4	D	2,494,505,250	**70.1**	2024-12-05	정상입찰
5	E	2,892,825,000	**81.3**	2024-12-06	정상입찰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를 변경(검사대상을 축소)한 2026년 사업추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다음의 표는 2026년도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입찰참여업체별 입찰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25년과 유사하게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최저입찰률(70.0%)에 근접한 입찰률로 투찰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병무청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하였다면 동 사업 예산의 절감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11)]

[2026년도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입찰참여업체별 입찰 현황]

순위	업체명	입찰금액(원)	입찰률(%)	입찰일자	비고
1	a	447,162,100	**70.0**	2025-11-18	정상입찰
2	b	448,683,200	**70.2**	2025-11-18	정상입찰
3	c	447,162,100	**70.0**	2025-11-19	정상입찰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특히 병무청은 2026년도에 사업 대상을 축소하며 단가를 33,600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으나, 이 역시 실제 낙찰률이 하한선인 70.0%에 머물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병역의무자 여비 사업: 예산 과다 편성 개선 필요

가. 개 요

‘병역의무자 여비’ 사업은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입영 및 소집 등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교통비·식비 및 숙박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38억 1,600만원 중 226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2%)되었고, 11억 4,700만원은 불용되었음.[12)]

[2025년도 병역의무자 여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병역의무자지원	28,818	28,818	-	-	28,818	27,335	-	1,483	25,367
병역의무자 여비	23,816	23,816	-	-	23,816	22,669	-	1,147	23,77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병무청은 「병역법」 제79조 및 하위법령을 근거로 병역의무자에게 교통비·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고 있음.[13)] 지급단가를 보면, 우선 교통비는 1㎞당 2013년 107.84원에서 2021년 131.82원으로 꾸준히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 자동차 지급기준[14)]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식비는 1식 당 7,000원, 숙박비는 1박 당 50,000원임.

---

12) 일반회계-병역의무자지원(7135-314)(입영동원국)

13) 「병역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 · 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 · 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2.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
3.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력검사 · 면접 · 필기 · 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4. 징집 · 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횟수 및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자동차 지급기준: 자동차 지급 단가(연료비 + 통행료)
* 연료비(휘발유 기준) : 이동거리 × 유가 ÷ 연비
* 통행료 : 기본요금(900원) + 단가(44.3원/km)

[연도별 지급단가]

(단위: 원)

구분	2013년	2015년	2016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교통비 (1km당)	107.84	107.84	116.14	116.14	131.82	131.82	자동차 운임 (연료비+통행료)
식 비 (1식)	6,000	6,000	6,000	6,000	6,000	7,000	7,000
숙박비 (1박)	30,000	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자료: 병무청

나. 검토의견

병무청은 매년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여비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의 수검 인원을 다른 세부사업과 다르게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음의 표는 병역의무자 여비 사업의 예산 편성 대비 집행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 사업의 미집행액은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 10억 1,100만원, 2024년 10억 9,100만원, 2025년 11억 4,7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편성액 대비 미집행액의 비율도 2023년 4.2%에서 2024년 4.7%, 2025년 4.8%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병역의무자 여비 사업 예산 편성 대비 집행 비교표]

(단위: 백만원, %, 원/명,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편성(A)	24,359	24,037	24,280	23,045	23,816
	집행(B)	18,339	21,701	23,269	21,954	22,669
	미집행(A-B)	6,020	2,336	**1,011**	**1,091**	**1,147**
	(비율)	(24.7)	(9.7)	**(4.2)**	**(4.7)**	**(4.8)**
단가	편성(A)	22,873	22,744	22,962	23,299	22,475
	집행(B)	29,187	21,087	23,331	23,818	23,955
	차이(A-B)	△6,314	1,657	△369	△519	△1,480
인원	편성(A)	1,089,737	1,056,886	1,058,206	989,092	1,059,688
	집행(B)	628,318	1,029,118	997,341	921,775	946,331
	차이(A-B)	461,419	27,768	60,865	67,317	113,357

주) 단가는 예산액에서 인원을 나누어 산출함
자료: 병무청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동 사업의 경우 「병역법」 제79조를 근거로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법정 의무지출로서,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병역의무자에 대한 권익 침해 및 행정 신뢰의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정 수준의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15)]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병무청의 예산 편성이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며 동 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을 위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함.

다음의 표는 동 사업의 세부 지원유형별(검사·입영·소집·동원 및 대체복무) 인원에 관한 병무청의 편성 내역 및 실제 집행된 내역을 비교한 것으로, 병무청은 2025년에 모든 세부 지원유형에서 실제 집행보다 인원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병무청은 세부 지원유형 중 검사의 경우 당초 총 46만 2,484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40만 4,797명에 대한 지원 예산만 집행하였는바, 세부 지원유형 중 검사에서만 5만 7,687명(과다 편성 비율: 12.5%)을 과다 편성하였음.

[최근 3년간 세부 지원유형별 인원 편성 내역 및 집행 내역]

(단위: 명)

구분		검사	입영	소집	동원	대체복무	합계
2023년	편성(A)	406,345	226,861	47,509	376,991	500	1,058,206
	집행(B)	392,853	207,990	40,022	355,992	484	997,341
	비고(A-B) (비율(%))	13,492 (3.3)	18,871 (8.3)	7,487 (15.8)	20,999 (5.6)	16 (3.2)	60,865 (5.8)
2024년	편성(A)	389,367	234,093	46,998	317,691	943	989,092
	집행(B)	351,603	202,474	34,630	332,168	900	921,775
	비고(A-B) (비율(%))	37,764 (9.7)	31,619 (13.5)	12,368 (26.3)	△14,477 (△4.6)	43 (4.6)	67,317 (6.8)
2025년	편성(A)	**462,484**	218,611	42,172	335,251	1,170	1,059,688
	집행(B)	**404,797**	195,778	27,198	317,446	1,112	946,331
	비고(A-B) (비율(%))	**57,687** **(12.5)**	22,833 (10.4)	14,974 (35.5)	17,805 (5.3)	58 (5.0)	113,357 (10.7)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세부내역별로 예산이 과다 편성된 인원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병무청

15) 이와 함께 병무청은 동 사업에서의 예산 과다 편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 집행 실적 등을 분석하여 예산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최근 3년간 불용률이 5% 이내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그런데 이러한 지원 인원 과다 계상은 예산 편성 당시 방지가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세부 지원유형 중 검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의 경우 동 사업 뿐 아니라 또 다른 세부사업인 ‘병역판정검사’ 사업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16] 병무청은 예산 편성 당시부터 동 사업에 지원 인원을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파악됨.

즉,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사업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수검 인원을 23만 438명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병역의무자 여비 사업)의 경우 이보다 3만 5,826명 많은 26만 6,264명을 수검 인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와 유사하게 ‘병역판정검사’ 사업의 경우 입영판정검사 수검 인원을 15만 529명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병역의무자 여비 사업)의 경우 이보다 1만 7,238명 많은 16만 7,767명을 수검 인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병무청이 동 사업(병역의무자 여비 사업)의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관련 수검 인원을 또 다른 세부사업인 ‘병역판정검사’ 사업과 동일한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2025년도 동 사업의 미집행액은 감소하였을 것임.[17]

[2025년도 병역의무자 여비 사업 및 병역판정검사 사업 관련 예산편성 비교]

(단위: 명)

구분	병역의무자 여비 사업(A)	병역판정검사 사업(B)	사업별 계상인원 차이(A-B)
병역판정검사 인원	266,264	230,438	35,826
입영판정검사 인원	167,767	150,529	17,238

자료: 병무청

따라서 병무청은 매년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여비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의 수검 인원을 다른 세부사업과 다르게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16) 일반회계-병역판정검사(1131-301)(병역지원국)

17) 병무청은 법정 의무지출의 안정적 지급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인원 추계의 정합성이 결여된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 것임. 이는 여유 재원이라는 미명하에 한정된 국가 재원이 다른 시급한 국방·병무행정 사업에 투입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3.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적정 예산 편성 및 목적 범위 내 집행 필요

가. 개 요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병역법」제7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029억 2,300만원 중 1,969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1%)되고, 59억 6,000만원은 불용되었음.[18)19)20)21)]

[2025년도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사회복무이행지원	212,733	212,733	-	△2,500 ±1,042	210,233	204,211	-	6,022	247,536
사회복귀준비금	206,465	206,465	-	△3,542	202,923	196,963	-	5,960	240,24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18) 일반회계-사회복무이행지원(7135-326)(사회복무국)

19)「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0)「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21) □ 장병내일준비적금: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
○ 가입대상: 사회복무요원(병무청) / 현역병, 상근예비역(국방부) / 대체복무요원(법무부)
* 잔여 복무기간 1개월 이상자 적금 가입 가능(2024. 6. 1.부 시행)
○ 가입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 사회복무요원 최대 21개월
○ 가입한도: (2024년 12월까지)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
(2025년 1월부터)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원
* 2024. 12. 31. 이전 가입자 : 5만원 단위 납입한도 상향 가능, 복무중 1회만 변경 가능
* 2025. 1. 2. 이후 가입자 : 5만원 단위로 납입한도 설정 가능, 납입한도 중도변경 불가

병무청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만기 해지 시 적금 납입액에 매칭하여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월 최대 매칭지원금은 2022년 14.1만원,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이후 55만원임.

[연도별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액 및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지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보수(월액, 병장 기준)	67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적금 납입한도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55만원
매칭비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입금액의) 100%	(입금액의) 100%
월 최대 지원금액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만기 해지한 다음 달 25일에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있음.[22)]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지급절차]

사회복무요원	⇨	은 행	⇨	병무청
· 21개월 소집해제 후 적금 만기 해지 신청		· 개인별 매칭지원금 금액 및 계좌번호 통보		· 복무기간 및 금액 등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지급

자료: 병무청

한편 동 사업은 적금 가입자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규정]

>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22) 일례로 3월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시 4월 25일에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이 지급됨.

나. 검토의견

첫째,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실제 가입기간 및 중도 해지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22년 186억 2,800만원, 2023년 203억 9,600만원, 2024년 174억 9,200만원, 2025년 95억원에 달함. 다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22년 38.5%, 2023년 76.4%, 2024년 89.0%, 2025년 95.4%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연도별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집행률(B/A)
2022	30,301	11,673	**18,628**	**38.5**
2023	86,557	66,161	**20,396**	**76.4**
2024	159,740	142,248	**17,492**	**89.0**
2025	206,465	196,963	**9,502**	**95.4**

주) “집행잔액”은 당초 예산액 중 동 사업(사회복귀준비금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으로 불용액 및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감)된 금액을 의미함
자료: 병무청

동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대하여 병무청은 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보다 실제 적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 등이 낮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병무청의 예산 편성이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며,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을 위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함.

일례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전 복무기간(21개월[23]))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행정 소요 기간을 제외한 20.5개월을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간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는 발생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소요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향후 병무청은 실제 가입 기간 통계(실제는 평균 19개월임)를 근거로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23) 2026년 5월말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로, 과거에는 26개월이었으나 2021년 12월 21개월로 단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또한 병무청은 예산 편성 시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이 만기까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편성 방식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만기 직전에도 중도 해지되고 있다는 점, 적금 가입자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은 방식임.[24)25)]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직전 중도해지 사례]

적금 만기월	적금 만기월별 가입 계좌 수	2025.7월말까지 중도해지 계좌 수(A)	적금 만기월까지 중도해지 계좌 수(B)	만기 직전 중도해지 계좌 수(B-A)	비고
2025.8.	3,836개	156개 (4.0%)	158개 (4.1%)	2개 (0.1%p)	적금 만기 전 1개월간 해지
2025.9.	2,440개	93개 (3.8%)	94개 (3.9%)	1개 (0.1%p)	적금 만기 전 2개월간 해지
2025.10.	7,453개	212개 (2.8%)	222개 (3.0%)	10개 (0.2%p)	적금 만기 전 3개월간 해지
2025.11.	5,193개	158개 (3.0%)	173개 (3.3%)	15개 (0.3%p)	적금 만기 전 4개월간 해지
2025.12.	4,810개	149개 (3.1%)	156개 (3.2%)	7개 (0.2%p)	적금 만기 전 5개월간 해지
합계	23,732개	768개 (3.2%)	803개 (3.4%)	35개 (0.2%p)	-

주 1) 적금 만기월은 적금 가입 당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예정월과 동일함
2)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시점의 누적 중도 해지율 또는 시점간 누적 중도 해지율의 차이를 나타낸 것임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재정리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규정]

>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무청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실제 가입기간 및 중도 해지율 등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24) 이 경우 병무청은 적금 만기월별(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월별) 중도해지율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적금 가입률을 조정(하향 조정)하여 예산안 산출에 적용한다면,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25) 현재 병무청은 은행연합회로부터 적금 가입 현황 등을 사후에 통보받고 있으나, 실시간(또는 정기적으로) 적금 유지 현황 관련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정밀하게 소요 예산을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병무청은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집행 잔액을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에 활용하거나 사업 목적이 상이한 다른 사업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편 병무청은 반복적으로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 집행잔액을 사회복귀준비금 사업과 사업목적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집행하고 있음.

다음의 표는 2024년도 및 2025년도 병무청의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 전용 내역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병무청은 2024년도의 경우 '병무청 지하상황실 설치'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을 전용(감)하였고, 2025년도의 경우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을 전용(감)하였음.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 「병역법」 제79조의2[26]를 근거로 사회복무요원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후 사회복귀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병무청 지하상황실 설치 또는 인건비 사업과는 그 지원 목적이 상이함.

[2024~2025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 전용 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사업명		세부사업 명	목-세목	
승인전용 (2024.7.25.)	사회복귀준비금	140백만원	병무행정운영 (7134-317)	공사비(420-03)	지하상황실 설치
		280백만원		자산취득비(430-01)	
승인전용 (2025.11.24.)	사회복귀준비금	2,500백만원	인건비 (7101-100)	보수(110-01)	보수 집행액 증가

자료: 병무청

또한 병무청은 반복적으로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을 동일한 세부사업 내 다른 내역 사업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파악됨.

우선 병무청은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사업 예산을 초과 집행하였으며, 초과 집행 규모는 2023년도 9억 8,400만원, 2024년도 11억 1,600만원, 2025년도 8억 1,700만원임.

---

26)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사업은「병역법」제77조의3[27]을 근거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후 사회복귀를 돕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귀준비금 사업과는 사업내용이나 근거법령 등이 상이함.

[사회복귀준비금 집행잔액을 활용한 예산 초과집행 사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단위: 백만원, %)

구분	당초 예산액 (A)	집행액 (B)	초과 집행액 (B-A)	초과 집행률 ((B-A)/A)	비고
2023	5,463	6,447	984	18.0	사회복귀준비금 집행잔액을 활용
2024	5,584	6,700	1,116	20.0	
2025	5,845	6,662	817	14.0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재정리

병무청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사업 예산도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하였으며, 초과 집행 규모는 2023년도 1억 200만원, 2024년도 2억 1,300만원, 2025년도 2억 1,500만원임. 특히 병무청의 초과 집행률은 2024년도 81.6%, 2025년도 82.4%에 달함.

27)「병역법」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및「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2.「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경우:「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2. 지역가입자의 경우:「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지원비용의 정산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사업은「병역법」제73조[28]를 근거로 사회복무요원의 학업공백이 경감될 수 있도록 원격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 역시 사회복귀준비금 사업과는 차별적임.

[2023~2025 사회복귀준비금 집행잔액을 활용한 예산 초과집행 사례: 원격강좌 수강료]

(단위: 백만원, %)

구분	당초 예산액 (A)	집행액 (B)	초과 집행액 (B-A)	초과 집행률 ((B-A)/A)	비고
2023	261	363	102	39.1	사회복귀준비금 집행잔액을 활용
2024	261	474	213	81.6	
2025	261	476	215	82.4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동 사업 집행잔액을 긴급하게 지출하여야 할 사업에 한하여 해당 사업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입장이나,

집행잔액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에 무분별하게 활용하거나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 예산을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초과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국가재정법」제45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29]

따라서 병무청은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의 집행 잔액을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에 활용하거나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 예산을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8)「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9)「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병무청에 대해 시정요구 15건(중복 2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건·주의 3건·제도개선 13건·중복 2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	3	13	2	15
예비비	-	-	-	-	-	-	-
합계	-	-	1	3	13	2	15

병무청은 시정요구사항 15건에 대해 1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0.0%)하고 3건을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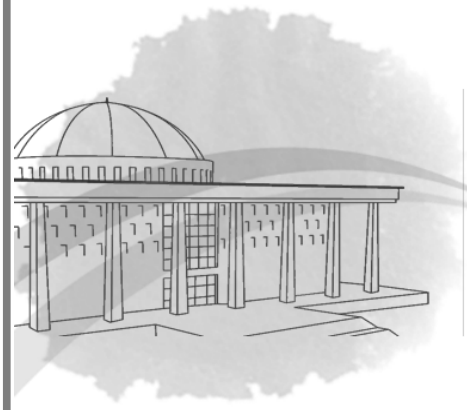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5	12	80.0	3
예비비	-	-	-	-
합계	15	12	80.0	3

방위사업청

비공개(p.294 – p.368)

문의: 02-6788-5677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32억 3,100만원(△20.4%)이 적은 1,298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2억 3,000만원(△33.8%)이 감소함.[1)]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06,811	306,811	196,076	△110,735	163,077	163,077	129,846	△33,231	△66,230
총수입	306,811	306,811	196,076	△110,735	163,077	163,077	129,846	△33,231	△66,230

문의 : 02-6788-568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112억 6,200만원(100.1%)가 많은 86조 934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조 9,030억 4,600만원(22.6%)이 증가함.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2,447,356	72,447,356	70,190,399	△2,256,957	72,083,936	85,982,183	86,093,445	111,262	15,903,046
총지출	72,447,356	72,447,356	70,190,399	△2,256,957	72,083,936	85,982,183	86,093,445	111,262	15,903,046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630억 7,700만원으로, 1,646억 2,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298억 4,600만원이 수납(수납률 78.9%)되고 347억 7,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43,392	143,392	-	143,392	92,841	77,065	15,776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685	19,685	-	19,685	71,779	52,781	18,998	-
- 지역자율계정	5,766	5,766	-	5,766	26,363	25,814	549	-
- 지역지원계정	13,919	13,919	-	13,919	45,391	26,942	18,449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25	25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	-	-	-
합 계	163,077	163,077	0	163,077	164,620	129,846	34,774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6조 2,431억 4,100만원으로, 86조 934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305억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91억 8,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9,720,872	82,554,813	25,971	2,953	231,807	82,815,544	82,677,673	30,344	107,5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63,064	3,427,370	227	-	-	3,427,597	3,415,772	162	11,663
- 지역자율계정	252,898	252,898	-	-	-	252,898	252,898	-	-
- 지역지원계정	2,093,745	3,158,051	227	-	-	3,158,278	3,146,453	162	11,663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0,303	10,303	-	-	-	10,303	10,303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6,118	6,118	-	-	-	6,118	6,118	-	-
합 계	72,083,936	85,982,183	26,198	2,953	231,807	86,243,141	86,093,445	30,507	119,189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1,919억 2,800만원이 증가한 14조 1,344억 300만원으로, 이는 기타자산이 147억 7,800만원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2조 1,650억 7,200만원, 유·무형자산이 4162억 3,3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8,425억 1,500만원 증가한 1조 219억 700만원으로 차입부채 8,412억 7,0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 3,494억 1,200만원이 증가한 13조 1,124억 9,600만원임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84조 2,800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4,227억 5,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84조 7,116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4,832억 7,5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무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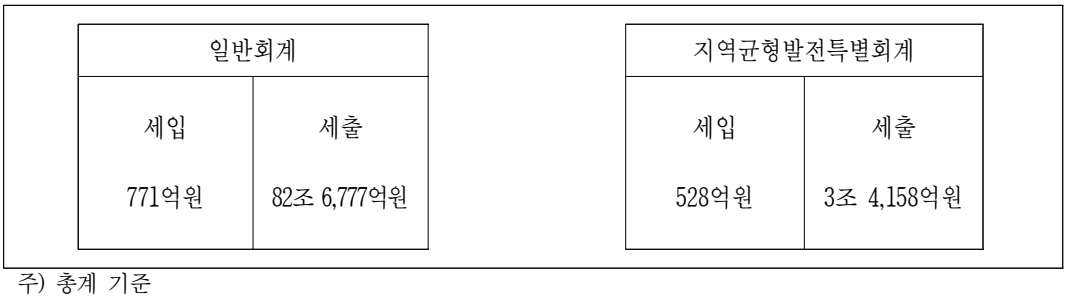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4,134,403	11,942,475	2,191,928	18.4
		금융자산	2,249,081	84,009	2,165,072	2,577.2
		유무형자산	11,859,288	11,817,655	41,633	0.4
		기타자산	26,034	40,812	△14,778	△36.2
	부 채		1,021,907	179,392	842,515	469.7
		차입부채	1,018,423	177,153	841,270	474.9
		충당부채	-	-	-	-
		기타부채	3,484	2,239	1,245	55.6
	순자산		13,112,496	11,763,084	1,349,412	11.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84,280,058	69,857,299	14,422,759	20.6
	재정운영순원가		84,711,611	70,228,336	14,483,275	20.6
	재정운영결과		84,711,611	70,228,336	14,483,275	20.6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결산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지방분권·균형발전, 국민안전 구현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27개 프로그램과 316개 세부사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분권, 재난피해 최소화,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5년 통폐합 대상 일부 정보시스템에 대해 소관 기관이 예외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통폐합 계획을 미제출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는 미제출에 따른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05년에 관련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2025년 9월 26일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시 1-2등급 중요시스템을 포함한 709개 정보시스템이 최대 95일까지 중단된 바 있으므로,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 평가의 평가지표를 보면 데이터 개방을 위한 '관리노력'을 주된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 대비 활용수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실적 등에 관한 정량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넷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누적된 잉여금 등의 규모가 연평균 기관운영출연금 지원규모의 5.96배 수준으로 과다하므로, 행정안전부는 기관운영출연금 지원 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지원규모를 감액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서는 수도권 일반자치단체에 비해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 및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국비지원율을 책정하여 지원하였음에도 지방비 부담 등으로 인해 상품권의 추가발행규모가 제한되면서 차등 지원의 취지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최소 지방비 매칭비율(5%)을 일부 완화하여 지원하는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광역지원계정을 거쳐 기초자치단체로 재배분된 기금의 최종단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집행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정보시스템 통폐합: 정보시스템 통폐합의 조속한 추진 필요

가. 개 요

‘정보시스템 통폐합’은 2023년 11월 17일 최초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인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여 관리효율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주요 추진경과를 보면, 2024년 4월에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통폐합 대상범위 및 완료시점 등을 설정하였고, 2개월 뒤인 2024년 6월에는 일부 기준을 수정하였으며, 이후에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각 기관의 통폐합 계획 및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음.

[주요 추진경과]

2023.11.17.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최초 발생
2024.4. 통폐합 기본원칙 수립
- 3·4등급 정보시스템 전체를 2026년까지 통폐합 추진
- 일부 예외사유 인정(기관 대표 시스템 1개, 현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슈퍼컴퓨터 등 시스템 특성상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통폐합 관련 사항 반영

2024.6.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 지자체·공공기관 소관 정보시스템의 통폐합 등급기준을 4등급만으로 조정
- 예외범위 확대(전면 재개발 시스템, 서비스 형태 시스템, 민간클라우드 이용 등)
- 2026년 통폐합 완료를 우선 검토하되, 예산·운영조직 등 내부사정 고려하여 시기 조정 가능하도록 허용

2025.2. 통폐합 예외 인정 근거 마련
-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

2025.5. 기관별 통폐합 계획 수립, 검토 및 계획 확정
2026.3. 2025년 통폐합 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및 계획 보완 요청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정보시스템 통폐합의 근거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으로, 성과평가 결과 총점 40점 미만인 정보시스템은 폐기(제26조제1항제1호)하도록 하고, 총점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정보시스템은 폐기 또는 통폐합·기능고도화 또는 전면재개발 등(제26조제1항제2호)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지침 제26조제2항 각 호에서는 폐기권고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비계획을 수립(제27조제1항)하여 관련 조치를 이행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제28조제1항).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상 정보시스템 통폐합 관련 주요 조항]

조항	주요내용
제26조 (정보시스템의 정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성과평가 결과, 총점 40점 미만은 폐기 2. 성과평가 결과, 총점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정보시스템은 폐기하거나, 통폐합, 기능고도화, 전면재개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은 폐기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 구축·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2. 국민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 차원의 안보·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4. 대국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 6.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급받은 표준 보급시스템인 경우 7.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폐기가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정보시스템 ③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권고를 따라야 한다.
제27조 (정보시스템 정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권고를 받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 개선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 (정보시스템 정비계획의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수립한 정비계획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 통폐합 대상 일부 정보시스템에 대해 소관 기관이 예외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통폐합 계획을 미제출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는 미제출에 따른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매년 통폐합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통폐합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점검을 거쳐 통폐합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13,026개의 통폐합 대상 정보시스템을 선정(2025.2.)하였고, 2025년 5월에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제출된 통폐합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상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음.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모든 기관이 통폐합을 즉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외사유를 소명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였을 것임.

2025년 연말 기준 통폐합 추진계획 수립현황을 보면, 13,026개 정보시스템 중 2,401개 시스템(18.4%)에 대한 통폐합 계획이 미제출되었거나 불인정·반려되었음. 또한, 2025년 연말까지 통폐합 계획이 미제출 또는 불인정·반려된 2,401개 정보시스템 중 362개 정보시스템만이 2026년 이행점검 전에 통폐합 계획을 보완 및 제출하였음.[2)]

[통폐합 추진계획 수립 현황]

(단위: 개, %)

구분	합계 (A+B+C)		추진 (A)		예외 (B)		미제출+불인정 (C)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2025년 이행점검 기준(2025.5.)	10,754	100.0	3,536	32.9	5,810	54.0	1,408	13.1
2025년 연말 기준주)	13,026	100.0	3,870	29.7	6,755	51.9	2,401	18.4
2026년 이행점검 기준(2026.5.)	13,026	100.0	4,232	32.5	6,755	51.9	2,039	15.7

주) 2025년 이행점검 후 추가로 제출된 통폐합 추진계획 관련 사항 반영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제출된 통폐합 계획에 관한 점검 결과를 보면, 2024년 연말에 제출된 3,536건의 통폐합 계획 중 13.7%인 485개 정보시스템의 통폐합 계획이 재수립 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통폐합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것도 확인되고 있음.

2) 2025년 연말 기준 '추진'으로 분류된 3,870개 정보시스템 + 계획을 보완·제출한 362개 정보시스템
= 2026년 이행점검 기준 '추진'으로 분류된 4,232개 정보시스템

[제출된 통폐합 계획에 대한 점검 결과]

(단위: 건, %)

구분	합계	추진				미추진			
		기존 계획		계획 변경		예외 승인		재수립 필요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24년 연말 이전 제출	3,536	2,647	74.9	298	8.4	106	3.0	485	13.7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매년 이행점검을 통해 통폐합 계획의 제출 및 보완을 요청하고 있으나, 통폐합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들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는 즉각적인 보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통폐합이 실시되고 있는데, 일부 기관이 관련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 이용도와 성과가 낮은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는 정책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통폐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폐합 대상으로 가선정된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소관기관이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외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하도록 하는 등 이행점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 이전까지 추진될 예정이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의 추진시점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고, 2026년 이행점검 결과 추진시점을 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통폐합 계획의 건수가 증가하는 등 일부 정보시스템의 통폐합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통폐합 계획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추진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제출된 계획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정보시스템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사업이 추진되는 연도의 전년도 상반기부터 소관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처는 통폐합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추진시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통폐합 계획의 추진시점을 보면, 2025년 이행점검 전 제출된 3,870개 정보시스템 중 2,446개 정보시스템이 2025년 이전에 통폐합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이고, 963개 정보시스템은 2026년에, 362개 정보시스템은 2027년 이후에 각각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제출된 통폐합 계획 일부는 추진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검토과정에서 ‘시기 미정’으로 분류되었음. 2025년 이행점검 기준으로는 3,870건 중 99건이던 시기 미정 건수가 2026년 이행점검에서는 456건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2025년까지 추진완료될 예정이던 통폐합 건수도 2025년 2,446건에 비해 2026년 기준으로는 2,170건으로 감소하였음. 이는 2025년까지 통폐합 완료 예정이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의 통폐합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거나, 계획상 추진일정이 연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계획상 통폐합 추진시점]

(단위: 건)

구분	합계 (A+B+C+D)	예외인정·미제출 (A)	~2025년 (B)	2026년 (C)	2027년~ (D)	시기 미정 (E)
2025년 이행점검 전 제출	3,870	-	2,446	963	362	99
2026년 이행점검 전 제출	3,870	△142	2,170	666	436	456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이 통폐합 시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5년 이행점검 전 제출되었던 통폐합 계획 중 일부가 차년도(2026년) 예산 관련 협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거나 기관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예산 과정에서 일부 정보시스템에 관한 통폐합 예산이 조정되거나 미반영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나,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통폐합 계획 이행 관리가 필요할 것임.

아울러, 사전에 추진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폐합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추진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보완을 요청하여 통폐합 계획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음.

2.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관련: 재해복구시스템(DR)의 차질없는 구축 필요 등

가. 개 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는 2025년 9월 26일 20시 15분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고 함) 대전본원의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이 사고로 인해 정부가 운영하던 상당수 정보시스템이 상당시간 가동이 중단된 바 있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전본원 5층 제7전산실의 무정전 전원 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하여 발생한 화재로, 해당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배터리의 전원을 내리는 과정에서 배터리 1개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음.

화재 자체는 다음 날인 9월 27일 18시경 완전진화되었으나, 진화 이후에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던 436개 인터넷망 서비스 등 709개 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최대 95일간 중단되었음.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관련 주요 경과>

2025.9.26. 20시 15분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5층 제7전산실 화재 발생
2025.9.26. 22시경: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 위기상황대응본부 구성
2025.9.27. 8시경: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2025.9.27. 18시경: 화재 완전 진화
2025.9.28. 항온·항습기 재가동 및 핵심 보안장비 재가동
2025.11.1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본부 제2차 회의 개최
- 위기경보 ‘경계’ → ‘주의’로 하향 조정 및 위기상황대응본부 → 위기상황대응팀 조정
2025.11.25. 대전경찰청 화재 원인 발표[3)]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 과실
- 국정자원관리원 원장 및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19명 입건
2025.12.23.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책임·관련자 19명 검찰 송치 발표
2025.12.29. 17시경: 709개 정보시스템 복구 완료, 95일만에 시스템 정상화
2026.2.11.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11호) 개정
- UPS, 축전지 관련 안전 기준 격상
2026.3.16.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 개정, 주기적 백업 및 원격지 소산 의무화, 재해복구훈련 실시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는 화재발생 이후 2025년 11월 국가 AI전략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전센터 소재 97개 정보시스템을 재해복구시스템 ISP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ISP를 수립 중임. 이 중 중단 시 즉각적 피해가 예상되는 13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ISP 수립이 완료되는 2026년 8월부터 Active-Active 방식으로 재해복구(DR: Disaster Recovery)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임.

[2026년 재해복구시스템 등 구축 계획]

(단위: 억원)

구분	금액
1 대전센터 정보시스템 이중화 (A)	**3,422**
- **총 97개 정보시스템**의 DR 구축을 위한 ISP 수립 • 총 42개 정보시스템 대상 A-A DR ISP: 291억원 • 총 55개 정보시스템 대상 A-S DR ISP: 97억원	388
- **13개 정보시스템**의 2026년 Active-Active DR 구축 • 민간시스템 DR 구축: 3개 시스템 대상: 463억원 • 공공시스템 DR 구축: 10개 시스템 대상: 1,658억원	2,120
- 2026년 스토리지 DR 구축 • 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한 I, II그룹 86개 및 III그룹 35개 등 총 121개 정보시스템 대상	883
- 백본전송망 회선비 • DR 구축 후 증가될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비 계약 금액	31
2 대전센터 민간 이전 및 신축 검토 (B)	**15**
- 대전센터 이전 계획 수립 ISP	15
합계(A+B)	**3,437**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의 내역사업 중 ‘민간클라우드 전환계획 수립’에 2억 4,000만원이, ‘범정부 이중운영체계 구축’에 2,523억 2,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사업’의 내역사업 중 ‘스토리지DR 구축’에 88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백본전송망 회선비’로 170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경향신문(2025.11.25.), ‘(속보) 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 …불법하도급도 확인, 원장 등 입건’

[재해복구시스템 등 구축 관련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C)	173,334	173,334	4,513	-	129,823	307,670	300,997	6,519	154	410,722
민간클라우드 전환계획 수립	-	-	-	-	-	-	-	-	-	240
범정부 이중 운영시스템 구축	-	-	-	-	-	-	-	-	-	252,322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구축(정보화) (D)	83,099	83,099	-	-	-	83,099	82,441	500	158	192,045
스토리지DR 구축	-	-	-	-	-	-	-	-	-	88,293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2045-300) (E)	16,642	16,642	-	-	-	16,642	16,618	-	24	33,418
백본전송망 회선비	16,642	16,642	-	-	-	16,642	16,618	-	24	17,012
합계(C+D+E)	289,717	289,717	4,513	-	129,823	407,411	400,056	7,019	336	636,185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첫째, 2005년에 관련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2025년 9월 26일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시 1-2등급 중요시스템을 포함한 709개 정보시스템이 최대 95일까지 중단된 바 있으므로,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9·11테러사태 발생 등을 계기로 정보시스템 관련 재해대책 수립 차원에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인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지침」[4]을 마련한 바 있음.

2005년 12월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이 일정 시간(예: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재해'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해복구시스템(DRS: Disaster Recovery System)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지침상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식 구분]

용어	구축 및 운용방식	목표 복구시간(RTO)	초기투자 및 유지보수비용
액티브-액티브 (Active-Active)	전체 정보자원에 대해,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재해복구센터를 원격지에 구축·동시 가동	0	높음
액티브-스탠바이 (Active-Standby)	전체 정보자원에 대해,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재해복구센터를 원격지에 구축·재해발생시 가동	≒0	높음
웜 사이트 (Warm Site)	일부 정보자원에 한하여,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재해복구센터를 원격지에 구축 **(일부에 한하여 액티브-스탠바이 방식 운용)**	수시간 ~ 1일	비교적 저렴
콜드 사이트 (Cold Site)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 재해 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구	수주 ~ 수개월	가장 저렴

자료: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지침」(2005.12.), pp.15~16.

또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근거로 정보시스템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로 장애관리, 행정정보 관리 및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도록(제48조의2 제1항) 하였음.

4) 국무조정실·정보통신부(2005.12.),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지침」

2024년 5월 23일에 실시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5]에서도 1-2등급 중요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 요구되는 등 최근까지도 중요 업무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였음. 그 결과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발생시 709개 정보시스템이 최대 95일까지 중단되었음.[6]

사고발생 직후인 2025년 10월말 자료에 따르면, 128개 1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해서조차 Active-Active 또는 Active-Standby 방식으로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41.4% 비중인 53개에 불과하였음.

[1등급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현황(2025년 10월말 기준)]

(단위: 개)

1등급 정보시스템 수 (A+B)	재해복구센터 구축 여부				
	구축				미구축 (B)
	합계 (A)	액티브-액티브	액티브-스탠바이	콜드사이트	
128	66	9	44	13	6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해복구시스템 도입에 앞서 기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5년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을 대상으로 대전-공주센터 간 Active-Active 방식의 재해복구시스템의 시범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화재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재해복구시스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2005년 수립되었음에도 20여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1-2등급 중요 업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핵심기반시설 지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관한 대응이 많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5) 감사원(2024.5.23.) “행정·공공기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운용 개선 필요”

6) 행정안전부는 당초 647개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으나, 709개로 정정(10.9.)하였음.

둘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연속성 기준에 의한 복구시간목표(RTO)와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기준에 의한 RTO가 다른 경우 DR 구축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정보시스템 중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이하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라고 함)를 제정하여 전체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산정(제5조)하고자 하였음.[7)]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의 [별표 1]에서는 국민영향도(70%)·사용자수(10%)·파급도(10%) 및 대체가능성(10%)을 기준으로 최고 A1등급-최저 A4등급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음. 특히 '국민영향도'에 70점을 배점하고, 이중 20점은 '서비스 연속성'이 요구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하여 부여하도록 하였음.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

평가기준		점수	기준
국민영향도(70)	서비스 중요도(50) - 국민 관점에서 서비스의 중요도	50	- 서비스 중단 시에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 - 국가 안보와 기반시설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국민의 경제·사회적 활동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45	-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등에 간접적, 잠재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사회·경제적 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5	- 일정 기간 대국민 서비스와 행정 업무가 지연 또는 중단되어 국민 생활에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
		25	- 대국민 서비스와 내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3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1. A1 등급 :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등에 밀접히 관련되어 가장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
2. A2 등급 :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중 국민이 많이 이용하고,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대국민 필수 정보시스템
3. A3 등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정보시스템 중 다른시스템과 연계가 많고,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행정중요정보시스템
4. A4 등급 : 국민의 일상적 편의 제공 또는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일반 정보시스템

<table>
<tr><th colspan="2">평가기준</th><th>점수</th><th colspan="2">기준</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4">서비스 연속성(20)
- 장애 발생 시 서비스의 연속성</td><td>점수</td><td colspan="2">기준</td></tr>
<tr><td>20</td><td colspan="2">- 재난·재해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운영되어야 할 서비스</td></tr>
<tr><td>15</td><td colspan="2">- 재난·재해 발생 시에 빠른 시간 내(12시간 이내)에 복구가 필요한 서비스</td></tr>
<tr><td>10</td><td colspan="2">- 재난·재해 발생 시에 빠른 시간 내(12시간 이내)에 복구가 필요 없는 서비스</td></tr>
<tr><td rowspan="5">사용자 수(10)
- 연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기간의 일 평균 사용자 수(중복 사용자를 포함한 시스템 접속자 수)</td><td>점수</td><td>대국민 업무</td><td>행정 내부 업무</td></tr>
<tr><td>10</td><td>100만명 이상</td><td>1만명 이상</td></tr>
<tr><td>8</td><td>10만명~100만명 미만</td><td>1천명~1만명 미만</td></tr>
<tr><td>6</td><td>1천명~10만명 미만</td><td>1백명~1천명 미만</td></tr>
<tr><td>4</td><td>1천명 미만</td><td>1백명 미만</td></tr>
<tr><td rowspan="5">서비스 파급도(10)
- 장애 발생 시 영향을 받는 다른 정보시스템의 수(2차 연계 포함하여, 실시간으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연계 시스템 수)</td><td>점수</td><td>대국민 업무</td><td>행정 내부 업무</td></tr>
<tr><td>10</td><td>10개 이상</td><td>50개 이상</td></tr>
<tr><td>8</td><td>5개~10개 미만</td><td>10개~50개 미만</td></tr>
<tr><td>6</td><td>1개~5개 미만</td><td>1개~10개 미만</td></tr>
<tr><td>4</td><td>0개</td><td>0개</td></tr>
<tr><td rowspan="5">대체가능성(10)
-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의 존재 여부</td><td>점수</td><td colspan="2">기준</td></tr>
<tr><td>10</td><td colspan="2">-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기로만 존재하여 국민 생활에 중요한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td></tr>
<tr><td>8</td><td colspan="2">- 대체 수단이 일부 서비스만 온라인으로 가능하여 국민 생활 불편이 큰 경우</td></tr>
<tr><td>6</td><td colspan="2">- 유사한 시스템 등 대체 수단이 존재하여 국민 생활 불편이 크지 않은 경우</td></tr>
<tr><td>4</td><td colspan="2">- 대체 수단으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여 국민 생활 불편이 없거나 대체 수단이 필요 없는 경우</td></tr>
<tr><td rowspan="5">합계(100)</td><td>등급</td><td colspan="2">세부 정의</td></tr>
<tr><td>A1</td><td colspan="2">■ 국가핵심(90점 이상)
-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되어야 하고, 가장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국가 핵심 시스템</td></tr>
<tr><td>A2</td><td colspan="2">■ 대국민필수(80점 이상, 대국민시스템)
-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되어 상시적·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대국민 필수 시스템</td></tr>
<tr><td>A3</td><td colspan="2">■ 행정중요(80점 이상, 내부시스템)
- 국가 핵심 또는 대국민 필수 서비스와 연계되어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내부 사용자가 이용하는 행정 중요 시스템</td></tr>
<tr><td>A4</td><td colspan="2">■ 국민·행정일반(80점 미만)
- 국민·행정의 편의 증진과 정보를 제공하나, 사용 빈도가 적고,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진 국민·행정 일반 시스템</td></tr>
</table>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이 기준은 서비스의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에 의해 측정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복구시간목표(RTO: Recovery Time Objective)를 기준으로 측정됨. RTO는 정의상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중단된 서비스를 언제까지 복구할지에 관한 목표시간'을 뜻하는데, 등급산정기준에서는 '중단없이 운영되어야 할' 서비스(RTO=0)에 20점을, '12시간 이내에 복구되어야 할' 서비스(RTO=12시간)에 15점을, 12시간 이내에 복구될 필요가 없는 서비스(RTO>12시간)에 10점을 각각 부여하도록 하였음.

최종등급은 종합점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시간으로 서비스의 복구가 요구(RTO=0)되는 시스템이라도 최저등급인 A4 등급으로 판정될 수 있고, 반대로 목표복구시간이 12시간 이내로 요구되지 않는(RTO>12시간) 시스템이라도 최고등급인 A1 등급으로 판정될 여지가 있음.

또한, 같은 고시에서는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재해복구시스템(DR)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면서(제17조제1항),[8] A1 등급에 대해서는 RTO를 실시간~1시간 이내로, A2 등급은 3~12시간 이내로, A3등급은 1~5일 이내로, A4 등급은 3주 내로 각각 설정(제17조 관련 별표 10)하고 있음.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기준]

구분	재해복구 목표주)	구축방식 예시	구축 방식 상세 설명
A1 등급	RTO:실시간~1시간 內 RPO: 0(실시간)	액티브(Active) -액티브(Active)	-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을 주 시스템과 다른 데이터센터에 미리 구성
A2 등급	RTO: 3~12시간 內 RPO: 수 분	액티브(Active)- 스탠바이(Standby)	-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을 주 시스템과 다른 데이터센터에 미리 구성
A3 등급	RTO: 1~5일 內 RPO: 수 분	스토리지DR	-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은 미 구성 - 주 시스템의 데이터만 다른 데이터센터에 실시간으로 동기화(복제)해 두었다가 시스템 중단 시 정보자원을 새로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
A4 등급	RTO: 3주 內 RPO: 1~7일	원격지 소산	- 주 시스템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한 보존매체를 원격지에 소산하여 보관 - 주 시스템이 파괴·손상된 경우 백업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구(백업 주기에 따라 일부 데이터 손실 가능)

주) RPO(Recovery Point Objective)는 '데이터'의 목표복구시점을 가리킴.
자료: 행정안전부 고시(제2026호-23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8)「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7조(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70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행정안전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등급산정과정에서 서비스 연속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게 측정되더라도, 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한 등급이 낮게 판정되면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서비스 연속성 측면에서 실시간 복구가 요구(RTO=0)되어 최고점(20점)을 맞더라도, 종합점수가 90점 미만인 내부시스템이어서 A3 또는 A4 등급으로 판정되면 RTO가 1~5일 이내로 설정되어 스토리지DR을 구축하거나, RTO가 3주 이내로 설정되어 원격지 DR 구축 없이 주기적으로 데이터 백업만을 수행하게 됨.

이와 달리 서비스 연속성 측면에서 12시간 이내에 복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최하점(10점)이 부여되더라도, 종합점수 90점 이상을 획득하여 최고등급인 A1 등급이 부여되는 경우 서비스 연속성 점수가 낮게 판정되었음에도 구축 및 유지관리에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Active-Active 또는 Active-Standby 방식의 DR을 구축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요구되는 RTO 기준과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시 적용되는 RTO 기준 사이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DR 구축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3.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운영실태 평가지표 개선 필요 등

가. 개 요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구축·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16억 3,4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9)]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2025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41,634	41,634	-	-	-	41,634	41,634	-	-	40,662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9) 일반회계-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2046-502)(인공지능정부실)

나. 검토의견

첫째,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 평가의 평가지표를 보면 데이터 개방을 위한 ‘관리노력’을 주된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 대비 활용수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실적 등에 관한 정량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고 함)에 따라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전체 공공기관[10]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있음(제9조제1항).[11]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 평가(이하 ‘운영실태 평가’라고 함)는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관련 정책의 개선 및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개방·활용, 품질 및 관리체계 등 3개 평가영역에서 평가가 수행되었음.

[2025년 평가영역 및 주요 평가지표]

평가영역	주요 평가지표
개방·활용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가점)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관리체계	▲추진기반 조성, ▲관련 교육 참여

자료: 행정안전부

---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운영실태 평가의 각 평가영역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서 기준을 정하여 고시(제11조)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것임.[12)]

운영실태 평가의 '개방·활용' 영역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장에 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관리를 위한 단계별 활동들[13)]이 평가대상이고, '품질' 영역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장에서 의무로 규정된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활동[14)]이 평가대상이며, '관리체계' 영역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각 기관이 임명·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등의 역할이 평가대상임.[15)]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매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음.[16)]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동 세부사업에 속한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내역사업의 예산으로 공공데이터 생성·수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85억 6,800만원)·오픈 API 개발비(80억 8,900만원)·DB 품질개선을 위한 용역비(97억 4,4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또한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과거 개방되었던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오류데이터 점검 및 각 기관의 데이터셋 현행화 등을 위해 5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성화 지원을 위한 포럼 운영비·시민참여형 프로젝트 시범운영비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비 등으로 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유사중복서비스의 정비를 위해 9,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1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3)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장의 각 절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관리를 위한 단계별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 단계별로 공공데이터의 생성·수집(제1절),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처리(제2절), 공공데이터의 등록(제3절), 공공데이터의 제공(제4절) 및 공공데이터 제공 사후관리(제5절) 등이 규정되어 있음.

1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장에서는 각 기관에 품질관리체계 구축(제21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제22조) 및 품질진단 및 개선(제23조)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

15)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5조(관리체계)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6) 다만 2025년 결산 기준으로도 전체 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등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합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음.

[공공데이터의 제공·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사례주)]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편성 근거	예산	집행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① 공공데이터 개방 가능성 점검 및 개선** (산출) 민간 활용성이 높은 DB 품질개선비 4억 8,720만원×20개 분야 = 97억 4,400만원 **②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산출) 개방 DB 구축비 4억 2,800만원×20개 분야 = 85억 6,800만원 **③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산출) (오픈API 개발비 2억 6,500만원×10개)×20개 분야 = 53억 1,000만원 **④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산출) 오픈API 개발비 1억 6,400만원 × 17개 시도 = 27억 8,800만원	26,410	26,410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59억 400만원 **② 공공데이터 표준 체계 확대 및 운영** (산출) 공공데이터 표준화, 오류 데이터 점검, 데이터셋 현행화 독려 등: 5억 1,200만원	6,316	6,316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①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4억 5,500만원 **② 민관협력 포럼 운영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산출) 포럼 운영(4,000만원) + 시민참여형 프로젝트 추진(1억원) + 창업경진대회 개최(9,000만원) = 2억 3,000만원 ③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기술지원: 4억 5,400만원 ④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 훈련: 3,900만원 **⑤ 공공데이터 민간유사중복서비스 정비: 9,000만원**	1,268	1,268

주)「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장에 명시된 공공데이터의 제공·관리를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항목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고, 세부내용은 밑줄로 표시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매년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운영실태 평가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투입된 예산 대비 활용실적의 수준 및 연도별 추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공데이터가 얼마나 활용되었는지에 관한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운영실태 평가의 평가지표를 보면, 각 기관의 개방 및 관리노력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방된 공공데이터가 얼마나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실제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방·활용' 영역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지표를 보면, 5개 평가지표 모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관 차원에서의 노력수준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실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등에 관한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17)]

17) 구체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10) 지표는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

[2025년 평가영역 및 지표]

평가영역	지표명	측정방식	배점
개방·활용(48)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정량	10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정성	10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정량	2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정량	2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정량	4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정량	2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	정량(감점)	건당 -1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정량(감점)	건당 -1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정량·정성	20
	활용성 진단서비스 기준값 달성도	정량	5
	공공데이터 민간·공공 활용 성과	정성	5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정성	10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정량(가점)	건당 +1
품질(45)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정량	17
	데이터 값 관리	정량	18
	진단결과 조치	정량	10
관리체계(7)	추진기반 조성	정량	3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정량	4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었는지를 정량지표로 측정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앞서 민간 수요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책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예: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를 식별하여 우선적으로 개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공공데이터의 개방 등은 예산이 투입되는 활동이므로, 투입규모 대비 정량적 활용실적의 규모 및 추세 등을 측정하여 적정 예산규모 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데이터 개방 등을 목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타 사업의 사례를 보면, 데이터 다운로드 건수 등에 관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을 측정하는 등 다수의 정량지표에 의해 데이터 개방 및 활용 등에 관한 정량실적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확인됨.[18)]

을 위한 노력수준을,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10) 지표 및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가점 5) 지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유형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노력수준을,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8) 지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수용 또는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수행 등 지적사항에 관한 시정 노력을,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20) 지표는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이나 경진대회 개최 등의 운용실적을 각각 평가함.

[활용실적 관련 정량지표 운영 사례: 소방청의 119빅데이터 플랫폼 위탁운영사업]

구분	성과 지표명	2024년			2025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1	데이터 다운로드	20,000건	20,397건	102%	20,000건	26,419건	132%
2	데이터 이용기업 수	400개	515개	129%	400개	419개	105%
3	신규데이터 개방(종)	70종	158종	226%	70종	87종	124%
4	신규데이터셋	지표신설			600건	885건	148%
5	주기성 데이터 현행화(%)	70%	84%	120%	지표삭제		
6	자체운영을 위한 수익창출	100백만원	-	0%	지표삭제		
7	데이터 거래실적	지표신설			300백만원	153백만원	51%
8	오프라인 홍보활동	지표신설			8건	9건	113%
9	월평균 방문자수(UV)	1,500회	2,120회	141%	1,500회	2,036회	136%
10	월평균 페이지뷰(PV)	23,000회	43,117회	187%	23,000회	24,027회	104%
11	활용우수사례	10건	9건	90%	10건	10건	100%
12	이용자만족도	80/100점	90점	113%	80/100	83.03점	104%
13	일자리 창출	8명	8명	100%	지표삭제		

자료: 소방청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개방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타 사업에서의 성과지표 측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활용실적 등에 관한 정량지표를 수립하여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8) 일반회계-119빅데이터 분석・운영(1133-311)(소방청)

둘째,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표준화시켜 제공하기 위해 '표준데이터셋'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표준데이터셋 제공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거나 표준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표준데이터셋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의 관리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제공기술, 분류체계 및 기타 사항 등에 관하여 표준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제23조).[19]

표준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표준용어·제공방식·제공경로·제공항목 및 속성 등의 통일이 요구됨.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을 통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표준데이터셋에 대해 표준용어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데이터들을 선정하여 가급적이면 제공기관 전체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표준데이터셋으로 지정된 데이터임에도 제공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표준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표준데이터셋의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예시: '도시공원정보' 표준데이터셋 관련(일부)]

□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제공범위(대상)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도시공원 ※ 공원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공원정보는 제공범위(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제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	해당없음
갱신주기	연간

1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상세 정보

<table>
<tr><th>NO</th><th>항목명</th><th>구분
(필수/
선택)</th><th>설명</th><th>허용
값</th><th>표현형식
/단위</th><th>예시</th></tr>
<tr><td>1</td><td>관리
번호</td><td>필수</td><td>각 기관별로 부여하는 공원의 관리번호
<table><tr><th>구분</th><th colspan="3">공원정보 식별 아이디 체계</th></tr><tr><td>코드 체계</td><td colspan="3">①②③④⑤ - ⑥⑦⑧⑨⑩</td></tr><tr><td rowspan="2">코드 설명</td><td>①②③④⑤</td><td>숫자</td><td>권역번호</td></tr><tr><td>⑥⑦⑧⑨⑩</td><td>숫자</td><td>일련번호</td></tr></table>〈코드설명〉
* 권역번호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행자부고시)” 에서 제시하는 법정동코드 10자리 중 앞의 5자리를 입력</td><td></td><td>NNNNN-
NNNNN</td><td>11110-00001</td></tr>
<tr><td>2</td><td>공원명</td><td>필수</td><td>공원의 이름</td><td></td><td>text</td><td>올림픽공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자료: 행정안전부(2025.12.23.),「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20차 제·개정 전문」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300종[20]의 표준데이터셋 중 144종은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제공기관이 직접 공공데이터 포털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운영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에 명시된 제공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거나, 표준데이터셋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제공되고 있음.

예를 들어 ‘전국 자전거 도로 표준데이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229개 시군구 중 146개 시군구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데이터가 표준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으나, 19개 시군구에서는 관련 공공데이터를 표준데이터가 아닌 일반데이터로만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64개 시군구에서는 자전거도로 관련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지역별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예시: 자전거도로 관련 데이터]

(단위: 건)

지역[1]	시군구 수[2] (A)	광역 또는 기초 제공			미제공 (A-B)
		표준	개별	합계(B)	
서울	25	9	5	14	11
경기	31	22	3	25	6
인천	11	6	2	8	3
강원	18	11	-	11	7
충북	11	9	2	11	-

20) 행정안전부는 2014년 최초 제정 이래「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데이터들을 ‘표준데이터셋’으로 추가지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2026년 5월말 기준으로는 300종의 분야가 지정되어, 12,423건의 데이터셋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표준데이터셋으로 등재되어 있음.

(단위: 건)

지역[1]	시군구 수[2] (A)	광역 또는 기초 제공			미제공 (A-B)
		표준	개별	합계(B)	
충남	15	4	3	7	8
대전	5	5	-	5	-
전북	14	7	-	7	7
전남광주	27	17	2	19	8
경북	22	15	-	15	7
경남	18	10	1	11	7
대구	9	9	-	9	-
부산	16	16	-	16	-
울산	5	5	-	5	-
제주	2	1	1	2	-
합계	**229**	**146**	**19**	**165**	**64**

주 1) 시군구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2)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2026년 7월 1일) 사항 반영(서구→서해구・검단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등 포함 229개 시군구 기준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2026.7.6. 기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표준데이터셋은 실제로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수(표본)가 데이터셋을 제공해야 할 전체 기관 수(모수) 대비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임.

[2025년 이전 지정된 지자체 제공 표준데이터셋 중 제공기관 수 하위 20개]

(단위: 건)

목록명	제공기관	신규지정 연도	제공기관 수		
			광역	기초	합계
전국폐수처리업체표준데이터	지자체	2024	-	6	6
전국지하도상가표준데이터	지자체	2024	-	6	6
전국인공어초시설표준데이터	지자체	2024	-	8	8
전국대중교통환승센터표준데이터	지자체	2018	3	11	14
전국보건기관표준데이터	지자체	2022	1	15	16
전국정보통신공사업체표준데이터	지자체	2024	5	13	18
전국로컬푸드인증정보표준데이터	지자체	2017	-	19	19
전국경로우대지정업소표준데이터	지자체	2017	-	20	20
전국버스전용차로정보표준데이터	지자체	2017	8	15	23
전국도로사용허가정보표준데이터	지자체	2024	-	23	23
전국인명구조함및위험표지판표준데이터	지자체	2024	-	28	28
전국도시개발사업정보표준데이터	지자체	2024	1	28	29
전국폐수배출사업장표준데이터	지자체	2024	-	30	30
전국보행자우선도로표준데이터	지자체	2017	-	33	33
전국스마트가로등표준데이터	지자체	2017	-	33	33
전국저수지및댐표준데이터	지자체	2024	1	32	33
전국휴지통표준데이터	지자체	2024	1	33	34

(단위: 건)

목록명	제공기관	신규지정 연도	제공기관 수		
			광역	기초	합계
전국횡단보도옐로카펫설치정보표준데이터	지자체	2024	-	35	35
전국의류수거함표준데이터	지자체	2024	-	38	38
전국하천표준데이터	지자체	2024	-	39	39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2026.7.6. 기준)

표준데이터셋은 민간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지정하여 표준화된 데이터셋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지정되는데, 제공기관 중 다수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거나, 표준화되지 않은 일반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표준데이터셋 지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표준데이터셋의 소관기관 및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표준데이터셋의 지정 및 관리가 사업 취지에 맞게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사업: 재정여건을 고려한 출연금 지원규모 조정 필요 등

가. 개 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관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4억 2,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1)]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지원	3,423	3,423	-	-	-	3,423	3,423	-	-	3,123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등을 근거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고, 2025년에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이 34억 2,300만원 교부되었음.

출연금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2025년에 교부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34억 2,300만원이 전액 실집행(실집행률 100.0%)되었음.

[2025년 출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세목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기관운영 출연금 (350-01목)	3,423	3,423	3,423	3,423	-	3,423	3,423	3,423	3,423	-	-	100.0

자료: 행정안전부

21) 일반회계-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1131-302), 출연사업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누적된 잉여금 등의 규모가 연평균 기관운영출연금 지원규모의 5.96배 수준으로 과다하므로, 행정안전부는 기관운영출연금 지원 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지원규모를 감액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근거법률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제2항).[22]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원되는 예산의 비목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설정하여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기관운영출연금은 자체수입만으로 기관운영이 어려운 출연기관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므로, 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대상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적정 지원규모 등이 결정될 필요가 있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현황을 보면, 2025년 결산 기준 잉여금은 103억 5,000만원, 연구개발적립금은 88억 8,200만원이 각각 누적되어, 사실상 192억 3,300만원이 여유자금으로[23] 기관 내 유보되고 있음.

[최근 5년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잉여금·연구개발적립금 누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잉여금(A)	4,448	4,137	7,317	9,003	10,350
일반회계	3,944	3,538	5,188	5,453	5,626
특별회계	504	599	2,129	3,549	4,725
연구개발적립금(B)	8,163	8,518	8,723	8,696	8,882
합계(A+B)	12,612	12,656	16,041	17,699	19,23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25년 총지출 규모인 213억 8,300만원에 근접하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급한 평균 사업비 32억 2,800만원의 5.96배에 달하는 규모임.

---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3) 동 기관은 잉여금 처리에 관하여 '전년도 이월손실 보전' 외 구체적인 용도지정 없이 유보하고 있고, 연구개발적립금에 대해서도 지출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5년간 사업비 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사업비	3,054	3,054	3,554	3,054	3,423	3,228

자료: 행정안전부

동 기관이 보유한 잉여금은 2025년 행정안전부의 자체감사(2025.7.3.)에서 불법사실[24]이 적발되기 전까지는 기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유보되었던 것이므로, 행정안전부가 기관운영출연금의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해당 잉여금의 존재가 고려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신설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인력을 수용할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제2청사 신축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고, 부지규모 및 예정 수용인원이 유사한 한국광해광업공단 별관의 부지매입 및 신축에 약 436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기관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 및 연구개발적립금 등은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참고사례: 한국광해공업공단(별관) 현황]

구분	현황	비고
이전인원	186명	약 200명~230명 수준 사무실 사용 가능
이전부지	19,307㎡	-
이전시설(B1층~10층) - 업무시설(사무동) - 특수시설(연구동)	13,504㎡ 9,496㎡ 4,008㎡	-
청사건축비(억원)	436억원	-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러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모르게 적립된 여유자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사용 내역을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의해 제2청사 신축 계획의 타당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인력규모(현원 30여명) 등을 고려하면 적립된 잉여금의 소진 여부 등은 확실하지 않음.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여건 및 기관운영출연금 지원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원규모를 감액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 이월손실 보전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조)하고 있으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에 반하여 해당 잉여금 90억 300만원 중 17억 5,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지도, 기금으로 전입하지도 않은 채 유보하였음.

둘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부수탁과제 계약금액의 약 40%를 간접비로 계상하여 자체수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감독방식이 유사한 지방세연구원(10%)에 비해 비율이 과다하므로, 정부수탁과제의 간접비 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내부규정인 「수탁용역사업 집행예산편성기준」에서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총액의 50% 이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21개 정부수탁사업에서 계약총액 19억 2,186만원의 39.3% 비중인 7억 5,680만 8,000원이 간접비로 계상되었음.

[2025년 정부수탁사업 간접비 계상 현황]

(단위: 천원, %)

연번	과제명	위탁기관	계약 총액(A)	간접비 (B)	비중 (B/A)
1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지원: 지방자치분권 분야	행안부	39,000	15,600	40.0
2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마련 연구용역	구미시	90,000	36,000	40.0
3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 용역	태백시	85,360	34,144	40.0
4	2025년 파주시 재정사업 평가 용역	파주시	100,100	40,040	40.0
5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행안부	196,000	71,133	36.3
6	지방자치단체 자금운용 실태 및 중앙·해외 사례 조사 연구용역	행안부	30,000	12,000	40.0
7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직 분석 및 진단 연구용역	행안부	215,600	86,240	40.0
8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제주시	318,500	127,400	40.0
9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연구	행안부	36,360	14,544	40.0
10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연구	경남의회	38,000	15,200	40.0
11	지역통계 생산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	통계청	45,454	18,181	40.0
12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 지방자치분권 분야	행안부	49,900	19,960	40.0
13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데이터 주권에 관한 연구	행안부	31,500	12,600	40.0
14	자치단체 기능조정 및 사무특례 도입을 위한 사무분석 연구용역	행안부	90,720	36,288	40.0
15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방향 및 생활인구 분석 연구용역	행안부	80,000	27,333	34.2
16	충청권 지역화폐 발행 시행방안 수립 연구용역	충청연합	90,909	36,363	40.0
17	시흥시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	시흥시	229,920	91,968	40.0
18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및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행안부	27,270	10,908	40.0
19	지역사랑상품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발전 방안 모색 연구용역	행안부	45,450	18,180	40.0
20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개선 연구 용역	행안부	36,363	14,545	40.0
21	마을기업법 시행 대비 지자체 실행체계 및 정책모델 마련 연구	행안부	45,454	18,181	40.0
21개 과제 합계			**1,921,860**	**756,808**	**39.3**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러한 간접비는 정부수탁과제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출연금 등 정부재원만으로는 기관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자체수입원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간접비의 실제 비율은 기관마다 상이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측면이 있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에서 최근 4년간 최소 6억 9,100만원에서 최대 22억 6,800만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적용하고 있는 간접비 비율은 과다한 측면이 있음.

[최근 4년간(2022-20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인건비			경상운영비			잔액 합계
		예산	집행	잔액	예산	집행	잔액	
2022	일반회계	6,700	5,892	808	1,077	785	292	1,100
	특별회계	2,667	1,979	688	769	540	229	917
	합계	**9,367**	**7,871**	**1,496**	**1,846**	**1,325**	**521**	**2,017**
2023	일반회계	7,107	5,686	1,418	1,185	894	290	1,708
	특별회계	2,542	2,048	494	665	599	66	560
	합계	**9,649**	**7,734**	**1,912**	**1,850**	**1,493**	**356**	**2,268**
2024	일반회계	6,535	6,301	234	1,613	1,384	229	463
	특별회계	2,585	2,422	162	630	564	66	228
	합계	**9,120**	**8,723**	**396**	**2,243**	**1,948**	**295**	**691**
2025	일반회계	6,930	6,398	532	1,163	1,030	133	665
	특별회계	3,077	2,474	603	563	497	66	669
	합계	**10,007**	**8,872**	**1,135**	**1,726**	**1,527**	**199**	**1,334**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행정연구원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동 기관에 비해 규정상 허용된 간접비 비율이 유사하거나, 더 높게 책정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임.

[2025년 정부수탁사업 간접비 관련 규정 현황]

관리 감독기관	기관명	비율	근거조문
행정 안전부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50%	제9조(간접비) 간접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총액의 50%이내**에서 계상한다. 단, 용역과제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한국 행정연구원	55%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수탁용역의 실행예산은 수탁용역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며, **원칙적으로 55%의 간접경비를 편성**한다.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45%	제6조(비목별 편성기준) 가) 수탁용역 수행에 따른 제반 간접경비 보전을 위하여 **계약기준액의 45% 이상을 개발보전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예시한 2개 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비해 결산잉여금의 처분 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재정통제를 받고, 기관별 재정여건에도 차이가 있음.[25)]

또한 동 기관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간접비 계상 비율을 10% 이내로 운용하면서, 연구과제에서 지출되는 인건비를 간접비가 아닌 '사업인건비'로 계상하여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비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당초 목적인 기관운영비의 충당 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관리감독방식이 유사한 지방세연구원(10%) 등의 사례를 고려하여 정부수탁과제의 간접비 상한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이를 기관의 자체수입에 적극 반영하여 출연금 예산 규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5) **결산잉여금 발생시 퇴직급여충당금에 선적립하고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적립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운용지침」 등에 의해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통제를 받고 있음.

셋째, 행정안전부는 2025년 이전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연구개발적립금의 정확한 사용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채 기관 내에 유보하도록 허용하였는데, 타 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 운용사례 등을 참고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적립금은 통상적으로 연구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운용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0년 12월 1일자로 내부규정인 「예산편성 운영규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수탁용역수입의 5% 이내, 특별회계의 경우 타당성조사수수료의 1% 이내의 자금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잉여금·연구개발적립금 누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잉여금(A)	4,448	4,137	7,317	9,003	10,350
일반회계	3,944	3,538	5,188	5,453	5,626
특별회계	504	599	2,129	3,549	4,725
연구개발적립금(B)	**8,163**	**8,518**	**8,723**	**8,696**	**8,882**
합계(A+B)	12,612	12,656	16,041	17,699	19,23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규정에서는 연구개발적립금 적립의 목적이 ‘연구사업, 연구인프라사업, 기관발전사업 및 기타 연구원 운영’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26] 최근 집행내역 등을 보더라도 추후 회수가능한 관사 보증금 등으로만 집행되고 있어 사실상 여유자금과 유사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현재 내부검토 중인 제2청사 신축을 위한 계획상 재원으로 잉여금 외 연구개발적립금이 명시[27]되어 있고, 청사의 추가 확보는 내부규정상 연구개발적립금의 목적으로 명시된 ‘연구인프라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음.

26)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12조(연구개발적립금) ① 연구원은 연구사업, 연구인프라사업, 기관발전사업, 기타 연구원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적립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1, 21.12.29)
② 연구개발적립금의 재원 및 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수탁용역수입의 5% 이내, 특별회계의 경우 타당성조사수수료의 1% 이내로 하여 구분·운영한다.(신설 20.12.1)

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제출한 ‘잉여금 활용을 통한 청사 추가 확보 추진’ 계획을 보면, 잉여금 외 연구개발적립금이 관련 재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적립금은 잉여금과 달리 규정에 사용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재원[28]이고, 2025년 행정안전부의 자체감사(2025.7.3.)에서 예산 외 여유자금이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제2청사 신축을 위한 계획 등이 행정안전부와 공유되지 않았음에도 연구개발적립금이 명확한 용도 없이 누적되었다는 측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였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목적으로 명시한 제2청사 신축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타 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 운용방식 등을 참고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개발적립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8) 참고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기관 성격이 유사한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적용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적립금의 목적이 ①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인구인프라 확충, 차입금 상환,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②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③ 기관발전사업(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창업 출연·출자 포함) 등으로 제한되고 있음.

5.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 이용 과다

가. 개 요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 지역에 상징물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800만원이 전액 불용(집행률 0.0%)되었음.[29)]

[2025년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지원	30,864	30,864	-	△11,240	-	19,624	17,516	-	2,108	27,763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1,728	1,728	-	△1,700	-	28	-	-	28	5,569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내역사업은 부산광역시를 시행주체로 하는 보조사업(국비지원율 50%)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가칭)YS민주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로 1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9) 일반회계-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2435-300)(자치혁신실), 보조사업

나. 검토의견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내역사업에서는 2025년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다가 사업일정이 당초 대비 1년 8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전액 미교부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집행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하여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기준 동 내역사업은 부산광역시의 (가칭)YS민주역사기념관 건립을 보조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3목)로 17억 2,800만원을 교부하여 공사비(15억 7,800만원) 및 감리비(1억 5,000만원)로 집행될 예정이었음.

2025년 집행결과를 보면, 당초 편성되었던 17억 2,800만원이 보조사업자(부산광역시)에 교부조차 되지 못했고, 이 중 17억원이 타 사업 재원으로 이용(2025.11.19.)되고, 나머지 2,800만원은 불용처리되는 등 예산운용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음.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 2025년 보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B)			
부산	1,728	1,728	-	-	-	-	-	-	-	-	-	-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사업 관련 이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5.11.9.)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지원 (2435-300)	330-03	1,700	재난대책비 (보조)(2734-300)	330-03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부족재원 마련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당초 2025년 연내 착공을 전제로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설계단계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불가피하게 국비를 미교부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실제 추진경과를 보면, 계획설계 착수에서 중간설계 완료 후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기까지 약 9개월(2025.2.~2025.10.)이 소요되었고, 이후에도 총사업비 조정협의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추진일정을 충분히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임.

또한 현재 수립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실시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2개월(2026.7.~2026.8.) 안에 완료하더라도 11월에야 공사 착공이 가능한 일정이어서, 2개월만 착공이 지연되더라도 2026년 예산에 편성된 공사비(39억 100만원), 감리비(2억 900만원) 및 부대비(1,100만원) 등이 전액 미집행될 우려가 있음.

[2025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상황**
- (2025. 2.~10.) 계획설계·중간설계 1·2차 적정성 검토(조달청) 완료
  * (사업기간) 2024~2026 → 2024~2027
- (2025. 11.~2026. 5.)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예처) 완료
  * (사업비) **△11억원(공사비 11 증/ 예비비 △22 감)**/ (사업기간) 2024~2027 → 2024~2028. 8.

○ **향후 추진계획**
- (2026.7.~2026.8.) 실시설계 및 설계 적정성 검토 후 총사업비 협의
- (2026.10.) 건축공사 계약발주 ▸ 시공사 선정 ▸ 착공
- (2028.8.) 준공 및 개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개월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연내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고, 사업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하여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6. 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업: 연례적 과다계상 부적정

가. 개 요

‘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업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8억 500만원 중 66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고, 1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30)]

[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업 2025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건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7,875	7,875	-	△1,070	-	6,805	6,658	-	147	7,920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0) 일반회계-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7002-102)(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 검토의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매년 계획인사교류자 및 실무수습자 등 기준정원 외 인력이 기관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상황에서 기준정원을 근거로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소요 대비 인건비가 과다계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실소요를 반영하여 적정규모의 인건비가 계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2022-2026) 결산 현황을 보면, 2022-2023년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으나,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16.8% 증액(10억 8,000만원)된 이후부터는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각각 87.8%, 84.5% 수준임.

[최근 4년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6,208	6,198	-	29	6,227	6,217	100.3	99.8	-	10
2023	6,419	6,419	-	69	6,488	6,465	100.7	99.6	-	24
2024	7,499	7,499	-	△870	6,629	6,581	87.8	99.3	-	48
2025	7,875	7,875	-	△1,070	6,805	6,658	84.5	97.8	-	147
2026	7,920	7,920	-	-	-	-	-	-	-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원 일부가 타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원이므로, 인건비 지급대상인 기준정원 및 동 세부사업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현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4년간 결원율이 10.1~16.4% 수준이므로 결원율과 비슷한 비율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함.

[최근 5년간 정-현원 현황]

(단위: 명)

연도	본예산 (A-B)	집행액 (B)	차이 (A-B)	기준정원 (C)	현원 (D)	차이 (C-D)	결원율 (C-D)/C
2022	6,198	6,217	△19	110	92	18	16.4
2023	6,419	6,465	△46	109	98	11	10.1
2024	7,499	6,581	918	108	96	12	11.1
2025	7,875	6,658	1,217	108	96	12	11.1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실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계획인사교류자·실무수습자 등 기준정원 외 인력이 최소 6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운용되고 있고, 이들을 포함한 인력 기준 충원율은 94.4-97.7% 수준임.

[최근 5년간 인력 현황]

(단위: 명)

연도	기준정원 (A)	현원 (B)	기준정원 외 인력(C)주)	인력 합계 (B+C)	충원율 (B+C)/A
2022	110	92	12	104	94.5
2023	109	98	8.5	106.5	97.7
2024	108	96	9	105	97.2
2025	108	96	6	102	94.4

주) 기준정원 외 인력은 각 연도의 연말 기준으로 집계됨
자료: 행정안전부

그 결과 동 사업의 인건비는 기준정원에 의해 산정되지만 동 기관에 할당된 과업의 일정부분을 기준정원 외 인력이 수행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어 향후에도 관련 예산의 연례적 과다계상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인력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의 인건비 예산이 계상되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7.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 집행가능한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5억 9,200만원 중 23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3%)되고, 2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31)]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 사업 2025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진대비인프라구축	5,511	5,511	-	-	-	5,511	5,115	-	396	4,660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2,592	2,592	-	-	-	2,592	2,367	-	225	2,071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내역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25억 9,200만원 중 23억 6,700만원이 교부되어 15억원이 실집행(실집행률 57.9%)되고, 1억 8,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6억 7,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년 보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지자체	2,592	2,592	2,367	2,367	-	2,367	1,500	2,367	1,500	189	679	57.9

자료: 행정안전부

31) 일반회계-지진대비인프라구축(2731-307)(자연재난실)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단계에서의 사업수요 파악이 부정확하여 보조금 일부가 미교부되었고, 보조금 교부 이후 실집행 단계에서도 불용액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업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측정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동 내역사업은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 절차를 시행하는 것으로, 내진성능평가(1단계)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 인증심사(2단계) 후 인증을 실시하게 됨.

최근 4년간 보조금 실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나 실집행률은 감소하는 추세임. 특히 2025년 예산액 25억 9,200만원 중 2억 2,500만원이 미교부되었고, 교부된 23억 6,700만원 중에서도 6억 7,9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집행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음.

[최근 4년간 보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2	714	714	714	714	154	868	718	714	585	83	46	81.9
2023	936	936	922	922	83	1,005	819	922	713	138	48	79.4
2024	1,296	1,296	1,296	1,296	138	1,434	1,074	1,296	958	-	338	73.9
2025	2,592	2,592	2,367	2,367	-	2,367	1,500	2,367	1,500	189	679	57.9

자료: 행정안전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내진성능평가 단계에서 예산 편성 시 기준 건수와 실제 지원 건수의 오차가 6-11건 수준이나 2025년에는 기준 건수(180건)와 지원 건수(103건)의 오차가 77건으로 전년(11건)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인증수수료 지원 단계에서 실제 지원 건수(28건)도 기준 건수(120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오차가 92건에 달하였음.

[최근 5년간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추진 현황]

(단위: 건, %)

연도	내진성능평가				인증수수료 지원		
	예산 편성시 기준 건수 (A)	실제 지원 건수 (B)	적합 판정	오차 |A-B|	예산 편성시 기준 건수 (C)	실제 지원 대상 (D)	오차 |C-D|
2022	46	52	38	6	46	38	8
2023	60	53	39	7	60	39	21
2024	90	79	43	11	60	43	17
2025	**180**	**103**	**29**	**77**	**120**	**28**	**92**
2026	136	-	-	-	120	-	-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시설물 소유자가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여 사업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수요조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은 노후건축물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많이 포함된 결과 철회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건축물의 노후 정도는 수요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와 대상자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전에 대상자의 의사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였으면 예산 편성시 기준 건수와 실제 지원 건수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수요조사 과정에서 내진성능평가의 사업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확정하여,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8.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사업: 연례적 세목조정 지양 필요

가. 개 요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사업은 중앙안전상황실에 속한 시설·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6억 7,300만원 중 61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7%)되고, 4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32)]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사업 2025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6,695	6,695	-	△22	-	6,673	6,186	-	487	4,934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2) 일반회계-중앙안전상황실운영(7037-300)(중앙재난안전상황실)

나. 검토의견

중앙안전상황실 상황관리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이 연례적으로 세목변경을 거쳐 마련되어 편성근거와 집행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예산안 제출시부터 적정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매년 연초에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중 상당액이 관련 편성내역이 없는 관리용역비(210-15목) 등으로 세목조정되어 집행되었음.

[최근 4년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관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비목-세목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	시설장비유지비	593	△505[1)]	88	79	-	8
	관리용역비	-	516	516	516	-	-
2023	시설장비유지비	514	△425	88	88	-	-
	관리용역비	-	425	426[2)]	365	-	61
2024	시설장비유지비	791	△673[3)]	118	112	-	6
	관리용역비	-	679	679	679	-	-
2025	시설장비유지비	1,182	△1,079	103	90	-	13
	일반용역비	-	73	73	73	-	-
	관리용역비	-	1,006	1,006	1,006	-	-
2026	시설장비유지비	1,100	집행 중	집행 중	집행 중	집행 중	집행 중
	일반용역비	-	집행 중	집행 중	집행 중	집행 중	집행 중
	관리용역비	-	집행 중	집행 중	집행 중	집행 중	집행 중

주 1)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로부터 세목조정(증)된 1,100만원이 더해진 금액임
2)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로부터 세목조정(증)된 100만원이 더해진 금액임
3)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로부터 세목조정(증)된 600만원이 상쇄된 금액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예산 관련 협의가 미진한 측면이 있으나, 중앙안전상황실 및 서울 상황센터는 재난안전상황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므로, 24시간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을 상시고용할 필요가 있어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가 아닌 관리용역비(210-15목)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임.

세목변경된 예산의 지출부상 집행내역을 확인해보면 변경된 세목에 맞춰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집행내역상으로는 예산 편성시 계상된 비목이 부적정해보이는 측면이 있음.

[2025년 세목변경 후 집행내역]

세목	지출부상 집행내역
시설장비유지비 (210-09목)	○ **합계: 9,000만원** - 건물수선유지: 1,000만원 - 소모품비: 1,496만원 - 서울상황센터 장비 수선료: 385만원 - 서울상황센터 천장 조명 교체비: 1,548만원 - 정보통신 네트워크 환경 개선: 4,153만원
일반용역비 (210-14목)	○ **합계: 7,260만원** - 2025년 현장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7,260만원
관리용역비 (210-15목)	○ **합계: 10억 600만원**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10억 6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매년 관리용역비(210-15목)로 세목조정 후 집행되는 금액의 규모를 보면, 2023년 4억 2,500만원→2024년 6억 7,900만원→2025년 10억 600만원 등으로 증액되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정 비목 편성을 전제로 지출규모의 적정성이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의견대로 상황실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용역비(210-15목)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행정안전부는 실제 집행현실을 반영하여 예산 비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관련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사유
2022	세목조정 ('22.2.28.)	시설장비유지비 (210-09목)	516	관리용역비 (210-15목)	상황실 유지관리사업 적정비목 집행재원 마련
2023	세목조정 ('23.1.3.)	시설장비유지비 (210-09목)	425	관리용역비 (210-15목)	상황실 유지관리사업 적정비목 집행재원 마련
2024	세목조정 ('24.1.8.)	시설장비유지비 (210-09목)	679	관리용역비 (210-15목)	상황실 유지관리사업 적정비목 집행재원 마련
2025	세목조정 ('25.1.31.,8.13.)	시설장비유지비 (210-09목)	1,006	관리용역비 (210-15목)	상황실 유지관리사업 적정비목 집행재원 마련

자료: 행정안전부

9. 기획조정실 사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가. 개 요

‘기획조정실’ 사업은 기획조정실의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1억 7,000만원 중 21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0%)되고,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33)]

[2025년 기획조정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획조정실	1,568	1,568	-	602	-	2,170	2,148	-	22	1,894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3) 일반회계-기획조정실(7011-254)(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행정안전부가 장애인고용공단에 지급하는 고용부담금이 최근 4년간(2022-2025) 증가하였고, 2026년에도 의무고용률이 미준수되고 있으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관에 부과되는 것임.[34]

기관별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월별로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및 부담기초액을 토대로 산정되며,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가산됨.

[최근 5년간(2021-202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현황]

(단위: 원)

기간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21.1.1. ~2021.12.31.	1,094,000	1,159,640	1,312,800	1,531,600	1,822,480
2022.1.1 ~2022.12.31.	1,149,000	1,217,940	1,378,800	1,608,600	1,914,440
2023.1.1. ~2023.12.31.	1,207,000	1,279,420	1,448,400	1,689,800	2,010,580
2024.1.1. ~2024.12.31.	1,237,000	1,311,220	1,484,400	1,731,800	2,060,740
2025.1.1. ~2025.12.31.	1,258,000	1,333,480	1,509,600	1,761,200	2,096,270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지역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7. 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여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였음. 2025년에는 월별 미달인원의 연간 합계가 477명분이고,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6억 700만원을 부담하였음. 2026년에는 미달인원이 346명으로 감소하여 그보다 적은 4억 2,200만원이 납입되었으나 2022년·2023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최근 5년간(2022-2026)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현황]

(단위: 원, 명)

납부연도 (기준연도)	행정안전부 부담기초액 (A)	월별 미달인원 연간 합계 (B)	산출액 (A×B)	지급액	비고
2022 (2021)	1,094,000	149	163,006,000	163,006,000	-
2023 (2022)	1,149,000	312	358,488,000	358,488,000	-
2024 (2023)	1,240,192	384	476,233,920	476,233,920	-
2025 (2024)	1,311,220	477	625,451,940	606,688,380	일시납 할인 △3%
2026 (2025)	1,258,000	346	435,268,000	422,209,960	일시납 할인 △3%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법정 의무고용률이 3.8%로 상승하면서 기준이 엄격해진 측면이 있고, 장애인 채용 독려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6년 5월 기준으로는 정부청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였으며, 정부청사의 경우 청원경찰 등 현장 육체 노동이 필요한 근로자 비중이 높고, 일반인과 장애인의 채용조건이 동일하여 장애인 중 적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음.[35]

35)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2026년 8월 기준 장애인 미고용 인원은 11명(연인원 기준 132명)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들은 전원 정부청사의 청원경찰 미고용 인원에 해당함.

[최근 5년간(2022-2026) 기관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명, 백만원)

납부연도 (기준연도)	미달 인원[1]	기관별 납입금액							
		합계[2]	정부 청사	본부	국가 기록원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	대통령 기록관	재난 안전 연구원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2022 (2021)	149	**163**	81	40	-	41	-	-	-
2023 (2022)	312	**358**	179	-	-	90	-	-	89
2024 (2023)	384	**462**	384	17	50	8	-	3	-
2025 (2024)	477	**607**	454	5	68	19	20	27	14
2026 (2025)	346	**422**	369	-	-	-	12	23	18

주 1) 월별 미달인원의 연도별 합계
2) 2024-2026 납입금액은 일시납되어 △3% 할인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법정 의무고용률의 상승(기준연도 기준 2022년 이후 3.6%→2024년 이후 3.8%)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2021년 일부개정(2021.7.20.) 시점부터 예고된 것이고, 동일한 3.6%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된 2022년과 2023년 사이에도 미달인원이 증가(2022년 149명→2023년 312명)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사항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 사업일정의 추가지연 방지 필요

가. 개 요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4·3평화공원 내에 국제평화문화센터 및 트라우마치유센터 등의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9억 8,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6]

[2025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11,792	11,792	-	-	-	11,792	11,696	-	96	10,813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5,980	5,980	-	-	-	5,980	5,980	-	-	5,608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9억 6,600만원이고, 당초 2025년 완료 예정으로 2022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사업기간이 2027년으로 연장되었음.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년-2027년 (당초 2022년~2025년)
○ 사업내용
 -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등 건립
○ 사업비 구성

(단위: 백만원)

구분	총액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28,657	-	-
공사비	21,402	21,759	-
보상비	3,700	-	3,700
시설부대경비	3,555	3,557	-
설계비	1,829	1,829	-
감리비	1,659	1,659	-
기타 부대경비	67	69	-

자료: 행정안전부

36) 일반회계-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2431-303)(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나. 검토의견

사업이 당초 일정 대비 지연되면서 2024년에 교부된 사업비 상당액이 이월되었고, 2025년 공사 중단으로 착공 이후에도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이 저조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추가지연 방지를 위한 계약관리 등을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평화공원 내 유휴부지에 4·3국제평화문화센터 및 4·3트라우마치유센터 등의 건립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5년 결산 기준 확정된 총사업비는 286억 5,700만원임.

2024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음에도 전년도 이월액(65억 3,100만원)을 포함한 2025년 교부현액 125억 1,100만원 중 36억 2,600만원이 실집행되어,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29.0% 수준으로 저조하였음.

[2025년 보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실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실 집행액			
2022	1,100	1,100	1,100	1,100	-	1,100	16	1,100	16	1,084	-	1.5
2023	2,740	2,740	2,740	2,740	1,084	3,824	1,199	2,740	115	2,625	-	31.4
2024	10,000	10,000	10,000	10,000	2,625	12,625	6,094	10,000	3,469	6,531	-	48.3
2025	5,980	5,980	5,980	5,980	6,531	12,511	3,626	5,980	2,746	8,885	-	29.0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건축공사 공동수급체 회생절차로 인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공사가 중단되었고, 2026년 2월에야 공사가 재개(2026.2.9.)되었으나 감리 용역사가 회생절차를 신청(2026.5.8.)하게 되면서 또다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사업 추진경과]

- 2022.1. 사업시작 - 2024.11. 실시설계 및 사업기간 연장(~2025→~2026) - 2024.12. 건축·소방·전기·통신 공사 착공 - **2025.9.~2026.2. 건축공사 공동수급체 회생절차로 공사 중지** - 2026.2.9. 건축공사 재개 - 2026.4.13. 건축공사 2차분 공사 착공 - **2026.5.8. 감리용역사 회생절차 신청 (2차분 계약 불가)** - **2026.5.18. 2차분 건축공사 중단**

자료: 행정안전부

당초 이 공사는 당초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시설계 후 1차 협의조정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2026년까지로 연장되었으며, 공사중이던 2025년 6월에 또다시 2027년까지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바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이 공사중단으로 인해 실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의 추가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국비 지원 기준 재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조원 중 9,999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500만원이 이월되였으며, 2,600만원은 불용되었음.[37)]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1,000,000	-	-	-	1,000,000	999,969	5	26	1,150,000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고, 2025년도 보조금 9,996억원이 전액 교부되어 7,940억 7,2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79.4%)되고, 2,055억 2,8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주)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지자체	-	999,600	999,600	999,600	-	999,960	794,072	999,960	794,072	-	205,528	79.4

주) 2026년 3월 지자체 정산보고서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3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지방재정경제실)

2025년 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비 지원율에 차등을 두었음. 다만 특별재난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에서는 차등 없이 5%를 추가지원하였음.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기준]

구분	자치단체 유형	2025년 제1회 추경주) (3,996억원)	2025년 제2회 추경안 (6,000억원)
일반할인비용 지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미지원	2%
	일반자치단체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5%	10%
특별지원 (특별재난지역 등 대상)		최대 10% 추가지원	5% 추가지원

주) 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2025.7.4.)된 이후 발행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의결된 국비지원 기준 적용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상의 기준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4,000억원 중 3,550억 6,000만원이 일반할인비용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괄교부(2025.6.18.)되고, 나머지 445억 4,000만원이 특별지원을 위해 교부되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6,000억원 중 5,527억 5,400만원이 일반할인비용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괄교부(2025.9.12.)되었고, 나머지 472억 4,600만원이 특별지원을 위해 교부되었음.

[2025년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구분	자금이체일	지출건명	비목	지출액 합계
1회 추경	2025.6.18.	일반할인비용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목)	355,060
	2025.6.18.	특별지원		15,005
	2025.11.12.	특별지원		29,535
	1회 추경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합계			399,600
2회 추경	2025.9.12.	일반할인비용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목)	552,754
	2025.9.12.	특별지원		46,746
	2025.9.17.	특별지원		500
	2회 추경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합계			600,00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서는 수도권 일반자치단체에 비해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 및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국비지원율을 책정하여 지원하였음에도 지방비 부담 등으로 인해 상품권의 추가발행규모가 제한되면서 차등 지원의 취지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최소 지방비 매칭비율(5%)을 일부 완화하여 지원하는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생시 권면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판매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함. 상품권 할인율은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결정되나,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발행액에 대해서는 최소 5%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2025년 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4개 유형(제2회 추경 기준)으로 구분하여 국비 지원율에 차등을 두었음. 이에 따라 동일하게 발행액의 5%를 지방비로 부담하더라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2%, 수도권 일반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에 대해서는 8%,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가 국비로 지원되었음.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기준]

구분	자치단체 유형	2025년 제1회 추경주) (3,996억원)	2025년 제2회 추경안 (6,000억원)
일반할인비용 지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미지원	2%
	일반자치단체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5%	10%
특별지원 (특별재난지역 등 대상)		최대 10% 추가지원	5% 추가지원

주) 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2025.7.4.)된 이후 발행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의결된 국비지원 기준 적용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일반할인비용 지원에 있어 국비지원율에 차등을 두는 취지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집중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이 지방공동화에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실제 지원 현황을 보면, 국비지원율에 차등을 두는 것만으로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나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5년 기준 183개 기초자치단체[38]에 대해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국비지원율은 인구감소지역(10.0%) >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8.0%) > 수도권 일반자치단체(5.0%) > 보통교부세 미교부단체(2.0%) 순으로 높게 책정되었으나,[39] 1개 자치단체당 평균 발행액 규모는 수도권 일반자치단체(1,518억 5,400만원) >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1,244억 3,300만원) > 보통교부세 미교부단체(798억 8,900만원) > 인구감소지역(458억 1,2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국비가 지원되었음에도 전체 발행액에서 국비가 지원된 발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국비의 차등지원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 확대에 보다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5년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국비 지원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구분		단체 수	국비 지원율	전체 발행액 평균 (A)	국비지원 발행액 평균 (B)	B/A	국비 교부액(C)	실집행액(D)	D/C
보통교부세 미교부단체[1]		27	2.0	79,889	25,677	32.1	682.3	619	90.7
일반 자치단체	수도권	28	5.0	151,854	107,055	70.5	4,170	3,709	89.0
	비수도권	47	8.0	124,433	82,738	66.5	5,314	4,484	84.4
인구감소지역[2]		81	10.0	45,812	31,261	68.2	2,780	2,350	84.5
183개 시군구 평균		183	-	87,257	55,504	63.6	3,334	2,850	85.5

주 1) 2025년 2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성남, 화성) 및 서울 본청과 함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서울 25개 자치구 등 27개 자치단체

2)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중 지역사랑상품권 미발행 등의 사유로 80개 시군구만 집계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국비지원율에 차등을 두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집중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최소 지방비 매칭비율이 5%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국비지원율과 관계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균등한 수준으로 주어지게 되므로, 국비지원율에 차등을 두는 것만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집중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40]

38) 유형별 비교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은 43개 기초자치단체 제외

39) 이 국비지원율은 재원과 관계 없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일(2025.7.3.) 이후 발행분에 대해 적용되었음.

특히 수도권 일반자치단체(5%)에 비해 인구감소지역(10%)에 대한 국비지원율이 2배 수준임에도 국비가 지원된 발행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5%와 68.2%로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국비가 지원되었음에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지방비 확보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발행규모를 늘려나가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소 지방비 매칭비율(5%)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지역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하므로, 지역별 발행규모 등을 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예산의 변경은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제89조제1항)으로,[41]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편성되어야 하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재정투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연내집행가능한 규모로 편성되어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었음.

그런데 2025년 실집행현황을 보면, 전체 시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9,999억 6,000만원 중 7,940억 7,200만원만이 실집행(실집행률 79.4%)되었고, 시도별 실집행률 격차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일부 시도의 실집행률은 70% 미만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

40) 특히 2025년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편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비와 매칭될 지방비 예산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4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12. 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025년 시도별 실집행 현황주)]

(단위: 백만원, %)

시도명	교부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불용액
서울	6,919	6,786	98.1	133
부산	**90,674**	**54,082**	**59.6**	**36,592**
대구	29,184	29,184	100.0	-
인천	49,279	37,387	75.9	11,892
광주	**66,732**	**31,386**	**47.0**	**35,346**
대전	25,383	25,383	100.0	-
울산	12,944	10,485	81.0	2,459
세종	4,304	4,300	99.9	4
경기	148,034	132,846	89.7	15,188
강원	42,026	37,425	89.1	4,601
충북	61,236	46,383	75.7	14,853
충남	**121,562**	**84,319**	**69.4**	**37,243**
전북	82,631	71,949	87.1	10,682
전남	62,990	49,905	79.2	13,085
경북	107,305	95,452	89.0	11,853
경남	60,509	54,492	90.1	6,017
제주	27,888	22,305	80.0	5,583
전체	**999,600**	**794,072**	**79.4**	**205,528**

주)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지역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대상은 2025년 6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중이던 11개 광역자치단체[42] 중 서울·경기를 제외한 9개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중이던 17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43] 이 중 9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83개 지원대상 시군구[44] 중 32개 시군구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실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32개 시군구의 경우 평균 인구 수는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었으나, 교부액은 평균 대비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42) 발행: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광주,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제주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미발행: 충북, 전북, 경남, 전남, 충남, 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

43) 국회 예산정책처(2025.11.),「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44) 개별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중이던 179개 기초자치단체 +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발행하지 않으나 개별적으로 집행관리를 수행한 광주 동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등 4개 자치구

[2025년 실집행 저조(70% 미만)-양호(70% 이상) 시군구 비교]

(단위: 명, 천원, %)

구분	자치단체 수	평균 인구 수	보조금 교부·실집행 현황[1]		재정여건[2]	
			평균 교부액	평균 실집행액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실집행률 70% 미만	32	127,647	5,275	3,004	14.7	52.8
실집행률 70% 이상	151	232,523	3,471	3,236	18.5	51.5
183개 시군구 평균	**183**	**214,184**	**3,786**	**3,195**	**17.8**	**51.7**

주 1) 교부액·실집행액 합계를 지역 수로 나누어 산정
2)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구 수가 적은 지역들에서 교부액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더 높은 국비지원율을 책정하여 집중지원을 수행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더 많은 국비가 교부된 지역들에서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수요의 파악 및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임.

셋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24년 사업에서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이자수입 반환이 지연되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반환 기한을 초과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기한 내에 정산 및 반환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정산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 종료 후에는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반납기한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로 규정하고 있음.[45)]

동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2024회계연도에 교부된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예정액 167억원 중 55.0%인 91억 7,800만원이 차년도인 2025회계연도에 수납되지 않았음.

[2024회계연도 반환액 관련 지역별 미수납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시도명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서울	425	411	14	3.3
광주	493	-	493	100.0
경기	914	738	176	19.3
충북	3,541	1,904	1,637	46.2
충남	1,959	2	1,957	99.9
전북	2,343	1,593	750	32.0
전남	2,347	-	2,647	100.0
경북	2,335	2,297	38	1.6
경남	513	494	20	3.9
세종	64	51	13	20.3
강원	1,464	32	1,432	97.8
합계	**16,700**	**7,520**	**9,178**	**55.0**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관련 정산 경과를 보면, 2025년 10월 29일에야 정산검토결과 및 반환금이 확정되어 각 지자체에 통보되었고, 행정안전부 내부적으로도 2025년 12월 11일에야 사업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납입고지서 발급이 요청되었고, 동년 12월 15일에서야 운영지원과의 국고반환고지가 각 지자체로 발송되었음.

4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정산 경과]

2025.3.31. (지자체 → 행안부) 지자체별 2024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완료 2025.10.29. (행안부 → 지자체) 정산내역 확정 통보* *** 일부 지자체의 수정요청으로 인해 정산내역 확정 통부~납입고지서 발급 요청 간 시차 발생** 2025.12.11. (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납입고지서 발급 요청 2025.12.15. (운영지원과 → 지자체) 국고반환고지 발송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고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의 반환액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거쳐 관련 재원이 마련되고 있는데, 동 사업에서는 반환액에 대한 정산 및 국고반환고지가 과도하게 지연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환액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46)]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기한 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정산내역 확정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46)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특별지원을 신설하면서 정산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적 혼선 및 지연이 있었고, 정산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정요청으로 인해 추가 지연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최대한의 적극적 관리 및 안내와 분할고지, 미반납 지방정부 국고교부 불허 등 정산 이행 노력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임.

12.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 광역지원계정 배분액의 집행 관리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조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7]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	-	-	1,000,000	1,000,000	-	-	1,000,000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등을 근거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설치·운영 중임.[48]

근거 법령 등에 따르면 10년간(2022~2031년) 연 1조원씩 지원되며, 이 중 2,500억원은 광역지원계정으로 배분되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되고, 7,500억원은 기초지원계정으로 배분되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진체계를 보면,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49]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조합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관련 사무를 법정 위탁하고 있음.[50]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배분에 관한 세

4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자치혁신실), 출연사업

4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4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부사항을 최종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조합은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며, 공제회는 전문기관으로서 관련 사무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사업을 수행함.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사업 추진체계]

기관명	권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자치법」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

매년 교부되는 출연금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있음.[5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으로 2,500억원,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으로 7,500억원이 각각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 재원 중 40%에 해당하는 1,000억원은 현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52]되고 있음.

---

5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52)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배분기준]

(단위: 억원, %)

배분대상	금액	비율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	10,000	100.0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2,500	25.0
시·도 배분금액	1,500	15.0
인구감소지역(89개) 관할 시·도 배분	1,350	13.5
전체 시·도 배분	150	1.5
집합투자기구 출자[주)]	1,000	10.0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7,500	75.0
인구감소지역(89개) 배분	7,125	71.25
관심지역 배분	375	3.75

주) 2025년 기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되고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시·도에 배분되는 1,500억원 중 1,350억원은 산식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에 배분되며, 나머지 150억원은 재정 및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한 산식에 의해 배분되고 있음.

[광역지원계정 배분금액의 배분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text{해당 시·도 배분 금액} = \text{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9 \times \frac{A_i \times a1_i \times a2_i}{\sum(A_i \times a1_i \times a2_i)}$$

A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a1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비율
$a2_i$ =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도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

$$\text{해당 시·도 배분금액} = \text{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1 \times \text{해당 시·도 배분계수}$$

기초지원계정 통해 시·군·구에 배분되는 7,500억원 중 7,125억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며, 나머지 375억원은 관심지역에 배분되고 있음.[53)]

2025년 결산 기준 출연금 1조원 중 8,884억 9,84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88.5%)되고, 1,150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재원으로 규정[54)]되어 있어 정산후 불용·반납 대상 금액은 없음.

53) 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
2.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합계	1,000,000	884,984	115,016	-	88.5
광역지원계정	249,425	156,539	92,886	-	62.8
기금배분	149,425	149,339	86	-	99,.9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100,000	7,200	92,800	-	7.2
기초지원계정	748,275	726,850	21,425	-	97.1
관리운용경비	2,300	1,595	705	-	69.4

자료: 행정안전부

5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나. 검토의견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광역지원계정을 거쳐 기초자치단체로 재배분된 기금의 최종단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집행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2,500억원이 배분되었고, 이중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금을 제외한 1,493억 3,700만원이 15개 광역자치단체로 배분되어, 1,390억 6,4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93.1%)되었음.

[2025년 광역지원계정 시도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광역자치단체명	배분금액(A)	집행현황	
		집행액(B)	집행률(B/A)
15개 시도 전체	**149,337**	**139,064**	**93.1**
부산	1,988	1,988	100.0
대구	3,181	3,181	100.0
인천	953	953	100.0
광주	1,121	1,109	99.0
대전	747	747	100.0
울산	747	257	34.4
경기	293	293	100.0
강원	20,737	20,737	100.0
충북	9,579	9,519	99.4
충남	14,429	12,774	88.5
전북	19,283	19,172	99.4
전남	30,411	23,884	78.5
경북	26,842	26,842	100.0
경남	17,905	17,200	96.1
제주	1,121	407	36.3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15개 광역자치단체로 배분된 기금 1,493억 3,700만원 중 407억 900만원은 직접 집행되었고, 나머지 1,086억 2,800만원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재배분되었음.

2025년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관할 기초자치단체로 재배분된 기금 1,086억 2,800만원 중 599억 5,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55.2%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음.

[2025년 시도-시군구로 재배분된 기금의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광역 자치단체명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배분금액 (A+B)	본청 배분 (A)	기초 재배분 (B)	기초 집행 (C)	기초 배분액 집행률(C/B)
15개 전체	**149,337**	**40,709**	**108,628**	**59,955**	**55.2**
경북	26,842	2,740	24,102	13,739	57.0
전남	30,411	22,249	8,162	5,156	63.2
전북	19,283	2,222	17,061	8,964	52.5
광주	1,121	1,121	-	-	-
경남	17,905	1,000	16,905	4,479	26.5
경기	293	-	293	293	100.0
대구	3,181	2,181	1,000	1,000	100.0
인천	953	463	490	485	99.0
강원	20,737	-	20,737	13,627	65.7
충북	9,579	2,633	6,946	6,204	89.3
대전	747	-	747	24	3.2
부산	1,988	1,988	-	-	-
충남	14,429	2,244	12,185	5,984	49.1
울산	747	747	-	-	-
제주	1,121	1,121	-	-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기초지원계정에 배분된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등에서 실집행부진이 지적된 바 있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차년도 투자계획 평가에서 집행실적 등을 일부 반영하고, 직전연도 집행실적에 따라 기금 일부의 배분을 유보하는 등 일련의 집행관리 조치를 취하였음.

그러나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로 재배분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배분과정에서 평가를 거치지도 않고,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집행현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집행관리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6년 실시한 2027회계연도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광역지원계정에 배분된 자금 운용 시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역간 연계 또는 관할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 역량 강화 등 광역지원계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광역지원계정 활용 가이드」상 주요 투자방향을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하도록 설정한 의무 비율액은 50% 수준이어서,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기초자치단체로 재배분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하여, 광역지원계정 기금 중 기초자치단체로 재배분되는 기금에 관한 집행관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행정안전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국과 협의하여, 사무국이 지방자치단체 피파견공무원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피파견직원에 대해 인건비 등의 재원을 실소요액보다 과다지급하지 않도록 지급방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약 17억 4,400만원이 기금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고 함)의 운영경비로 집행되었음.

사무국에 파견된 파견공무원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피파견기관인 사무국이 인건비 등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음. 다만, 인건비 등은 사무국이 파견인력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원을 지원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의 경우 '자치단체 등 이전' 과목에서 재정지원 명목으로 9억 6,904만 2,000원이 지급[55]되었고, '인건비' 과목에서 파견직원 수당 지급을 위해 7,115만 8,000원이 지급되었음.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중 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과목	세부 내역	연도별 지출액			
		2022	2023	2024	2025
인건비	파견 직원 수당	77,484	117,340	74,665	**71,158**
일반운영비	평가단·기금심의위원회 수당·경비 및 각종 운영비	183,893	261,637	374,390	431,246
여비	-	10,116	34,394	17,664	18,775
업무추진비	-	26,155	49,072	56,286	54,119
직무수행경비	-	3,813	4,084	1,812	1,200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 구축비용 1.6억원	-	21,735	21,339	189,695
물품비 및 자산취득비	-	92,131	2,827	8,612	8,757
자치단체등 이전	공무원 파견 지자체 재정지원(1억/1인) 공제회 재정지원(7,000만원/1인)	647,588	1,063,672	943,989	**969,042**
전체		**1,041,183**	**1,554,764**	**1,498,760**	**1,743,994**

자료: 행정안전부

5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국 설치 및 정원 규정」
제4조(조합직원의 의무 등) ④ 조합장은 파견공무원 원소속기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인건비 상당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9.>

자치단체 등에 지원된 재원은 내부규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국 설치 및 정원 규정」상 ‘인건비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4조제4항),[56] 파견직원의 직급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실제 파견직원에게 지급된 보수 및 성과상여금 등의 실소요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적정함.

그런데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이전재원의 지급내역을 보면, 파견공무원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직원의 연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이 연말에 근접한 12월 18일과 19일에 일괄 지급되었고, 실소요액을 고려하여 정산이 수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자치단체 이전재원 지급내역]

(단위: 원)

계정명	회계일자	송금처	금액	산출근거
경상 이전비	2025.12.18.	경남2	50,000,000	(1인당) 연간 지원액 1억 기준 ※ 월할 계산 -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 * 2025년 7월이전 파견종료 공무원의 경우, 2024년 기준인 일할 계산으로 지급(1억 한도)
		강원3	49,589,040	
		대구	50,000,000	
		경북3	50,000,000	
		충북 단양군	100,000,000	
		전남2	100,000,000	
		충남2	49,726,780	
		전북4	49,726,780	
		전북5	50,000,000	
	2025.12.1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70,000,000	(1인당) 연간 지원액 7천 기준 ※ 월할 계산 -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70,000,000	
합계			**969,042,600**	

자료: 행정안전부

5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파견 공무원에 대한 파견보조비 등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처우개선 및 실비보상 차원에서 파견보조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원거리 파견인력의 처우 및 인력파견에 따른 파견기관의 인력운용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파견기관이 파견인력의 직급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재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로 파견보조비 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처우 등에 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한지 의문이 있고, 이전재원의 규모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실제 파견공무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수 등을 초과하는 경우, 불필요한 잉여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57]

[파견공무원 파견보조비 등 지급 현황]

(단위: 원)

계정명	회계일자	송금처	합계	파견보조	귀향교통	주거안정	성과연봉
인건비	2025.12.18.	경남2	6,232,250	3,561,290	2,670,960	-	-
인건비	2025.12.18.	강원3	6,900,000	3,600,000	2,100,000	-	1,200,000
인건비	2025.12.18.	대구	6,000,000	3,600,000	2,400,000	-	-
인건비	2025.12.18.	경북3	6,000,000	3,600,000	2,400,000	-	-
인건비	2025.12.18.	충북단양군2	12,320,000	7,200,000	4,200,000	920,000	-
인건비	2025.12.18.	전남2	15,000,000	7,200,000	5,400,000	-	2,400,000
인건비	2025.12.18.	충남2	5,700,000	3,600,000	2,100,000	-	-
인건비	2025.12.18.	전북4	7,200,000	3,600,000	2,400,000	-	1,200,000
인건비	2025.12.18.	전북5	5,806,450	3,483,870	2,322,580	-	-
전체			71,158,700	39,445,160	25,993,540	920,000	4,800,000

자료: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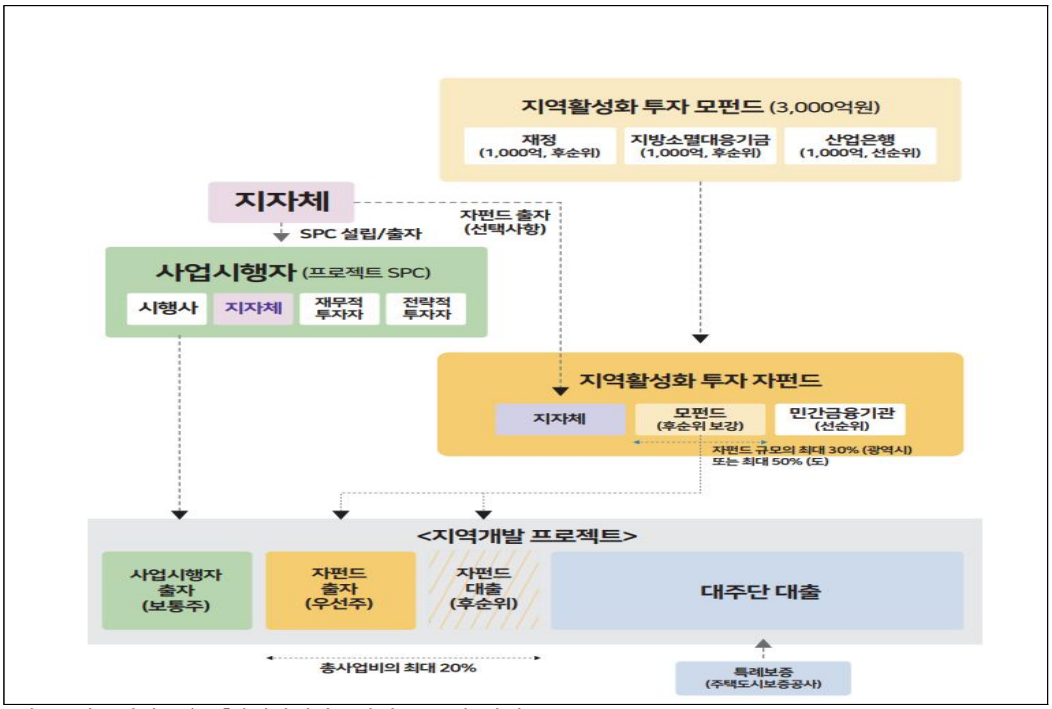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과 협의하여 기금을 재원으로 파견공무원 및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과다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재원의 규모와 실소요액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2025년까지 2,000억원이 출자되었음에도 2025년 연말까지 선정된 8개 프로젝트의 약정액 합계가 1,076억원에 불과하고, 프로젝트 선정 이후에도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등의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을 위한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근거 법령상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출자할 수 있고,[58] 행정안전부 고시에서는 광역지원계정에 배분된 기금의 40%를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59]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매년 기금 중 1,000억원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모펀드에 출자되고, 출자된 금액은 자펀드 결성 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구조도]



자료: 한국성장금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종합 안내」

5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59)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발표(2025.2.5.)에서 매년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마중물로 최소 10개 규모인 3조원 규모의 지역투자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성과로 2024년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약 2.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밝혔음.[60] 이상의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2024년에 출자된 1,000억원 중 806억원에 대해서 투자가 약정되었음.

2025년에는 3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2025년에 투자가 약정된 기금의 규모도 270억원에 불과하여 2년간 출자된 2,000억원 중 1,076억원에 대해서만 투자가 약정되었음.

또한 자펀드 결성 기한이 프로젝트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는 자펀드가 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26일에 선정된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는 2026년 4월말까지도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 현황]

(단위: 억원)

연도	프로젝트명	지역명	프로젝트 최초선정	재선정	자펀드 결성일	총사업비	기금 약정액
2024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충북 단양	24.2.16.	24.11.27.	25.9.26.	680	23
	1국가산단 구도고조화	경북 구미	24.2.22.	25.1.224.	25.8.21.	876	13
	묘도 LNG 터미널	전남 여수	24.8.29.	-	25.2.28.	14,362	478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경북 경주	24.11.26.	심사중	-	8,191	262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	충남 서산	24.12.24.	25.10.2.	26.4.9.	900	30
	2024년 합계(A)					**25,009**	**806**
2025	체류형 숙박시설	경남 거제	25.11.4.	-	결성중	7,200	140
	첨단 데이터센터	전남 장성	25.11.4.	-	25.12.10.	3,959	124
	Seed Farm 1호	충남 태안	25.11.28.	-	결성중	177	6
	2025년 합계(B)					**11,336**	**270**
전체 합계(A+B)						**36,345**	**1,076**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0) 관계부처 합동(2025.2.5.),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2025년 프로젝트 선정 건수 및 총사업비 규모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프로젝트 선정 이후에도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등의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을 위해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13.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 일관된 기준에 의한 성과 측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 중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은 지역청년 유출 방지 및 외지청년의 지역정착 목적으로 청년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5억 1,500만원 중 74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61]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 2025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8,915	9,135	-	-	-	9,135	9,095	-	40	23,753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	7,515	7,515	-	-	-	7,515	7,476	-	39	6,764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1개소 청년마을에 6-8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음. 2021년에는 선정규모를 12개소로 확대하여 1년간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1개소 청년마을에 연간 2억 5,000만원씩 3년간 7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2025년에는 12개의 신규 청년마을을 신규로 선정하는 한편, 2023년에 선정된 12개의 3년차 청년마을에 지원을 수행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총사업비 중 60억원의 일반용역비(210-14목)가 ‘청년마을 조성’을 위해 청년마을 24개소에 2억 5,000만원씩 지원되었으며, 각 청년마을에 대해서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중 14억 100만원, 1개소당 5,84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었음.

6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1938-301)(자치혁신실)

나. 검토의견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 내역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다년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매년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어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일관된 기준 하에 사업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동 내역사업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인구 유입 및 체류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단체(청년마을)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전문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청년마을을 지원하여 실시한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지역살이·일거리 실험·공간조성 및 관계맺기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예산 지원에 따른 성과는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통해 측정되고 있음.

[프로그램 유형별 주요 사업내용]

구분	주요 사업내용
지역살이	청년마을 숙소 또는 지역 숙박시설 활용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 실험	지역자원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검증, 사업화 실증, 인턴십 등
공간조성	임시 주거(단기, 장기),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등을 위한 활동공간 구축 및 운영
관계맺기	참여 청년-지역주민, 지역 내외 기관/단체와 관계 형성 및 소통과 교류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기준 성과평가 지표체계를 보면, 100점 만점 중 이행노력(30점) 및 운영성과(70점)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 중 30점 비중으로 프로그램 유형별 정량실적이 평가되었음.

[성과평가 지표체계주)]

평가범주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방식	배점
이행 노력 (30점)	① 자원배분 및 집행관리	①-1 자원배분의 적정성	정성	5
	② 사업 운영 및 소통 관리	②-1 사업 프로세스의 적정성	정성	5
		②-2 대내외 소통 채널 운영의 적정성	정성	5
		②-3 일정 준수도	정량	5
	③ 성과 관리	③-1 자원 조달 및 배분의 적정성	정성	5
		③-2 개선 노력의 적정성	정성	5
운영 성과 (70점)	④ 사업성과	**④-1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자 수**	**정량**	**10**
		④-2 일거리 실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정량**	**10**
		④-3 공간 조성 및 활용목표 대비 달성 수준	**정량**	**5**
		④-4 마을 내 청년 정착인구 순증가 수	**정량**	**5**
		④-5 사회적가치 창출 우수사례	정성	25
	⑤ 만족도	⑤-1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정량	15

주)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4개 정량지표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
자료: 행정안전부

위 성과지표는 매년 지원대상인 청년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행정안전부는 중간지원조직에 의해 매월 1회 이상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부진마을'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총 계약 금액의 50%를 감액하거나 지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에 규정하였음.[62)]

따라서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년 같은 성과지표를 일관성 있게 측정하여 피평가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연속지원에 의해 사업성과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2023년 최초 지정된 12개 청년마을의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관한 최근 3년간(2023-2025) 측정 결과를 보면, 동일한 청년마을에 3년간 연속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측정되는 성과지표 항목이 달라지고 있음.

[최근 3년간(2023-2025) 2023년 최초 지정 12개 청년마을 실적 합계]

정량실적		2023	2024	2025
이주/정착(명)		125	142	142
공간활용(건)		85	128	104
지역교류 행사	회수(회)	143	152	230
	인원(명)	21,200	167,195	40,934
일거리실험(명)		359	**미측정**	2,514
지역살이	건수(건)	**미측정**	321	135
	인원(명)	1,809	2,968	1,757
생활인구(명)		**미측정**	82,155	**미측정**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성과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매년 사업성과를 보다 적정하게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개선 과정에서 일부 지표가 지표체계에서 제외되거나 새로운 새로운 지표에 의해 측정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시범사업을 거쳐 단년도 집중지원하는 방식에서 3년간 연속지원하도록 지원방식이 변경된 취지는 다년간 지원을 통해 청년마을이 점진적으로 역량을 증진하여 사업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성과 평가에 따라 예산 지원이 차등화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성과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다년도 지원에 따른 실적 변화 등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62) 다만, '부진마을'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명시된 바 없음.

14. 생활인구 활성화 지원: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생활인구 활성화 지원’ 내내역사업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지역 근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및 현장소통을 통한 창의적 기획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억 4,9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51.6%)되었음.[63)]

[2025년 생활인구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발전활성화	5,328	5,328	100	-	-	5,428	5,040	80	308	10,777
지역활력제고	3,155	3,155	100	-	-	3,255	2,901	80	273	2,612
생활인구 활성화 지원	349	349	-	-	-	349	180	-	169	-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발전활성화(1231-303)(자치혁신실)

나. 검토의견

생활인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견되었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계획 대비 축소 운영되고 집행률이 저조(51.6%)하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동 내내역사업은 국회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박 4일의 참여기간만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고,[64] 참여기관이 여비 및 숙박비 등 출장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비용구조상 기관 여건에 따라 참여도가 저조해질 우려가 있다[65]는 점 등에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음.

2025년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계약금액이 3억 4,7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감액조정되었고 당초 2박 3일 내지 3박 4일로 예정했던 참여기간도 1박 2일로 축소되는 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2025년 결과보고서상 계약 변경 내역]

○ (변경내용) 계약금액 감액 조정
- (당초) 3억 4,700만원 → (변경 후) 1억 8,000만원

○ (변경사유) 참여자의 실수요구조에 적합하도록 계약 금액 합리화
① (환경적 요인) ▲2025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와 ▲하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주요 현안 발생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생활인구 활성화(워케이션) 사업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 존재
② (실수요 반영) 최초 예산은 2박 3일·3박 4일 중심의 참여모델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실제 1박 2일에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되어,
- 이를 반영한 실수요 기반의 비용구조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계약 금액의 감액조정 필요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2025년 결과보고서에 반영된 개선사항의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 대한 인식 부족·참여 인센티브 부재 및 교통비·숙박비 등에 관한 불만이 확인되는 등 당초 보완사항으로 지적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음.

64) 국회 예산정책처(2024.10.),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105-106쪽

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2024.11.),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32쪽, 국회 예산정책처(2024.10.),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107-108쪽

[2025년 결과보고서상 개선사항]

○ (개선사항) 워케이션 인지도 및 인식 개선 필요성 대두

- (참여저조) 워케이션에 대한 공직사회 내 인식 부족으로 참여율 저조

주요 설문응답결과

○ 모르는 사람이 많음
○ 내부에서는 휴가로만 인식
○ 전 부서 의무 참여, 간부급 관심 필요
○ 더 많은 예산 지원과 참여 부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필요

- (여비지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 숙소비 등 여비 관련 개선 필요

주요 설문응답결과

○ 인구감소지역이다 보니 교통편이 너무 불편했다. 택시·버스 전부 이용이 어려워 숙소 이외에는 여가를 즐길 수 없어서 아쉽다.
○ 여비 규정에 맞는 숙소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 개인 차량이 아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동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 및 하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현안이 발생하여,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축소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2025년 6월 3일에 실시되었음에도 직전 월인 5월의 참여인원이 평균에 비해 높았다는 점, 2025년 9월 26일에 국정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복구작업이 추진 중이던 11월의 참여인원이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연중 참여인원이 적은 8월과 9월은 화재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안 발생만으로 집행부진의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월별 사업 참가인원]

(단위: 명)

기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평균
부	50	178	127	83	59	7	9	39	4	17	20	593	53.9
처청위	5	32	17	108	126	171	23	69	55	193	70	869	79.0
합계	55	210	144	191	185	178	32	108	59	210	90	1,462	132.9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시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등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 및 비용구조의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5.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활성화 지원 사업: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가. 개 요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활성화지원’ 내역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지자체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억 5,000만원 중 2억 4,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었음.[66]

[2025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발전활성화	5,328	5,328	100	-	-	5,428	5,040	80	308	10,777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활성화 지원	250	250	-	-	-	250	247	250	3	-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발전활성화(1231-303)(자치혁신실)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낙찰차액으로 신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역상생상품 출시 등 일회성 홍보 사업에 예산 일부를 지출하는 등 부적정한 집행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내역사업은 2023년부터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에 의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2억원 규모로 3차년도 컨설팅이 추진될 예정이었음.

[2025년 예산 편성근거]

○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2억 5,000만원 **1)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컨설팅 지원 : 2억 5,000만원** **1-1)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자체 컨설팅 비용 2억원** : 5,000만원 × 4개 지자체 **1-2) 컨설팅 운영관리: 5,000만원** - (목적) 컨설팅 완료 지자체 사후 운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제작 등 - (산출) 국내여비(7명 × 100천원 × 30회), 컨설팅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비(6명 × 100천원 × 10회), 투자유치 지원정책 책자 제작(300부 × 10천원 × 2회), 우수사례집 제작(300부 × 20천원 × 1회), 전문가 간담회(10명 × 300천원 × 3회), 우수사례 홍보 등(1,000천원 × 2회)

자료: 행정안전부

관련 계약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액은 일반연구비(260-01목) 2억원인데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연구'가 2억원에 발주되었음에도, 또다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연구용역'이 2,000만원에 발주되는 등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신규 연구과제가 추진되었음.

[2025년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계약명	예산액	발주 금액	낙찰액	계약기간	계약자 (계약방법)
지역발전 활성화 (1233-303)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연구	200	200	178	2025.5.2. ~2025.11.30.	산업연구원 (제한경쟁)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연구용역		20	20	2025.11. ~2025.12.	건축공간연구원 (수의계약)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2025년 사업비 중 일반수용비(210-01목) 1,721만 8,650원을 지역-기업 상생협약식 개최 및 지역특산물 제품화 등을 위해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 당시의 목적인 ‘기업이전 활성화 컨설팅 지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 목적 외 지출로 보임.

[2025년 지역-기업 상생협약식 관련 사업비 지출내역(일부)]

(단위: 원)

지출건명	지급일자	지급액
지역-기업 상생협약식 관련 행사운영 비용 지급	2025-06-10	185,000
지역-기업 상생협약식 운영물품 제작 비용 지급	2025-06-17	4,052,950
폐현수막 재활용 상생협약식 행사용품 비용 지급	2025-06-17	4,700,000
지역특산물 제품화 상생협약식 행사용품 비용 지급	2025-06-17	4,998,400
지역-기업 상생협약식 관련 소품 구입비용 지급	2025-07-03	400,000
지역-기업 상생협약식 관련 물품제작 비용 지급	2025-08-26	1,060,700
지역-기업 상생협약식 관련 기념품 제작 비용 지급	2025-08-26	412,500
지역-기업 상생협약식 관련 물품제작 비용 지급	2025-09-09	1,409,100
합계		**17,218,650**

자료: 행정안전부

이는 행정안전부가 2025년 추진실적으로 제시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지역-기업 협업사례 창출’ 및 ‘협업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사실상 2025년 예산으로 202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을 국회 예산심사를 거치지 않고 미리 추진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협업에 의한 산출물인 지역상생상품(예: 청양 고추-열라면)은 국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상품에 지역 특산물을 노출시켜 판매하도록 하는 일회성 홍보사업에 불과하므로, 기업이전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실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말에 낙찰차액으로 신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일회성 홍보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6.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

가. 개 요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은 지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마을의 이재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마을단위 복구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7]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 2025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	10,000	-	-	-	10,000	10,000	-	-	12,000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예산 전액이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로, 국비보조율은 80%임.

[2025년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세목	지원 금액 (2025결산)	국비 보조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0	80	「재난안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

자료: 행정안전부

6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2635-302)(재난복구지원국)

나. 검토의견

2025년 국비 100억원 중 14억 9,000만원만이 실집행(실집행률 14.9%)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피해복구 및 산불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5년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최종 확정(2025.6.25.)되었음.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2025년 안동·영덕·의성 등 3개 지역 5개 지구에 국비 100억원 및 지방비 25억원 등 125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실집행률은 2026년 3월 기준으로도 14.9%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

[2025년 사업지구별 실집행 현황(2026년 3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시군	지구명	2025년								
		국비			지방비			합계		
		교부 (A)	실집행 (B)	B/A	교부 (C)	실집행 (D)	D/C	교부 (E)	실집행 (F)	F/E
안동	중마	2,100	213	10.1	525	53	10.1	2,625	266	10.1
	추곡	2,200	227	10.3	550	57	10.3	2,750	284	10.3
영덕	대곡리	2,000	372	18.6	500	93	18.6	2,500	465	18.6
	수암리	2,000	373	18.7	500	93	18.7	2,500	466	18.7
의성	구계1	1,700	310	18.2	425	77	18.2	2,125	387	18.2
합계		10,000	1,494	14.9	2,500	374	14.9	12,500	1,868	14.9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당초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전액 교부하였으나, 마을주민 요구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되면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함.

그러나 현재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의성군-구계 지구는 2026년 9월, 안동시·영덕군 2개 지구는 2026년 11월에야 착공 및 공사비 선금 집행이 가능함에도 공사비가 일부 포함된 2025년 사업비가 전액 교부된 상황임.

[지구별 사업일정]

(단위: %)

시군	지구명	집행률	사업일정
안동	중마	10.1	· '25.6 기본구상용역 (완료) / '25.12.11~'26.9 실시설계용역 · '26.11 착공 / '27.12 준공
	추목	10.3	
영덕	대곡리	18.6	· '25.7 기본구상용역 (완료) / '25.11.17~'26.6 실시설계용역 · '26.11 착공 / '27.12 준공
	수암리	18.6	
의성	구계1	18.2	· '25.7 기본구상용역 (완료) / '25.10.27~'26.6 실시설계용역 · '26.2~'26.8 군관리계획 정비 · '26.9 착공 / '27.12 준공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평가한 후 사업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 출>

17.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사업: 사업관리 철저

가. 개 요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사업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0억 2,6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8]

[2025년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5,026	5,026	-	-	-	5,026	5,026	-	-	2,837

주)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2010년부터 지역균형발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지원방식에 따라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국비보조율은 80%임.

2025년도 사업은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2018-2027)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었음. ‘특수상황지역개발’ 전체 사업의 평균적인 실집행률은 전반적으로 개선(56→66%)되었으나, 제주 사업의 실집행률은 41.5% 수준으로 저조함.

6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1231-301)(자치혁신실)

나. 검토의견

과거 유사사업에 관한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사업비 과다계상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규모가 확대되고 실집행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기존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동 사업의 보조금 실집행 현황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현액 62억 4,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32억 8,8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41.5% 수준으로 저조하고, 이월액 규모는 29억 3,900만원으로 전년(12억 1,4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사업 2025년 보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본예산	추경(A)						예산현액	집행액(C)			
제주	5,026	5,026	5,026	5,026	1,214	6,240	3,288	5,026	2,087	2,939	13	41.5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과 2025년의 사업계획 변경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당초부터 과다하여 계획한 사업을 확대·완료한 이후에도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였고, 잔여 사업비를 재원으로 신규 사업이 변경 승인을 거쳐 추진되었음.

[2024-2025년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총사업비(국비)			사업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액	변경 전	변경 후
2024	우도 하고수동 포구 정비	880	560	△320	물양장 및 방파제 보강 (1,150㎡)	물양장 및 방파제 보강 (1,575㎡)
	우도 포구 정비	-	320	320	-	물양장 복구(L=30m) 파제벽 설치(L=75m)
	우도 농축수산물 건립	400	170	△230	판매장 건립(A=495㎡)	판매장 건립(A=495㎡)
	우도 하우목동항 정비	-	230	230	-	준설 (A=15,000㎡) 물양장 정비(L=180m)
2025	우도 월파방지 시설보강	960	960	-	파제벽 및 TTP 보강	파제벽 및 TTP 보강 축양장 신축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우도 하고수동 포구 정비’ 사업내용 중 ‘물양장 및 방파제 보강’ 사업은 공사규모가 확대(1,150㎡→1,575㎡)되고, 준공 완료되었음에도 당초 교부된 국비 8억 8,000만원 중 5억 6,000만원만 집행되었고, 나머지 3억 2,000만원은 ‘우도 포구 정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음.

또한 2024년 ‘우도 농축산물 건립’ 사업은 사업규모가 동일함에도, 당초 계상된 사업비 4억원 중 57.5%인 2억 3,000만원을 다른 사업인 ‘우도 하우목동항 정비’에 투입하였고, 2025년 ‘우도 월파방지 시설 보강’ 사업에서는 사업비 변경은 없었으나, 당초 예정하였던 ‘파제벽 및 TTP’ 보강 외 ‘축양장 신축’이 사업내용에 추가되었음.

이는 국회가 과거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던 것과 유사하게 사업현황 대비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발생한 것이므로,[69] 행정안전부는 향후 기획예산처 및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신규사업 선정, 예산편성, 집행관리 및 정산 등 단계별 사업관리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이월액 과다 및 실집행 부진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70]

69) 관련 국회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음.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관련 주요 지적사항>

시정요구명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조치결과
(1) 특수상황지역 개발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집행률 제고 필요	○ [주요 지적사항]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도 위탁사업의 실집행률은 31.6%로, **사업 추진 현황에 비해 과도한 위탁금이 배부**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는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탁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	제도 개선	○ 신규사업 선정, 예산편성, 집행관리, 정산 등 단계별 위탁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24.1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월액 과다 및 집행 부진사업의 예산을 집행가능한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자료:「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70)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에서 사업비가 과다계상된 사업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고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업들은 기초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관리 방식이 상이하여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사업현황 대비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　타】

18.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행정안전부에 대해 시정요구 31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3건・주의 8건・제도개선 21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3	8	21	1	31
예비비	-	-	-	-	-	-	-
합계	-	-	3	8	21	1	31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말 기준 시정요구사항 31건에 대해 2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1.0%)하고 9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31	22	71.0	9
예비비	-	-	-	-
합계	31	22	71.0	9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행정안전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행정안전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5년도 본예산	(8)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빈집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노력한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2)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2) 행정안전부는 상권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판매장 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13)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따른 소득계층별 소비 증가 효과, 사용처 분석, 민생경제회복의 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엄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분석 근거 데이터를 국회에 보고한다.
	(14)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위탁업체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 등에 구체적인 사항(공모제, 타당성 검토 등)을 반영한다
	(15)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많지 않은 읍·면에서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2024회계연도 결산	(3)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관구성 방식이 시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안 등을 검토한다.
	(4) 행정안전부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중과세 면적 기준 등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2026년도 본예산	(31)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파일의 폐쇄형 포맷을 국제표준인 개방형 문서 포맷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7)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부합하게 편성·집행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경 찰 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75억 1,500만원(△3.8%)이 적은 1조 4,464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5억 3,000만원(△3.4%)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317,540	1,317,540	1,497,009	179,469	1,503,994	1,503,994	1,446,479	△57,515	△50,530
총수입	1,317,540	1,317,540	1,497,009	179,469	1,503,994	1,503,994	1,446,479	△57,515	△50,530

문의 :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310억 2,400만원(△1.7%)이 적은 13조 2,997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69억 6,400만원(2.8%)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2,990,704	12,990,704	12,922,810	△67,894	13,527,961	13,530,798	13,299,774	△231,024	376,964
총지출	12,990,704	12,990,704	12,922,810	△67,894	13,527,961	13,530,798	13,299,774	△231,024	376,964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5,568억 300만원으로, 2조 8,816억 2,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5,030억 4,700만원이 수납(수납률 52.2%)되고, 1조 3,713억 9,600만원은 미수납되어 71억 8,0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465,264	1,465,264	-	1,465,264	2,796,201	1,417,646	1,371,375	7,180
책임운영특별회계(경찰병원)	91,539	91,539	-	91,539	85,422	85,401	21	-
- 손익계정	88,441	88,441	-	88,441	81,928	81,907	21	-
- 자본계정	3,098	3,098	-	3,098	3,494	3,494	-	-
합 계	1,556,803	1,556,803	-	1,556,803	2,881,623	1,503,047	1,371,396	7,180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조 5,992억 4,300만원으로, 13조 3,558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2%)되고, 724억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10억 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3,488,033	13,490,870	7,358	±23,049	4,470	13,502,698	13,267,442	72,413	162,843
책임운영특별회계(경찰병원)	91,539	91,539	-	±82	-	91,539	83,379	-	8,160
- 손익계정	88,441	88,441	-	±82	-	88,441	80,758	-	7,683
- 자본계정	3,098	3,098	-	-	-	3,098	2,621	-	47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06	5,006	-	-	-	5,006	5,006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006	5,006	-	-	-	5,006	5,006	-	-
합 계	13,584,578	13,587,415	7,358	±23,131	4,470	13,599,243	13,355,826	72,413	171,004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경찰청 자산은 전년 대비 2,197억 4,500만원이 증가된 18조 3,058억 1,9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289억 9,100만원 증가하고 유·무형자산이 1,804억 9,900만원 증가되었으며 기타자산이 102억 5,6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5억 9,300만원 감소된 3,964억 2,100만원으로 차입부채 83억 3,1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253억 3,800만원이 증가된 17조 9,093억 9,8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경찰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조 6,272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7억 2,7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5조 838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61억 9,3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경찰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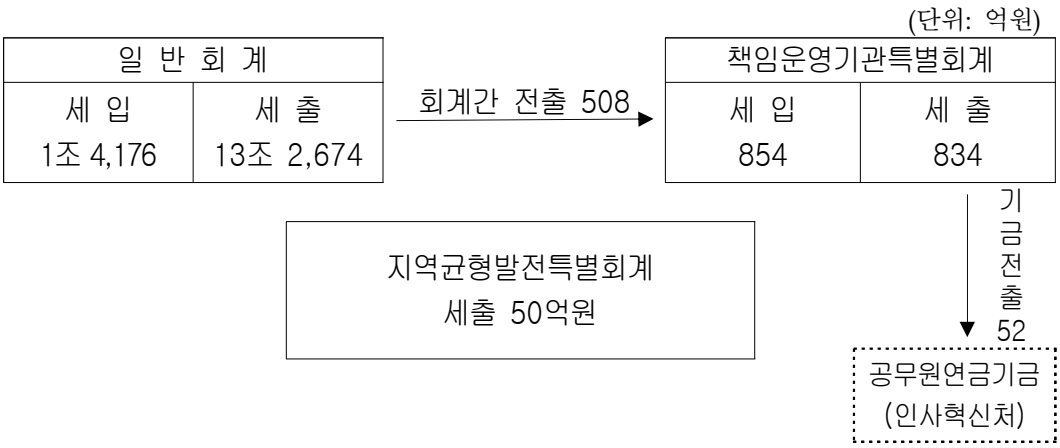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8,305,819	18,086,074	219,745	1.2
		금융자산	1,413,599	1,384,608	28,991	2.1
		유·무형자산	16,858,312	16,677,813	180,499	1.1
		기타자산	33,909	23,653	10,256	43.4
	부 채		396,421	402,014	(5,593)	(1.4)
		차입부채	286,057	294,388	(8,331)	(2.8)
		충당부채	108,848	105,720	3,128	3.0
		기타부채	1,516	1,906	(390)	(20.5)
	순자산		17,909,398	17,684,060	225,338	1.3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627,209	1,575,482	51,727	3.3
	재정운영순원가		15,084,057	14,477,836	606,221	4.2
	재정운영결과		15,083,835	14,477,642	606,193	4.2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경찰청 결산은 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508억원이 전출되었음. 또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52억원이 전출되었음.

[2025회계연도 경찰청 재정흐름도]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경찰청은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수사·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전략목표로 총 15개 프로그램, 43개 단위사업, 164개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음.

첫째, 2025년 과태료 미수납액이 1조 1,000억원을 넘었으므로, 경찰청은 미수납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경찰청은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바디캠 장비 구매를 위해 2년간 총 154억 2,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된 이후 국회 심의 내역과 달리 통신형 바디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기간 5년(2025년~2029년) 총사업비 194억 8,600만원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임.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과 바디캠 14,000대 현장 보급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모두 공공요금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 비목에 맞지 않는 집행으로 보임.

셋째, 최근 경찰청의 영상녹화 활용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투명하고 적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영상녹화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넷째,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에 방탄복 구매비용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사제총기 사건이 발생하자 방탄복 구매를 추진하였으나, 당초 방탄복 구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방탄복 지급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구매 물량을 산출한 점, 8년만에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 구매를 추진하다 적격 업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체된 점 등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음주운전교육 수수료 수입실적이 단가 인상 및 의무교육시간 확대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자체수입 예산에 적정 규모로 반영하지 않아 출연금이 증가하였으므로, 경찰청은 수수료 수입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출연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과태료: 수납실적 제고방안 강구 필요

가. 개 요

‘과태료’는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소유자 및 경비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2조 3,837억 1,300만원 중 1조 2,740억 4,900만원이 수납(수납률 53.4%)되고 미수납액 1조 1,040억 6,100만원, 불납결손액 56억 400만원이 발생하였음.[2)]

[2025년도 과태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과태료	1,324,272	1,324,272	2,383,713	1,274,049	1,104,061	5,604	53.4	1,327,02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2025년 과태료 미수납액이 1조 1,000억원을 넘었으므로, 경찰청은 미수납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과태료(56-563)(생활안전교통국)

경찰청의 연도별 과태료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매년 50% 내외로 저조하며, 특히 최근 2021년 이후 미수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도 미수납액은 1조 1,040억 6,100만원에 달함.

[연도별 과태료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699,607	699,607	699,607	1,759,607	860,688	123.0	48.9	**894,690**	4,229
2022	848,674	848,674	848,674	2,122,089	1,141,266	134.5	53.8	**974,404**	6,418
2023	969,554	969,554	969,554	2,293,491	1,228,436	126.7	53.6	**1,060,986**	4,069
2024	1,134,090	1,134,090	1,134,090	2,406,482	1,318,886	116.3	54.8	**1,083,736**	3,861
2025	1,324,272	1,324,272	1,324,272	2,383,713	1,274,049	96.2	53.4	**1,104,061**	5,604

미수납 기간별로 살펴보면, 미수납액의 60% 이상은 5년 이상 장기 미납분이나, 1년 이내 미납분, 1~2년 미납분도 각각 1,140억원(9.9%), 1,253억원(11.0%)에 이름.

[2025년「도로교통법」위반 미수납 과태료의 기간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기간	5년이상	4~5년	3~4년	2~3년	1~2년	0~1년	계
건수	**9,693,339**	549,135	839,817	1,249,960	1,886,348	1,895,663	16,114,262
(비중)	**60.2%**	3.4%	5.2%	7.7%	11.7%	11.8%	100%
금액	**695,097**	47,664	68,955	93,576	125,339	114,036	1,144,667
(비중)	**60.7%**	4.2%	6.0%	8.2%	11.0%	9.9%	100%

자료: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경찰청은 그 동안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 재산 및 거소 확인업무 위탁, 가상자산 압류 등의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이나, 각각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참고 - 경찰청의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구분	내용	추진시기
고액·장기 체납자 효율적 관리	30만원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2014. 0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위탁	2017.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7년 이상 15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신규 위탁	2020. 02월~
	고액 체납 불법명의 차량 운행 제한	2018. 10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2023. 05월~
	체납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압류, 추심	2024. 04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7년 이상 13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신규 위탁	2025. 08월~
	유관기관 등과 불법운행·체납차량 합동 단속 강화	2026. 01월~
채권압류 지속 실시	전자 예금압류, 추심 활성화	2014. 0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직장정보 시스템 연계	2020. 11월~
	과태료 독촉(2차) 고지서 발송	2024. 08월~
업무 효율화	워크숍, 전문교육 실시 및 성과 우수자 포상	2009. 01월~
	불납결손 처리지침 개정	2020. 05월~
	대여차량 과태료 대상자 변경 업무 자동화 · 전산화	2020. 12월~
	납부 가상계좌 시스템 개선 (전용회선 → 중계업체, 1개은행 → 4개은행)	2021. 04월~
	국토교통부 전산 연계, 건설기계 압류방식 전산화	2022. 12월~
	납부 가상계좌 은행 추가 확대(4개→6개 은행)	2025. 01월~
	TCS시스템 불납결손처분 5년경과 후 과태료종결 프로그램 기능 개발	
	과태료 납부 수단에 간편결제(페이) 추가	2026. 03월~

자료: 경찰청

일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500만원 이상 또는 7년 이상 체납한 사람 등에 대한 체납자 재산 조사 및 주소·거소 확인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과태료 징수실적은 2021년 45억원에서 2025년 39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위탁 징수 금액	45억원	42억원	33억원	31억원	39억원	190억원

자료: 경찰청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또는 체납일 60일 경과한 장기체납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중이나, 렌트차량·리스차량 등 운행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어 전체 체납금액에 비해 그 징수금액은 저조한 측면이 있음.

[번호판 영치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단위: 대)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 (1~7월)	2026 (1~7월)
번호판 영치 단속 대수	81,871	81,592	81,695	97,222	94,724	64,571	114,113
번호판 영치 징수금액	313억원	316억원	323억원	405억원	408억원	274억원	509억원 (86%↑)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26년 1월 체납과태료 징수 T/F를 구성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강구하고 있으며, 체납자 주소지·생활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경찰청이 선택한 정책수단이 실효성 측면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므로 체납 과태료 징수 T/F는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지역경찰운영 사업: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따른 계약 체결 필요 등

가. 개　요

‘지역경찰운영’ 사업은 대민접점 부서인 지역경찰의 다양한 활동과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치안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83억 9,400만원 중 178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2%)되고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5년도 지역경찰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범죄대응및치안상황관리	34,250	34,250	524	±8,014	34,774	34,596	-	178	16,004
지역경찰운영	17,870	17,870	524	±8,014	18,394	17,870	-	14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디캠 장비 구매를 위해 2년간 총 154억 2,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된 이후 국회 심의 내역과 달리 통신형 바디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기간 5년(2025년~2029년)의 총사업비 194억 8,600만원 규모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내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3) 일반회계-범죄대응및치안상황관리(1132-311)(범죄예방대응국)

2024년 1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착용기록장치[4](이하 “바디캠”)의 사용요건·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후 2025년도 예산에 바디캠 8,766대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430-01목) 예산 77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2025년도와 2026년도 예산에 각 77억 1,4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7,533대의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일시점 근무[5] 현장경찰관(지역경찰·교통·기동순찰대)에게 바디캠을 모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

□ **`25년 정부 예산안 ⇨ 총 154억원 확정(2개년)**

○ (보급기준) ‘25~‘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시점 근무 현장경찰관 (지역경찰·교통·기동순찰대) 전원에게 바디캠 보급

- 경찰 출동현장은 대체로 쌍방간 분쟁상황 등으로 조치과정에서 쌍방의 분리가 필수, **출동경찰관 2인은 가해자 제지 및 피해자 진술 확보 등 상이한 임무·역할을 각각 수행하게 되므로 개별 보급 필요**

【바디캠 시범운영 결과】5.13.~6.11. / 경찰관 889명
- **시범운영 시 출동경찰관 2인 중 1인만 바디캠을 착용하게 한 결과, 돌발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현장상황 상 필요한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 등 빈번, 바디캠 효과 현저히 저하**
※ 1인 바디캠 착용시, 배터리 방전 및 기기이상 등으로 복구 전까지 장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 **2인 동시착용을 통해 각각 돌발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 공백 최소화**

- (산출근거) 15,428백만원 = 17,533대 × 88만원
※ 현장부서 일시점 근무인원은 총 17,533명으로 1/2 수준인 8,766대 우선 도입

① 바디캠 단가 : 88만원(바디캠 본체 + 도킹스테이션 + 영상관리 SW)
② 연도별 예산편성

구 분	합계	`24	`25	`26
합계	**15,428백만원** (=17,533대×88만원	-	**7,714백만원** (=8,766대×88만원	**7,714백만원** (=8,767대×88만원
현장경찰관 (지역경찰·교통기순대)	**17,533대** 지역경찰(13,595대) 교통(1,270대) 기순대(2,668대)	-	현장경찰관(지역교통기순대) 일시점 근무자의 50%	현장경찰관(지역교통기순대) 일시점 근무자의 50%

자료: 경찰청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특정시간대에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최소인원을 의미함.

그러나 경찰청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직후 동 사업을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개별 장비구매가 아닌 바디캠 영상 송신·저장·관리시스템 구축과 장비(14,000대) 제작·보급·유지보수 등을 포괄하는 통신형 바디캠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함.

이에 2025년 2월 6일 적정사업기간 심의를 받고,[6] 3월 19일 당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25년도 자산취득비(430-01)로 편성된 77억 1,400만원을 공공요금및제세(210-02)로 전용한 후, 동 사업에 5년간(2025년~2029년) 총 194억 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다는 전제 아래 KT 컨소시엄과 '경찰 바디캠 도입사업 계약'(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경찰 바디캠 도입 사업 진행경과〉

〈사업개요〉
- (사업명·예산) 경찰 바디캠 도입 사업 / '25~'29년, 총 194억 8,600만원
- (사업자) KT 컨소시엄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 (사업기간) 계약 후 5개월(기간단축을 통해 11월 중 사업완수 목표)
- (사업내용) 일시점 근무 현장경찰관(지역경찰, 교통, 기동순찰대 등 총 14,000명) 대상 무선통신형 바디캠 보급 및 서버·영상관리시스템 구축

〈추진경과〉
- 2024년 1월「경찰관직무집행법」에 바디캠 근거 규정
- 2024년 11월 바디캠 도입예산 77억원 확보
- 2025년 1~4월 기재부와 예산증액(77억→195억, 수동저장 방식의 비통신형 바디캠에서 무선통신망 통한 자동저장 방식의 통신형 바디캠으로 모델 변경) 합의 및 행안부·국정원·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사업계획 타당성·보안성 등 심의·승인 진행
- 2025년 6월 우선협상 사업자 선정(KT컨소시엄), 이후 3차례 기술협상 거쳐 7월 계약

〈주요내용〉
- (5G 통신형 바디캠) 지역관서 무선AP(WiFi) 설치 및 단말기 자체 통신기능 탑재 등 2가지 방식으로 통신이 가능한 모델 제작·보급
  * 라우터방식 월 200TB, 5G방식 월 50TB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라우터/5G 여부는 중앙통제함
  * 촬영영상은 실시간 암호화되어 해킹시에도 재생 불가하며, 단말기에 편집·삭제 등 기능이 없어 사용자 임의성 배제
- (저장서버 구축) 영상촬영 직후 5G 무선통신망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 구축된 서버에 실시간 저장(30일 후 자동삭제)
  * 경찰관서가 아닌 서버관리 전문기관에 통합서버 구축, 서버시설 보안 강화
- (영상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허용기준 내에서 촬영영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분석하는 영상관리시스템 구축
  * 영상 반출입·조작 관리, 해시값 자동생성 등 영상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사용기록 ·AI사건요약 보고서 생성, 모자이크 처리 등 편의성 지원

6)「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 심의를 말함.

* 바디캠 사용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수기 대장 등 행정업무 불요, 업무 간소화(영상 용량, 관서 PC 사양에 따라 최소 40분 이상 소요되던 과정 단축)

현재	바디캠SD카드 제거(2분)	→	외장하드 연결(3분)	→	영상저장 (15분)	→	행정업무 (20분)
개선	현장촬영 → (행정업무 불요(소요시간 X)) → 영상 서버 저장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 정리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에 대해 경찰청은 통신형 바디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안성이 강화되어 영상 유출이나 조작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모자이크 처리, AI사건 요약보고서 기능도 지원될 수 있으며, 비통신형 바디캠 사용 시 40분 이상 소요되는 행정업무 부담이 해소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 집행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①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통신형 바디캠 구매계획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인 2025년 1월[7]부터 국회 보고내용과 달리 통신형 바디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사업추진방식을 급격하게 변경함.

또한 2025년 4월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므로 경찰청은 추경안에 변경된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통신형 바디캠 시스템 구축사업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음.

② 경찰청은 국회에 2025년·2026년 각 77억 1,400만원이 소요되는 총 154억 2,800만원 규모의 바디캠 도입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2025년 77억 1,400만원,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29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 총 194억 8,600만원 규모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장기계속계약[8]은 계약기간 동안 지출소요가 경직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계약 체결 전에 장기계속계약의 필요성, 사업규모 및 기간 등에 대한 충실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동 사안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의 필요성이나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할 비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국회 심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7) 2025년 2월 6일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심의를 받았으므로 적어도 2025년 1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 준비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임.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비 총액은 5년간 194억 8,6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경찰청이 국회에 밝혔던 2년간 총 154억 2,800만원보다 40억 5,800만원이 더 많음. 이는 국회에서 심의한 사업비 규모보다 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부적절한 조치로 보임.

[경찰바디캠 도입 사업 연도별 소요예정 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비용	7,714	2,943	2,943	2,943	2,943	19,486

자료: 경찰청

③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구축방안, 이행과제별 추진일정, 이행과제별·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소요 등이 포함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9)]

경찰청은 비통신형 바디캠에서 통신형 바디캠 도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ISP를 수립하거나 ISP 중간·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10)]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 법령에서 규율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 편성·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11)]

④ 2025년 사업내역에는 송신설비 구축, 영상저장·관리시스템 개발, 바디캠 장비 제작·보급, 통신망 사용 등이 포함되므로, 공공요금및제세(210-02)뿐만 아니라, 임차(210-07), 연구개발(260-01), 자산취득(430-01) 등의 비목으로 각각 구분 집행되었어야 할 것이나, 경찰청이 사업예산 77억 1,400만원을 전액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로 전용한 후 일괄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 비목에 부합하지 않음.[12)]

---

9)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6년) p.45 이하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년) p.87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 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 · 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11) 경찰청은 동 사업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를 위해 수행하였고, 사업 전반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하였음. 한편, 동 사업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8판) p.18에 따른 수립제외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임.

참고로, 정보시스템 감리 예산은 아래와 같이 전용을 통해 마련함.

(단위: 백만원)

구분(날짜)	~예서	~으로	금액	이·전용 등 사유
전용(25.3.19.)	430-01	210-02	7,714	바디캠 관련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한 전용
전용(25.11.17.)	210-02	260-01	50	전자정부법에 따른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전용
	210-01		300	

경찰청은 이 사업에서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과 다르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ISP를 거치지 않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사업추진방식의 급격한 변경으로 예산비목에 맞지 않게 전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으므로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2)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6년) p.226에서는 클라우딩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를 공공요금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장비 14,000대 보급 등이 포함된 동 사업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임.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차량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3.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사업 등: 영상녹화실 활용실적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사업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녹화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억 9,400만원 중 8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1%)되고 1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5년도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사인권보호활동	6,144	6,144	-	32	6,144	5,878	-	266	6,478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994	994	-	-	994	886	-	108	1,31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진술녹화실 개선’ 사업은 아동·장애인 등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억 7,9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4)]

[2025년도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진술녹화실 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19,660	19,660	105	△573	19,192	18,771	-	422	19,620
사회적약자 대상범죄 전담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역량강화	3,776	3,776	-	-	3,776	3,590	-	186	2,095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진술녹화실 개선	379	379	-	-	379	379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3) 일반회계-수사인권보호활동(1231-317)(수사기획조정관)

14) 일반회계-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1231-313)(형사국)

나. 검토의견

경찰청은 최근 영상녹화 활용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투명하고 적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영상녹화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진술영상녹화실 운영사업에 8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진술영상녹화실 활용실적(영상녹화 실적)은 2021년 79,170건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5년에는 48,350건으로 2021년 실적의 61.1%에 불과함.

[영상녹화 실적(2021~2025년)]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영상녹화	79,170	78,103	60,926	55,399	48,350

자료: 경찰청

또한, 2025년 여청수사 진술녹화실 개선사업에 3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그 활용실적 역시 2021년 28,082건에서 2025년 22,088건으로 4년간 21.3% 감소하였음.

[여청수사 진술녹화실 활용실적(2021~2025년)]

(단위: 건)

구 분	아동・장애인 성폭력	성인 성폭력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기타범죄 (가폭, 아동학대 등)	계
2021년	4,694	18,406	76	208	4,698	28,082
2022년	6,513	17,513	956	185	4,727	29,894
2023년	5,330	15,238	108	158	5,970	26,804
2024년	5,213	12,704	252	203	6,058	24,430
2025년	5,041	10,730	550	171	5,596	22,088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은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현재 조사 종료 후 영상녹화 자료 CD 2부를 제작하고 기록에 편철하여 송부하는 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에 부담이 있는 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중요범죄에 대해 영상녹화를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점검하는 한편, 영상녹화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자적 영상 송부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힘.

영상녹화 실적이 4년간 40% 가까이 감소한 것이 피의자의 거부의사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영상녹화를 통해 적법하고 투명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4년 하반기 도입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KICS)[15]은 향후 AI 활용 등으로 그 효용성이 계속 제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사·재판 업무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5)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구축에 착수한 후 33개월의 개발과정을 거쳐 2024년 9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통하였음.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동 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으로 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 했다고 밝히고 있음. -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보도자료(2024.9.13.),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형사절차에서 국민 편의성 및 형사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4. 피복관리 사업: 방탄복 예산의 체계적 편성·집행 필요

가. 개 요

‘피복관리’ 사업은 경찰관이 사용하는 피복 및 장구류(방검복 등)를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55억 8,300만원 중 591억 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8%)되고 63억 6,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2025년도 피복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피복관리	64,206	64,206	1,377	-	65,583	59,109	6,369	105	76,07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경찰관 개인 희망품목 보급, 외근장구·보호장비 구비, 신임경찰 피복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5년도 희망품목[17)] 예산은 503억 1,400만원 편성되었으나, 경찰청은 이 중 51억 7,800만원을 신형 방탄복 구매에 사용하기로 하고 입찰 공고한 후 연내 계약 체결되지 못해 해당 금액이 전액 이월되었음.

[2025년도 피복관리 사업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경찰관 피복비	희망품목	50,314	(연내 집행) 희망품목 대금	45,099
			(이월) 희망품목 대금	37
			(이월) 신형 방탄복	**5,178**
	외근장구·보호장비	7,308	(연내 집행) 외근장구·보호장비	6,154
			(이월) 안전복제 2종(목보호대, · 내피형방검복)	770
			(이월) 차세대 외근조끼 구매	369
			(이월) 가슴표장 1차 2차	15
	신임경찰 피복비	6,048	(연내 집행) 신임경찰 피복비	5,842
	항공대 피복비	55	(연내 집행) 항공대 피복비	55
전시비축피복비	전시비축 피복비	102	(연내 집행) 전시비축 피복비	102

자료: 경찰청

16) 일반회계-피복관리(4231-313)(미래치안정책국)

17) 경찰관 개인별로 피복구매 포인트를 부여하여 근무복, 신발, 장구류 등 희망하는 피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나. 검토의견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에 방탄복 구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희망피복비 예산으로 신형방탄복을 구매한 점, 방탄복 지급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구매 물량을 산출한 점, 8년만에 대규모 물량 구매를 추진하다 적격 업체를 찾지 못해 지체된 점 등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결산 기준 신형방탄복 11,508매 구매를 위한 비용 51억 7,8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고, 2026년 6월에 계약상대방이 선정되어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2026년 11월에야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당초 2025년 예산에는 신형방탄복 구매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2025년 7월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규 구매가 추진되었고, 2025년 10월말 구매계획 수립 후 12월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하였으나, 2026년 3월 1차 제안서 평가에서 모든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음에 따라 2차 공고 후 2026년 6월 계약 상대방이 선정되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임.

[신형방탄복 구매계약 추진경과]

- 2025.7.20.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인사건 이후 TF(범죄예방대응국) 구성 - 신형방탄복 구매계획 수립(2025.10.30.) - 신형방탄복 사업설명회(2025.11.13.) - 입찰공고(2025.12.9.) → 1차 제안서평가(2026.3.12.) : 全 업체 부적격 - 2차 공고(2026.3.18.) → 성능검사의뢰(2026.4.29.) → 제안서 평가(2026.6.8.) → 업체선정(2026.6.15.) - 선정업체와 협상 후 계약체결(2026.7월 예정) → 납품 완료(2026.11월 예정)

자료: 경찰청

경찰청이 추진한 신형방탄복 구매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 경찰관 희망품목 보급 용도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형방탄복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경찰청은 경찰관 개인별로 피복구매 포인트를 부여하여 근무복, 신발, 장구류 등 각 개인이 희망하는 피복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5년도 예산 503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경찰청은 2025년 9월까지의 희망품목 신청·지급 현황에 비추어 동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종래에는 집행잔액으로 각 품목별 예비량을 구매하였으나, 2026년 경찰관 복제 변경이 예정된 상황에서 예비량을 과도하게 비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이를 신형방탄복 구매에 활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도 희망품목비 예산은 2026년 복제 변경에 따른 재고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희망피복비 예산 일부를 신형방탄복 구매에 활용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2021~2025년 희망품목비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21	42,171	40,699	
2022	43,092	47,353	전년도 이월액 4,143백만원 집행 포함
2023	43,735	44,244	전년도 이월액 787백만원 집행 포함
2024	48,577	46,328	
2025	50,314	45,080	집행잔액 중 51억 7,800만원 신형방탄복 구매 활용

자료: 경찰청

② 신형방탄복 구매물량이 체계적·효과적인 방법으로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경찰청은 2025년 10월 방탄복 총 24,651매가 현장에 보급되어 있어 당시 방탄복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이 중 20,785매가 2017년 이전에 구매한 물량이므로 방탄복 내용연수(10년)를 감안하여 2025년도 예산으로 11,508매를 추가 구매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함.

[경찰청 방탄복 구매현황]

(단위: 매)

연도	현장경찰용	사격훈련용	(경찰서) 초동대응팀용	합계
2016	6,117	-	1,823	7,940
2017	11,022	-	1,823	12,845
2020	209	2,067	-	2,276
2021	-	1,590	-	1,590
합계	17,348	3,657	3,646	24,651

자료: 경찰청

다만 2016년에 마련된 현행 지급기준에서는 지구대별 4매, 파출소별 2매, 순찰차별 2매 등 부서별·비치장소별 방탄복 구비수량을 정하고 있는데, 지구대·파출소별 근무인원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2016년 이후 조직 개편[18] 등을 고려한 기준 개정소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18) 2024년 2월 출범한 기동순찰대가 28개대, 330개팀, 2,668명 규모였으나, 2025년 경찰청 인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팀별로 1명씩 감축하여 28개대 330개팀 2,338명이 되었으며, 2026년 3월 기존 기동순찰대에서 광역순찰대로 명칭을 변경하며 도심권 위주 인원 재배치를 통해 18대 170팀 1,051명이 되었음.

[2021~2025년 방탄복 지급기준]

(단위: 매)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	광역예방 순찰대	시도청 형사	지하철 경찰대	경찰서 형사	경찰서 초동대응팀	경찰서 사격장
4	2	2	2	5	인당 1매	15	11	13

자료: 경찰청

[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인원 현황(서울 기준)]

(단위: 매)

구분	근무인원(현원)			
	상위 3개관서		하위 3개관서	
지구대	마포 홍익	213	중부 약수	38
	마포 월드컵	129	동대문 이문	40
	중랑 용마	122	수서 개포	41
파출소	금천 독산	84	혜화 덕산	20
	서초 서초2	78	종로 사직	21
	강남 논현1	75	종로 교남	22

자료: 경찰청

그러나 경찰청은 방탄복 지급기준의 적정성이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급기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2025년도 구매물량을 정하였음. 또한 경찰청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량도 폐기하지 않고 현장 확대보급 및 전시비축용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급기준 초과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물량 확보부터 추진한 것으로 보임.

총기사고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탄복을 추가 구매할 때에는 방탄복 보급·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방탄복 지급기준의 적정성 및 추가확보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소요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경찰청이 지급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방탄복 구매물량을 정한 것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경찰청이 2016년·2017년에 방탄복을 대규모로 구매한 이후 8년만인 2025년 보유량의 46%에 이르는 물량(11,508매)을 한꺼번에 구매하면서 적격품 납품업체를 쉽게 찾지 못하고 계약 체결이 지체된 측면도 있으나, 노후품 교체소요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2~3년마다 적정량을 분할 보급해 왔다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경찰청이 2026년도 복제 변경에 따른 재고관리 측면을 감안하지 않고 희망품목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방탄복 지급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구매 물량을 산출한 점, 8년만에 대규모 물량 구매를 추진하다 적격 업체를 찾지 못해 지체된 점 등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5. 도로교통공단출연금(출연금): 적정 규모의 자체수입 계상 필요

가. 개 요

‘도로교통공단출연금(출연금)’ 사업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방송·운전면허시험관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도로교통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397억 9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9]

[2025년도 도로교통공단출연금(출연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도로교통공단출연금 (출연금)	139,709	139,709	-	-	139,709	139,709	-	-	144,63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음주운전교육 수수료 수입실적이 단가 인상 및 의무교육시간 확대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자체수입 예산에 적정 규모로 반영하지 않아 출연금이 증가하였으므로, 경찰청은 수수료 수입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출연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자체수입이 2021년 1,706억 400만원에서 2025년 2,962억 3,400만원으로 73.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2021년 1,447억 600만원에서 2025년 1,397억 900만원으로 3.5% 감소함에 그쳤고, 이에 따라 공단 총 수입(지출) 규모가 확대되었음.

또한 2024년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 잉여금 규모도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2024년과 2025년 각각 227억 3,800만원, 178억 3,4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음.

19) 일반회계-도로교통공단출연금(출연금)(1331-314)(생활안전교통국)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입 및 지출 현황(2021~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결산					2026년 예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수입	332,613	372,066	398,856	411,200	432,628	455,762
자체수입	**170,604**	**212,117**	**237,314**	**266,156**	**296,234**	311,128
출연금	144,706	140,639	134,934	145,005	139,709	144,634
총지출	332,613	372,066	398,856	411,200	432,628	455,762
잉여금	4,112	2,263	2,501	**22,738**	**17,834**	미정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 자체수입 증가는 음주운전교육 수수료 인상 및 의무교육시간 확대, 면허제도 변화, 무인교통단속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한국도로교통공단 자체수입 증가 현황 및 주요 원인]

(단위: 백만원)

구분	결산		주요 증가요인
	2021년	2025년	
교육	6,455	12,849	음주운전교육 수수료 인상 및 의무교육시간 확대 -수수료 : 6,000원 → 8,000원 ('23년 8월부터) -교육시간 : 음주1회(6h→12h), 음주2회(8h→16h), 음주3회(16h→48h) ('22년 7월부터)
음주운전교육	3,190	9,294	
면허	59,693	131,881	면허제도 변화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 ('22년 87만건 →'25년 258만건) - 1종 보통(자동) 면허 도입('24.10.) - 2011년 면허 갱신주기 변경(7년·9년→10년)의 여파
면허발급	28,092	83,570	
적성검사	2,028	21,521	
안전기술용역	83,945	124,396	무인교통단속장비(경찰청·지자체) 증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의무화(민식이법, 20.3.) 등 영향 운영대수 : ('21년) 13,860대 → ('25년) 30,663대
장비위탁관리	40,239	61,963	
장비검사	33,333	50,789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출자료 분석·정리

그런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교육 수입 결산액이 2021년 31억 9,000만원, 2022년 52억 7,300만원, 2023년 76억 5,500만원, 2024년 94억 2,4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액은 2022년 이후 77억 9,4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음.[20]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교육사업 예결산(2021~2025년)]

(단위: 백만원)

기능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음주운전교육	6,171	**3,190**	7,794	**5,273**	7,794	**7,655**	7,794	**9,424**	7,794	**9,294**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자체수입 예결산(2022~2026년)]

(단위: 백만원)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자체수입	231,427	212,117	263,922	237,314	266,195	266,156	292,919	296,234	311,128
ㅇ 사업수입	217,958	198,577	240,462	215,474	255,192	254,967	280,379	282,617	284,752
(안전사업)	91,857	92,871	106,349	103,489	114,244	116,234	122,868	124,943	133,308
(교육사업)	15,300	8,548	14,366	10,965	14,420	12,957	13,145	13,067	13,145
(방송사업)	5,200	5,386	5,200	4,957	5,200	4,820	5,200	5,373	5,200
(면허사업)	100,570	86,658	107,522	90,715	113,579	116,111	128,921	131,881	124,473
(연구사업)	4,760	4,948	6,754	5,150	7,588	4,632	10,084	7,134	8,465
(임대사업)	271	166	271	198	161	213	161	219	161
ㅇ 사업외수입	1,431	787	774	1,201	992	1,752	1,214	1,755	1,448
(이자수입)	593	229	188	675	295	857	353	1,140	587
(잡수입등)	838	558	586	526	697	895	861	615	861
ㅇ 기타이월금등	12,038	12,753	22,686	20,639	10,011	9,437	11,326	11,862	24,928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지차보전기관에서 자체수입 예산을 실적에 비해 과소계상할 경우 정부출연금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결산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최근 수입실적 및 관련 제도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수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예산 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육사업 전체 수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예산 대비 결손이 발생하여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결손 폭을 줄여왔으며, 음주운전교육 등 세부과정별 수입예산 일부가 최근 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편성된 측면이 있으나, 향후 개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　입〉

6.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진료수입 확충 노력 필요 등

가. 개　요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은 입원, 외래환자 진료수입 및 제증명료 등 경찰병원 운영과 관련된 수입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225억 500만원 중 224억 8,5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미수납액 2,000만원이 발생하였음.[21)]

[2025년도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32,207	32,207	22,505	22,485	20	-	99.9	30,14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 경찰병원 진료수입이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경찰병원은 진료 정상화 이후 종전 진료실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찰병원 진료수입 등이 수납되는 동 비목의 수납액은 2021년 393억 4,600만원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5년에는 예산액의 69.8%인 224억 8,500만원에 불과하였음. 경찰병원 입원환자는 2025년 15,785명으로 2023년 32,197명의 49.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외래환자는 25만 9,699명으로 2023년 29만 5,963명의 87.7% 수준으로 떨어졌음.

2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49-491)(경찰병원)

[2021~2025년도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2021년	30,220	39,370	**39,346**	130.2	99.9	23
2022년	30,746	32,799	**32,778**	106.6	99.9	21
2023년	32,799	29,519	**29,499**	89.9	99.9	20
2024년	31,700	24,188	**24,169**	76.2	99.9	20
2025년	32,207	22,505	**22,485**	69.8	99.9	20

자료: 경찰병원

[2016~2025년 경찰병원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경찰	의무경찰	퇴직경찰	소방	퇴직소방	일반환자	합 계
입원환자	2016년	7,314	**29,112**	5,055	240	110	34,784	76,615
	2017년	7,742	**24,514**	5,404	241	31	32,429	70,361
	2018년	7,465	**17,374**	5,359	402	49	33,139	63,788
	2019년	7,594	**13,031**	5,589	271	73	**38,945**	65,503
	2020년	4,041	**13,798**	4,531	253	112	**32,968**	55,703
	2021년	2,201	**1,752**	1,896	291	34	**24,844**	31,018
	2022년	3,877	**2,141**	3,246	427	38	**21,228**	30,957
	2023년	4,888	**249**	5,469	324	66	**21,201**	32,197
	2024년	3,577	-	3,356	228	30	**12,338**	19,529
	2025년	4,297	-	2,983	329	72	**8,104**	15,785
외래환자	2016년	100,909	**33,999**	63,527	9,999	1,591	120,654	330,679
	2017년	97,852	**28,976**	67,697	9,377	1,918	117,325	323,145
	2018년	101,363	**26,571**	74,222	9,037	2,539	114,970	328,702
	2019년	106,034	**16,998**	77,833	8,748	3,332	**120,531**	333,476
	2020년	94,040	**12,110**	71,564	7,495	3,164	**106,673**	295,046
	2021년	87,859	**7,689**	71,251	7,789	3,307	**102,913**	280,808
	2022년	96,964	**3,571**	77,494	8,479	3,986	**90,209**	280,703
	2023년	106,831	**388**	82,766	9,560	4,885	**91,533**	295,963
	2024년	89,904	**0**	75,934	8,146	4,625	**78,911**	257,520
	2025년	95,014	**0**	80,700	9,003	5,298	**69,634**	259,649

자료: 경찰병원

이에 대해 경찰병원은 2024년 및 2025년에는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속에 전공의 집단파업(2024.2.~2025.10.)[22]으로 정상진료가 불가하여 진료수입이 저조했다고 설명함.

그러나 전현직 경찰·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입원환자는 2019년 38,945명에서 2023년 21,201명으로 4년간 45.6% 감소했고, 외래환자는 2019년 12만 531명에서 2023년 9만 1,533명으로 4년간 24.1% 감소하는 등 전공의 파업 이전에도 이미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었음.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경찰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일반병동이 폐쇄됨에 따라 진료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하나, 2023년에는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환자 진료실적은 코로나-19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지 못한 것임.

2025년 10월 전공의파업이 종료되어 진료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이미 크게 감소한 일반환자 진료실적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찰병원은 진료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23]

둘째, 2025년 경찰병원에 입원한 경찰관 환자의 80% 이상이 수도권 소속으로 나타나는 등 지리적 접근성에 따른 병원 이용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청은 각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용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찰병원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입원환자의 38.0%인 2만 9,112명이 의무경찰이었으나, 의무경찰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된 후 2023년 폐지[24]되면서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의무경찰 수도 감소하였고 이는 경찰병원 병상 가동률이 2016년 59.8%에서 2023년 43.9%까지 떨어지는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임.

22) 경찰병원 전공의는 45명 내외였으나, 집단사직으로 2025년 9월 8명까지 감소하였으며 2026년 4월 기준 37명임.

23) 경찰병원은 수입제고방안으로 ①경찰관 특화 의료서비스 강화 및 소방특화진료 개발(2024년 신설)을 통한 환자군 확대, ②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44→88병상, 2024년 3월) ③전공의 추가확보 및 진료지원간호사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5년 10월 진료 정상화 이후 해당 대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24) 2023년 5월 17일 마지막 기수 전역으로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됨.

[2016~2025년 경찰병원 병상가동률]

(단위: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병상가동률	59.8	58.2	53.0	57.7	52.7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병상가동률	61.8	50.5	43.9	25.5	21.1

주) 2021년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2020.12.~2022.5.)의 영향으로 병상가동률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됨.
자료: 경찰병원

2025년 경찰병원에 입원한 경찰관 환자의 소속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소재하는 서울청・인천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경찰청 본청・경찰대학・경찰병원 소속이 3,217명으로 전체 경찰관 입원환자의 80.8%에 달하는 반면, 수도권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2026년 4월30일 기준)은 총 65,984명으로 총 경찰인원 13만 4,145명의 49.2%임.

이는 경찰병원 인근 지역의 경찰관이 경찰병원을 많이 활용하는 반면, 그 밖의 지역에서는 경찰병원 이용실적이 떨어진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리적 접근성에 따른 이용률 격차를 보이는 것임.

[시도청 및 기관별 경찰 인원 및 2025년 경찰병원 입원환자 현황]

(단위: 백만원, %)

소속	기관별 인원(현원)(2026년 4월)		2025년 경찰병원 입원환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청	31,269	**23.3%**	1,888	**47.4%**
부산청	9,529	7.1%	1	0.0%
대구청	6,070	4.5%	31	0.8%
인천청	7,030	**5.2%**	107	**2.7%**
광주청	3,703	2.8%	2	0.1%
대전청	3,456	2.6%	180	4.5%
울산청	2,862	2.1%	1	0.0%
세종청	1,014	0.8%	56	1.4%
경기남부청	19,005	**14.2%**	946	**23.8%**
경기북부청	6,944	**5.2%**	255	**6.4%**
강원청	4,633	3.5%	64	1.6%

(단위: 백만원, %)

소속	기관별 인원(현원)(2026년 4월)		2025년 경찰병원 입원환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충북청	3,959	3.0%	135	3.4%
충남청	5,144	3.8%	74	1.9%
전북청	5,131	3.8%	52	1.3%
전남청	5,717	4.3%	9	0.2%
경북청	6,815	5.1%	79	2.0%
경남청	7,462	5.6%	58	1.5%
제주청	2,225	1.7%	9	0.2%
경찰청 본청	1,551	**1.2%**	20	**0.5%**
경찰대학	181	**0.1%**	1	**0.0%**
경찰인재개발원	154	0.1%	2	0.1%
중앙경찰학교	218	0.0%	3	0.1%
경찰병원	4	**0.2%**	-	**-**
경찰수사연수원	69	0.0%	7	0.2%
계	134,145	100.0%	3,980	100.0%

주 1) 시도청 및 기관별 경찰인원은 2026년 4월 30일 기준 현원임.
2) 2025년 경찰병원에 입원한 경찰관 환자수는 총 4,297명으로 경찰청 소속 3,984명, 해양경찰청 소속 313명이며, 경찰청 소속 중 소속청 미상 4명을 제외한 3,980명의 소속청 현황임.
자료: 경찰병원

국가보훈부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 소재하는 6개 보훈병원과는 별도로 총 1,011개 민간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음.

민간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연인원)도 2021년 364만 2,149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5년 492만 5,209명에 이를 정도로 호응도도 높은 것으로 보임.

경찰청도 각 지역에 거주하는 경찰관의 병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사례를 참고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진료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진료 사업]

□ 개요

○ (사업목적) 민간 위탁병원을 전국에 지정하여, 보훈대상자가 근접거리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 및 진료 편의 제고

○ (2026년 예산) 2,694억 8,600만원, 전년 대비 8.1%(203억 7,300만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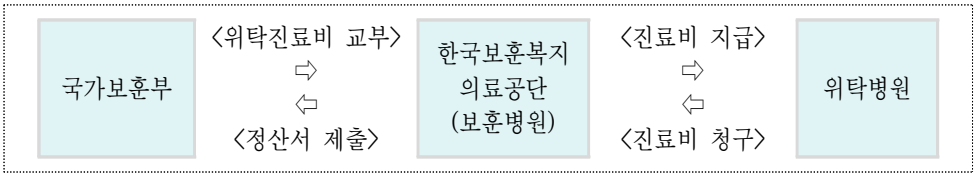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진료비) 보훈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26년 2,694억원)

- 애국지사 · 상이유공자 등 직접적인 희생이 있는 유공자 전액 지원
- 참전 등 비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진료비 감면(60~90%)

① (국비 · 감면진료)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 지역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국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근접 진료

② (응급 · 통원진료) 응급상황이나 보훈병원 · 위탁병원에 진료과목이 없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진료비 지원



□ 최근 5년간 위탁병원 이용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용인원 (연인원)	3,642,149	3,512,596	3,818,696	4,187,751	4,925,209
진료비	239,199	237,061	258,718	276,744	304,567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 재정리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경찰청에 대해 시정요구 14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건·주의 1건·제도개선 12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	1	12	-	14
예비비	-	-	-	-	-	-	-
합계	-	-	1	1	12	-	14

경찰청은 시정요구사항 14건에 대해 11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8.6%)하고 3건을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4	11	78.6	3
예비비	-	-	-	-
합계	14	11	78.6	3

국회가「2025년도 예산안」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경찰청 2025 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경찰청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5년도 본예산	경찰청은 'AI 수사도우미' 서비스의 명칭을 공모절차 등을 거쳐 적절한 명칭으로 개선한다.
	경찰청은 VR 기반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시범사업 시행시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운전자도 교육훈련 및 면허 반납 테스트를 받기 용이하도록 교육장소 등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적정 대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 기준 정비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신호체계·무인단속장비·어린이보호구역 운용 등 종합적인 교통제어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소 방 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억 100만원(6.6%)이 많은 48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00만원(△6.2%)이 감소함.[1)]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349	4,349	4,915	566	4,563	4,563	4,864	301	△51
총수입	4,349	4,349	4,915	566	4,563	4,563	4,864	301	△51

문의 : 02-6788-568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1억 1,700만원(△0.6%)이 적은 3,434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 3,100만원(4.0%)이 증가함.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40,389	340,389	330,272	△10,117	331,129	345,620	343,403	△2,117	13,131
총지출	340,389	340,389	330,272	△10,117	331,129	345,620	343,403	△2,117	13,131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5억 6,300만원으로, 48억 7,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8억 6,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8%)되고, 1,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563	4,563	-	4,563	4,874	4,864	10	-
합 계	4,563	4,563	-	4,563	4,874	4,864	10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777억 4,900만원으로, 3,434억 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9%)되고, 280억 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3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31,129	345,620	32,129	±2,162	-	377,749	343,403	28,026	6,320
합 계	331,129	345,620	32,129	±2,162	-	377,749	343,403	28,026	6,320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소방청 자산은 전년 대비 1,072억 8,200만원이 증가한 8,593억 6,3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각각 1,071억 7,800만원, 15억 4,0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2억 7,700만원 증가한 52억 8,600만원으로 차입부채 32억 7,7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40억 500만원이 증가한 8,540억 7,7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소방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704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6,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760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8억 9,6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소방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859,363	752,081	107,282	14.3
		금융자산	3,781	3,537	244	6.9
		유무형자산	855,087	746,369	108,718	14.6
		기타자산	495	2,175	△1,680	△77.2
	부 채		5,286	2,009	3,277	163.1
		차입부채	5,284	2,007	3,277	163.3
		충당부채	-	-	-	-
		기타부채	2	2	-	-
	순자산		854,077	750,072	104,005	13.9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70,434	153,368	17,066	11.1
	재정운영순원가		276,019	251,123	24,896	9.9
	재정운영결과		276,019	251,123	24,896	9.9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소방청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구현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84개 세부사업에서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기술개발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소방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항만 소방정대 운영 내역사업에서는 부산 및 울산 국가항만소방정대의 2025년 하반기 임무 시작을 위해 17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예산 대부분이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타 사업의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므로, 소방청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일정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고, 과다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내역사업에서는 선박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감리비 증액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업체가 부담하도록 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국가가 추가적인 부담을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공급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셋째, 소방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사업에서 소방청이 관리용역비(210-15목) 낙찰차액을 전용(2025.11.5.)하여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넷째, 찾아가는 상담실 내역사업에서는 2025년 ‘스크리닝 상담’에서 최소 상담인원 비율을 책정하였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소수 인원에 대한 집중상담이 불가피하다는 현장 전문인력의 판단이 있었으므로, ‘스크리닝 상담’의 최소 상담인원 비율의 하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가항만 소방정대 운영 사업: 과다 이·전용 시정 필요

가. 개 요

‘국가항만 소방정대 운영’ 내역사업은 부산·울산 등 2개 국가항만에 소방정대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유류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억 2,700만원 중 4억원이 집행(집행률 93.7%)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국가항만 소방정대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A)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37,374	37,374	8,290	△1,620	46,252	31,140	14,532	580	33,007
국가항만 소방정대 운영	1,738	1,738	-	△1,311	427	400	-	27	1,36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1171-301)(중앙119구조본부)

나. 검토의견

국가항만 소방정대 운영 내역사업에서는 부산 및 울산 국가항만소방정대의 2025년 하반기 임무 시작을 위해 17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예산 대부분이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타 사업의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므로, 소방청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일정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고, 과다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항만 소방정대는 소방청이 2021년부터 건조하기 시작한 540톤급 중형 소방선을 운용하여 대규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조직으로, 청사는 2024년 10월에 완공되었고, 1개 소방정대당 소방공무원(10명) 외 전문경력관(9명) 및 기관 전문경력관(6명)이 상시 배치될 예정이었음.

이에 소방청은 2025년 예산안에 2025년 하반기부터 부산·울산 등 2개 국가항만에서 '국가항만 소방정대'를 운영할 것을 예정하여 운영비·유류비 등 1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음.

그런데 2025년 결산내역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17억 3,800만원 중 75.4%인 13억 1,100만원이 타 사업의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유류비(11억 4,200만원)는 전액이 타 사업으로 전용되었음.

[2025년도 국가항만 소방정대 운영 사업 세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세목	예산액주)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국가항만 소방정대 운영	**전체**	**1,738**	**-**	**△1,311**	**427**	**400**	**-**	**27**
	일반수용비(210-01)	14	-	-	14	14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41	-	△104	237	232	-	5
	임차료(210-07)	41	-	△20	21	10	-	11
	유류비(210-08)	1,142	-	△1,142	-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86	-	△45	41	30	-	11
	국내업무여비(220-01)	34	-	-	34	34	-	-
	무형자산(440-00)	80	-	-	80	80	-	-

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집행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내역사업인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을 통해 추진되던 중형소방선의 건조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계획상 2025년 하반기부터 운용될 예정이던 중형소방선 2척이 각각 2025년 12월(1호선)과 2026년 1월(2호선)에 인수되어 2025년 하반기에 운용이 불가능하였음.

[2025년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내역사업 주요 추진경과]

○ **4차년도 책임감리 및 건조구매 계약 체결(2025.4.22.~2025.6.30.)** - (건조) 4차 계약금액: 126억 6,800만원 - (감리) 4차 계약금액: 8,900만원 ○ **책임감리 계약 변경(1차, 2025.7.16.)** - 계약기간 연장: ~2025.6.30.⇒~2025.10.10. - 4차 계약금액 증액(**8,900만원⇒2억 6,900만원, 1억 8,000만원 증액**) ○ **국가항만 중형 소방선(2척) 선속미달에 따른 부가물 최적화 CFD해석(2025.8.14.)** ○ **책임감리 계약 변경(2차, 2025.10.14.)** - 계약기간 연장: ~2025.10.10.⇒~2025.12.31. ○ **국가항만 중형 소방선(2척) 타선소화설비 교체 확약서 제출(2025.12.2.)** ○ 준공 및 시운전 실시(1호선: 2025.12.23. / 2호선: 2026.1.8.) 및 인수 ○ 건조구매 수정계약 체결(2025.12.31.) - 계약금액 감액: 126억 6,800만원⇒122억 2,500만원(소방선 선속미달에 따른 감가계약) ○ 대금지급 - (건조구매) 준공금액: 105억 3,100만원(계약금: 122억 2,500만원, **소화포 잔금 16억 9,400만원 미지급**) - (책임감리) 준공금액: 2억 6,900만원(계약금: 2억 6,900만원)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소방청은 당초 업체가 4차년도 계약기간인 6월 30일까지 납품 완료를 약속하였으나 속도미달 및 소화설비 방수포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추가 작업이 필요하여 납품이 지연된 것이므로, 지연사유를 예산 편성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임.

그러나 중형소방선 인수 이후에도 소방정대 임무 수행에 이르기까지 인력채용 및 교육 등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음.

부산항만소방정대는 중형소방선이 2025년 12월에 인수되었음에도 2026년 4월 15일에야 최초로 임무에 돌입하였고, 울산항만소방정대는 중형소방선이 2026년 1월에 인수되었으나, 2026년 5월에야 인력 채용이 완료되었고, 해당 인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2026년 7~8월)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2026년 8월 이후에야 임무를 시작할 예정임.

따라서, 소방청은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일정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과다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사업: 공급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국비 부담 증가 부적정

가. 개 요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내역사업은 부산·울산 등 2개 국가항만의 화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선박을 도입 및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13억 7,300만원 중 86억 5,300만원이 집행(집행률 40.5%)되고, 123억 3,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5년도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A)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37,374	37,374	8,290	△1,620	46,252	31,140	14,532	580	33,007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12,898	12,898	8,290	185	21,373	8,653	12,332	388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주요 추진경과를 보면, 2021년 1월 18일 수립된 「국가항만 소방정대 설치사업 추진계획」에 입각하여 이후 4개년도(2022-2025)에 걸쳐 중형소방선의 건조구매가 추진되었음.

[주요 추진경과]

○ 국가항만 소방정대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2021.1.18./소방청)
○ 중형소방선 설계용역(2021.11.12.~2022.7.12., (주)한국선박기술)
○ 1차년도 건조 책임감리 계약 체결(2022.11.30.) 및 건조구매 계약 체결(2022.12.6., (주)강남)
○ 2차년도 건조 책임감리 계약 체결(2023.3.15.) 및 건조구매 계약 체결(2023.6.27., (주)강남)
○ 건조구매 계약 변경
- 총부기액 인상: 567억 6,600만원 → 571억 5,100만원, 납품기한 연장: 2024.12.31. ⇒ 2025.2.28.
○ 3차년도 건조 책임감리 계약(2024.1.1.~2024.12.31.) 및 건조구매 계약(2024.5.1.~2024.12.31.)
○ 책임감리 및 건조구매 계약 변경
- (건조) 3차 계약금액 증액(171억 1,400만원⇒175억 8,000만원) 및 계약기간 연장(~2024.12.31.⇒~2025.4.30.)

3) 일반회계-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1171-301)(중앙119구조본부)

- (감리) 3차 계약금액 증액(6억 2,700만원⇒8억 5,400만원)

○ 4차년도 책임감리 및 건조구매 계약 체결(2025.4.22.~2025.6.30.)

- (건조) 4차 계약금액: 126억 6,800만원
- (감리) 4차 계약금액: 8,900만원

○ 책임감리 계약 변경(1차, 2025.7.16.)

- 계약기간 연장: ~2025.6.30.⇒~2025.10.10.
- 4차 계약금액 증액(8,900만원⇒2억 6,900만원, 1억 8,000만원 증액)

○ 국가항만 중형 소방선(2척) 선속미달에 따른 부가물 최적화 CFD해석(2025.8.14.)

○ 책임감리 계약 변경(2차, 2025.10.14.)

- 계약기간 연장: ~2025.10.10.⇒~2025.12.31.

○ 국가항만 중형 소방선(2척) 타선소화설비 교체 확약서 제출(2025.12.2.)

○ 준공 및 시운전 실시(1호선: 2025.12.23. / 2호선: 2026.1.8.) 및 인수

○ 건조구매 수정계약 체결(2025.12.31.)

- 계약금액 감액: 126억 6,800만원⇒122억 2,500만원
- 변경사유: 소방선 선속미달에 따른 감가계약

○ 대금지급

- (건조구매) 준공금액: 105억 3,100만원(계약금: 122억 2,500만원, 소화포 잔금 16억 9,400만원 미지급)
- (책임감리) 준공금액: 2억 6,900만원(계약금: 2억 6,900만원)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내역사업에서는 선박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감리비 증액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업체가 부담하도록 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국가가 추가적인 부담을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공급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내역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를 보면, 선박건조 계약기간이 만료(2025.6.30.)된 이후에도 만 6개월 동안 책임감리가 추가로 수행되었고, 책임감리 계약이 연장되면서 계약금액이 8,900만원에서 2억 6,9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증가되었음.

[2025년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내역사업 주요 추진경과]

○ 4차년도 책임감리 및 건조구매 계약 체결(2025.4.22.~2025.6.30.)
○ 책임감리 계약 변경(1차, 2025.7.16.)
- 계약기간 연장: ~2025.6.30.⇒~2025.10.10.
- 4차 계약금액 증액(**8,900만원⇒2억 6,900만원, 1억 8,000만원 증액**)
○ 국가항만 중형 소방선(2척) 선속미달에 따른 부가물 최적화 CFD해석(2025.8.14.)
○ 책임감리 계약 변경(2차, 2025.10.14.)
- 계약기간 연장: ~2025.10.10.⇒~2025.12.31.
○ 국가항만 중형 소방선(2척) 타선소화설비 교체 확약서 제출(2025.12.2.)
○ 준공 및 시운전 실시(1호선: 2025.12.23. / 2호선: 2026.1.8.) 및 인수
○ 건조구매 수정계약 체결(2025.12.31.)
- 계약금액 감액: 126억 6,800만원⇒122억 2,500만원(소방선 선속미달에 따른 감가계약)
○ 대금지급
- (건조구매) 준공금액: 105억 3,100만원(계약금: 122억 2,500만원, **소화포 잔금 16억 9,400만원 미지급**)
- (책임감리) 준공금액: 2억 6,900만원(계약금: 2억 6,900만원)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속도미달 및 방수포 성능 불량 등 선박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비가 추가 소모되어 필요한 감리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4] 소방청은 해당 증액분을 충당하기 위해 1억 8,500만원을 전용(2025.12.11.)하여 부족재원을 마련하였고, 이중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음.

4) 참고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0조제8항을 보면, 법령 제·개정 또는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감리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책임소재·사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다면 국비로 감리비 증액분을 충당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 수 있음.

[2025년도 전용내역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내역사업 관련)]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전용 ('25.12.11.)	중앙119특수 구조대 지원 (1171-301)	자산취득비 (430-01)	185	중앙119특수 구조대 지원 (1171-301)	감리비 (420-04)	선박건조 감리비 부족재원 마련

자료: 소방청

이에 대해 소방청은 선박 건조구매 시 책임감리 계약 체결 여부는 국가의 선택사항으로서 반드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선박 공급 계약과 감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선박 공급업체에게 감리비 증액분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입장임.

그리고 소방청은 선속미달 사유로 △4억 4,300만원을 감가계약하고, 선박 공급지연일수에 비례하여 14억 8,000만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5)]

그러나 실제 선박 건조에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별도의 책임감리 계약을 발주하는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당초 계획된 품질 확보 및 안전성 보장 등을 확보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할 때,[6)] 선박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감리비 증액은 품질 및 안전성 보장 측면에서 선박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해 보임.

---

5) 감가금액 △4억 4,300만원 = 원가(117억 9,900만원) × 감가율(0.0375 = 요구선속(20노트) 대비 부족선속(0.75노트)의 비중)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감독)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6. 5. 25., 2014. 5. 22., 2018. 12. 4., 2024. 5. 7.>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제55조(검사)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3. 12. 11.>

[2025년도 계약금 지급 및 지체상금 발생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도 계약금 지급내역				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예산액 (A)	선속미달 감가적용 (B)	타선소화설비 불량 사유 잔금 미지급 (C)	집행액 (A-B-C)	
12,668	443	1,694	10,531	1,480주)

주) 1호선 183일(준공 '25.12.30): 7억 2,200만원, 2호선 192일(준공 '26.01.08): 7억 5,800만원
자료: 소방청

따라서 소방청은 향후 검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감리 의무사항이 없더라도, 공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업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조건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 연구사업 계약 체결 지연

가. 개 요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은 고위험 화재 위험성을 갖는 리튬이온배터리 및 리튬금속을 사용하는 제조·저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및 대응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6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7)]

[2025년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2,600	2,600	-	-	2,600	2,600	-	-	3,600

주요 추진경과를 보면, 동 사업은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 내용 중 ‘현장 문제해결 중심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소방청 등 7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과제임.

[주요 추진경과]

○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 수립
○ 2024년 7월 4일, 행안부·과기부·산업부·소방청·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 경기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 회의 개최
○ 2024년 8월 7일, (주)아리셀 공장화재 관련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세부과제 도출
○ 2025년 6월, 신규 5개 연구과제 선정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 일반회계-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1160-627)(기획조정관실)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은 4월부터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9개월분의 연구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협약 체결이 7월에야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일부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소방청은 향후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 편성근거를 보면, 5개 신규 연구과제에 대해 과제당 2-10억원의 연구비를 편성하였고, 연구기간은 5개 과제 모두 9개월로 추정되었음.

[2025년도 예산 편성근거]

구분	내용
총액	- 5개 연구과제 합계 26억원
편성근거	- 연구목적: 고위험 화재 위험성을 갖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금속을 사용하는 제조·저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 - (신규) 1,066.7백만원 × 1개 과제 × 9/12개월 = 8억원 - (신규) 266.7백만원 × 1개 과제 × 9/12개월 = 2억원 - (신규) 266.7백만원 × 1개 과제 × 9/12개월 = 2억원 - (신규) 533.3백만원 × 1개 과제 × 9/12개월 = 4억원 - (신규) 1,333.3백만원 × 1개 과제 × 9/12개월 = 10억원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5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5개 과제 모두 협약이 7월에야 체결되었고, 연구기관 선정통보월을 기준으로 책정된 사업기간도 2025년 6월부터로 실제 연구비를 지출할 수 있었던 기간은 최대 7개월에 불과하였음.

그 결과, 5개 과제 모두에서 연구비 일부를 집행하지 못하였고, 특히 5개 과제 중 연구비 규모가 비교적 큰 3개 과제는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나타남.

[2025년도 과제별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사업기간	협약서 체결완료일	2025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리튬금속 등 배터리 소재·제품에 대한 화재성상 및 소화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2025-06-01 ~2028-12-31	2025-07-03	1,000	198.4	19.8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소화장치 및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제 개발	2025-06-01 ~2028-12-31	2025-07-03	800	625.4	78.2
리튬배터리 제조사업장의 전주기 화재 안전 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2025-06-01 ~2028-12-31	2025-07-23	400	287.3	71.8
고성능 센서를 활용한 AI 기반 배터리 화재 조기감지 및 예측 시스템 개발	2025-06-01 ~2028-12-31	2025-07-10	200	165.9	83.0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위험도 기반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기준 개발	2025-06-01 ~2028-12-31	2025-07-03	200	184.1	92.1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집행부진에 대해 소방청은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특성상 부처 간 협의 및 전문기관 선정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협약 체결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등에서는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처 간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고려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보임.[8)]

따라서 소방청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시 협약체결 등을 적기에 수행하여 연구사업이 일정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8)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4.5.)에서는 하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분의 연구비를 계상하도록 하였음.

4. 소방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사업: 연말 신규과제 추진 부적정

가. 개 요

‘소방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사업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 및 관리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억 7,000만원 중 15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5%)되고, 5,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500만원은 불용되었음.[9)]

[소방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사업 2025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소방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1,582	1,582	-	△12	1,570	1,515	50	5	1,40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9) 일반회계-소방무선통신망 구축 운영(1134-315)(장비기술국)

나. 검토의견

소방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사업에서 소방청이 관리용역비(210-15목) 낙찰차액을 전용(2025.11.5.)하여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5년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도입’ 내역사업 예산 6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이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그룹 기능개선’을 위한 일반연구비(260-01목)로 계상되어 있고, ‘재난안전통신망관리’ 내역사업 예산 4억 4,100만원 중 3억 6,400만원이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210-15목)로 계상되어 있음.

[2025년 사업비 중 일반연구비(260-01목)·관리용역비(210-15목) 관련 편성 근거]

내역사업명	편성 근거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도입	○ 내역사업 합계: 6억 5,000만원 **- 일반연구비(260-01목) 1억 5,000만원(재난안전통신망 통화그룹 기능개선)** ・ 150백만원×1식=15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목) 5억원(재난안전통신망 연계장치 도입) ・ 500백만원×1식=500백만원
재난안전통신망 관리	○ 내역사업 합계: 4억 4,100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7,700만원(무전기 등 장비 관리비용) ・ 무선국 관리비용 : 3,658,000,000원*0.246%=9백만원 ・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관리비용[단말 부대품]=68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목) 3억 6,400만원(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유지관리)** ・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유지관리=293백만원 ・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유지관리 상주인력=71백만원

자료: 소방청

그런데 2025년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도입’ 내역사업에서 2개 연구과제가 추진되었고, 이 중 ‘재난현장 복합통신중계기(시스템) 기획연구용역’은 예산 편성시점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과제를 추진한 것으로 보임.

[2025년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약명	세목	발주 금액	낙찰액	계약기간
재난안전 통신망 장비 도입	2025년 소방청재난안전통신망 기능개선	일반연구비 (260-01)	150	150	2025.9.~2026.1.
	재난현장 복합통신중계기(시스템) 기획연구용역	**일반연구비 (260-01)**	**50**	**50**	**2025.12.~2026.2.**
재난안전통신망 관리	2025년~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유지관리	관리용역비 (210-15)	364	309	2025.1.~2025.12.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관련 예산의 전용 내역을 보면, ‘2025년~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유지관리’ 계약에서 발생한 낙찰차액(5,500만원) 중 5,000만원을 일반연구비(260-01목)로 전용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타 계약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에 임의로 활용하고 있음.

[관련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1.5.)	소방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1134-315)	210-15	50	소방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1134-315)	260-01	- 대통령 지시 ‘소방 R&D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복합재난에 따른 다양한 통신장애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 연구를 시급하게 추진 필요

자료: 소방청

이에 대해 소방청은 대통령 지시사항인 ‘소방 R&D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합재난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등 통신장애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 연구를 긴급하게 추진한 것이며, 2026년 1사분기(3월) 전까지 기획연구보고서가 도출되어야 2027년 본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국회 심의를 우회하여 신규과제를 추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신규 연구과제의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 30일부터이므로 사실상 2025년 예산으로 2026년 사업을 추진한 것이어서 계약 체결 시점부터 회계연도 불일치가 예정되었다는 점에서도 부적정함.

따라서 소방청은 낙찰차액을 재원으로 국회 심의를 우회하여 신규과제를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 ‘스크리닝 상담’ 최소 상담인원 비율의 하향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찾아가는 상담실’ 내역사업은 단계별 상담을 거쳐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9억 9,900만원 중 29억 6,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었음.[10)]

[2025년도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4,677	4,677	-	±41	-	4,677	4,627	-	50	8,129
찾아가는 상담실	3,014	3,014	-	△15	-	2,999	2,964	-	35	6,204

소방청은 2025년 동 사업을 통해 마음건강 설문조사(2015~), 찾아가는 상담실(2015~),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2012~) 및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2012~) 등 4개의 ‘마음건강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음.

이 중 ‘찾아가는 상담실’ 내역사업의 예산현액 29억 9,900만원 중 28억 3,200만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로 교부되어 27억 9,700만원이 실집행되었고, 국고 보조율은 50%임.

[2025년도 찾아가는 상담실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비목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2025년 결산		국고 보조율
			교부액	실집행액	
찾아가는 상담실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목)	17개 지자체	2,832	2,797	50%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일반회계-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기획조정관실)

나. 검토의견

찾아가는 상담실 내역사업에서는 2025년 ‘스크리닝 상담’에서 최소 상담인원 비율을 책정하였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소수 인원에 대한 집중상담이 불가피하다는 현장 전문인력의 판단이 있었으므로, 2026년 100%로 책정된 ‘스크리닝 상담’의 최소 상담인원 비율을 2025년 수준인 50%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3개 마음건강 주요사업[11]의 지역별 이용 현황을 보면, 서울 및 경기 지역 소방공무원의 ‘찾아가는 상담실’ 프로그램 경험률이 각각 18.2%, 18.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2025년도 3개 마음건강 주요사업 지역별 이용 현황]

(단위: 명, %)

지역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구분	총응답인원주) (A)	경험자 수 (B)	비중 (B/A)	경험자 수 (C)	비중 (C/A)	경험자 수 (D)	비중 (D/A)
전체	**61,517**	**30,732**	**50.0**	**7,336**	**11.9**	**2,809**	**4.6**
본청	563	300	53.3	87	15.5	24	4.3
서울	**7,013**	**1,273**	**18.2**	**584**	**8.3**	**399**	**5.7**
부산	3,575	1,861	52.1	429	12.0	337	9.4
대구	2,705	1,934	71.5	321	11.9	147	5.4
인천	3,391	1,226	36.2	332	9.8	137	4.0
광주	1,542	1,098	71.2	343	22.2	110	7.1
대전	1,469	1,000	68.1	322	21.9	83	5.7
울산	1,331	863	64.8	152	11.4	66	5.0
세종	475	322	67.8	126	26.5	25	5.3
경기	**10,438**	**1,893**	**18.1**	**813**	**7.8**	**315**	**3.0**
강원	4,212	2,729	64.8	456	10.8	191	4.5
충북	2,778	1,875	67.5	349	12.6	129	4.6
충남	3,809	2,474	65.0	538	14.1	156	4.1
전북	3,250	2,515	77.4	371	11.4	128	3.9
전남	3,901	2,410	61.8	685	17.6	156	4.0
경북	5,003	2,581	51.6	502	10.0	157	3.1
경남	3,837	2,832	73.8	472	12.3	142	3.7
제주	1,197	799	66.8	215	18.0	45	3.8
창원	1,028	747	72.7	239	23.2	63	6.1

주) 전국 소방공무원 전체인원 65,654명 중 61,988명(94.4%)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중 61,517명(93.7%)의 응답이 유효응답으로 분류되었음

자료: 소방청(2025.10.31.), 「2025년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11) 4개 마음건강 주요사업 중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마음건강 설문조사’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

이에 대해 소방청은 2025년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의 경우 계약조건상 초도 상담에 해당하는 ‘스크리닝 상담’의 최소인원 비율을 50%로 책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스크리닝 상담’의 최소인원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경험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2025년 상담실적을 보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경우 총응답인원 1인당 상담건수는 타 지역과 비슷하나, 경험자 1인당 상담건수가 각각 9.2건과 9.1건으로 평균인 3.4건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해당 지역의 낮은 경험률은 전문상담기관이 할당된 인력·재정의 범위 안에서 증상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2025년도 찾아가는 상담실 내역사업 운영 실적]

(단위: 명, %, 건)

지역		이용경험		상담실적		
구분	총응답인원주) (A)	경험자 수 (B)	경험률 (B/A)	상담건수 (C)	총응답인원 1인당 상담건수 (C/A)	경험자 수 1인당 상담건수 (C/B)
전체	**61,517**	**30,732**	**50.0**	**105,950**	**1.7**	**3.4**
본청	563	300	53.3	720	1.3	2.4
서울	**7,013**	**1,273**	**18.2**	**11,649**	**1.7**	**9.2**
부산	3,575	1,861	52.1	8,077	2.3	4.3
대구	2,705	1,934	71.5	3,793	1.4	2.0
인천	3,391	1,226	36.2	4,307	1.3	3.5
광주	1,542	1,098	71.2	3,355	2.2	3.1
대전	1,469	1,000	68.1	3,330	2.3	3.3
울산	1,331	863	64.8	2,194	1.6	2.5
세종	475	322	67.8	1,164	2.5	3.6
경기	**10,438**	**1,893**	**18.1**	**17,263**	**1.7**	**9.1**
강원	4,212	2,729	64.8	6,582	1.6	2.4
충북	2,778	1,875	67.5	5,100	1.8	2.7
충남	3,809	2,474	65.0	8,576	2.3	3.5
전북	3,250	2,515	77.4	5,649	1.7	2.2
전남	3,901	2,410	61.8	7,109	1.8	2.9
경북	5,003	2,581	51.6	8,841	1.8	3.4
경남	3,837	2,832	73.8	5,405	1.4	1.9
제주	1,197	799	66.8	1,503	1.3	1.9
창원	1,028	747	72.7	1,333	1.3	1.8

주) 전국 소방공무원 전체인원 65,654명 중 61,988명(94.4%)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중 61,517명(93.7%)의 응답이 유효응답으로 분류되었음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소방청이 최소 상담인원 비율인 50% 준수를 의무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소방청이 2026년부터 적용 중인 최소 상담인원 비율 확대(50%→100%)가 적정한 대응방안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해 소방청은 2026년 대규모 예산 증액(2025년 30억 1,400만원→2026년 62억 400만원, 전년 대비 107.0% 증액)으로 각 지역의 모든 관서에 1인 이상의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스크리닝 상담인원 확대와 더불어 증상이 심각한 인원에 대한 집중 상담도 가능해졌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5년 집중상담을 실시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경험률이 18.1%, 18.2%에 불과하다는 점, 예산 증액과 더불어 기존에 실시하지 않았던 생애주기 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긴급심리지원단 운영 등의 과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심층상담을 충분히 수행할 사업여력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따라서 소방청은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현장 전문인력의 판단을 고려하여 증상에 따른 집중 상담이 가능하도록, 최소 상담인원 비율을 2025년 수준인 50%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차 변경계약[1]에 따른 2026년 추가 과업내용]

관련 프로그램	추가 과업내용
스크리닝 상담	- 최소 상담인원 비율 확대(60%[2] → 100%)
종합심리검사	- 임용전·계급별 승진 및 복직 소방공무원 종합심리검사 실시
생애주기 상담	- 임용전·계급별 승진 및 복직, 휴직(정신건강 관련 병가 등) 소방공무원 상담 ※ 스크리닝 상담 외 추가 실시
팀 단위 집단상담	- 국가소방 동원령 또는 소방청에서 긴급심리지원을 지시한 재난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팀단위 집단상담 실시
가족·동료 집단상담	- 가족 및 동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확대 운영
자조모임 운영	- (동료) 마음건강 주요 스트레스(PTSD·우울·자살위험)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 (가족) 소방직업에 대한 가족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기 위해 '소방가족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자발적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동료상담사 역량강화	- 소방 동료상담사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실시
긴급심리지원단 운영	- 대형재난 현장 소방 긴급심리지원단 운영

주 1) 2026회계연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예산이 정부안 대비 증액되면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였음
2) 앞서 체결된 1차 변경계약에서 최소 상담인원 비율을 50%→60%로 상향조정하였음
자료: 소방청

6. 국립소방연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 연례적 과다계상 우려

가. 개 요

‘국립소방연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지하주차시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산·학·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11억 8,500만원 중 6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56.3%)되고, 5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국립소방연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 2025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립소방연구원 수입대체경비	1,185	1,185	-	-	-	1,185	667	-	518	1,224

동 사업은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25년 경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13)]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과목에서 수납된 수입에 의해 지출됨.[14)]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수입대체경비) 2025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주)
	본예산	추경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1,174	1,174	-	1,174	663	663	-	-	-

주) 2025년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14-49-491)에서 2026년 기타 잡수입(수입대체경비)(14-49-691)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음

12) 일반회계-국립소방연구원 수입대체경비(1174-202)

1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부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4) 일반회계-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수입대체경비)(14-49-491)

나. 검토의견

국립소방연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사업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지 못하여 예산이 과다계상되었고, 2026년도 연구비로도 12개월분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한 과다계상 및 미집행이 우려되므로, 소방청은 향후 적정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산·학·관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자동차공학회가 국립소방연구원에 위탁한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 과제별 집행 현황을 보면 4건의 연구과제 모두에서 당초 계상된 예산액의 일부(49.4~69.2%)만 집행되었음.

[2025년 과제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계약기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실대규모 전기차 화재전이 실증실험	2025. 3. ~ 2026. 2.	416	234	56.2
지하주차시설 전기차 주수시스템 개발		224	155	69.2
CCTV 영상기반 화재감지 시스템 개발		315	164	52.1
소방대원 VR훈련 시스템 개발		231	114	49.4
합계		**1,185**	**667**	**56.3**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2024년 3월에 이미 공동연구 투자규모가 확정되었고, 2025년 예산 편성근거에도 1월부터 과제 추진을 예정하여 인건비 등의 경비가 12개월분 계상되어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인건비 등의 경비가 2025년 4월에야 최초로 집행되었고, 과제 종료시점도 2026년 2월이어서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일치하지 않음.

[사업 추진 경위]

ㅇ 전기차화재 대응 산·학·관 공동연구 기획 동향보고('23. 6월 기획조정관)
ㅇ 전기차화재 대응 산·학·관 공동연구 방향성 설정보고('23. 9월. 원장대리)
ㅇ 산·학·관 공동연구 역할분담 방향성 공유('23. 9월 연구원, 현대차 등)
ㅇ 산·학·관 공동연구 기획연구과제 상세설계('23. 10월 연구원, 현대차 등)
ㅇ 자동차공학회 수탁 공동연구 투자규모 확정('24. 3월. 3년간 32.8억원)
ㅇ 2025년도 용역 과제 종료('26. 2월)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소방청은 당초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2024년 3월부터 착수 및 수행되던 1차년도 연구사업이 2025년 2월까지 추진되어, 소방안전연구원이 담당한 2차년도 연구사업이 2025년 3월부터 시작되어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선행사업의 계약기간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연중 사업 이관 및 회계연도 불일치는 예산 편성 시점부터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2025년 계약금 총액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계상한 결과 집행률이 56.3%에 그쳤고, 2026년에도 또다시 12개월분의 연구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어 연구기간과 회계연도의 불일치로 인한 미집행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소방청은 관련 예산이 적정규모로 편성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소방청에 대해 시정요구 8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건・주의 1건・제도개선 6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	1	6	-	8
예비비	-	-	-	-	-	-	-
합계	-	-	1	1	6	-	8

소방청은 시정요구사항 8건에 대해 8건을 조치완료(조치율 100.0%)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8	8	100.0	-
예비비	-	-	-	-
합계	8	8	100.0	-

인사혁신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312억 5,900만원(△1.9%)이 적은 22조 7,117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05억 6,600만원(5.0%)이 증가함.[1)]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527	6,527	7,337	810	6,519	6,519	6,604	85	△733
기 금	21,984,071	21,984,071	21,623,822	△360,249	23,136,465	23,136,465	22,705,121	△431,344	1,081,299
총수입	21,990,598	21,990,598	21,631,159	△359,430	23,142,984	23,142,984	22,711,725	△431,259	1,080,566

문의 : 02-6788-568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108억 800만원(△1.1%)이 적은 28조 3,082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141억원(6.0%)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24,742	224,742	219,028	△5,714	235,751	235,751	232,961	△2,790	13,933
기 금	26,429,362	26,582,192	26,475,073	△107,119	28,252,726	28,383,307	28,075,289	△308,018	1,600,216
총지출	26,654,104	26,806,934	26,694,101	△112,833	28,488,477	28,619,058	28,308,250	△310,808	1,614,149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20억 500만원으로, 623억 5,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620억 9,0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6%)되고, 2억 6,1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62,005	62,005	-	62,005	62,350	62,090	261	-
합 계	62,005	62,005	-	62,005	62,350	62,090	261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조 4,085억 6,700만원으로, 이 중 6조 4,057억 7,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7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408,567	6,408,567	-	±1,434	-	6,408,567	6,405,777	-	2,790
합 계	6,408,567	6,408,567	-	±1,434	-	6,408,567	6,405,777	-	2,79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31조 3,789억 5,300만원으로, 37조 3,330억 4,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0조 1,489억 1,700만원이 수납(수납률 96.1%)되고 977억 3,7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6억 2,3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기금	31,378,953	31,378,953	37,333,048	30,148,917	97,737	1,623
합 계	31,378,953	31,378,953	37,333,048	30,148,917	97,737	1,623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31조 3,789억 5,200만원으로, 이 중 30조 1,489억 1,700만원이 지출(집행률 96.1%)되고, 1,071억 1,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무원연금기금	31,378,953	31,378,953	-	31,378,953	30,148,917	-	107,118
합 계	31,378,953	31,378,953	-	31,378,953	30,148,917	-	107,118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인사혁신처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6,069억 6,700만원이 증가한 24조 5,579억 5,200만원으로, 이는 주로 금융자산이 2조 5,128억 200만원, 유무형자산이 781억 9,500만원 및 기타자산이 159억 7,0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6조 7,707억 5,900만원 증가한 1,136조 5,663억 4,000만원으로 충당부채 26조 1,961억 9,2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4조 1,637억 9,300만원이 감소한 1,112조 83억 8,8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2조 7,648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359억 2,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6조 6,587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3,295억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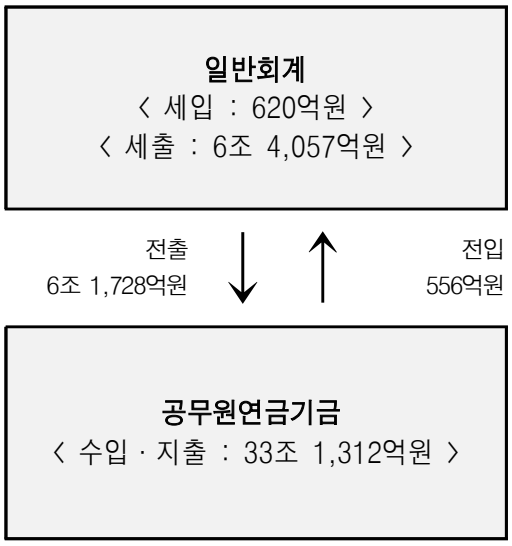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4,557,952	21,950,985	2,606,967	11.9
		금융자산	17,274,921	14,762,119	2,512,802	17.0
		유무형자산	7,248,467	7,170,272	78,195	1.1
		기타자산	34,564	18,594	15,970	85.9
	부 채		1,136,566,340	1,109,795,581	26,770,759	2.4
		차입부채	4,948,947	4,609,177	339,770	7.4
		충당부채	1,131,205,740	1,105,009,548	26,196,192	2.4
		기타부채	411,653	176,855	234,798	132.8
	순자산		(1,112,008,388)	(1,087,844,595)	(24,163,793)	(2.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2,764,822	38,628,896	4,135,926	10.7
	재정운영순원가		42,160,828	38,272,954	3,887,874	10.2
	재정운영결과		36,658,764	33,329,264	3,329,500	10.0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1개 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전출금 6조 1,728억 1,600만원, 전입금 555억 8,600만원으로, 전출금은 공무원 퇴직 급여, 재해보상 급여 등에 대한 국가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이며, 전입금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융자사업비를 국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부담하였으나, 잉여액이 발생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반환한 금액임.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흐름도]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인사혁신처는 전문역량을 지닌 유능한 인재 양성, 공무상재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8개 프로그램과 98개 세부사업에서 국가시험 시행 및 인재개발, 퇴직급여·수당 등의 지급, 전·현직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한 주택임대·복지시설 운영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인사혁신처가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사업 예산의 일부를 이·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세부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사혁신처는 관계자에 대해 교육 등 필요조치를 취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인사혁신처는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에서 초과 사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수입대체경비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탁출제 대상 과목의 지정 확대를 위한 적정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공무원연금공단의 자회사인 (주)상록골프앤리조트는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용역계약 체결로 발생한 계약금으로부터 영업이익·이자수익 등이 발생하여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므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잉여금 과다 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과년도 국회 지적 및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매년 예산에 과소 반영함에 따라 과다 유보되어 2025년 결산 기준 누적된 잉여금 규모가 8,851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계획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여 반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가. 개　요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사업은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억 1,100만원 중 4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6%)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411	411	-	±11	411	401	-	10	431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7011-299)(기획재정담당관실)

나. 검토의견

인사혁신처가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사업 예산의 일부를 다른 세부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사혁신처는 관계자에 대해 교육 등 필요조치를 취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45조에 규정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르면,[3] 세출예산을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그런데 동 사업(7011-299) 예산의 상세지출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210-01목) 중 1억 3,615만 6,740원 및 국내여비(220-01목) 429만 6,948원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된 후 다른 세부사업인 '공무원 재해보상사업 운영(2044-306)'[4]의 예산으로 집행되었어야 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었음.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7011-299)에 의한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지원내역]

○ **일반수용비 : 136,156,740원**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수당 지급 : 83,220,000원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비용 지급 : 1,385,700원
・ 행정소송 감정료 등 지급 : 25,751,040원
・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 15,700,000원
・ 재해보상연금위원회 회의자료 준비 등 소요비용 지급 : 10,100,000원
○ **국내여비 : 4,296,948원**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출장비 지급 : 2,526,398원
・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출장비 지급 : 1,770,550원

자료: 인사혁신처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소송 관련 배상금(310-02목)이 초과지출[5]되면서 부족해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처 운영경비 성격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임.

그런데 해당 예산이 부족한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음.

---

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 일반회계-공무원 재해보상사업운영(2044-306)(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5) 최근 재해보상 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재해보상 소송도 증가하여 동 사업에 편성된 배상금(310-02목)이 1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는 당초 예산액(7,700만원) 대비 1억 600만원 초과지출된 것임.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관계자에 대해 교육 등 필요조치를 취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 수탁출제 대상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적정 기준 수립 필요

가. 개 요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의 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가 보유한 전문적인 출제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탁출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9억 8,800만원 중 19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2,500만원은 불용되었음.[6)]

[2025년도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	1,988	1,988	-	±40	1,988	1,963	-	25	1,98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2024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사업추진의 근거가 신설(2024.3.19.)되었음. 2025년도 사업에서는 지방직 7-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고졸자 9급・일반경력경쟁임용 시험의 일부 과목이 출제되었음.[7)]

인사혁신처는 동 사업을 통해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대한 수탁출제를 지원하며, 2025회계연도 기준 수탁출제 용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입대체경비 수입[8)]으로,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 과목[9)]에서 수납되었음.

---

6) 일반회계-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1642-650)(인재채용국)

7) 「지방공무원법」
제32조(시험의 실시) ⑧ 임용권자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9.>

8) 기획예산처(2025.1.),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63쪽

9) 일반회계-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69-691)(인재채용국)

나. 검토의견

인사혁신처는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에서 초과 사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수입대체경비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탁출제 대상 과목의 지정 확대를 위한 적정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초과수입을 관련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음.[10] 실무상 수입대체경비는 초과 사업수요 발생 시 추가 재정투입 없이도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업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동 사업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 수탁출제 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수입으로 관련 경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2025년도 수탁출제대상 시험은 7-9급 공개임용시험 및 우수인재 9급·고졸자 9급 경력임용시험 등 총 4종임.

과목선정기준을 보면 문제은행 및 시험위원 풀이 구축된 과목일 것을 전제로(제1호) 시도 및 시도교육청 수요가 많은 과목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제2호)하도록 하고 있어, 초과수요 발생을 전제로 사업이 운용되고 있음.

[2025년도 수탁출제 관련 과목 수요 및 의견조사 주요내용]

구분	내용
수탁출제 대상 시험	○ 이하 총 4종 시험 - (공개임용) 8·9급(6. 21.), 7급(11. 1.) - (경력임용) 우수인재 9급(8. 30.), 고졸자 9급(11. 1.)
과목 선정기준	○ (기본 방향) 수탁출제 예산규모, 국가고시센터 수용여력 및 인사혁신처 관리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결정 ○ 세부 선정기준 1. 인사혁신처에서 문제은행 및 시험위원 풀을 구축하고 있는 과목 2. 1호의 범위 내에서 시도 및 시도교육청 수요가 많은 과목 순으로 추가 3. 고교과목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으로서 출제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과목은 배제 4. 기타 과목은 협의에 의함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수탁출제 관련 수요조사 결과와 실제 지원현황을 비교해 보면, 수요조사 결과에 비해 실제 지원된 과목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됨.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156개 과목에 대해 출제요청이 있었으나 72개 과목에만 출제가 지원되었고, 2024년에는 162개 과목 중 63개 과목에 대해, 2025년에는 129개 과목 중 63개 과목에 대해서만 각각 출제가 지원되었음.

[최근 3년간 수탁출제 관련 수요조사 결과 및 지원 현황]

(단위: 개)

연도	구분	7급 공채		8·9급 공채		고졸자 9급 경채		우수인재 9급 경채		합계	
		직류	과목수	직류	과목수	직류	과목수	직류	과목수	직류	과목수
2023	수요	13	43	44	79	13	31	1	3	71	156
	지원	13	18	45	40	9	11	1	3	68	72
2024	수요	15	52	41	74	14	33	2	3	72	162
	지원	26	10	42	39	10	11	2	3	80	63
2025	수요	14	38	36	64	14	24	2	3	66	129
	지원	16	10	41	39	14	11	2	3	73	63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지방직 시험 출제를 위해 약 220명이 평균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객실 수는 총 145실이어서 포화율이 150%에 달하고, 국가고시센터의 연간 시설 사용일수 또한 2023년 264일→2024년 269일→2025년 282일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설 개·보수를 위한 날짜를 제외하면 사용일수의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객실 부족의 논거로 제시한 평균 투입인원 대비 포화율(150%)은 전체 요원이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관리요원 및 재검토요원에 대해 2인 1실 또는 3인 1실을 운용하고 있어 포화상태가 아니고,[11] 국가고시센터의 연간 시설 사용일수는 직급별 시험일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지원대상 과목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행출제 지원의 확대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임.

11) 145실 중 1인실 61실·2인실 43실 및 3인실 41실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어 평균 수용가능인원은 약 270명 수준임.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임용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제42조의4)되어 있어,[12] 동 사업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것 외에는 임용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출제 위탁에 관한 초과수요는 가급적 조속히 해소될 필요가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탁출제 관련해서는 매년 수입과목 예산액과 지출사업 예산액이 비슷한 규모로 계상되어 수납·집행되는 구조이므로, 지원과목 확대에 따른 추가경비는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초과지출승인[13]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탁출제 관련 수입-지출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A)		지출(B)		초과수입(A-B)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탁출제비용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사업			
연도	본예산	수납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수납-집행
2021	1,972	1,972	1,972	1,957	-	15
2022	1,991	2,219	1,991	2,172	-	47
2023	2,022	2,022	2,022	2,013	-	9
2024	2,085	2,085	2,086	2,077	-1	8
2025	1,988	1,988	1,988	1,963	-	25

자료: 인사혁신처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을 통해 초과 사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탁출제 대상 과목의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적정 기준을 수립하여 과목선정기준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4(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법 제32조제8항에서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을 말한다.

13) 집행지침상 각 기관장이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되며,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는 사후적으로 관련 명세서를 기획예산처 및 감사원에 송부하도록 함(제24조제4항)으로써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3. 인건비(국가인재원) 사업: 정·현원 차 축소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인건비(국가인재원)’ 사업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8억 4,300만원 중 85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6%)되고, 3억원이 불용되었음.[14)]

[2025년도 인건비(국가인재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건비 (국가인재원)	10,153	10,153	-	△1,310	8,843	8,543	-	300	9,75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949년 개원한 ‘국립공무원훈련원’을 전신으로 하며, 2014년 정부조직개편(2014.11.19.) 이후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으로 운영 중임.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을 운영근거로 하며,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사무를 관장함.[15)]

---

14) 일반회계-인건비(국가인재원)(7002-101)(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5)「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 · 개발 · 평가
가. 공직가치 · 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 · 민간 교육훈련 ·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 · 협력

나. 검토의견

인사혁신처는 2025년 정·현원 차 증가로 인건비(국가인재원) 사업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84.1%)하여 16억 1,000만원 규모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인력 충원 외 탄력적 인력관리를 통한 정원 조정 등 정·현원 차 축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최근 5년간(2021-2025) 정·현원 및 인건비 예산의 집행 현황을 보면, 2025년 예산 증액과 더불어 현원이 감소하여 미집행액이 같은 기간 최대 규모인 16억 1,000만원 수준이고, 본예산 대비 집행률도 84.1%로 저조함.

[최근 5년간(2022-2026.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현원 및 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정원	현원주)	본예산(A)	집행액(B)	본예산 대비 집행률(B/A)	미집행액 (A-B)
2022	154	138	9,010	8,485	94.1	525
2023	150	137	9,017	8,214	91.1	803
2024	150	136	8,987	8,377	93.2	610
2025	150	128	10,153	8,543	84.1	1,610
2026.5.	148	127	9,753	집행중	집행중	집행중

주) 주당 20시간(전일제 공무원 근무시간의 1/2)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0.5명으로 계산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해당 기관의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결원 대부분이 일반직 공무원이며, 정원 역시 2022년 154명→2023년 150명→2026년 5월말 기준 148명 등으로 최근 5년간 두 차례 축소조정되었음. 또한, 2025년에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결원이 전년 대비 증가(5명→11명)하는 등 정·현원 차이가 크게 확대(14명→22명)되었음.

[최근 5년간(2022-2026.5.) 직급별 정·현원 현황]

(단위: 명)

연도	정원 (A)	현원주) (B)	결원					
			정·현원차 (A-B)	5급이상	전문경력관 (가군)	6급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하)	임기제
2022	154	138	16	과원+1명	-	14	2	1
2023	150	137	13	4	-	8	1	-
2024	150	136	14	7	1	5	1	-
2025	150	128	22	7	1	11	1	2
2026.5.	148	126	22	7	-	12	1	2

주) 주당 20시간(전일제 공무원 근무시간의 1/2)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0.5명으로 계산
자료: 인사혁신처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정·현원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배정받기 위한 협의 등을 거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기관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정부 인력운영 방안」(2022.7.12.)의 일환으로 실시한 범정부 조직진단[16]을 거쳐 정원이 감원(154명→150명)되었고, 2026년에는 인사혁신처의 자체 조직개편을 거쳐 2명의 정원이 감원(150명→148명)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력 충원 외 탄력적 인력관리를 통한 정원 조정 등 정·현원 차 축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7.12.), "행안부, 늘어난 정부인력 효율화 추진한다"

【공무원연금기금】

〈지 출〉

4. 대여학자금 융자(융자):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취지 왜곡

가. 개 요

‘대여학자금 융자(융자)’ 사업은 재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424억 8,000만원 중 3,378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고, 45억 8,6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5년도 대여학자금 융자(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분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A)							
대여학자금융자 (융자)	267,900	267,900	-	74,580	342,480	337,894	-	4,586	237,900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은 동 사업을 통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융자 재원은 「공무원연금법」 제75조[18]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조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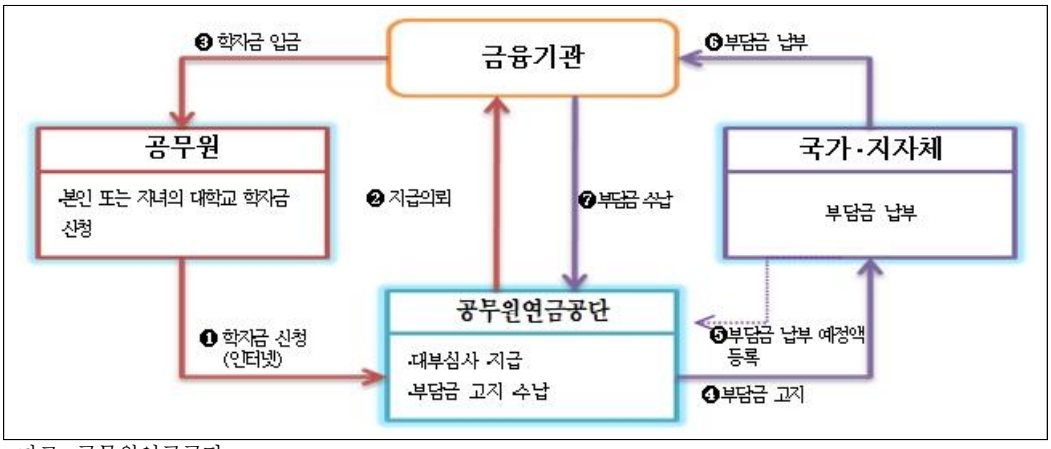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금융기관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등의 신청을 받아 대부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 등에게 학자금을 대여함.

---

17) 공무원연금기금-대여학자금 융자(융자)(3141-321)(공무원연금공단)

18)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① 제17조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사업 집행절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나. 검토의견

대여학자금 융자(융자)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액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미흡) 감액 반영되었음에도 계획변경(증)을 거쳐 초과집행되었는데, 이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므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대여학자금 융자(융자)' 사업은 '미흡' 평가 등급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었고, 평가연도인 2024년의 차년도인 2025년 계획액으로 2024년 2,840억 6,500만원보다 적은 2,798억 6,100만원이 반영되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연중 계획변경(증)을 거쳐 당초 계획액을 초과한 금액이 집행되었음. 2025년에도 당초계획액 대비 699억 9,400만원 초과한 금액이 집행되어,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취지에 맞는 지출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는 지출구조조정을 거쳐 편성된 2025년도 당초계획액 대비 699억 9,400만원 초과집행된 금액이고, 지출구조조정 계획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2024년도 당초계획액 2,840억 6,500만원에 비해서도 초과집행된 것이어서, 지출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당초계획액 (A)	증감액 (B)	계획현액 (A+B)	집행액 (C)	당초 대비 초과집행분 (C-A)
2023	316,491	78,719	395,210	376,801	60,310
2024	284,065	70,164	354,229	346,551	62,486
2025	267,900	74,580	342,480	337,894	69,994

자료: 인사혁신처

또한, 2025년 계획변경 사유를 보면, 당초계획액 편성 당시 추계된 대부건수 및 단가가 2023년과 2024년에 비해서도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어, 신청수요 증가로 인한 초과집행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계획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세사업	금액	계획변경 사유
2023	자체변경 (2023.6.14.)	대여학자금융자	78,719	○ 2023년 계획 대비 대부건수 등 증가 - (건수) 99,997건 → 119,081건 (+19,084건) - (단가) 3,165천원 → 3,319천원 (+154천원)
2024	자체변경 (2024.6.10.)	대여학자금융자	70,164	○ 계획대비 대부건수 ·단가 증가로 대여학자금 부족예상 - (건수) 89,752건 → 106,497건 (+16,745건) - (단가) 3,165천원 → 3,326천원 (+161천원)
2025	자체변경 (2025.7.25.)	대여학자금융자	74,580	○ 계획대비 대부건수 ·단가 증가로 대여학자금 부족예상 - (건수) 81,453건 → 100,391건 (+18,938건) - (단가) 3,289천원 → 3,411천원 (+122천원)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신청수요가 당초 계획 대비 증가하였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특성상 신청수요가 존재하면 융자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있어 사업비가 초과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함.

동 제도가 사업의 특성상 신청수요가 있었다면 융자가 확대될 수 있음에도 동 사업이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부적정한 측면이 있고, 실제로도 지출구조조정 사유로 감액조정된 2025년 사업비가 계획변경(증)을 거쳐 초과집행되었으므로 지출구조조정 대상의 선정 및 실제 사업운용과정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취지가 왜곡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정사업에 관한 평가와 연계된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시 초과집행이 예측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지출구조조정된 사업비를 계획변경(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복지시설 운영·지부시설 관리 사업: (주)상록골프앤리조트 잉여금 과다 누적 등

가. 개 요

‘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후생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하여 공무원과 공무원연금수급자 및 그 유족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무원연금기금의 기금증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현액 511억 5,600만원 중 505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6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지부시설 관리’ 사업은 서울회관 및 제주청사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부사무실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현액 216억 2,900만원 중 210억 3,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3%)되고, 5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20]

[2025년도 복지시설 운영·지부시설 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분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A)							
복지시설 운영	51,156	51,156	-	-	51,156	50,523	-	633	52,738
지부시설 관리	21,899	21,629	-	-	21,629	21,039	-	590	21,637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천안·화성·남원·김해 및 수안보 지역 내 4개 골프장, 2개 호텔 및 1개 공원을 운영하고 있음.

공무원연금공단의 출자회사인 (주)상록골프앤리조트는 2019년 7월 1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관리·운영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음.[21]

---

19) 공무원연금기금-복지시설운영(3161-341)(공무원연금공단)

20) 공무원연금기금-지부시설관리(3161-342)(공무원연금공단)

2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5. 정규직 전환 방식
5-2. 파견·용역
5-2-2. 자회사 방식
○ 파견·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활용하는 방식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상록골프앤리조트 출자 현황 및 복지시설 운영현황]

자본금	1억 원	주주구성	공단 100%
인원현황(정원)	456명	설립일	'19. 7. 1.

구 분		천안리조트	화성골프장	남원골프장	김해골프장	수안보호텔
주요시설		대중형골프장 27홀, 호텔·공원 등	대중형골프장 27홀	대중형골프장 18홀	대중형골프장 18홀	호텔 101개 객실 등
영업개시		1997. 3.10.	2006.11. 3.	2012. 9.22.	2014. 7.12.	1989. 3.24.
이용인원	2023 (공무원)	39.4만명 (20.6만명)	14.4만명 (9.4만명)	9.2만명 (6.1만명)	9.9만명 (6.4만명)	6.2만명 (5.2만명)
	2024 (공무원)	46.2만명 (18.3만명)	13.5만명 (8.7만명)	8.6만명 (6.1만명)	9.6만명 (6.2만명)	6.0만명 (4.5만명)
	2025 (공무원)	45.8만명 (22.7만명)	14.2만명 (9.3만명)	8.2만명 (5.8만명)	9.7만명 (6.5만명)	6.8만명 (5.1만명)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결산 기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공무원연금공단 사옥관리 업무대행' 계약('24.7.1.~'29.6.30.)에 의해 자회사인 (주)상록골프앤리조트에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사옥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계약체결 시점 기준 총 계약금액은 1,335억 1,500만원임.

2025년 당초 계약금액은 267억 300만원이고, 변경계약 체결(2025.12.26.)에 의해 273억 6,900만원으로 증액됨. 2025년 최종 계약금액 273억 6,900만원 중 236억 3,700만원이 복지시설 운영 사업비로 지출되었고, 37억 3,200만원이 지부시설 관리 사업비로 지출되었음.

[(주)상록골프앤리조트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과 업	유관사업	총 금액	2025년 계약금액	
			당초 (2024.12.31. 체결)	변경 (2025.12.26. 체결)
후생복지시설 운영	복지시설 운영 (3161-341)	115,899	23,180	23,637
사옥관리	지부시설 관리 (3161-342)	17,616	3,523	3,732
합 계		115,899	26,703	27,369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나. 검토의견

첫째, 공무원연금공단의 자회사인 (주)상록골프앤리조트는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용역계약 체결로 발생한 계약금으로부터 영업이익·이자수익 등이 발생하여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므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잉여금 과다 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상록골프앤리조트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자회사로, 공단이 운영 중인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서울·제주 지부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을 제공하고 있음.

공단은 (주)상록골프앤리조트와 5년 단위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후생복지시설 및 지부의 사옥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2025년 당초 계약금액은 267억 300만원이었으나, 기준노임단가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합계 273억 6,9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2025년 공무원연금공단-(주)상록골프앤리조트 변경계약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분	
			금액	인상률
노무비	18,843	19,280	437	2.3
복리후생비	1,134	1,152	18	1.6
이 윤	495	528	33	6.7
기타경비주)	6,231	6,409	178	2.9
합 계	26,703	27,369	666	2.5

주) 보험료,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그런데 동 기관의 최근 5년간 재무현황을 보면, 매년 영업이익 및 이자수익 등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2025년 결산 기준 30억 6,500만원에 달하는 잉여금이 누적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결산 기준 (주)상록골프앤리조트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매출액주)	판관비	영업이익	이자수익 등	당기순이익	누적 잉여금
2021	23,856	22,914	942	△166	776	1,397
2022	24,316	25,469	△1,153	154	△998	399
2023	25,788	24,578	1,210	154	1,364	1,763
2024	26,610	26,066	544	179	723	2,486
2025	27,230	26,890	340	239	579	3,065

주) 2025년 변경계약상 총원가 금액(부가세 제외) 248억 8,071만원 外 경기보조원 산재보험료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 포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수입 전액이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받은 용역비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지출내역 대부분이 노무비·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주)상록골프앤리조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 중 상당액은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것이므로 회수 또는 적절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무원연금공단은 매년 (주)상록골프앤리조트에 성과보상금(2025년 기준 6억 4,8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계약상 지급되는 이윤과 별도로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필요시 성과보상금을 계약상 이윤비율의 상향조정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주)상록골프앤리조트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무비 및 경비 합계금액의 약 2.4%에 해당하는 5억 2,800만원 내외의 이윤을 책정하였음.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과 (주)상록골프앤리조트가 체결한 '업무대행 계약의 특수조건'의 제7조를 보면, 계약상 이윤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약금액과 별도로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2)]

실제 집행 현황을 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매년 계약상 보장된 이윤과 별도로 (주)상록골프앤리조트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025년 계약금에서 5억 2,800만원의 이윤을 지급하는 한편, 차년도(2026년) 계획액을 재원으로 2025년 실적 등에 대해 계약금과 별도로 성과보상금 6억 4,900만원을 지급하였음. 또한, (주)상록골프앤리조트에서는 자체 수입을 활용하여 2025년 실적에 대해 1억 2,800만원 상당의 성과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였음.

[최근 5년간 (주)상록골프앤리조트에 대한 이윤 및 성과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주)	계약상 이윤	성과보상금		성과공유제-성과보상금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2022	197	622	542	-	-
2023	400	684	521	-	-
2024	495	638	515	-	-
2025	528	651	636	-	125
2026	527	673	649	-	128

주) 계약상 이윤은 당해 연도 계획액에서 집행되며 성과보상금은 차년도 계획액에서 집행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2) 「업무대행 계약 특수조건」 제7조(성과보상금 등) ① 공단은 매년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정도에 따라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운영성과 평가는 자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공단은 결과 확인 후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보상금 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의 취지에 따라 전환 전 임금체계를 고려하여 근로조건이 하락하지 않도록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를 거쳐 성과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입장임.[23)]

또한, 현재 계약상 책정된 이윤 수준이 타 기관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매년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의 상향 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윤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음.

[공무원연금공단 대상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일부)]

평가연도	주요내용
2022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3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2024	이윤비율이 소폭 상승(2.0%→2.1%)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기관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자료: 고용노동부(2022-2024), 「자회사 평가 기관별 보고서」

그러나 성과보상금은 (주)상록골프앤리조트 소속 근로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실상 기금을 재원으로 공단이 아닌 타 법인 소속 근로자의 성과급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적정한 것으로 보임.

또한 복지시설에 관한 운영책임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귀속된다는 사유로 계약금 잔액에 대한 정산을 미실시[24)]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상 책정된 이윤 이외에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자회사에 잉여금 누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상으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으로 자회사의 성과급 재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하고, 필요시 성과보상금을 계약상 이윤비율을 조정하는 등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23) 또한, 자회사의 성과급 제도는 (주)상록골프앤리조트 설립 이전부터 운영되던 제도이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설된 보수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소명하였음.

24) 공무원연금공단은 자회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실비정산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6.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등: 수탁금 잉여금의 적정규모 반환 필요

가. 개 요

공무원연금공단은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회계기금간거래(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등 2개 사업에 의해 대여학자금 융자사업의 수탁금 잉여금을 반환하고 있으며, 2개 사업의 2025년 계획현액 합계 1,061억 9,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25)]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관련 2개 사업 2025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40,500	40,500	-	-	40,500	40,500	-	-	50,000
회계기금간거래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65,696	65,696	-	-	65,696	65,696	-	-	120,121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일반회계)	58,488	58,488	-	-	58,488	58,488	-	-	113,311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특별회계)	7,208	7,208	-	-	7,208	7,208	-	-	6,810
합계	**106,196**	**106,196**	-	-	**106,196**	**106,196**	-	-	**170,121**

반환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사혁신처 「대여학자금 처리기준」상 산식에 근거하여 산정되나, 정부의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해당 반환금액으로부터 일부 조정된 금액이 반영되고 있음.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관련 사업 개요(공통)]

구분	주요내용
반환대상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담금 잉여금(회수액-융자금) 발생 기관
반환금액	대부수요 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 : **전전년도 부담금 정산액 - 전년도 반환예정액 - 전년도 대부예상액** ※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의 증감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추가 반환하거나,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다.
반환시기	정산년도 기준 차차년도* 상반기(매년 6월 중)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재구성

25) 공무원연금기금-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3141-323)(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
공무원연금기금-회계기금간거래(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8920-895)(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

나. 검토의견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과년도 국회 지적 및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매년 예산에 과소 반영함에 따라 과다 유보되어 2025년 결산 기준 누적된 잉여금 규모가 8,851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계획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여 반환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대여학자금 수탁금 여유분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됨[26]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의 산식을 조정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후속조치를 수행하였다고 보고하였음.[27]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금액 산출내역]

주요내용
대부수요 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 : **전전년도 부담금 정산액 - 전년도 반환예정액 - 전년도 대부예상액 ± 전년도 상환액의 25%**주) ※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의 증감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추가 반환하거나,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다.

주) 반환금액 산식 중 '± 전년도 상환액의 25%'은 과년도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추가되었음.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25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그러나 실제 편성된 계획액은 2022년 이래 '업무처리기준' 산식에 따른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 반영되어 있음. 또한 2022년~2024년 사이에는 지자체 대상 반환금만이 감액되고 있어 국가기관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최근 5년간(2022-2026) 업무처리기준상 반환액·당해연도 계획액 비교]

(단위: 억원)

연도	반환대상 구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반환금액(A)주)	당해연도 계획액(B)	차이 (B-A)
2022	국가	774	774	-
	지자체	2,594	1,594	△1,000
	소계	3,368	2,368	△1,000
2023	국가	118	118	-
	지자체	2,326	1,304	△1,022
	소계	2,444	1,422	△1,022

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Ⅲ),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검토보고」 등

27)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공통요구자료(Ⅱ-1)」, 667쪽.

(단위: 억원)

연도	반환대상 구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반환금액(A)주)	당해연도 계획액(B)	차이 (B-A)
2024	국가	395	395	-
	지자체	1,650	825	△825
	소계	2,045	1,220	△825
2025	국가	1,469	657	△812
	지자체	4,062	405	△3,657
	소계	5,531	1,062	△4,469
2026	국가	1,201	1,201	-
	지자체	4,852	500	△4,352
	소계	6,053	1,701	△4,352

주) 공무원연금공단은 업무처리기준을 근거로 요구액을 산정하였다는 입장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추세이며, 2025년 결산 기준 잉여금은 8,851억원 수준임.

[최근 5년간(2021-2025) 대여학자금수탁금 잉여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여학자금 수탁금	누적 수탁금(A)	37,466	35,126	32,758	31,342	30,127
	부담금 수입액(B)	1	1	6	5	8
	반환금(C)	2,341	2,369	1,422	1,220	1,062
	수탁금 잔액 (D=A+B-C)	35,126	32,758	31,342	30,127	29,073
	대부잔액(E)	26,638	24,517	22,980	21,506	20,222
	잉여금(D-E)	8,488	8,241	8,362	8,621	8,851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따라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액을 기금운용계획에 정액대로 반영하여, 대여학자금수탁금 잉여금이 신속하게 반환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인사혁신처에 대해 시정요구 7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2건(중복 1건)·제도개선 6건(중복 1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2(1)	6(1)	1	7
예비비	-	-	-	-	-	-	-
합계	-	-	-	2(1)	6(1)	1	7

인사혁신처는 시정요구사항 7건에 대해 6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5.7%)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7	6	85.7	1
예비비	-	-	-	-
합계	7	6	85.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2억 4,600만원(95.9%)이 많은 25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2,600만원(△55.1%)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0,017	10,017	5,671	△4,346	1,299	1,299	2,545	1,246	△3,126
총수입	10,017	10,017	5,671	△4,346	1,299	1,299	2,545	1,246	△3,126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521억 7,700만원(124.4%)이 많은 8,155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9억 3,200만원(△4.6%)이 감소됨.

문의 :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57,227	857,227	854,516	△2,711	363,407	363,407	815,584	452,177	△38,932
총지출	857,227	857,227	854,516	△2,711	363,407	363,407	815,584	452,177	△38,932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2억 9,900만원으로, 41억 8,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5억 4,500만원이 수납(수납률 60.8%)되고, 16억 3,500만원은 미수납되어 3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299	1,299	-	1,299	4,183	2,545	1,635	3
합 계	1,299	1,299	-	1,299	4,183	2,545	1,635	3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438억 8,100만원으로, 8,155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6%)되고 282억 9,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63,407	363,407	26	-	480,447	843,881	815,584	-	28,297
합 계	363,407	363,407	26	-	480,447	843,881	815,584	-	28,297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21억 4,100만원이 증가된 7,880억 7,6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4억 5,200만원, 유·무형자산이 17억 4,200만원 각각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3억 7,700만원 감소된 26억 5,400만원으로 차입부채 33억 7,9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5억 1,800만원이 증가된 7,854억 2,2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241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9,8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8,722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88,076	785,935	2,141	0.3
		금융자산	9,394	8,942	452	5.1
		유·무형자산	767,661	765,919	1,742	0.2
		기타자산	11,020	11,074	△54	△0.5
	부 채		2,654	6,031	△3,377	△56.0
		차입부채	2,652	6,031	△3,379	△56.0
		충당부채	-	-	-	-
		기타부채	2	1	1	100.0
	순자산		785,422	779,904	5,518	0.7%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24,161	534,159	△9,998	△1.9
	재정운영순원가		872,220	871,315	905	0.1
	재정운영결과		872,220	871,315	905	0.1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조직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고 총 32개 세부사업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선거관리 행정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예비비 중 일부 집행내역은 대통령선거와의 직접 관련성이 불명확하므로, 실제 집행내용이 예산 배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전·사후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관서운영경비와 인건비·청사관리 사업의 이·전용 등이 예산 집행 및 편성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고 있으므로, 관서운영경비 집행 절차 관리를 강화하고 인건비 및 공공요금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재외공관별 실제 인력수요와 선거일정을 반영하여 재외선거관 파견 및 재외공관 인력경비 산출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예비비: 배정 목적 외 집행에 대한 유의 필요

가. 개 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예비비’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 및 선거비용 보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배정된 것으로, 2025회계연도 배정액 4,804억 4,700만원 중 4,536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4%)되고, 267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배정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예비비	480,447	453,654	-	26,793	94.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검토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예비비 집행과정에서 선거 종료 이후 내부평가·절차사무 개선·국회 대응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 연장 등 배정 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불분명한 곳에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예비비 배정목적에 맞는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전·사후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에 필요한 경비 3,867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2025. 4. 8.)받았고, 이후 선거비용 보전에 필요한 경비 937억 700만원을 추가 배정(2025. 8. 5.)받아 총 4,804억 4,7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음.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예비비 요구·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요구액	배정액	주요 내용
대통령선거관리	296,132	290,061	선거관리일반, 선거운동, 사전투표, 투표관리 등
재외선거관리	11,620	10,538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 인력운영
정당보조금	52,383	52,383	선거보조금
공명선거기반조성	7,355	6,695	대통령선거 계도·홍보
위법행위예방활동	24,537	23,501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위법행위 예방·단속 등
인터넷심의기반조성	260	260	인터넷심의기반조성
선거방송토론	451	450	공직선거후보자 토론회 등 개최
선거여론조사심의	353	353	선거여론조사심의
인건비	2,498	2,498	초과근무 및 재외근무수당
선거보전금	94,631	93,707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경비
합 계	490,220	480,44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선거 종료 이후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T/F·자문단, 중앙위원회 업무지원 인력 여비, 기간제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물품 임차, 기타 선거 후속·정리 경비 등에도 예비비가 집행된 사례가 확인되었음.

[대통령선거 종료 이후 예비비 집행 사례]

(단위: 건, 원)

구 분	집행일자	주요 집행내용	건수	집행액	예비비 집행사유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T/F·자문단	2025.8.6.~11.25.	T/F 출장여비, 절차사무자문단 회의 여비, 사무용품·복사용지, 통신·네트워크 작업, PC 임차, 안내배너, 연구보고서 인쇄	73	41,950,640	제21대 대선에서 나타난 사건·사고 및 절차상 문제점과 내부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선거에 적용 가능한 절차사무 개선방안 마련
중앙위원회 업무지원 인력	2025.11.3.~12.10.	출장여비	4	4,452,640	제21대 대선 내부평가 자료정리, ~~총람 제작,~~ 대선 결과 관련 국회 대응업무 지원 등
기간제근로자 고용 연장	2025.12.30.	기간제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행정물품 임차	1	1,848,000	제21대 대선 내부평가 자료정리 ~~및 총람 제작~~ 등 관련 자료수집 보조를 위해 선거사무보조인력 고용 연장

(단위: 건, 원)

구 분	집행일자	주요 집행내용	건수	집행액	예비비 집행사유
절차사무 실무교육·편람 개정	2025.9.25.~11.25.	선거담당자 절차사무 실무교육 여비·물품,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 업무협의, 선거관리 개선방안 논의 업무협의	8	1,170,700	제21대 대선 절차사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선거업무 처리 개선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 추진
업무협의·회의·다과 등	2025.7.10.~7.25.	수영구청 인사이동 관련 업무협의, 부천시청 공무원노조 업무협의, 신규직원 환영 및 사무분장 업무협의, 분임회의·이임식	4	551,210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리 개선사항 및 요구사항 의견수렴, 선거사무 애로사항 청취, 선거비용 보전·회계 업무 인계인수, 내부평가 및 피드백을 위한 업무협의
청사·사무환경·후속 정리 소모품	2025.7.10.~10.14.	위원회 사무실 다과·커피원두, 생수, 기록물 정리 도장, 창고 정리 소모품, 사무실·창고 청소	8	3,570,200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후 장비·선거물품 정리, 회계처리 안내, 선거기록물 정리, 선거비용 실사업무 및 개표상황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환경 유지 경비
기타 선거 후속·정리 경비	2025.8.11.~9.10.	대행감사 감사반 회의 참석 여비, 복합기 긴급 수리	2	720,280	대통령선거 감사·자료 출력·사무용품 구입, 대통령선거 대행사무 처리 중 고장난 장비 수리
그 밖의 집행 사례	2025.7.10.~12.26.	스포츠의 날 행사비, 종량제봉투 구입, 전기온수기 수리	3	212,4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T/F 집행 건 등에 대해 제21대 대선 내부평가 자료정리, 국회 대응업무, 향후 선거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책 마련 등과 관련되어 대통령선거 관련 예비비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T/F·자문단 관련 경비는 선거 종료 후 향후 선거에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경비로서, 대통령선거의 직접적인 관리·실시 경비라기보다 사후 평가·연구·제도개선 경비의 성격이 강하고, 중앙위원회 업무지원 인력·기간제근로자 고용 연장·국회 대응 업무도 대선 후속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본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일반 경비와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예비비 집행의 직접 관련성·시급성·불가피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대통령선거 등 특정 목적의 예비비를 집행할 때, 실제 지출내용이 예비비사용명세서상 배정목적·세부사업·비목 및 집행대상과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대통령선거관리: 관서운영경비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은 대통령선거의 절차사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900억 6,100만원 중 2,693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은 92.9%)되고 206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대통령 선거관리	-	-	-	△1,201 1,201	290,061	290,061	269,399	-	20,66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관서운영경비 집행과정에서 500만원 초과 집행 예외범위 미준수, 선지급 후 과목정정, 현금 인출 후 납부, 세목 오집행 등 집행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므로, 관서운영경비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고금 관리법」 제24조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는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일반회계-대통령선거관리(1131-300)(선거정책실)

다만 운영비 중 공과금,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 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등 일부 경비에 대해서만 금액 제한 없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3)4)5)6)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임시경사로 임차 등 7건에 대해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관서운영경비로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국고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3)「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 · 학교운영비 ·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 특수활동비 · 안보비 · 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5)「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3.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 · 감정인 ·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5. 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6)「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 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210)중 선거관련 용품제작 · 인쇄비용 ·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2. 특수활동비(230)중 정보 · 경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③ 영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④ 영 제36조 및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2호와 같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관서운영경비 500만원 초과 집행 건 중 규정 위반 내역]

(단위: 원)

연번	위원회명	집행내용	지출일자	예산과목	집행액
1	사하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임시경사로 등 임차 비용 지급	2025-06-18	210-07 (임차료)	9,913,200
2	사하구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 등 개표부서별 장비 임차료 지급	2025-06-16	210-07 (임차료)	6,910,000
3	부산진구	제21대 대통령선거 임차창고 임차료 지급	2025-04-25	210-07 (임차료)	9,073,970
4	부산남구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임시경사로 임차	2025-06-13	210-07 (임차료)	5,474,700
5	익산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설비철거 대금 지급	2025-06-12	210-01 (일반수용비)	10,593,000
6	성주군	개표장 집기 등 설비, 철거 임차료 지급	2025-06-11	210-07 (임차료)	5,406,500
7	성주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차량 등 운행 임차료 지급	2025-06-16	210-07 (임차료)	5,250,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부산남구선관위의 개표사무원 귀가여비 584만원의 경우 국내여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선지급 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진구선관위의 임차창고 임차료 907만 3,970원은 현금 인출 후 고지서 납부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며, 익산시선관위의 개표소 설비철거 대금 1,059만 3,000원은 일반용역비 대상이나 일반수용비로 세목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선거관리 관서운영경비 지급 건 중 집행관리 부적정 사례]

(단위: 원)

연번	위원회명	집행내용	예산과목	집행액	위반 내역
1	부산남구	개표사무원 귀가여비	220-01 (국내여비)	5,840,000	220-01 부족으로 210-01 선지급 후 정정
2	부산진구	임차창고 임차료	210-07 (임차료)	9,073,970	현금 인출 후 고지서 납부
3	익산시	개표소 설비철거 대금	210-01 (일반수용비)	10,593,000	일반용역비 대상이나 일반수용비로 세목 오집행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관서운영경비는 일반적인 지출원인행위·지출 절차에 비해 간략한 절차로 집행되는 예외적 지출 방식이므로, 500만원 초과 집행이 가능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는 사전에 엄격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또한「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33조의2제2항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과목 부족을 이유로 다른 세목에서 우선 지급한 후 사후 정정하는 방식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으로 볼 수 있음.[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기 전에 500만원 초과 집행 예외사유 해당 여부, 예산과목 적정성 및 현금지급 불가피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집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 인건비성 경비 산출 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재외선거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5억 3,900만원 중 84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6%)되고 20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5년도 재외선거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외선거관리	1	1	-	-	10,538	10,539	8,491	-	2,048	48
제21대 대선 재외선거관리	1	1	-	-	9,413	9,414	7,953	-	1,461	48
재외선거 인력운영	-	-	-	-	1,125	1,125	538	-	58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제21대 대선 재외선거관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및 명부작성, 재외투표관리 등 재외선거 절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4억 1,400만원 중 79억 5,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5%)되고 14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재외선거 인력운영’**은 재외선거관 파견 및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인력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억 2,500만원 중 5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47.8%)되고 5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

8) 일반회계-재외선거관리(1131-305)(선거정책실)

나. 검토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인력운영경비에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재외공관별 실제 인력수요와 궐위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외선거관 파견 및 재외공관 인건비 산출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제21대 대선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일용임금은 예산현액 13억 7,000만원 중 7억 6,5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5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44.2%이며, 또 다른 내역사업인 '재외선거 인력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1억 2,500만원 중 5억 3,8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8,7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52.2%에 이르고 있음.

[2025년도 재외선거관리 사업 인건비성 경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제21대 대선 재외선거관리	9,414	7,953	1,461	15.5
일용임금(110-04)	1,370	765	605	44.2
재외선거 인력운영	1,125	538	587	52.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 대통령선거가 궐위선거에 해당하여 재외선거관이 단신부임함에 따른 동반 가족 여비 잔액과 일용인부임 등 재외공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특히 재외선거 인력운영의 경우 예비비 편성 당시 재외선거관 파견 시기 및 가족 동반 여부를 사전에 예단하기 어려워 가족 동반을 전제로 2.5개월 파견 여비를 산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신부임하게 되어 동반 가족 여비가 불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관 파견 현황을 보면, 임기만료 대통령선거의 경우 약 1년 파견 방식이 적용된 반면, 궐위선거의 경우 선거일정상 단기 파견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제19~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 파견·운영 현황]

(단위: 개국, 개, 명)

구 분	선거일	재외선거관 파견기간	파견국가 수	파견공관 수	재외선거관 수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5.9.	2017.2.8.~2017.6.30.	9	22	22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3.9.	2021.4.1.~2022.3.31.	9	22	22
제21대 대통령선거	2025.6.3.	2025.4.11.~2025.6.23.	8	18	18

자료: 대통령 선거 총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 파견공관]

(단위: 개)

대륙명	파견 공관수	파견공관명
동북아시아	5	일본(대), 오사카(총), 중국(대), 상하이(총), 칭다오(총)
남아시아・태평양	3	호치민(총), 필리핀(대), 시드니(총)
미주	8	미국(대), 뉴욕(총), 로스앤젤레스(총), 샌프란시스코(총), 시애틀(총), 시카고(총), 애틀랜타(총), 휴스턴(총)
구주	2	프랑스(대), 프랑크푸르트(총)

자료: 제21대 대통령 선거 총람

다만,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 파견은 약 2.5개월의 단기 파견을 전제로 산정되었음에도 가족 동반 여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단신부임으로 가족 동반 여비가 불용되었음. 단기 파견의 경우 가족 동반 가능성 및 실제 수요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견기간・가족 동반 가능성・실제 부임형태 등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 동반 여비를 반영한 것은 재외선거 인력운영 경비 산출의 정확성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음.

또한 일용임금의 경우에도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선거 일정상 채용이 지연되어 당초 산정기간보다 단기로 고용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였음. 이는 궐위선거의 경우 선거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되어 채용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비비 산정 단계에서 일정 지연 가능성과 실제 채용수요를 보다 보수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같은 궐위선거 예비비를 요구할 때 재외선거관 파견기간, 가족 동반 가능성, 실제 부임형태 및 재외공관별 일용인부 채용 가능기간 등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불확실성이 큰 항목은 실제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재외선거 인건비성 경비의 산출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인건비: 적정 예산 편성 노력 및 집행절차 준수 필요

가. 개 요

‘인건비’ 사업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게 봉급, 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294억 7,600만원 중 2,293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5년도 인건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건비	225,570	225,570	-	△1,292 2,700	2,498	229,476	229,352	-	124	240,531
보수	220,729	220,729	-	2,700	2,498	225,927	225,859	-	68	235,477
기타직보수	3,127	3,127	-	△210	-	2,917	2,896	-	21	3,263
연가보상비	1,714	1,714	-	△1,082	-	632	597	-	35	1,791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인건비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보수(110-01목)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이·전용 등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건비 변동요인을 반영한 추계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인건비 보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총 27억원 규모의 예산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용 9억 8,600만원, 전용 4억 2,200만원, 세목조정 12억 9,200만원 등이 발생하였음. 이 과정에서 재보궐선거관리·위탁선거관리·선거장비및물품관리·위원회기본경비·법제지원및법규운용·청사관리 등 총 21개 세부사업의 경비가 인건비 부족재원 보충에 활용되었음.

9) 일반회계-인건비(7101-150)(기획조정실)

[인건비 보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이·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	주요내용
이용	986	재보궐선거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장비및물품관리 등 감액
전용	422	위원회기본경비, 법제지원및법규운용, 청사관리, 선거연수원운영 등 감액
세목조정	1,292	인건비 내 기타직보수·연가보상비를 보수로 조정
합계	2,7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 편성 시점의 한계로 전년도 보수 집행실적과 2025년 정액수당 상승분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으며, 인건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초과근무시간 제한, 재정집행점검 실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인건비는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연도 중 부족분을 타 사업 경비 감액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타 사업의 안정적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최근 2년간 인건비 보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이·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이용	전용	세목조정	합계
2024	4,974	968	593	6,535
2025	986	422	1,292	2,7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에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총 65억 3,500만원 규모의 이·전용 등을 실시하였고, 2025년에도 보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약 27억원 규모의 이·전용 등을 실시하였음. 이는 보수 부족분을 연도 중 타 사업 또는 인건비 내 다른 세목의 조정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인건비 추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도 인건비 편성 시 정근수당 46억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었고, 2025년도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이 복구된 수준으로만 증액되어 처우개선율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현원 변동, 휴직자 발생, 보수단가 변동 등 보수 소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히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인건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 명목의 예비비와 본예산 인건비가 집행과정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므로, 예비비와 본예산 인건비 간 집행절차를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인건비 예비비 24억 9,800만원은 '대통령 궐위선거에 따른 선거경비'를 사유로 배정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음.

[2025년도 인건비 예비비 배정·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사유	예비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인건비	대통령 궐위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2,498	2,49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나 동 예비비가 선거 종료 이후 8~12월 직원 보수, 추석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 통상적 인건비 지급에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었음. 이는 대통령선거 관리업무 수행으로 추가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재외근무수당 등 예비비 집행대상 경비와 본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일반 보수·명절휴가비 등 통상적 인건비 간 구분이 집행단계에서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2025년도 8~12월 인건비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원)

연번	위원회명	집행내용	지출일자	집행액
1	인천	8월 보수 지급	2025-08-19	63,718,010
2	선거연수원	2025년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	2025-09-23	32,582,000
3	제주	10월 직원 보수 지급	2025-10-17	18,986,200
4	대전	25년 10월 직원 보수 지급	2025-10-16	54,303,000
5	충북	10월 직원 보수 지급	2025-10-16	68,515,780
6	세종	2025년 11월 보수 지급	2025-11-19	333,040
7	세종	2025년 11월 보수 지급	2025-11-19	5,990,000
8	울산	11월 보수 지급	2025-11-19	20,443,160
9	부산	11월 보수 및 10월 초과근무수당	2025-11-18	151,645,000
10	전남	11월 직원 보수 지급	2025-11-19	166,886,000
11	서울	직원 보수 지급	2025-11-18	245,694,140
12	경기	11월 직원 급여 지급	2025-11-19	325,907,890
13	광주	2025년 12월 직원 보수 지급	2025-12-18	19,79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대통령선거 관련 예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 당시 본예산으로 지급함에 따라 보수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후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설명은 대통령선거 관련 직접 소요 인건비와 본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통상적 인건비 간 재원 구분 및 정산관리가 집행단계에서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특히 예비비 집행 결과가 선거 종료 이후 일반 보수·명절휴가비 등 통상적 인건비 지급으로 나타난 이상, 예비비 배정 목적과 실제 집행내용 간 대응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특정한 목적의 예비비를 집행할 때, 선거관리 업무 수행으로 추가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재외근무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와 본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명절휴가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비비와 본예산이 혼용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청사 유지관리: 공공요금 예산 부족에 따른 이·전용 반복 및 예산추계 개선 필요

가. 개 요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공공요금·제세, 임차료 등을 지원하여 청사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25억 7,400만원 중 124억 2,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1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5년도 청사 유지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사관리	25,005	25,005	-	△1,513 1,353	24,845	24,452	-	393	26,712
청사 유지관리	11,354	11,354	-	△97 1,318	12,574	12,424	-	150	12,55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사유지 관리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으로 2023년 이후 매년 10억원 이상 규모의 이·전용 등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청사별 실제 사용량·요금단가·청사 변동요인을 반영한 공공요금 예산추계 기준을 마련하고 세목별 집행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청사 유지관리 사업 중 공공요금및제세는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운영에 필요한 전기·수도·난방·통신요금 등 필수경비로, 부족한 예산을 이·전용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10) 일반회계-청사관리(7132-354)(기획조정실)

최근 3년간 청사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요금 집행현황을 보면,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이·전용 등은 2023년 10억 5,800만원, 2024년 15억 8,300만원, 2025년 11억 1,900만원으로 매년 10억원 이상 발생하였음.

[최근 3년간 청사 유지관리 사업 공공요금(210-02)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	3,155	-	1,058	4,213	4,079	1	133
2024	1,916	-	1,583	3,499	3,368	-	131
2025	3,018	-	1,119	4,137	4,018	-	11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요금 부족의 주된 원인은 전기요금이며, 매년 각급 위원회별 공공요금 집행액을 파악하고 전기요금 등 단가 인상분을 고려하여 공공요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공공요금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공공요금 부족분을 3년 연속 10억원 이상 규모의 이·전용 등으로 보전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청사별 실제 소요와 요금 변동요인이 예산요구 과정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반복적 부족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5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위원회 청사 공공요금 부족을 이유로 8월 20일 청사관리 상용임금 6억원을 공공요금및제세로 전용하였고, 11월 20일에도 상용임금 4억 5,300만원을 공공요금및제세로 전용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에만 상용임금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전용된 금액은 총 10억 5,300만원에 이르며, 임차료 1,700만원과 급식비 4,900만원도 공공요금및제세로 세목변경되었음.

[2025년 청사 유지관리 사업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전용 및 세목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비목		세부사업	비목
전용 (2025.8.20.)	청사관리	상용임금 (110-03)	600	청사관리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전용 (2025.11.20.)	청사관리	상용임금 (110-03)	453	청사관리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세목변경 (2025.11.20.)	청사관리	임차료 (210-07)	17	청사관리	공공요금및제세 (210-02)
		급식비 (210-04)	49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요금 부족분을 상용임금·급식비·임차료 등 청사관리 사업 내 다른 세목을 감액하여 보전하는 방식은 청사관리 사업 내 다른 경비의 집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2025년에는 상용임금에서만 1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요금 부족이 단순한 세목 간 조정에 그치지 않고 청사관리 사업 전반의 세목별 집행계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요금 집행실적, 요금단가 변동률, 청사 신설·이전 및 복합청사 관리비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적정 소요를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용임금 등 다른 세목을 감액하여 공공요금을 보전하는 방식의 연례적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　타】

6.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8건을 채택하였는데, 모두 제도개선 8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	8	-	8
합계	-	-	-	-	8	-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8건에 대해 6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5%)하고 2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8	6	75.0	2
합계	8	6	75.0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1억 1,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400만원(15%) 증가됨.[1)]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	-	-	-	-	-	-
총수입	-	-	96	96	-	-	110	110	14

문의: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5억 2,100만원(△9.1%)이 적은 152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600만원(△8.9%)이 감소됨.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6,749	16,749	16,728	△21	16,763	16,763	15,242	△1,521	△1,486
총지출	16,749	16,749	16,728	△21	16,763	16,763	15,242	△1,521	△1,486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나, 1억 1,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억 1,000만원이 수납(수납률 100%)됨.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	-	-	-	110	110	-	-
합 계	-	-	-	-	110	110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52억 4,200만원으로, 152억 4,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없음.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6,763	16,763	309	△1,830	-	15,242	15,242	-	-
합 계	16,763	16,763	309	△1,830	-	15,242	15,242	-	-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33억 9,618만원이 감소된 0원으로, 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라 금융자산이 16억 6,700만원, 유・무형자산이 11억 3,900만원 및 기타자산이 5억 9,000만원 감소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억 4,200만원 감소된 0원으로, 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라 충당부채가 5억 4,2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8억 5,400만원이 감소된 0원임.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3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1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71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 감소됨.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	3,396	△3,396	△100.0
		금융자산	-	1,667	△1,667	△100.0
		유・무형자산	-	1,139	△1,139	△100.0
		기타자산	-	590	△590	△100.0
	부 채		-	542	△542	△100.0
		차입부채	-	-	-	-
		충당부채	-	542	△542	△100.0
		기타부채	-	-	-	-
	순자산		-	2,854	△2,854	△100.0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355	4,666	△1,311	△28.1
	재정운영순원가		17,113	19,113	△2,000	△10.5
	재정운영결과		17,113	19,113	△2,000	△10.5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인건비, 운영비, 기본경비 등 총 3개 세부사업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집단희생 사건 등 조사 업무, 위원회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용역, 종합보고서 발간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실제 여비 소요 및 진실규명활동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나, 60일을 경과하여 통지한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향후 법정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진실규명 조사 사업: 연내 집행가능한 여비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진실규명 조사’ 사업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억 3,9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

[2025년도 진실규명 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진화위운영	3,266	3,266	309	△1,089	2,486	2,486	-	-	-
진실규명 조사	1,975	1,975	303	△739	1,539	1,539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의 예산 중 국내여비는 예산액 5억 400만원 중 1억 2,500만원(24.8%)이 집행되고 3억 7,900만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함)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이체되었고, 국외여비는 예산액 5,400만원 전액이 행정안전부로 이체되었음.

2) 일반회계-진화위운영(1031-300)(기획운영관)

[2025년도 진실규명 조사 사업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결산]

(단위: 백만원)

비목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국내여비	504	504	-	△379	-	125	125	125	125	-	-	-
국외여비	54	54	-	△54	-	-	-	-	-	-	-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최초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4년 5월 26일까지 진실규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음.

이후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4년 초 대통령 및 국회 보고 후 진실규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5년 5월 26일까지 활동하였고, 2026년 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되어 2026년 2월 26일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음.

[2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활동 기한]

구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출범일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대통령 및 국회 보고일	진실규명 활동 기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기간	제25조(조사기간)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0년 12월	2021년 5월 26일	2024년 1월 23일 (1년 연장)	2025년 5월 26일

나. 검토의견

첫째,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실제 여비 소요 및 진실규명활동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진실화해위원회의 여비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데, 구체적으로 2024년 국내여비는 예산액 6억 3,500만원 중 3억 4,700만원(집행률 54.6%)만이 집행되었고, 국외여비는 예산액 5,400만원 중 1,900만원(집행률 35.2%)만이 집행되었음.

2025년의 경우 국내여비 예산액 5억 400만원 중 1억 2,500만원(24.8%)만이 집행되었고, 국외여비 예산액 5,400만원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최근 2년간 진실화해위원회 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내여비				국외여비			
	예산액	전년도 대비 감액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이체액)	예산액	전년도 대비 감액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이체액)
2024년	635	-	347 (54.6%)	288	54	-	19 (35.2%)	35
2025년	504	△131	125 (24.8%)	(379)	54	-	- (0%)	54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예산 편성 당시 실제 여비 소요 및 진실규명활동 기간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에 활동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4년 1월에 진실규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므로, 2025년 5월 26일까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

그런데 2025년은 활동 기간이 타 연도의 절반 정도(5월 26일까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여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6억 3,500만원에서 1억 3,100만원이 감액된 5억 400만원을, 국외여비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2025년 국내여비 예산은 2024년 대비 1,457건 감소한 총 5,598건의 현지조사를, 국외여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총 18건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국내 현지조사는 825건에 불과하였고, 국외 현지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음.[3)]

3) 현지조사 예산 및 집행 건수는 인원·횟수로 산정함

이와 같은 집행부진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여비가 연례적으로 실제 소요보다 과다 편성되고 있고, 2025년 활동 기간이 5월 2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예산안 편성 시 활동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여비를 면밀하게 추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편성할 때 활동 기간 및 여비 집행 계획, 과거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2기 진실화해위원회 접수 사건 중 총 2,111건이 미종결된 상태로 활동이 종료되어 해당 사건들이 조사중지 상태로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관되었으므로,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미종결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접수된 사건의 처리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20,252건의 진실규명 접수를 받아 총 20,928건을 분야별로 배정하였으며,[4] 그중 18,817건(89.9%)이 종결되었음.

구체적으로 전체 배정 사건 중 11,913건(56.9%)이 진실규명처리 되었으며, 674건(3.2%)이 진실규명 불능 처리되었고 4,113건(19.7%)이 각하되었으며 2,117건(10.1%)이 신청인 취하 등을 이유로 기타처리 되었음.

그런데 전체 배정 사건 중 2,111건(10.1%)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까지 종결되지 못해 조사가 중지된 바 있음.

[2기 진실화해위원회 사건 처리 결과]

(단위: 건)

구 분	신청 건수	배정 건수	종결사건				조사 중지
			진실규명	불능	각하	취하 등	
계	20,252	20,928 (100%)	11,913 (56.9%)	6,904(33.0%)			2,111 (10.1%)
				674 (3.2%)	4,113 (19.7%)	2,117 (10.1%)	
항일운동 등	129	131	25	14	63	12	17
민간인 집단 희생	9,957	10,195	6,096	396	801	1,537	1,365
적대세력 관련	3,885	4,096	3,197	119	332	363	85
인권침해 등	2,889	3,294	2,079	129	431	162	493
역사적 사건	208	225	50	14	9	3	149
3·15의거	492	493	466	-	1	24	2
기타	2,692	2,494	-	2	2,476	16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 하나의 신청에 여러 건의 진실규명 요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 배정 건수는 신청 건수보다 많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사개시결정 후 조사에 따라 진실규명, 진실규명불능 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5] 조사중지된 2,111건의 사건은 조사개시결정만 받았을 뿐 조사가 종결되지 않아 신청인들은 자신이 제기한 진실규명 신청이 어떠한 과정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6]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 중지된 사건들은 2026년 2월 전부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7]에 따라 새로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함.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중지된 2,111건의 사건에 대하여 3기 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접수된 사건들이 원활하게 사건 종결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법률 제19271호)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6) 이에 대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위원회 접수 10,860건에 비해 업무량이 2배 가까이 늘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조사가 어려웠다는 입장임.

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부칙 (법률 제21330호)
제7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 제한을 이유로 조사중지 결정한 사건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진화위 기본경비: 이의신청 결과 통지의 법정 기한 준수 필요 등

가. 개 요

‘진화위 기본경비’ 는 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발간,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업무수행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60억 2,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8)]

[2025년도 진화위기본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진화위 기본경비	6,686	6,686	-	△664	6,022	6,022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나, 60일을 경과하여 통지한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향후 법정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각하 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9)]

---

8) 일반회계-진화위기본경비(7002-250)(기획운영관)

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법률 제19271호)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인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 ·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각 결정을 통지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10] 통지대상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11]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총 157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는데, 그 중 25건(15.9%)의 경우 6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였고, 심지어 6건은 81일을 경과하여 통지하였음.

[2025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 결과의 기한별 통지 현황]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60일 이내</th><th colspan="3">60일 경과</th><th rowspan="2">합계</th></tr>
<tr><th>61~70일</th><th>71~80일</th><th>81~90일</th></tr>
<tr><td rowspan="2">건수</td><td rowspan="2">132건</td><td colspan="3">25건(15.9%)</td><td rowspan="2">157건</td></tr>
<tr><td>15건</td><td>4건</td><td>6건</td></tr>
</table>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이의신청 통지가 지연될 경우 이의신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저해시킬 수 있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법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통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진실규명과 관련한 포럼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진실규명 범위에 대한 내부 논의 등으로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추진하려는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법률 제19271호)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법률 제19271호)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내역사업인 위원회 회의운영에서 일반용역비로 본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액 전액이 행정안전부에 이체되었음.

[2025년도 위원회 회의운영 일반용역비 결산]

비목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일반용역비	30	30	-	△30	-	-	-	-	-	-	-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해당 예산은 당초 과거사 진실규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포럼을 2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임.

그런데 2025년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포럼의 진실규명 대상 사건 범위 및 접근 방식에 대한 내부 검토와 조정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포럼 주제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용역 발주도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진실화해위원회의 일반용역비 미집행 이유]

예산 편성 근거		집행단계
과거사 진실규명 포럼 추진 1,500만원 × 2회 = 3,000만원	→	과거사 진실규명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미추진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대략적인 추진 방향만 설정되었을 뿐, 실제 사업 집행을 위한 핵심 요소인 포럼 주제, 추진 범위, 운영방식 등에 대한 내부 합의 및 실행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용역을 수행하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연내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　타】

3. 부대의견 조치결과: 결산 부대의견의 실질적인 이행 필요

가. 개　요

국회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2024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회계연도 결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 전쟁 중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군경에 의한 희생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간 배상 및 보상 차이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보고한다.

나. 검토의견

진실화해위원회는 2024년도 결산 부대의견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 전쟁 중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군경에 의한 희생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간 배상 및 보상 차이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보고한다”를 이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 전쟁 중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군경에 의한 희생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간 배상 및 보상 차이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보고한다”를 채택하였음.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2월 6일 개별 국회의원실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고, 이후 2026년 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제50조제2항에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12]이 신설되

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및 범위 등과 관련한 법률안 제·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입장임.

그런데 2024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은 2025년 11월 27일 의결된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치 완료의 근거로 제시한 2025년 2월 6일 의원실 설명은 부대의견 채택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부대의견 의결 이후 진실화해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한 바가 없음.

또한 부대의견의 취지는 단순히 향후 배상·보상 관련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6·25 전쟁 중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군경에 의한 희생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간 배상 및 보상 차이의 정당성 등에 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에 있음.

그러나 2026년 전부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은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범위 및 종류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군경에 의한 희생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간 배상 및 보상 차이의 정당성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향후 배상·보상 기준 등을 법률로 정하는 절차 역시 국회 입법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진실화해위원회가 부대의견에서 요구한 국회 보고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경에 의한 희생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간 배상 및 보상 차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여 결산 부대의견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21330호)
제50조(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① 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및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라 함) 소관 총수입은 해당사항 없음.

2025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7억 2,400만원(△30.0%) 적은 86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9,100만원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예비비	추경(C)			
예 산	-	-	785	785	12,400	12,400	8,676	△3,724	7,891
총지출	-	-	785	785	12,400	12,400	8,676	△3,724	7,891

주)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24·2025회계연도 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으며, 2024년 예비비 8억 9,000만원 중 7억 8,500만원 집행

문의 : 02-6788-5692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2025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24억원으로, 86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70.0%)되고 1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6억 1,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	-	-	-	12,400	12,400	8,676	112	3,612
합 계	-	-	-	-	12,400	12,400	8,676	112	3,612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14억 1,100만원이 증가된 16억 3,1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 10억 500만원, 유·무형자산 2억 8,800만원 등이 증가된 것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800만원 증가된 1억 1,100만원으로 충당부채가 6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4억 500만원이 증가된 15억 2,100만원임.

2025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9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9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73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6,7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631	220	1,411	641.4
		금융자산	1,005	-	1,005	순증
		유·무형자산	504	216	288	133.3
		기타자산	122	4	118	2,950.0
	부 채		111	103	8	7.8
		차입부채	3	3	-	-
		충당부채	107	101	6	5.9
		기타부채	-	-	-	-
	순자산		1,521	116	1,405	1,211.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926	687	239	34.8
	재정운영순원가		7,354	687	6,667	970.5
	재정운영결과		7,354	687	6,667	970.5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24년 출범 이후 2025년에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개시하고,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구현, 대외협력, 기록관리, 인건비 및 기관운영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5년도 예산현액 124억원 중 86억 7,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0.0%에 그쳐 36억 1,2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인력 충원 및 조사 일정 등을 면밀히 산정하고, 예산의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증인·참고인 비용의 실비보전성 지출과 홍보성 기념품 구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타보전금(310-04)으로 집행하는 기념품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편성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예비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124억원으로 이 중 86억 7,600만원(집행률 70.0%)이 집행되고, 1억 1,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6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집행률 (%)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비비	-	-	-	12,400	12,400	8,676	70.0	112	3,612	13,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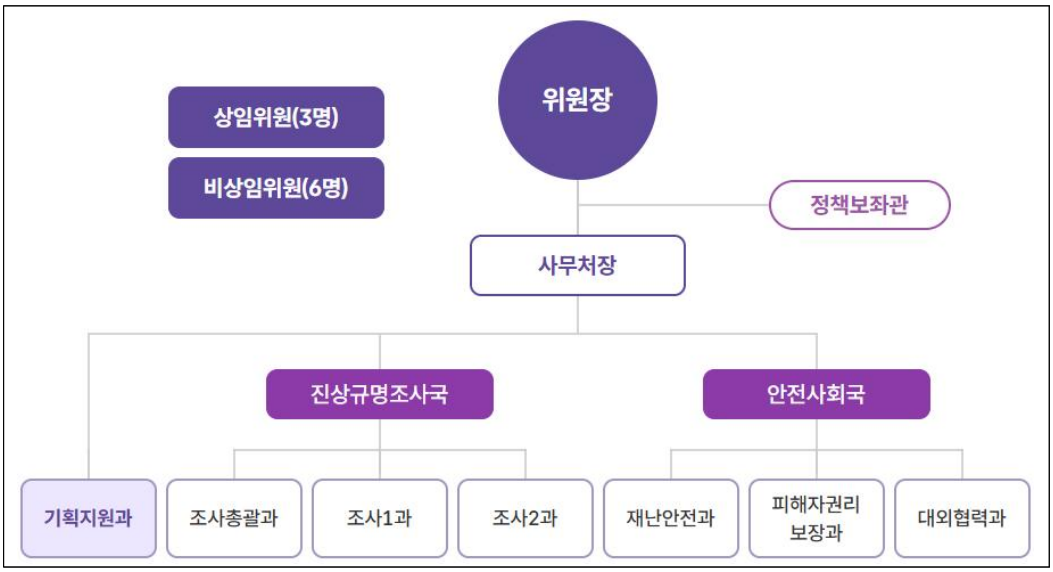
주 1)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24·2025회계연도 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음

나. 검토의견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기적인 집행점검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국가 등의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사기구로 1처·2국·1보좌관·7과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직도]



2025년도에는 본예산이 편성되지 못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진상규명조사 등 법정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인건비 및 기본경비 12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배정받았음.[1)]

이후 예비비로 배정받은 124억원 중 86억 7,600만원(70.0%)만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였음. 집행률 70% 이하 사업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나타났음.

[2025회계연도 집행률 70% 이하 세부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집행률 (%)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1131-310)	-	-	-	1,161	1,161	319	27.5	77	765	1,853
안전사회구현 (1131-320)	-	-	-	286	286	197	69.1	35	54	293

1)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24년 9월 13일 출범함에 따라 2024·2025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예비비를 배정받았음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집행률 (%)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록관리 (1131-340)	-	-	-	239	239	57	24.0	-	182	250
인건비 (7001-110)	-	-	-	4,183	4,183	2,723	65.1	-	1,460	4,707
기관운영(총액) (7002-200)	-	-	-	1,240	1,240	716	57.7	-	524	1,421

자료: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의 경우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1억 6,100만원 중 3억 1,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7.5%에 그쳤으나, 진상규명 조사실적은 총 305건의 배당사건 중 277건에 대해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1건이 종결되었음.

[2025회계연도 진상규명 조사실적 현황]

(단위: 건)

구분	배당			조사개시			종결		
	신청	직권	합계	신청	직권	합계	신청	직권	합계
진상규명 조사건수	176	129	305	148	129	277	1	-	1

자료: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위원회는 인력 채용, 조사 개시 등이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물건비 등에서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2025년 1월 제정되었음에도 조사개시는 같은 해 6월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정 이후 실제 집행 착수 가능 시점, 인력 충원 일정, 조사개시 일정, 계약·용역 발주 가능성 등이 예비비 신청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2)]

그 결과 예비비 배정 당시 예상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실제 사업 추진 여건 간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부진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음.

따라서 위원회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인력 충원 및 조사 일정 등을 면밀히 산정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시행일: 2025년 1월 14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조사개시: 2025년 6월 17일

【일반회계】

〈세 출〉

2.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신규): 증인·참고인 비용 및 기념품 집행관리 개선 필요

가. 개 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국가 등의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억 6,100만원 중 3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27.5%)되고, 7,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 6,5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5회계연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목-세목)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	-	-	-	1,161	1,161	319	77	765	1,853
기타보전금 (310-04)	-	-	-	-	95	95	36	-	59	8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 일반회계-이태원참사 진상규명(1131-310)(진상규명조사국)

나. 검토의견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증인·참고인 비용의 실비보전성 지출과 홍보성 기념품 구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타보전금(310-04)으로 집행하는 기념품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편성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의 기타보전금은 예산현액 9,500만원 중 3,620만원(집행률 38.1%)이 집행되었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 기타보전금(310-04)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목-세목)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타보전금 (310-04)	-	-	-	-	95	95	36	-	59	8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도 기타보전금 예산으로 증인·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해 총 2,989만원을 지출하였음.

[2025회계연도 증인·참고인 관련 기념품 구입 현황]

(단위: 천원)

구입품목	수량	구매액	배부처
휴대용 보조배터리	400개	3,855	유가족, 증인 및 참고인 등
타월	500개	5,000	유가족, 증인 및 참고인 등
쇼핑백 제작 등	300개	726	유가족, 증인 및 참고인 등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물품	청자접시·청자잔·손수건·풍경모빌·수저받침 등	1,433	해외 유가족
양우산 및 손톱깎기	우산 800개, 손톱깎기 800개	18,876	증인 및 참고인
합 계		29,890	

자료: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기념품 구입비용을 기타보전금으로 집행하였으며, 그 근거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를 제시하였음.[4)]

4)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위원회는 해당 물품을 유가족·증인 및 참고인 등에게 소정의 위로 물품으로 지급하기 위해 시중 단가 2만원 이내에서 구매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배부관리는 홍보성 물품 제공 방식으로 이루어져 별도의 지급대상자 명단은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타보전금은 증인·감정인·참고인·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예산비목임. 따라서 기념품성 물품을 기타보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배부대상·배부일자·배부수량·지급사유·수령확인 등을 관리하여 집행 목적과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5)]

또한 2025년 예비비 산출내역상 증인 등의 선물 관련 예산은 2,000만원이나, 실제 기념품 구입액은 2,989만원으로 산출기준액을 989만원 초과하였음.[6)]

따라서 위원회는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보전성 지출과 홍보성 물품 구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타보전금으로 기념품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편성 목적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22조(수당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감정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기타보전금(310-04목)
○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장학금 및 학자금, 재난지원금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증인·감정인·참고인·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등**
○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포함

6) <2025회계연도 기타보전금(310-04) 예비비 내역>
○ 증인 등의 비용: 총 9,500만원
- 증인 등이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경우 5,000만원, 증인 등의 조사가 장시간 소요된 경우 2,500만원, 증인 등의 선물 2,000만원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